

판사, 니들이 뭔데 ?

‘공권력’이란 폭력을 빌리려고 온 것일 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법원에 끌고 온거
아니다. 그런데,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법원의 잣대가 뭐냐?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대는 너희 판사들의 말이 법원의 잣대냐? 아니면, 법전에
규정된 법 조항이 법원의 잣대냐?

법전이 니들의 잣대라면, **공개 TV 법리논쟁 하자.**

이 책을 펼쳐 든 이에게

다음 두 마디를 하고 싶다.

먼저 ‘법원이 판단했으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승복해야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간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떠드냐?’¹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책 덮고 가라.

당신이라면, 1+1=3이라는 법원 판단도 승복할 건가?

‘괘씸죄’라는 되지도 않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입시출제의 오류를 지적한 교수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사들이 판치는 나라가 법치국가라고?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².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니다.**

‘허구헌 날 판사가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 직시는 커녕, 꿈에서조차 용납 못할 그런 인간들에게 뭘 말인들 먹혀 들어갈 것 같은가?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읽을 자격도 없으니 꺼져라

¹ 석궁을 들고 간것이 죄라고 하는 법조인 아닌 인간들에게 고한다. 이등박문을 싸 죽인 안중근도 테러범이냐? 일본인의 입장으로 보면 테러범일지 모르겠지만 조선인에게서는 훌륭한 독립군이였다. 석궁사건은 재판테러범인 판사들에게는 테러일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결코 테러가 아니다. 알고서 지껄여라. 법원의 나팔수에 불과한 언론들이 테러라고 한다고 니들도 테러라고 하는 거냐? 자신들의 발등을 찌는 것인줄도 모르고. 일본 애들이 안중근을 테러범이라고 하니까 니들도 테러범이라고 지껄이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² 법치가 무엇인지 알고 지껄이는거냐? 이 나라는 관용을 베풀어야 할 상황에서는 엄벌에 처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상황에서는 되먹지 않은 관용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신상 필벌’ 원칙도 없고, 자기 맘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으로 보장된 임기도 목살하며 뒷조사 협박으로 내쫓는 이 나라가 법치국가? 아무리 괘씸하고 미워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 법치다. 좀더 정확히 말해서, 100% 유죄 심증 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어야 하는 것이 법치다.

둘째, 책에 욕설이나 감정이 섞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박힌 사람도 가라. 비난해야 할 상황에서 욕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랄인가? 이 책은 욕 없이는 읽을 수 없다. ‘필연성은 하나의 언어만을 갖는다’라는 장마생의³ 말처럼, 사관(史官)이 사실(史實) 기록한다는 심정으로 사실대로 필자의 판검사들에 대한 감출수 없는 경멸감을 그대로 표현할 것이다. ‘감정 섞인 표현은 안 된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자가당착의 멍청한 인간이 무슨 논리적 사고를 할 수나 있겠는가? 감정에 흔들려서는 이 책의 핵심을 잡아낼 수 없다⁴. 불의를 보고도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분노의 표현까지 참견하겠다는 건가? 그런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바보이거나 가증스러운 위선자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머슴을 계도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이 책은 뒷전에서 욕하다가도 머슴들에게 ‘판사님, 검사님’하고 굽실대며 선처나 구걸하는 인간 쓰레기들에게는 독약이다.

³ 장마생, 로베스 뵘에르, 혁명의 탄생의 저자

⁴ 분노 속의 핵심을 읽어 낼 냉철함이 없는 인간에게는 시간낭비라는 거다. 그리고 필자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논리에 벗어난 비난한 적 없다.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시해 봐라. 그에 대한 비난과 욕먹고 수정하겠다.

차 례

머리말.....	8
성균관 대학교의 위법 해고 및 법원의 재판테러 일지.....	14
1장. 종놈들만 설쳐대는 나라.....	19
I. 석궁시위의 동기: 판사들에 대한 경고 및 대법원의 정체성 폭로.....	19
1. 판사, 니들 그렇게 까불다가는 뉘지는 수가 있어 !.....	19
2.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다, 대법원이 석궁사건을 조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21
(1) <i>은폐되어야 할 위법행위: 20 여년간 400 여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 시킨 대법원의 교수 임용법에 대한 위법법률해석 변경(2005.8)</i> -----	22
(2) <i>3류 문서 위조 사기꾼, 대법원장 이용훈과 사법정책실장 이광범</i> -----	27
(3) <i>이용훈과 이광범 고발 사건 추이를 지켜본 박홍우</i> -----	31
(4) <i>법원 출입 기자들의 침묵 속에 진행된 박홍우의 재판테러</i> -----	31
(5) <i>석궁사건 증거조작의 공범인 언론</i> -----	33
(6) <i>비겁한 이정렬의 변명에 대한 비판</i> -----	33
(7) <i>법은 논리요, 최소한의 상식이자 도덕이다.</i> -----	40
3. 대법원의 증거조작에 동조한 언론들.....	44
(1) <i>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들의 단합대회</i> ----	45
(2) <i>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몬 박홍우</i> -----	50
4. 검경의 증거 조작과 그 은폐를 위한 포석.....	54
(1) <i>검찰의 증거조작 첫 조치: 피의자의 입을 틀어막는 ‘위법 접견금지’</i> -----	54
(2) <i>증거 조작의 하수인, 송파 경찰서</i> -----	55
II. 대법원 주도의 증거 조작 및 은폐 강행 재판테러.....	63
1. 증거조작 침병, 김용호 1심 재판테러 일지.....	63
(1) <i>증거조작을 은폐하겠다는 내가 왜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였지? 실수했네.</i> -----	64
(2) <i>불구속 재판? 증거조작을 다 폭로시키려고? 법? 우리 그런거 몰라. 그냥 우리 판사들은 끌리는 대로 결정한다.</i> -----	64
(3) <i>증거조작의 몸통, 대법원이 드러날라. 박홍우의 통화기록을 인멸하라</i> -----	82
(4) <i>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고, 석궁 수리 조작이 법정에서 한 눈에 들통 나고, 이게 뭐야? 백재명 검사 놈은 이걸 증거조작이라고 하고 자빠졌던 거야? 이런 개판조작</i>	

을 김용호 나 혼자 어떻게 뺨질 하란 말야?-----	95
(5) 석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도대체 상처는 어떻게 생긴거야? 설마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를?-----	113
(6)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 우리 그런거 몰라!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입증 취지 설명할 필요없이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	118
(7) 법관기피 신청? 조관행 등 법조비리 관련된 판사가 그렇게 많아도 사법역사상 법관 기피 신청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 없는 거 몰라?-----	125
(8) 어딜 감히 하늘 같은 박홍우 고법 부장 판사님 더러 법정에 증인으로 오라고 지랄이야? 127	
(9) 백재명, 이희성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나? CSI 시대에 와이셔츠의 화살 구멍 근처에 혈흔 묻히는 작업도 빠뜨리고. 미치겠네-----	132
(9) 하늘 같은 고법 부장판사님을 감히 신문하려고?-----	134
(10) 아~ 이런 쟁쟁, 검경이 의뢰한 엉터리 국과수 혈흔 감정결과 인멸하려다 들켰네! 142	
(11) 내가 재판테러한다고 자꾸 떠들래? 방청객, 니들은 그냥 이 형식적인 증거조작 재판의 들러리 소품일 뿐이라고. 감치 받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147
(12) 검경의 증거조작 은폐하라, 박홍우 부장님 보호하라 정신없다 보니 대법원 형님의 명령을 깜빡했네!-----	148
2.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의 소심한 재판테러 일지.....	150
(1) 2007.11.12(월): 빨리 기각시키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자-----	150
(2) 2007.12.10(월): 이기욱, 박찬종, 최병모는 암전했다는데, 박훈은 왜 이렇게 증거 신청이 많아? 골치 아프게-----	151
(3) 2008.1.28일(월):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까지 하셨으면 옷가지 혈흔은 당연히 부장님님 피로 조작했어야지! 제 3자의 피로 조작하다니, 백재명 이 한심한 인간은 이걸 조작이라고 한 거야?-----	160
(4) 2008.1.28일(월): 머리 나쁜 검경 때문에 판사가 피고로부터 법정에서 고발당하다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169
(5) 증거조작에 대하여 연속 보도하는 연합 뉴스 장재은 기자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판사 짓도 못해먹겠다.-----	172
3. 이회기의 후임자 돌격대장 신태길의 재판테러 일지.....	174
(1) 찌질한 이회기가 사표를 쓴 덕분에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대법원 형님들이 또 한번의 단합대회로 밀어 준다고 했겠다, 확실하게 보여주마.-----	176
(2) 역시 교수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형편 없어.-----	180
4. 이홍훈 회심의 보복판결: 결과는 2007.1.19일자 전국 법원장 회의 결의 대로, 판결이유는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대로.....	185
(1)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뒷북이야? 행동력 없는 ‘냄비근성’이 얼마나 가겠냐?-----	185

(2)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였던가? 딴 애들은 만나주기만 해도 황송해 했는데, 뺨뺨하게 굴고 피켓구호로 망신까지 준 김명호 !-----	190
(3)	권력에 아부하고 국민에게는 위선 떠는 게 내 장기야 !-----	194
(4)	역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오니까 나를 비난하는 언론은 없잖아.-----	196
III.	대법원에 맹종하는 판사들의 혈흔 검증거부 일지.....	200
1.	박상길: 김명호에게 존경한다고 하는 방청객들은 뭐야?-----	200
2.	지영철: ‘혈흔검증을 명령할 수 없다’는 판례까지 위조했는데도 속지 않네-----	202
3.	노정희: 대법원에게 눈도장만 잘 받는다면, 국민의 비난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208	
4.	최상열: ‘재판 안 열고 시간 끝다가 인사철에 다른 재판부로 도망간다’-----	215
5.	민중기: ‘아~싸! 원주교도소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김명호를 출정시키지 않았네. 이 기회에 변론 종결하고 즉시 선고기일을 잡아 기각한다.’-----	216
6.	김홍도: ‘피고 검찰이 혈흔 조작해 놓고 뭉개고 있는데... 별 수 있나? 선고 마감기간 5개월이 되었으니 대법원이 만든 ‘국민 우롱 판례’로 무변론 각하하는 거야’-----	218
7.	김용덕: ‘대법관을 노리는 내가 품위를 생각지 않을 수 없지. 애기 들어주는 척 하다가 대법원의 ‘국민우롱 판례’로 기각하자’-----	223
IV.	검찰, 법원, 현재 노는 꼬라지들.....	229
1.	이강국의 후배 신영철 구하기-----	230
2.	자신이 정한 보정 기간도 위반한 이동흡-----	232
3.	이용훈 범죄 은폐목적으로 파 놓은 법리 함정에 자신이 빠진 송두환-----	239
4.	석궁사건 혈흔 조작범인 이홍훈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심리 조차 봉쇄한 목 영준과 이강국 248	
5.	춘천교도소의 비리에 기생하는 박홍래의 재판테러-----	258
6.	박홍래 구하기에 나선 서울중앙지법의 허윤, 김대웅, 조정래의 세트 플레이-----	270
7.	춘천교도소 비리를 감싸는 춘천지검 검사들을 고소했더니 그 뒤를 봐주는 판 사들 274	
8.	‘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인권침해를 당해라’는 현재-----	278
9.	‘법 위에 판사가 군림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세뇌시키려다 고발당한 이광범-----	281
10.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개념없는 판사들이 벌이는 작태들-----	284
2장.	종놈들의 공식화된 국민탄압 수법.....	286
I.	법원의 ‘재판테러’ 수법.....	286
1.	‘정답이 있는 사건’을 ‘선택의 사건’으로 사기치기-----	286
2.	법을 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하기-----	286
3.	본안전 판단, 위법 형식논리-----	287

4. 대법원 판례로 (성문)법조문 사장화: ‘훈시규정’으로 패소시킬 당사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기-----	288
5. 법 목살한 <법원실무제요>로 법원 직원 세뇌교육-----	289
6.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제적인 증인소환’ 목살, 기각하기-----	290
7. 패소시킬 당사자의 핵심적인 증거신청 훼방 및 기각하기-----	292
8. 동료 판사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무조건 기각하기-----	292
9.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걸레로 만들어 국민 탄압-----	300
10. 석명준비명령으로 패소시킬 당사자의 흠집 찾기-----	302
11. 대법원 판례 변조하기-----	303
12. 변론 녹음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조서 위조하기-----	303
13. 정형화된 ‘판단없는 판단’,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기각하기-----	304
14. 재판테러의 증거물인, 판결문 비공개-----	305
15.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위반하고 피고의 방어권 목살하기-----	305
16. 국민 우롱의 국민참여법과 영악한 이용훈-----	306
17. 삼심제가 아닌 단심제 또는 무심제-----	307
II. 현재의 국민 기본권 침해 수법-----	308
1. 헌법소원 본질 목살하기-----	308
2. 헌법소원 심판의 원천 봉쇄 작전, 일명‘사전심사’ 각하 공식화-----	309
3. 법정기한 위반 및 사기치기-----	311
4. ‘입법부 부작위’ = ‘나 몰라라’-----	315
III. 검찰의 국민 탄압-----	316
1.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 위반하며 입증책임 내팽개치기-----	316
2. [형사소송법] 제242조 위반하며 기득권층 비리 부패 방조-----	316
3.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는 ‘묻지마’ 명예훼손 기소-----	317
IV. 언론: 법원, 현재의 나팔수이자, 검찰의 사냥개-----	320
V. 검법헌 합작 공모-----	321
1. 검법헌 합작 공모의 고소·고발권 원천 봉쇄 공식화-----	321
(1) ‘묻지마’ 불기소로 국민의 고발권 봉쇄-----	322
(2) 검찰이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변조하는 이유-----	323
2. 검찰과 법원의 공모에 의한 고위 공직자 뇌물 장려-----	326
3장. 종놈들에게 급신거리는 노예근성부터 버려라-----	327
I. 종놈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려라-----	327
II.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하라-----	330

III. 배타적인 이기심을 버려라.....	332
첨부 자료.....	339
그림 목차.....	381

머리말

이 책의 목적은 대한민국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가를 알리고자 위함이다.

1. 대한민국 법률 전문가는 선천적인 기형아

2005년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로 시작된 판사들과의 법리 싸움이 시작되자, 필자는 그들의 하나 같이 몰상식하고 비 논리적인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판사는 사회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순투성이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인간이 권력과 돈의 유혹에 굴복하기 쉬운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모순되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필자에게 매번 구박에 가까운 지적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은 논리로 먹고 사는 판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었는데, 수 년에 걸쳐 접한 판결문의 논리들로부터 필자는 그들이 법률가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운용하는 법 조문들의 형성과정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논리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법전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필자는 이미 법에 깔려 있는 기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시작한 필자는 법전을 읽으면서⁵ 법의 구조와 논리가 전혀 낯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 (1) 대한민국 법은 독일, 일본 등 유럽 선진국의 법들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수천년간 내려온 유럽의 논리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만들어 졌기에 구조상 수학과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기원전 300 년경에 활약했던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의(Euclid)⁶ 영향으로 유럽인은 아주 조그마한 기본적 원칙이 있으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를 연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시 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경쟁을 수천 년간 해왔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유럽인은 모든 학문을 발전시켜 왔기에 법과 수학은 그 뿌리가 같을 수 밖에 없었다.⁷

⁵ 법전은 천자문 정도의 한자실력과 중학교 수준의 국어독해력만 있으면 읽을 수 있다.

⁶ 기하학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기하학 원론(Elements)’의 저자. 수학적 논증의 창시자

⁷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화학의 기본 틀을 확립한 라부아지에(Lavoisier)와 전자기학을 완성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James Clerk Maxwell), ‘페르마 정리’로 유명한 수학자이자 변호사인 페르마(Ferma), 과학 및 실험적 방법론의 선구자인 영국 대법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법학 박사 데카르트(Descartes), 실증적 방법론에 의한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Montesquieu) 등이 이를 입증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2)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경험들로부터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과 수학의 용어와 개념들이 서로 대응된다는 것이다.

① 우선순위 개념: 상·하위 법, 심리의 순서 ⇔ 곱셈, 덧셈에서 곱셈 우선 원칙
헌법소원 심판 심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면 그 원인이 되는 법 또는 공권력에 대한 위헌을 결정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제75조는 규정하고 있다.

* 여기 우선순위에 법과 수학의 차이가 있다. 수학은 애초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인간 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법의 경우에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때마다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추구 또는 인간 생명의 존엄이냐의 안락사 사건, 낙태 사건, 경제 또는 환경이냐의 새만금, 도롱뇽 사건, 동성 연애자들의 결혼과 입양 문제 등에서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한다. 즉, 이러한 인간의 선택의 문제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② 깔끔하고 함축성 있는 기본 블록: 법조문 ⇔ 수학의 정의, 공리(axiom)
수학의 '연속'의 정의가 현존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처럼 수학의 정의와 공리들은 많은 것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의 노력으로 함축성 있게 만들어진 기본 블록이고, 법조문 또한 그 조합이 많은 사실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굳더더기 없는 문구로 다듬어져 왔다⁸.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체구속'이라 함은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의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 재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에도 같은 권리가 보장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듯이⁹.

③ 입증 ⇔ 증명
법원의 판결이유,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그리고 소송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조문을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것은 수학의 증명문제에서 단계적인 논리 과정에 정리¹⁰와 공리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

④ 법리 ⇔ 수학의 논리

가. 연역적 논리

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성문법 조항을 인용하는 전개과정이 수학에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⁸ 가능한 한 중복되는 문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공리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공리는 퇴출되듯이, 다른 법조문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법조문으로 삽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대법원은 선진국에서 베풀은 그 좋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넣지 않아도 될 문구들을 삽입하여 걸레로 만들고 있다.

⁹ 참조: [헌재결 1997.11.27, 92헌바28], [미국연방헌법수정] 제 6조, 제14조, [미연방 대법원 판례 Washington v. Texas, 388. U.S. 14. 1967]

¹⁰ 정의와 공리로부터 도출되는 명제

연역적 논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으며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것은

- (i)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혐의 입증은 증거에 의하여 하고
- (ii)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 133조(증거신청의 순서)
- (iii)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혐의와의 연관성을 특정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제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¹¹

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다.

나. 경험 과학적 귀납적 논리: 특수한 예에서 뽑아낸 본질적인 것을 일반화시키고 그 일반화된 원리를 다른 예들에 적용한다는 원칙.

예:

- (i)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ii) 그 침해가 인정되면 그 원인이 되는 공권력이나 법률이 위헌임을 결정하여([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
- (iii) 그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미치도록 한다.

⑤ 입증 논리의 완벽성 추구

과정들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논리에 모순이 있으면 수학에서의 증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입증의 완벽성을 요구하고 있다.

⑥ 경험과 상식이 기초

흔히들 ‘법은 최소한 상식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인간은 보고 듣고 겪은 것만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그를 통찰한 유럽인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실증적 경험에 근거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법이 일반 상식에 부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증거채택은 판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유일한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좋은 예다. 뇌물, 청탁, 회유, 권력 등에 나약할 수 밖에 없는 판사에게 강제성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소송 지휘하도록 만든 규정인 것이다.

¹¹ CCTV 자료, 지문, 혈흔 일치여부 등의 과학적인 입증 내지 입증을 위한 검사의 논리적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증거요 알아서 찾아 쓰세요’라는 식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해관계에 약하다는 상식적인 통념을 감안하여 법이 이렇게 만들어 졌듯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첫 번째 공리도, ‘임의의 점과 다른 한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단 하나뿐이다’ 라는 일상의 감각적인 상식으로부터 출발한다.

(3) 결론:

위에서 열거하였듯이, 법학과 수학의 뼈대가 같다.

그러니 수학 문제의 결론이 하나이듯이, 증거가 충분한 경우 법에서도 우선 순위가 결정되면 사건의 결론도 원칙적으로 하나일 수 밖에 없다. 판사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말고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며 ‘법은 수학에서처럼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헛소리나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법의 기본도 모르는 선천적 기형아다.

2. 악의 축인 법원을 중점적으로 분석 비판

독재 정권시절의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비리재벌 면죄부 판결, 성대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필자의 해고 사건을 비롯한 20 년간 400여명의 해직교수 생매장 사건, 도가니의 성폭력 사건 등 모든 사회 부조리 중심에는 항상 ‘신상필벌’의 원칙을 무시해 온 법원이 있었다. 법원이 올바르게 서 있다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결코 법원에 오지도 못 했을 것이다. 즉,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키우는 악의 근원인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개인적인 사건보다는¹² 법원과 그 공범 검찰, 헌재를 공략 목표로 삼았고, 그들의 엉터리 법리를 가차없이 난도질하고 분석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석궁사건은 법원이 ‘초등 학생들도 속이지 못할 정도의 증거조작’의 재판에 감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까발린 ‘사법부 자폭 개그’다. 필자는 그 ‘사법부 자폭 개그’를 중심으로 검찰, 법원, 헌재가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조하는지, 그러한 사실을 언론이 어떻게 왜곡 보도하는지, 그리고 그런 장단에 춤추는 필자 주변의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의 행태까지도 까발린다

(*법원, 검찰, 헌재 그리고 그들의 나팔수 언론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필자의 체험들이기는 하지만, 필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법원, 검찰, 헌재 어느 한 곳에라도 들어서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약자는 피해자로서 힘없어 당하든, 강자는 가해자로서 상대방 약자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든, 처지는 다르지만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옛 같은 이 사회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1) 대략적 순서

- 1장. 종놈들만 설쳐대는 나라
 - 1. 석궁사건을 일으킨 동기
 - 2. 재판테러범들의 일지들과 그 해설: 판사들 측면에서 본 재판테러 일지들과 관련 사건들 묘사

¹² 참조: 성균관 대학교의 위법 해고 및 법원의 재판테러 일지.

- 3. 검찰, 법원, 헌재 그리고 언론의 작태들: 실제 예들 소개
- 2장. 종놈들의 공식화된 국민탄압수법: 법원, 검찰, 헌재 그리고 언론들이 국민을 탄압하고 그를 왜곡하는 공식화된 수법들을 정리
- 3장. 종놈들에게 까지 굽신거리는 그 노예근성부터 버려라

(2) 필자의 전략

	필자의 전략	요지 및 이유
1	“법관은 ‘법의 입’에 ¹³ 불과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 하에, ‘성문법 조문’ 그 자체를 고수하고 대법원과 헌재 등이 만든 위법 판례들을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고 판례의 기속력은 없다
2	‘훈시규정’, ‘판례변경’, ‘이중잣대’, ‘사안이 다르다’, ‘형식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법원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분석 비판과 함께	적법한 근거도 없이 떠도는 위법 용어들 배격
3	그들의 교묘한 위선포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u>그들이 정한 위법한 그들만의 게임 룰 내에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였다.</u>	일관성 없는 법원(* 같은 법률에 대하여 대법원은 두 개의 상반된 법률해석을 하였고 자신들이 만든 판례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

(3) 결론: 드러난 판사들의 정체성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고시 붙은 것을 ‘법을 위반하는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할 정도의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 '대법원에 대한 맹종' 등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인간들로서, 기득권층 편에 서서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대는’ 판결로 서민을 억압하고 있다.

¹³ ‘법의 정신’의 저자이자 프랑스 계몽주의자인 몽테스키외가 법관(=판사)에 대하여 내린 정의.

성균관 대학교의 위법 해고 및 법원의 재판테러 일지

- 1991.3.1: 성균관 대학교 자연대 수학과 조교수 임명
- 95.1.4: 당시의 학과장 채영도 교수는 김명호교수를 이과대 학장에게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
- 95.1.16: 김명호 교수, 95 학년도 본고사 수학과 7번 문제의 채점위원으로서, 채점도중 출제오류를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지적
- 95.1.20: 장을병 총장에게 본고사 오류 보고
- 95.1.26: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 95.1.27: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김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
- 95.5: 정봉화 학과장, 전공필수 위상수학(주:95년 1학기 김교수 담당)의 여름학기 개설을 약속하고, 졸업예정 학생들의 학점거부 선동 (주: 51 명의 졸업 예정자중 31 명이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 2명만 재시에 응함)
- 95.6.23: 부총장 전용각, 교학처장 원동호, 연구처장 김태호 등은 김 교수에게 교육대학원으로 적을 옮길 것을 강요,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알림.
- 95.7: 성대 신문상의 여름학기 개설과목 공고에 없었던, 4학년 전공필수 위상수학 강좌 열음 (주: 수업료 전액면제를 받은 모든 학생들, 즉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한 학생, B+ 이상 학점 취득)
- 95.9.27: 성대로부터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다
- 95.10: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에서도 탈락
- 95.10.17: 서울지방법원에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제기
- 95.12.12: 정직 3개월의 중 징계
- 95.12.20: 정직 3개월에 대하여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 96.1: 서울중앙법원, 대학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
- 96.2.5: 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들 미국수학회에 김교수 사건을 알림
- 96.2.16: 수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 성대 총장에게 김명호 교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서한 보냄
- 96.2.29: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재임용 탈락
- 96.3.5: 교육부 재심위원회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 96.3.21: 대한수학회 주진구 교수, 논란이 된 수학문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 96.3.25: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정당함을 밝히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 96.7.5: 서울지방법원 김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 96.8: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

- 96.10: 서울 고등법원, 대한 수학 회에 보냈던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한국고등 과학 원에(주: 당시 명효철 교수가 원장대리) 보냄
- 96.11.24: 전 미국수학회 회장 Graham 교수,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명효철 교수에게 보냄
- 97.4.16: 예일대학 S. Lang 교수, 대한수학회 장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 97.5.6: 영국의 Sir M. Atiyah 교수, 대한 수학회 장 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 97.5.27: 서울 고등 법원(양승태 부장 판사) 김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 97.7: 편집장 Chandler 교수를 비롯하여, Shepp, Graham, Schuster, Sadosky, 조장희 교수들이 연명으로, 김명호 교수에 대한 사건을 Mathematical Intelligencer 에 게재
- 97.9.5: [Science] '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라는 제목으로 김명호 교수에 대한 기사 실림
- 2005.3.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
- 05.8.18: (20년간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에서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 책자 펴냄
- 05.9.7: 판결선고기일(동관제557호 법정 10:00) => 선고 연기(9월 21일)
- 05.9.22: 9월 21일 선고된, 1심 패소 판결에 불복, 항소
- 05.10.4: 최재천 의원 김명호 교수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질의
- 05.10.6: 최재천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
- 05.10.18: 서울고법 민사 14부에 접수(접수 후, 판사 변동; 4개월 재판지연의 이상훈 => 재배당의 조관행 => 성대출신 강영호 => 민사 제2부 박홍우)
- 06.1.12: 서울고법 민사 14부, 이상훈 판사 규탄 민교협 기자회견
- 06.2.28: 재배당된, 건설 전문 민사 26부 성대출신, 강영호 법관기피 신청
- 06.3.3: 민사 제2부 나(부장판사 박홍우)로 배정
- 06.4.13: 변론의 녹취 신청
- 06.6.8: 대법원의 재임용관련 법률해석(77다300)의 위법 변경에 대한 7개 단체의, 대법원 규탄 성명서
- 06.6.9: 대법원의 법률해석 불법변경에 대한, 공개 질의서
- 06.6.16: 선고 연기(7월 21일, 오후 2시, 305호)
- 06.6.26: 박홍우, 이상훈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소
- 06.7.10: 대법원장 이용훈으로부터 공개 질의서에 대한 허위 답변서 수령
- 06.7.19: 대법원장 이용훈,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소
- 06.7.20: 변론재개 결정(두 번째 선고 연기)
- 06.7.24: 대법원장 이용훈,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증인 신청 제출
- 06.11.9: 석명 준비명령 이의신청서에 대한, 이의신청 독촉 및 추가이의 제출.

06.12.22: 변론 종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한 증인신문

07.1.12: 선고(서관 305호, 오후 2시), 항소기각

2007.1.15: 국민저항권 행사, 석궁시위. 송파 경찰서에 구속됨

대법원이란 것들이 [헌법] 제 27조의 무죄 추정 원칙을 묵살하고, 수사도 시작되기전에 '석궁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행위' 운운하며 엄단하겠다고 천명

2007.1.19: 전국법원장 회의 개최,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엄단할 것을 결의

2007.1.30: 박홍우 얼마나 이정렬의 되쳐먹지 않은 위법 반론과 그에 대한 싱클레어의 지적비판

2007.2.2: 박홍우의 최종 진술

조주태가 박홍우에게

진술의 형식상,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되므로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과 '직접 경험한 사실이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은 양자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오랫동안 재판업무를 한 진술인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텐데, 진술인은 경찰에서는 분명히 후자의 방식에 입각하여 피의자가 진술인을 향해 석궁을 조준하여 쏘았다고 사실을 경험한 것으로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전자의 방식으로 진술한 것은 아닌데 어떤가요?

2007.3.5: 서울 동부 지법 1심 1차 공판(단독 김용호 판사)

"법전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상해 행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해 주실 것을 약속 내지는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당황한 김용호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며 시선을 돌리고 몇 초간 뜬눈을 들이다, 마지못해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2007.3.21: 서울 동부 지법 1심 2차 공판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 박홍우 운전수 문경석 증인으로 출석

2007.4.2: 서울 동부 지법 1심 3차 공판

석궁 전문가 고영환씨가 '(화살 누름판에 화살이 눌러져 있지 않아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단 위에서 하향으로) 쏘았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화살이 이만큼 내려오는 사이에 쏘겠냐?', (경찰)느닷 물어보는 의도를 나는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였다고 증언.

경찰은 증거조작을 위하여, (많이 봐 줘서) 2cm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석궁 발사 실험을 하였으나, 박홍우가 입은 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의, 러닝에 뚫고 생기는 박홍우의 자해 상처를 재현할 수가 없었다

2007.4.16: 서울 동부 지법 1심 4차 공판

'세상에 이런 (법을 위반하는)개판 재판정은 없다'라고 하여 김용호에게 감치 7일 받음

2007.8.14: 서울 동부 지법 1심 5차 공판

박홍우 증인 채택을 지연하기에 '재판 거부'한다며 퇴정. 김용호가 마지못해 박홍우 증인채택하기로 결정.

2007.8.17: 서울 동부 지법 1심 6차 공판

법을 위반하는 김용호에게 '김용호씨'라고 했더니 감치 3일을 당하다. 전금식이 증인으로 나오다.

2007.8.28: 서울 동부 지법 1심 7차 공판

재판테러범 박홍우 증인으로 나오다.

거짓말의 달인 답게 여전히 씨부렁 대고. 소송 지휘하는 김용호가 적극 방어, 신난 박홍우는 고기가 물 만난듯 씨부려 대다.

박홍우의 횡설수설은 아무 제지없이 내버려 두던 김용호가 정작 필자의 중요한 질문은 기를 쓰고 백재명 검사 놈과 함께 저지, 개판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뇌에 가하는 전기 충격 고문이상이었음. 견딜 수 없어 퇴정.

2007.9.18: 서울 동부 지법 1심 8차 공판

재판거부로 불출석

2007.10.1: 서울 동부 지법 1심 9차 공판, 검찰 징역 10년 구형

2007.10.15: 1심 선고: 징역 4년

2007.10.18: 항소

2007.11.12: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1 차 공판(이회기 재판장)

몸이 아파 불출석, 박훈 변호사 참석

2007.12.10: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2 차 공판

박홍우 혈흔 검증 신청

2008.1.28: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3 차 공판

아파트 경비원이 위증했거나 백재명이 증거인멸을([형법] 제 155조)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니 둘 중 하나를 고발하라고 이회기에게 촉구하다. 거부하기에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 237조 위반의 직무유기로 고발. 송파경찰서 홍성훈 경사가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었다고 증언.

2008.2.1: 교수지위 확인 소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확정 판결

2008.2.25: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4 차 공판: 이회기 후임 신태길의 첫 공판

2008.3.7: 이회기 사퇴로 당황한 대법원이 전국 수석 부장 판사 회의 개최하고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엄단할 것을 재천명

2008.3.10: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5 차 공판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는 신태길의 적나라한 재판 테러.

김홍석의 증언, '박홍우의 상처는 석궁에 의한 상처일 수가 없다라고 석궁전문가가 말했고 경찰의 실험에서도 그 상처를 재현할 수 없었다'

2008.3.14: 석궁사건 항소심 선고, 기각

2008.5.30: 토론회,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

참여 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체로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 토론회 및 교수 릴레이 1인시위 결의.

2008.6.12: 석공사건 기각 확정 선고(이흥훈)

1장. 종놈들만 설쳐대는 나라

I. 석궁시위의 동기: 판사들에 대한 경고 및 대법원¹⁴의 정체성 폭로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이다 - E.W. 윌콕스(Ella Wheeler Wilcox)

공지영 작가의 말,

‘권력은(지배권력층) 약자를 끝까지 짓밟아. 약한 사람이 잼을 한번 날렸다는 이유로 가루가 될 때까지 밟아. 행복은 물론이고, 관전자들이 잔인해서 못 보겠다고 할 때까지 곤죽을 만들어요’

(‘김제동의 똑똑똑’ 경향신문, 2011.9.27)

대로 대한민국은 힘 없으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회다. 헌데, 판사 살인이 종종 벌어지는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허용되면, 판사라는 것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놓고 법을 위반하며 까볼 수 있을까?

1. 판사, 니들 그렇게 까불다가는 뉘지는 수가 있어 !

2007. 1. 15일, 필자가 석궁을 들고 박홍우를 찾아간 이유는 두 가지다.

국민을 짓밟혀도 반항할 줄도 모르는 등신 취급하며 법 위반의 재판테러 강행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재판테러 범들에게 경고함과 아울러, 박홍우와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양심교수 생매장 범죄행위¹⁵를 공론화하여 대법원이 얼마나 부패한 조직이며 어떻게 국민을 속여 왔는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오로지 대법원과 검경의 장단에 따라 춤춘 언론 덕분에¹⁶, 대다수 국민들은 석궁사건이 입시출제의 오류를 지적한 전직 교수가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쓴 사건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가해자이고 사법부가 피해자가 된다. 허나 진실은 정반대이다. 사법부가 가해자이고 필자는 피해자이다. 필자는 법만을 믿고 법원을 찾아 갔다가 대법원과 그 하수인에게 무참하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¹⁴ 007 제임스 본드가 살인면허(license to kill)를 가진 것처럼, 대한민국 법관은 자기들이 법을 묵살할 면허(license to break laws)를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다. 제임스 본드야 매너와 원칙이라고 있지만, ‘판사’라고도 불리는 이 법관이란 인간들은 야비하고 파렴치하기가 비할 바가 없다.

¹⁵ 1977년 선고된 77다300에서의 사립학교법 제52조 해석을, 1987년 [법원조직법] 제7조 제 1항의 3호 위반하며 법률해석 변경, ‘교수 임용 소송= 교수 자동 패소’ 공식화 함으로 써 1987년 이후 400여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시킨 사건이다.

¹⁶ 증거를 조작한 대법원이 주장하는 대로 앵무새처럼 석궁테러라고 보도하는 대한민국 기자들처럼 편하게 생활하는 기자들은 세계에 거의 없다. 취재 대상을 연구하기는커녕, 발품도 안 팔고 기관에서 떠드는 대로, 나눠 주는 보도자료 그대로 복사기처럼 기사를 쓰고 있다.

필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준법 정신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소위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간판 하에 국민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법정에서 안하무인격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있었다. 그 작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법이고 뭐고 힘있는 내가 마음대로 재판하겠다는 데, 힘없는 너희들이 뭘 어쩔 거냐? 누가 감히 우리 판사들을 건드려? 찌그러져 있어!’다¹⁷.

그 많은 똑똑이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길래, ‘법의 입¹⁸’에 불과한 머슴들이 이렇게 법을 묵살하며 오만방자하게 나대도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분노는 법원의 재판테러범들에 대한 분노 못지않다.

민주주의, 법치라는 간판을 내걸고 ‘양심’, ‘정의’만 외치면 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판사를 단죄할 생각은 않고 입만 나불댄다. 이해관계 앞에서 한 없이 나약한 인간들에게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나 외운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민주주의 존립의 근간이 무엇인가? 견제와 감시다.

구멍가게에서도 주인이 한눈을 팔면 종업원들이 뺑뺑을 하는 게 이 세상이다. 그런데 **주인인 국민의 감시와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법원에서** ‘정의, 양심’만 외워 제끼면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정의’, ‘양심’이 마술 주문이고 자기들은 마술사라도 된다는 건가?

이 나라 법원은 경찰없는 사회와 다름없다. 세상에 경찰이 없다면 사기꾼과 도둑들이 얼마나 날뛰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그 끔찍한 현실을¹⁹ 보다 못한 필자가 판사들에게 제발 정도껏 해 처먹으라는 경고성 석궁시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증거조작이나 하는 ‘공공의 적’이라는 진면목을 드러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격려는 커녕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법원 놈들의 말을 옮겨서 ‘석궁 테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떠든다. 누가 자신의 적인지도 모르고.

법만을 믿고 찾아간 사람에게 법원은 재판테러를 자행했다. 그런 법원에게 석궁을 들고 시위한 것이 잘못이라고? 테러의 기준이 뭐냐? 폭력이 무조건 테러라면 4.19 혁명도

¹⁷ 서울고법 이재홍 판사가 900 억원을 횡령한 정몽구를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터진 주둥이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고 재벌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참조: 정몽구의 ‘준법강연’ 이견 코메디다. 2007.9.11 박훈의 격문, 오마이뉴스)

¹⁸ ‘법의 정신’의 저자이자 프랑스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가 법관에 대하여 내린 정의이다.

¹⁹ 2005-6년 법원과 검찰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길래, 이용훈, 이상훈, 박홍우 등을 검찰에 고발했더니 ‘묻지마’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닌가? 자기들끼리의 권력다툼은 하되 국민의 비난은 서로 감싸주는 영원한 동지라는 것을 말해준다.

테리고 ‘법’ 자체를 지켜주는 공권력도 테러냐? 남들이 떠든다고 생각없이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 존 로크가, “국민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할 권한을 정부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였듯이, 불법행위에 저항하는 폭력은 항상 정당하다.

뒷 장에 기술된 석궁시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²⁰,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본분을 벗어나 ‘국민 배타적 결속력’으로 뭉쳐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묵살하는지를 독자들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며 분노가 솟구침과 함께 석궁시위가 국민저항권 행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석궁사건은 필자가 독특한 전략으로 사법부의 위법행위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특별 하지만**, 박홍우의 교수지위 민사소송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 판사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재판테러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2.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다, 대법원이 석궁사건을 조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²¹

증거조작 사실이 백일 하에 드러난 석궁사건에 대하여 아직도 ‘증거의혹’ 이니 ‘진상규명’ 이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짜증이 아니라 화가 벌컥 난다²².

석궁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지 않았을 뿐, 100% 대법원 주도 하에 증거가 조작된 사건이다. 도대체 대법원은 왜 사법부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도 있는 증거조작까지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석궁시위의 충격으로 인하여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필자가 1년 6개월에 걸쳐 싸워오며 밝혀낸 대법원의 범죄행위들과 정체성을 국민이 알아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교수 임용 관련 법률해석 범죄는 필자의 경우에서 재수 없이 드러난 것일 뿐,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를 다른 많은 사건들에서도 저지르고 있다고 필자는 단언할 수 있다. 80년대 미국 드라마 중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먹이로 삼는 외계인을 다룬 드라마 ‘V’가 있었는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탈을 쓰고 법을 위반하면서 소수 특권층만을 변호하는 대법원은 ‘V’속의 외계인과 다름없다.

²⁰ 석궁사건 재판에서 담당 판사들은 늘상 하던대로 법 위반의 재판테러를 강행하였고, 그때마다 필자는 적절한 법조문을 언급하며 그 소송지휘의 위법성을 조목 조목 지적하였다.

²¹ 참세상(‘수학자 김명호, 10년 멧힌 한 풀릴까’, 2006.5.4)과 한겨레 21(‘수학자는 왜 싸우는가, 575호, 2005.9.6)만이 보도하였음.

²² MBC <PD 수첩>이 ‘석궁사건의 증거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2008년 3월25일 방송하였는데, 조끼와 내복의 화살구멍 근처에 혈흔이 보이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가운데 끼워 입은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사실이 국과수 감정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의혹’ 이니 ‘진상 규명’이니 하는 상투적 단어를 반복적으로 읊어대는 인간들을 보면 부아가 치민다. 아니 그게 무슨 의혹이고 진상을 규명할 게 있다고 떠드는가? 조작이지. 검경이 혈흔 조작하는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와이셔츠에 혈흔 묻히는 것을 깜빡 빠뜨린 것이다. 그걸 보고도 조작이라고 못하는 것은, 1+1=3에 대해 의혹이니 진상 규명하라고 떠드는 것과 다름없다.

(1) **은폐되어야 할 위법행위: 20 여년간 400 여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 시킨 대법원의 교수 임용법에 대한 위법법률해석 변경(2005.8)**

서울고법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며, 필자는 과거의 관련 사건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1987년 이후 단 1 건만을²³ 제외하고는 교수들이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모조리 패소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400 여명 교수들 중 형편없는 교수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교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이 의문은 필자로 하여금 교수 임용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²⁴ 거기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대법원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 1항의 제3호를 위반하며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함으로 써²⁵, ‘교수 재임용 소송= 교수 자동 패소’ 라는 공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1977년 77다300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를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재임용 예정 되어진다*’라고 법률 해석하였던 대법원이 1987년 87다카2622 사건에서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권자가 원하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위법하게 변경하였고, 그 해석 하나로 20 여년간 400 여명을 생매장한 것이다²⁶. (*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대법원 판례검색> 홈페이지에서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을 삭제,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⁷) 필자는 이 기록을 정리하여 150부를 제본한 후 대법원 출입 기자들과 대법원에 배포하였고²⁸ 대법원장 이용훈 앞으로 2006.6.8일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광범과 면담, 좁은 한국 사회>

당시의 사법정책실장인 이광범에게는 대법원에서 2005년 12월 29일 면담 시

²³ 1991년도 인천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판례마저도 95년도 조선대 사건의 재심사건에 의하여 폐기되어, 모든 교수 재임용 소송의 판례들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라는 잣대로 통일되었다. 이 대법원의 법률해석 위법행위는 최재천의원이 2005년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하기로 하였었다.(참조: 첨부자료 1)

²⁴ 2005년 여름 약 한 달간 친구의 도움으로 송실대 법대 도서관과 대법원 도서관에서 1977년 이후의 모든 교수 임용관련 판례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²⁵ [법원조직법] 제7조 제 1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전원 합의체)**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3호: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²⁶ Henry Shue ‘생존 필수품에 대한 권리는 물리적 공격에서 보호 받을 권리보다도 훨씬 더 기본적인것. 왜냐하면, 먹을 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질서의 구조자체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가해자에 맞서 싸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듯이, 생매장은 총칼로 죽임 당하는 것 보다 훨씬 잔인한 범죄행위이다.

²⁷ 자세한 것은 <http://seokgung.org/imagex/supreme/crime.pdf> 참조

²⁸ 약 20 여명의 법원 출입기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담합기사의 산실인, 대검찰청 기자실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 배포하였다.

건네주었다. 필자가 박홍우의 전임 재판장 이상훈이 기일지정신청서를 7차례 제출하였음에도 재판을 열지 않길래, ‘이광범 법원 인사실장님 이상훈 판사 친형 직무유기 감싸기요? 판사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피켓 구호로 바꾸었더니 2005년 12.20일 대법원 경비를 통해서 ‘이광범이 뭐 일인지 만나자’고 하길래, ‘2005.12.9일 인사과에 제출한 진정서만 보면 되는데 뭐하러 만나냐’고 거절했었다.

며칠 뒤 광주 토박이 친구의 동생으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이건 분명히 이광범 문제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 동생알, 상가 집에 갔다가 광범이를 만났는데 술 마시며 하는 얘기가 ‘어떤 전직 교수라는 또라이가 인신공격을 하는데 만나자고 하는데도 안 만나준다’고 꾸밈하더라. 친구 동생이 번뜩 ‘이거 명호 형 아닌가’ 하여 물었고 그래서 만남을 주선하게 하기에, 필자가 대법원에 들어가 이광범을 만났고, 필자의 2005.12.29일자 ‘대법원 규탄일지’에 의하면,

- 전 인사실장 이광범 판사와의 면담(2005.12.29 오전 9:45 분 부터 약 15분) -

김: 바쁘신데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대로 해 달라고 하는 거다. 여기 내 재판진행 기록이 있는데, 준비명령(11월 18일 기한) 기한도 넘었고, 일주일 뒤 그에 대해 11월 25일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인사과에 7번 진정서를 냈다.

이: 총무과에 내야 하는데...

김: 전에 이혁우 판사 건으로 총무과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했더니 판사에 대한 것은 인사과에 내라고 하더라

이: 인사실장일때 진정서를 읽어보지 못했다. 왜 나한테 오지 않았는지 알아보겠다. 기일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그렇다. 그것으로 미흡하다. 이미 재판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도 되지 않고 있다. 이상훈 판사 담당 재판부의 2005년 사건들의 사건 진행들을 살펴 보면, 통상의 경우처럼, 모두 한달의 여유를 두고 재판기일이 잡혔던데. 왜 내 사건만 두달의 간격을 두고 기일을 잡는가?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을 두번 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 형이라고 해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재판에 관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내 경험으로 보아도 보통 일주일 내에 기일을 정하더라.

이: 알았다. 장담은 못하지만 알아 보겠다.

김: 사실상 내 사건이 고등법원에 올라가 담당이 이상훈 판사로 결정되어 기대를 했다. 이상훈 판사의 동생이 정책실장이고, 정책실장이(이광범) 광주고법 판사시절에 민사 최초로 교수를 재임용 승소시켰기 때문이다. 송혜영 판사가 주심이었던 그 재판의 판결문을 다 읽어 보았고, 요즘 법을 공부하고 있고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내 논문이 여기 있다. 최재천의원도 내 논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법원 국정감사때 지적한 바 있다.

이: 그런가? 한 번 읽어보겠다.

김: 이혁우 판사의 (범죄적)판결문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수의 고유권한인)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를 트집잡아 교육자적 자질을 의심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여기 29명에게 왜 F를 줄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 여기보면 재시험 기회를 주어 2명이 응시하였고, 재시험을 치르지 않은 29명이 백지로 낸 학기말 시험 답안지가 있다.

이: 준 자료들을 볼 거다.

김: 1월 10일 경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었고²⁹, 적절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그에 따라 회견내용이 달라진다.

이: 알았다.

김: 고맙다.

참고로, 필자의 서울고법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담당은 이상훈에서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인 조관행, 성대 출신 강영호를 거쳐 박홍우로 배정되었다.//

<변호사 이석태 선임 경험>

1995년에 부교수 지위확인 소송을 할 때,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이석태³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모든 증거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는데도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였고 성대측 구도일 변호사가 논리도 없이 억지를 부리는 데도 장준철 판사 앞에서 말 한번 시원하게 못했다. 당연히 패소했다.

판사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변론도 시원하게 못하고, 법리 논리도 형편없었던 것이다. 변호사 선임에 돈은 돈대로 쓰고 속 터질 일 있나 싶었다. 오죽했으면, 방청객에 있던 필자의 아버지가 손 들고 변호사 대신 장판사에게 한 마디 했겠는가? 물론, 장준철 이 성대측 변호사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반면에, 이석태 변호사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제출한 서면으로 되었다고 말을 잘라먹곤 했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하여 장준철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더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이석태는 필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맡고 있었는데, 민사에서 패소하자 필자에게 상의도 없이 소를 취하한 것이다. 그 때 담당이 이재홍이었는데 패소할 때 하더라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도 이석태는 너무나 무능한 변호사였다. 이 때의 경험이 필자가 나 홀로 소송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다.//

²⁹ 민교협, 김명호 교수 사건 신속 공정한 재판 촉구, 참세상, 2006.1. 12일자(첨부자료: 재판지연 이상훈 규탄기자회견 사진)

³⁰ 주 변호인이 이석태, 보조 변호인으로는 김창국,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이었다

<재판이 재판이란 것을 알게 되다>

재판에 2번 정도 참석해 보니 돌아가는 모양새가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아 1996.6.14 일로 선고기일이 잡힌 후 친구를 통해 고교 동기인 이한주³¹ 판사를 만났다. 이한주 왈 ‘장준철 판사를 모신 적이 있다. 한 번 만나서 사건에 대하여 물어 보겠다’ 하더니 후에 장준철이 ‘김명호가 억울한 것은 잘 안다. 하지만 구해줄 법이 없다. 선고를 3주 연기할 테니 성대와 잘 타협해봐라’고 하더라. 선고기일을 7.5일로 3주 연기 되었고 이판사가 성대에게 사과문을 보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문을 하는 게 아닌가? 사과문 작성까지 도와주겠다는 이판사의 조언을 무시할 수도 없고 참 난처했지만 어쩔건 서명 없는 유감의 편지를 보냈고 결과는 재판정에서의 느낌 그대로 패소했다.

³¹ 광주 인화 학교의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집행유예 선고했던 그 이한주다.

이사장님께 ^{했더}
 조여를 부더운 날씨에 성균관대학교 ^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제시(95학년도 입학고사 수학문제 채점처리 방안은 오로지 학자적인 양심에 기인한 것이었
 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제가 당시 좁은 식견 탓으로 동료 교수님들의 입장과
 대학측 입장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사건으로부터 야기된 부교수임명등 문제들 학내에서 원만히 타협하지 못하고 법에 의한 해결
 을 추구한 점에 대하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이
 사장님과 다른 교수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현재 저의
 신상에 관한 모든 문제가 관결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사장
 님께서 사회경험 미숙으로 비롯된 저의 행동을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성균관대학교 강단에서
 다시 강의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모든 교수님들과 화합하면서 성균
 관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6. 6. 18.

前 수학과 교수 김 명 호 올림

p.s. 편지 타자기 아닌 手筆로 써주시기 이떨지?

FAX 824-4393 정달영 교수님 귀하

From 이한주

이한주 판사의 사과문 초안 팩스 1

훗날 이 얘기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운영씨에³² 얘기했더니, 자신이 한신대에서 해고된 후 사과문을 학교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그 사과문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었다며 서명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필자가 성대에서 해고된 1년 후인 1996년인가에 삼성이 성대 재단으로 다시 들어왔고 판사를 그만둔 장준철은 삼성물산과 삼성 SDI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참조: ‘사외 이사는 힘있는 사람들의 자리?’ 조선일보, 2005.3.2)//

(2) 3류 문서 위조 사기꾼, 대법원장 이용훈과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대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해 본 교수들은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짚어서 열심히 외어 온 예상문제는 보이지 않고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은 모르는 경우, 원래의 문제 옆에 외어온 문제와 답을 써놓은 답안지를 마주치는 것이다.

이 유치한 짓거리를, 사법부 수장이라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저지른 것이다.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외에는 할 수 있는 답변이 없었기에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질의를 변조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다.

³²고인 정운영씨는 필자의 외삼촌의 절친한 친구이었다.

* 필자의 질의와 이용훈, 이광범이 변조한 질의 비교표

질의	필자의 공개 질의	변조된 질의
1	<p>대법원 판결 77다300(1977. 9. 28.)<u>에서의</u> 사립학교법 해석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법률해석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 (참조자료 1, 2, 3)</p>	<p>대법원 77다300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해석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판결한 것에 대한 해명</p>
2	<p>대법원 인터넷 판례검색 페이지 (http://glaw.scourt.go.kr) 에는 77다300에 명시된 판시사항², 판결요지²와 참조조문 등이, 왜? 삭제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명. (참조자료4)</p> <p>삭제된 것들: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와 동 부칙(2)의 취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책임명 내지는 책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p>	<p>판례 검색 페이지 (http://glaw.scourt.go.kr)에 대법원 77다300 사건 판결에 명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이 삭제된 이유 해명</p>
3	<p>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자체는,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그 위헌 법률 자체만을 인용하며 여전히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법률해석을 반복하는가에 대한 해명. (위헌 위법적인 판례들: 2006. 3. 9. 선고 2003다 52647, 2003재다262, 주심:양승태)</p>	<p>대법원 2003다52647판결 등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3항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명</p>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대 법 원

우 137-750 서울서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3동 97) / 전화(02)380-1519 / 팩스(02)3106-8113/4819/accourt.gov.kr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제4실의관 장준원 담당자 임동순

문서번호 사법정책제4실의관(민사) 2006.6.30

시행일자 2006. 6. 30

수 신 김명초

156-834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1504

제 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006. 6. 12.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위 민원의 요지는, ① 대법원 77다300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제13조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단결한 것에 대한 해명 요구, ② 관리점수 페이지에 내법우 77다300 사건 판결에 명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이 삭제된 이유 해명 요구, ③ 대법원 2003다52647 판결 등에서 헌법불합치경정을 받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은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3. 위 결의사항에 대한 별첨 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사법정책실의관 조경

변조된 질의들과 그 답변 1

<못난 교수들>

교수들에게 답변서를(2006.7.10일 수령) 보여주며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집단 고발하여 사회적으로 쟁점화하자고 하였더니, 대법원의 답변은 동문서답이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이들이 있었다.

이용훈이 필자의 질의들을 그대로 두고 답변하였다면 동문서답이 맞다. 하지만, 이용훈은 위조한 질의들을 필자의 질의라고 명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다. 위조한 질의들을 공문서에 기재하였으니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들은 다시 한번 대법원에 질의해서 재확인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평소에 기회만 오면 대법원을 혼내야 한다며 떠벌이던 인간들이 막상 기회를 잡았는데 겁이 났는지 꿈무늬를 뺀 것이다. 다시 질의하면 대법원이 실수를 깨닫고 허위공문서 범죄를 몰타기 답변으로 몽개 버릴 것이 뻔한데, 대법원에게 변명하고 만회할 기회를 주자는 것 아닌가?

옛 말에 명석 깔아 놓으면 늘 잘하던 짓도 못 한다더니... 교수들의 상황 분석 판단능력이 이 정도이니 대법원에게 앞잡아 보이는 게 당연하다.//

<증거인멸의 잔머리>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변조한 질의들을 필자가 보낸 공개질의들이라고 우겨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완벽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자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음은 대법원 규탄일지 내용이다.

2006.7.14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러 갔더니, 아직도 결재가 안 났다고 한다.
"아니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복사만 해주면 되는데...",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다."
"조작할 시간이 필요한 거냐?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거냐?" (결재가 안 난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대놓고 직격탄을 날린 것)
"그렇다면, 같이 사법정책실로 올라가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는 말들,
"급하면, 복사하던지 원본을 줄 수도 있다"(* 원본을 돌려 받으면 대법원에서 필자의 질의들 자체를 접수한 바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질의도 변조하는 더러운 인간들이 증거도 없는데 그런 공개 질의서 받은 적도 없다거나 원본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잡아 떼는 것이 훨씬 쉬운일이었을 테니 말이다.)
이모씨와 위 404호, 504호 사법정책 4 심의관실에 가며,
"법원 직원들과는 다투고 싶지 않다. 나는 판사들만 문제삼는데, 직원들이 부패한 판사들을 감쌀 필요가 있느냐"
이광재씨 왈, "전혀 그런 생각없다."

(3) 이용훈과 이광범 고발 사건 추이를 지켜본 박홍우

결국 필자는 2006.7.19일 아주대에서 해직된 윤병만 교수와³³ 공동 명의로이용훈, 이광범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그 복사본을 7.21일로 선고 예정되었던³⁴ 박홍우의 서울 고법 2005나84701 사건에 제출하였다. 그랬더니 박홍우는 그 다음 날인 7.20일 기일지정도 없이 변론 재개를 결정하였다.

[민사소송규칙] 제43조(변론재개 결정과 변론기일 지정)에 의하면,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홍우가 기일 지정 없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것은, 이용훈, 이광범 고소 건이 진행되는 모양새를 보고 나서 필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속셈이었다.

<법관의 독립? 개나 쥐라>

이렇게 판사 승진·임용권을 틀어 쥐고 있는 대법원장 이용훈의 행보 등 앞뒤 상황을 재며 재판 테러나 하는 인간들이 부당한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에는 [헌법] 제103조를 들먹이며 사법부의 독립이니 재판의 독립을 입에 담는다.³⁵

법관의 독립이란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법에 의한 재판하라고 규정된 것이건만, 실제로는 법관들이 정권이나 상급법원의 입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나 다름없다.//

(4) 법원 출입 기자들의 침묵 속에 진행된 박홍우의 재판테러

박홍우가 속이 뻘히 보이는 소송지휘를 하기에, 필자는 [민사소송규칙] 제43조를 지키라며 정기적으로 총 17차례의 변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박하였다. 잔머리만 굴리는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박홍우도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생소인 '석명준비명령'을 두 번씩이나 한 것이다. 필자의 피 같은 송달료와 법원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말이다.

<재판테러 수법으로 전락한 '석명준비명령'>

³³ 계명대 해직교수 이춘길씨는 당초에는 한번 더 질의하자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윤병만 교수가 망설임 없이 서명하는 걸 보더니 마지못해 서명했다. 그러더니 며칠 후 필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는 질의를 한번 더 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이름을 빼겠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자신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³⁴ 첫 번째 2006.6.16일 선고기일 이유없이 연기 한 후, 두 번째 선고 연기였다. 판사들에게는 [민사소송법] 제 199 조(중국 판결선고 기간)가 안중에도 없다. 훈시규정이니 뭐니 하며 묵살하고 있다.

³⁵ 법관의 독립 운운하는 판사들은 누구 말대로 주동이를 야구 방망이로 옥수수가 우수수 튀어 나오도록 그~냥 갈기고 싶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 구문권)에 규정된 ‘석명준비명령’이란 판사가 의심되는 부분, 소송당사자의 주장 중 불명확한 부분이나 그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명확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중요한 법조문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패소시키려고 작성한 소송 당사자들의 트집을 잡을 목적으로 이 조문을 오용하고 있다.

2006년 에버랜드 사건에서 이상훈이 검찰에게 하였던 석명요구, 석공사건 증거조작의 혈흔 검증 거부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 사건에서 지영철이 내린 석명준비명령과 서울고법 2010누22742 사건에서 김용덕이 내린 석명준비명령 등이 그 예들이다.//

<석명준비명령이 필요한 ‘준비서면에 답변되어 있다’는 진술에 대하여>

대부분의 판사들은 패소시킬 소송당사자들에게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강 대강 넘어간다.

예를 들어,

- ①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74878 사건의 재판에서 서신 내용을 검열하게 된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피고측 대리인 김재방은 ‘답변서에 있다’라고 짚막하게 답하였다. 그런데도 재판장 정석원은 그러냐고 하며 넘어갔다. 필자의 이 지적은 소장에도 없는데 김재방이 어떻게 알고 답변서에서 대답한다는 건가?

“공판중심주의가 뭐니까? 서면이 아닌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방을 향하여) 사법고시 붙었죠? 사법고시 볼 때, ‘법전에 답 있다’고 해서 붙었습니까?”하는데

정석원이 가로막고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발언은 삼가해 달란다. (*도대체 뭐가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그저 이 선천성 법률 기형아들은 자기들 잘못을 지적당하면 무조건 인신공격이니 명예훼손이라고 생떼를 쓴다.)

- ② 서울중앙지법 2008가소163612 사건에서도 박상길도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5) 석공사건 증거조작의 공범인 언론

17차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묵살하며 4개월 간 눈치를 보던 박홍우는, 언론들이 조용하자 2006.11.27일 경 12.22일로 변론기일을 잡고 자신 있게 필자에게 패소 판결 내린다. 이용훈, 이광범의 허위 공문서 사건은 사회에 파장을 주는 사건임에도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단 한 줄의 보도도 없었다는 것은 법원 출입 기자들이 대법원의 보도 자제 요청을 들어 준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결국 필자로서는 국민에게 알릴 충격요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제 아무리 대법원의

나팔수라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석궁 시위이었으니, 법원과 검경의 조작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언론은 석궁사건 증거조작의 공범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검찰청에는 약 20 여명의 출입기자들이 모이는 기자실이 있어 필자도 보도를 구걸하러 4-5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한번은, 연합뉴스 기자 간사가 전화를 받고 나서는 다른 기자들에게 ‘모씨가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해달라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한 여기자가 ‘석간에는 이미 이름이 나갔는데 그냥 내 보내자’고 하니 간사 왈, ‘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내 보낼 기사에는 익명으로 하자’고 하니 기자들이 별 이의없이 동의 했었다. 대법원 등 기관에 이 따위로 모여 청탁이나 받고 기사를 써대고 있으니 특종은 없고, 모든 기사가 똑 같을 수 밖에.

미국 언론의 예를 보자. 암살된 두 형,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지명자 로버트 케네디의 후광을 가지고도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한 이유가 언론의 힘이였다. 케네디는 여비서 익사사건(일명: Chappaquiddick incident, 체퍼퀴딕 사건) 관련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는데, 대통령에 출마하려 할 때 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출마를 봉쇄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언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느냐가 한국과 미국 언론의 차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언론이 이 지경이니, 신상필벌 원칙이 무너지고 정치인은 물론 법원, 검찰 등도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는 것이다. 언론이 조용하면 그냥 지나가고, 설사 재수없이 걸리더라도 잠시 수면 밑으로 숨었다가 슬그머니 돌아오면 아무 일없는 사회가 한국이다. 그 모든 탓이 일회성 선정성 보도에만 매달리는 언론에 있다.

(6) 비겁한 이정렬의 변명에 대한 비판

이정렬은 판사로서 자질도 최소한의 상식도 없다. 서울고법 2005나84701 사건의 주심으로 필자가 지적한 법리와 논리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단 한마디도 못하더니, 감옥에서 필자의 입에 재갈이 물려진 틈을 타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마구 쏟아냈다. (참조: 한겨레21. 2007.1.30, 쿠키뉴스 2007.1.17)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지적 비판한다.

- ① ‘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해 법이 명확치 않다’에 대하여
변론 종결한 2006.12.23일은 물론이고 필자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법원의원죄인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300]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를 수 차례 언급 서면제출했는 데도 이런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한거다.

대법원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을 위반하고 슬그머니 77다300의 법률해석을 변경하여 20여 년간 400여 명의 해직교수를 모조리 패소시켰다. 이 법률해석 변경 절차 위반에 대하여 대법원장 이용훈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이용훈이 필자의 질의를 변조 답변하였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의 고소장을 7.19 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고소장을 읽고 7.21일로 예정된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 인간이 할 소리가 아니다.

- ② “법원에 왔으면 법의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왜 나만 잡냐는 식으로 말해서야 증언과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 결국 재판부가 김 전교수는 교육자적 자질이 없다고 본 것 아닌가에 대하여 그건 아니다. 그건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다” 에 대하여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이 판사라니?

성균관대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무조건 모두 인정하고,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상급기관인 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은 전부 모른 체 하고 있다.

박홍우와 부화뇌동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조목 조목 밝혔는데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다니.

당시 재판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필자의 ‘대법원 규탄일지’ 2006.12.23일 자 내용이다.

박(박홍우): "원고, 반대신문 하세요."

나(필자): "반대신문 하지 않겠습니다."

박:(이의봉 사무관에게) "**원고 반대신문하지 않겠다고 기록하세요**"³⁶."

나: "반대신문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 제6호증 96-2 정직3월처분취소청구 관련 [대법원 94다30478](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과³⁷, [대법원 62도213] 판례에 의하면, 정봉화 배형주 증인신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박홍우 재판장님의 위법행위에 부화뇌동할 수 없습니다.**

(주: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 대법원 판례 91다37690)

둘째: 증인 신문사항 들은 정직3월 징계처분에 관련된 것으로, 95년 1월 이후 즉 입시출제오류 사건 이후에 전부 제기된 것이고, (피고가 그렇게 형편없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95년 1월 3일 경 학과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셋째: 피고측의 증인 신문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미 박홍우 재판장님이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신 9월 15일자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와 10월 31일자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의봉 사무관: "조서에 기록하게 그것 좀 주세요."

나: "네. 나중에 복사해 드릴게요."

³⁶ 변론의 속기 및 녹음은 결사적으로 기각하고는 필자를 패소시킬 허위공문서를 남기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³⁷[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0478]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학교법인의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재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징계처분등의 재심에 관한규정 (1991.6.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 ④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에 대하여

법과 도덕도 구별 못하는 한심한 인간 같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김명호 교수에 대한 판결문을 읽은 어떤 교수의 의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재판부에서 김명호 교수의 윤리적 또는 교육자적 덕목에 대해 말했는데,

대학교수가 윤리 도덕선생, 가정교육시키는 자가 아니라는 김명호 교수의 말이 맞다. 대학생에게 도덕윤리 가르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교수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미 굳어진 대학생들의 도덕관과 생활 태도이다. 다행히 지극히 순수하고 착한 학생들이 있긴 하나 그들은 오히려 김명호교수 같은 분의 열의를 알고 본의가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김명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 부모가 1층에 살고 나는 2층에 사는데 2주동안 못봤다"고 누군가 증언을 했다는데 이것이 인륜을 배반한 교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부모님한테 한 달에 한번씩만 전화한다, 용돈도 못드린다, 돈이 없어 동생 결혼식에 부조도 못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에 바빠서 부모 찾아볼 시간이 없다." 나도 학생들에게 이런 말 얼마든지 한다. 학생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어려우시구나 하기도 한다. 이게 승진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교수들 중에 금전관계나 상속 등의 문제로 부모와 담쌓은 사람도 봤고, 형제간에 죽이니 살리니 하는 사람들도 봤고, 부모한테 40년동안 쇠고기 한근 안 사 오는 호로 자식 같은 접장도 봤다. 김명호교수가 부모를 2주간 안 봤다고 불효막심한, 대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교수로서 덕목이 없는 교수인가? 한 집에 부모님 모시고 사니 요즘 시대에 이 얼마나 효행스런 자녀인가? 요즘은 자녀가 부모와 있어주는 것 만으로도 효도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장은 김명호 교수가 불효막심했는지 그 부모님께 물어보면 될 것을.(2007. 1. 28일 인터넷에서)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고 한 김 교수의 말은, 전문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화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가정교육의 소홀로 간주한 재판부는 이 하나만으로도 심리미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자질 이원론의 허구와 원인무효의 판결’, 국민알바이트 2007.1.18 18:16에서 발췌)

⑤ 재판권의 주인 국민의 심판: 박홍우는 석궁을 맞을 만한 짓을 했다

‘싱클레어’의 ‘이정렬씨의 해명에 대한 반박, 개발새발 개똥철학, 2007.1.24

다만 들려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에 의하면 김명호 교수가 그렇게 (교육자로서) 나쁜 자질을 갖는 교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이는 똑심있는 사람이었으며, 김명호 교수의 소신이 옳으면 옳았지 틀린 소신은 아닌 것 같다.

사실 나도 이 악습의 수혜자이지만 김명호 교수가 없애려고 했었다던 대학교 4학년에게 F를 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대학 관행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중의 악습이지 않은가?

(생각해보니 나의 대학생활도 그리 평탄치 만은 않았었다. 교양과목에서 300여명의 수강생 중에 30여 명만 학점이 나가고 나머지는 F를 준 교수한테 F도 받아보고..(같이 들은 친구의 C+ 학점이 대단하다고 느껴져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F가 나왔는데 확인하지 않아서 정말 F가 나오기도 하고...(교수가 점수를 늦게 넘겨서 F로 처리됐는데, 확인하러 오지 않은 사람들은 수정해 주지 않아서 전부 진짜 F가 됐더라는... -_-) 중요한 건 이 두 사건이 한 학기에 일어났었다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과연 교육자적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는 교수로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당사자이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를 고치려고 했던 올곧은 교육자라고 하는 편이 더 옳게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

결론을 내리자면.....

나는 성균관대가 김명호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이해가 된다. (마음에 안 들면 이유불문자를 수도 있는거지...!! 물론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재판부가 성균관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영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로.... 박홍우 판사는 **석궁을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 본다.

과연 저런 상황에서 김명호 교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였을까? 사실상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꽤 많았던 불합리한 이유로 교수에서 쫓린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나라를 뜨거나 자살하거나 병에 걸렸을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법체제가 안고 있던 부패의 씨앗에 법원이 물을 준 격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정진경, 이정렬, 이용훈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과 그에 따른 소급입법 등이 있어 정확하게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리하는 것이 변호사로서도 쉽지 않은 사건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변호사도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한다', '국민들이 지나치게 원고의 말에만 경도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청구와 관련한 쟁점을 원.피고 양자의 입증을 비교해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 대학 입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다' 라고 떠든 인간은 의정부에서 판사질 하고 있던 정진경이다. 이 인간은 법원 관련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에게 '날 좀 보소'식 칭얼대는 글을 써서 언론에 오르내렸었는데, 필자가 이용훈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법원노조 게시판에³⁸ 올렸을 때는 대꾸 한 마디 못하던 인간이었다. 그러던 인간이 필자가 구속되니까 내부통신망에(부장 판사 언론 선정보도가 사법부 권위 훼손, 오마이 뉴스 2007.1.20) 기고하는 비굴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다음은 정진경, 이정렬 그리고 이용훈에 대하여 법원노조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다.

제목: 정진경 이정렬 이용훈 씨 공통점

작성자: 공통점 2007-01-20 02:48:30 조회: 134

모두다 자기들이 양심 진보 개혁 인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르시즘 말기증상 소유자라는 것.

판결보다 언론플레이에 흥미를 느끼는 자들

모두 다 사법개혁보다 법관우월주의에 도취된 자들

조관행 부장 구속 때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5만원 절도범에도 구속영장 남발하는 현실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들

자기들만이 신이고 완벽하고 보편적 진리와 상식을 갖고 있는 구도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국민들이 언론조작에 놀아나고 있다고 분통 터트리는 자들

자기조직의 과거 역사와 자기 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서민들은

파리 목숨 취급하면서 자기 동료들 목숨은 이순신 장군 목숨으로 아는자들

위선과 몰염치 착각의 최고봉들

이런자들에게 판결을 받았던 받을 국민들이 불쌍하다는것.

=====

제목: 정진경 부장판사는 왜 말이 없는가

작성자 : 박쥐판사 2007-08-24 11:21:55 조회: 659

말하기 좋아하고 말 많고 말 좋아하는 정진경 부장은 동료판사가 징계당해도 말이 없다. 왜냐? 고등부장이 되고 싶으(신가?)..

³⁸ <http://bubwon.kgeu.org> 게시판

(7) 법은 논리요, 최소한의 상식이자 도덕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한 쪽이 상식 밖으로 행동하면, 깍뚝하고 딱딱한 존대말로 법과 규정을 들이댄다³⁹.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작동한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부터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법부터 들이댄다. 그러다가 좀 안면이 있다든가 하면 법이고 뭐고 안되는 게 없다.

<상식적으로 해결된 일화1>

서울대 김명환 교수가 Ohio State University 유학시절, 새벽 2시경 연구실에서 집에 돌아 가는 길에 새벽 2시경 깜박이는 빨간 불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가 숨어 있었던 경찰차에 잡혀 벌금에 처해졌다. 생각할 수록 억울한 생각이 들어 개인수표를 보내면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

‘교통법이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법을 어기기는 하였지만 교통법을 어긴 그 시각은 새벽 2시경으로, 지나 다니는 차도 없었고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깜박이는 빨간 신호등에도 멈추지 못했다. 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벌금에 처한다는 것은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의 제정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얼마 후, 경찰에서 답장이 왔는데, ‘너의 말에 일리가 있어 이번 만은 벌금을 면제한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거다’라는 내용과 함께 수표를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해결된 일화2>

미국 유학시절, 필자는 대학교 아파트에 살았는데 학위를 마치고 다른 지방에 취직하여 이사가려고 담당 부서에 퇴거통보를 하니, 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세까지 완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 주장인 즉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단위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 내의 월세를 전부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깨알 같은 글자들의 계약서를 들여다 보니 그들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여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찾아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 학위가 끝나고 이 학교를 떠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한 내부 조항을 적용하여 학생들 주머니를 갈취하는 거냐?’고 논리적으로 따졌더니, 처음에는 반박하던 담당자가

³⁹ 필자는 모든 일을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판사들에게 법대로 하자고 한 것은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은 인간들이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논리에 할 말이 없는지 ‘알겠다. 그 내부조항에 문제 있다’고 시인하여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던 경험이 있었다⁴⁰.//

이 밖에도 필자는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대화로 풀어나갔는데, 한 번도 상대방으로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당한 적이 없었고, 상식보다 법부터 먼저 들고 나온 경우는 더욱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부패 비리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답게 부패도 더 치밀하고 교묘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석궁사건과 같이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점이 대한민국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물론 공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간의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공개적인 부패가 선진국에서 용납이 덜 되는 이유는 그 나라 심부름꾼인 공무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그 나라 주인인 국민이 몸소 나서기 때문이다. 결국 선진국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이 아니라, 노예근성 지수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노예근성 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인기 TV 드라마 ‘내조의 여왕’, ‘시크릿 가든’ 등이 인기있는 이유는, 이 사회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권력있는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잘해주고 매달리는 상황을 즐기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맞게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욕심을 낸다는 것이다. 손석춘씨가 이명박을 비난하는 국민들도 명박스럽다고 말했듯이, 비난은 하면서도 비난하는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이 땅의 정서가 문제다.

<목소리 크면 무조건 안된다고?>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의 하나가 ‘목소리 높이면 지는 거다’라는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왔음이 틀림없다. 상식적인 논리는 안 통해도 돈과 권력으로 안되는 일이 없는 이 사회에서 그들은 목소리 높이지 않고도 일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불합리한 일에 반항하는 목소리가 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들의 입마저도 막아버리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대학시절, 필자가 종로서적에 파본을 교환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직원은 수입품이라 교환도 반품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 출판사에 보내보라고 하는 데도 안 된다고 하니 필자로서는 자연스럽게 화 나고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직원이 처음에는 조용히 하라면서 어느 방의 눈치를 자꾸 보더니 그 방에 들어갔다 오고 나서 미국으로 반송해서 교환해주겠다고 하여 끝낸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목소리 크게 내지 않고는 상식적인 일도 곱게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다. //

⁴⁰ 퇴거하면 아파트 관리자가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고 보증금에서 청소나 파손된 것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필자는 보증금 전부를 고스란히 돌려 받았다.

책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더.

<교수들의 도서관 책 대출 이야기>

필자가 성대 교수였을때, 한 번은 수학책을 빌리려고 했는데 대출되었다기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어 대출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수학과 이헌재 교수인데 대출한 지가 2년 이상이 되었단다. 어처구니가 없어 왜 반납 시키지 않냐고 추궁하니 직원이 이헌재 교수에게 전화하는데 빌려간 사실 조차도 기억 못하고 있고 되려 ‘누가 그 책을 찾느냐’고 묻는 것이다.

며칠 뒤에 결국 반납된 책을 빌린 후, 직원에게 ‘학생이 요구하면 대출되었다는 한마디로 끝냈을 터이고 학생은 영문도 모르고 있을텐데, 이게 말이 되냐? 공부도 안하는 교수가 도서관 책을 자기 책처럼 이렇게 오래 빌려도 되냐’고 했더니, 직원으로서는 교수들에게 말하기 어렵단다. 도서 책임자에게 불합리한 도서 대출 관행을 없애라고 했더니, 대답이 걸작이다. ‘연구하는 교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연구하긴 뭘 하나? 연구하는 인간이 책 빌려간 사실 자체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대출 연체 벌금을 꼬박 물지 않느냐? 기한 넘기면 교수들에게도 벌금 물려라’ 하니 ‘그럴 수 없다. 필요하다면 책을 하나 더 구입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대학교의 현실이다.

헌데 얼마 후, 수학과 교수들이, ‘어떤 인간이 떠들었는지 도서관 책의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귀찮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필자가 한 짓임을 알고 떠드는 듯 했다. 왜 몰랐겠는가? 필자가 한 번은 집 근처에 사는 학생 집에 가서 술 마시자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필자가 술 취해서 학생 집의 대문을 걸어챘다는 등으로 거짓 부풀려져 총장실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비밀이 없는 판인데...//

교수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교수 전체회의에서 하는 짓거리들>

1991년이었던가? 온천 지대에서 개최된 성대 전체 교수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약 30분간 회의 중 잊혀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무처장 왈, ‘연구비를 받으셨으면 그에 대한 보고성 연구논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10년 전에 받아가지고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교수님들은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본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에 젊은 교수들 끼리 그 교수 은퇴한 거 아니냐고 수근 수근), ‘금년도 입학 사정으로 들어온 돈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서 오늘밤 밤새 노시는데 총알을 못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게 뭘 소린가? 하고 옆에 사람에게 물으니 밤에 고스톱 칠 종자 돈을 따로 줄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그 이 후로 필자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헌데, 95년도 입시 수학 본고사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성 해고의 수순으로 성대는 필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유 중 하나였다. //

<못난 교수들의 자존심 수준>

카이스트 창립멤버였던 조장희⁴¹ 교수의 경험이다. 한 번은 교수들에게 끌려 소위 ‘방석 집’이란 곳에 가게 되었는데, 비용은 누가 내냐고 물으니 과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고 했다. 후에 조장희 교수가 행정직 교무처장인가를 맡으며 교수 승진 심사를 강화하고 교비 운용도 투명하게 했더니 교수들 불평이 많아졌고. 그 때문인지 적이 많이 생겨 결국 그는 카이스트에서 쫓겨났다.

그 과정이 가히 코메디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직을 유지시키며 조장희 교수를 영입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대학⁴² 규정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강행했던 카이스트가, 조장희 교수를 꺼려하는 인간들이 권력을 잡자, 캘리포니아 대학에 까지 고자질하며 이중 직장을 빌미로 해고한 것이다. (* 소위 교수라는 것들이 이렇게 파렴치하다. 하여 교수 사건들을 다뤄본 판사들은 대한민국 교수는 자긍심의 기본 밑바닥도 없고 서로 싸울 때는 ‘똥을 싸서 엉덩이로 깔고 뭉개는 인간’이라며 얄잡아 보지만, 그 교수에 그 판사라고 할까? 판사 수준이 개판인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성대 수학과와 실험실습비>

필자도 성대에 있을 때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정식이라는 비싼 음식을 처음 먹게 된 적이 있었다. 비용이 걱정되어 당시 학과장 이우영 교수에게 슬그머니 물었더니 과에 돈이 있단다. ‘실험실습비’라고 하였다. 수학과에 실험실습비? 알고 보니,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수학과에도 다른 실험하는 학과와 마찬가지로 실험 실습비가 있었던 것⁴³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돈이 교수들 술 먹고 밥 먹는데 유용되고 있었다. 아마도, 비용을 한 사람이 계산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연구비 내지 학과비용을 유용하는 비리도 없어지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돈 문제 때문에, 학생과 교수들간의 자연스런 대화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학생들을 만나면 교수 체면에 학생들 음식 값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수들은 학교 근처 식당으로 갈 때 학생들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필자가 성대에 있을 때 시그마라는 축구동아리에 가입했었는데, 가입 전에 뒷풀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였다. 얼마 동안은 어색했지만, 일단 습관이 되니 부담없이 가게 앞 의자에서 학생들과 술 마시며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고 학생들의 생각과 어려움 등을 많이 알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유교관습에 얽매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돈을 숭배하는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⁴¹ 인천 가천의과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소장

⁴²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⁴³ 1993-4년인가부터 과에 컴퓨터를 들여 놓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3. 대법원의 증거조작에 동조한 언론들

2007년 1. 15일 필자는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박홍우(당시 부장판사)에게 ‘항소 기각이 뭐냐?’ 며 다가갔다가 석궁 활대를 박홍우에게 붙잡혔다. 둘이 석궁을 맞잡고 밀고 당기는 중에 화살 1발이 우발적으로 발사되어 바닥과 벽에 맞고 튕겨졌다. 그러고도 둘이는 석궁을 맞잡은 채 몇 초간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가 아파트 현관의 계단에 옆으로 동시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단에 미끄러지며 우당탕 소리가 소리가 나자 아파트 경비원 김씨가 지하실에서 올라오고 박홍우의 ‘사람 살려’ 외침에 주차장에 있던 박홍우의 운전수 문씨가 달려와 우리 둘을 떼어놓았다.

박홍우는 화살을 경비원 김씨에게 건네주며 신고하라고 하고는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 후 필자는 송파지구대를 거쳐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박홍우는 앰블런스를 타고 서울 의료원으로 갔다.

석궁 시위 후 아파트에 머문 그 몇 분 동안에, 박홍우는 대법원의 누군가와 그리고 이정렬 판사와 통화했고 거기에서부터 증거조작 음모가 시작되었음이 틀림없다. 그 근거는, 박홍우는 2007.2.2일 조주태 검사에게, ‘오늘 조사 받음에 있어, 저희 부 배석판사인 이정렬 판사와 함께 나왔는데, 저의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이 판사도 저의 조사과정에서 입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술이다.

<증거조작은 예정된 수순>

1년 6개월에 걸쳐 판사들의 아픈 곳을 정곡으로 찌른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던 필자는 그들에게 ‘눈엣가시’였으리라⁴⁴ ‘힘도 없는 김명호 네가 어쩔 건데?’며 재판테러 강행한 대법원이 필자가 석궁시위까지 벌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겠지만, 그 이후의 증거조작은 전 판사이자 경북대 신평 교수가

"오직 반복되는 것은 '사법부는 완전무결의 조직체'라는 떠벌림이었다. 설사 부패사건이 생겨 문제의 일각이 불거져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은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했다. 언론도 협조했다⁴⁵. 검찰은 당연히, 협조 정도가 아니라 '공범자'로서 사건의 무마와 은폐에 무소불위의 힘을 기꺼이 빌려줬다"('봉투에 판결 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신동아, 2006.9.1 통권 564)

라고 고백하였듯이 당연한 수순이었고 박홍우의 인맥은 그를 순조롭게 만들었을 터이다./

⁴⁴ 필자는 단언한다, 박홍우의 서울고법 판결문은 박홍우와 이정렬만의 작품이 결코 아니다. 대법원의 승인 없이는 말도 안되는 그런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다.

⁴⁵ 대법원 놈들이 자신들 비판할 만한 위치에 있는 언론과 국회의원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정감사 앞둔 법사위 의원님들 검찰 법원서 호화만찬 접대’(한국일보, 2006.9.15일자 기사) 기사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언론 기사를 대접했다는 기사들이야 자신들 얘기인데 당연히 쓰지 않았을 것은 뻔하다. 아니라면 ‘기자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왜 공공연히 나 돌겠는가?

(1)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들의 단합대회**

수많은 해직교수 생매장 사건과 관련하여 이용훈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대법원의 움직임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니다’고 천명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기소는 커녕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건 당일, ‘석궁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며 엄단하겠다’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표를 함으로써,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을 묵살하였고, 2007. 1.19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재확인 함으로써, 자신들의 조폭성을 국민들에게 광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 제27조 제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를 정면 위반한 대법원의 발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보복하겠다는 사적인 감정과 양아치 조폭성을 드러낸 대법원의 하수인들이 벌이는 재판의 결과는 이미 여기서 결정난 것이었다.

<양승태, 이용훈, 박홍우의 증거 조작 공모>

1. 양승태의 원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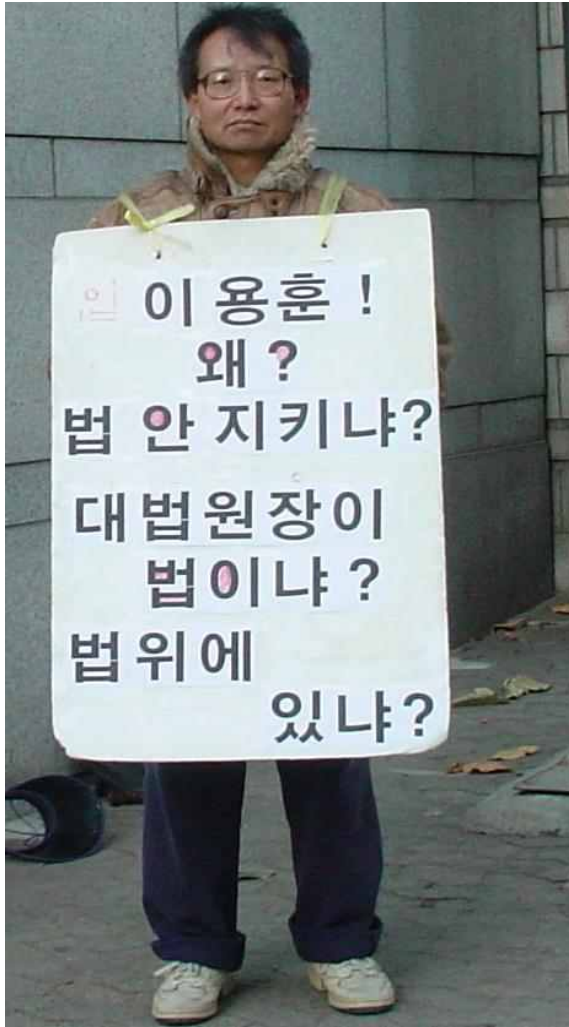
필자는 97년도 부교수 지위확인 소에서 양승태가 내린 위법 판결에 대한 응징으로 시위할 때 마다 피켓구호를 전봇대에 걸어 놓았었다. 그것이 보기 괴로웠는지, 양승태의 관용차(에쿠우스 9825)는 항상 옆문으로 출입하였었다.



양승태의 원죄 1

2. 위선적인 이용훈에 대한 응징

이용훈은 공판 중심주의니 사법개혁이니 말로만 떠들며 탈세 전관예우 등 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다 저지른 인간이다. 필자는 그 위선적인 행태를 피켓 구호로 꼬집었다.



이용훈 니가 법위에 있냐?



승용차 요일제가 차만 바꿔타면 되는 거냐?



승용차 요일제 위반 1

이렇게 양승태와 이용훈에 대한 응징 시위를 계속하면서 박홍우와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박홍우와의 첫 대면부터(2006.4.7일 첫 변론기일) 교수임용 관련 양승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참여하게 대립하였다.

양승태의 비상식적이고 음흉한 판결을 몰랐던 박홍우가 필자 앞에서 상식적으로 떠든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첫 변론기일 후, 양승태의 엉터리 판결(2006. 3. 9. 선고 2003다52647, 2003재다262)을 알게 된 박홍우는 이를 양승태에게 아부 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무자비한 재판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그리고 이용훈은 앞에서 언급한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 위법변경 은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필자에게 고소 당했고, 그 고소 내용을 알게된 박홍우는 그 범죄행위를 덮어줄 사명감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석궁시위 후, 이용훈은 서울의료원에 박홍우를(‘이용훈 오후 8시 40분경 서울의료원 방문’, 쿠키뉴스, 2007.1.15 23:43) 양승태는 서울대 병원에 있는 박홍우를 각각 찾아갔었다.(‘양승태 대법관, 서울 고법 박홍우 부장판사 병문안’, 연합뉴스, 2007.1.16). 이용훈이 박홍우를 만난 직 후, 박홍우는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면서 누워서 들어가는 생소를 벌였는데... 서울의료원에 걸어 들어가서 진통제 주사도 거부했던 박홍우가 왜 서울대로 이송되었고 게다가 누워 들어갔겠는가?

고인이 어느 순간에 저 앞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화살에 맞아서 화살을 뺐고,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도 화살의 방향이 배에 있는 상처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스듬히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당시 저로서는 굉장히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침착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굉장히 당황하고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처가 발생한 것을 몰랐고 통증도 제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앰블런스를 타고 갈 때 앰블런스에 탔을 때 거기서 온 아저씨가 처음에는 치료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데 뭐할 거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럼 하십시오. 해서 약을 발랐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서울의료원인데 서울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진통제를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진통제를 맞을 이유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주사 맞고 약 먹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렵에 저희 집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집사람 퇴근길에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집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모르니까 진통제를 맞는 게 좋다 해서 제가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통증을 언제 느꼈느냐 하면 서울의료원에서 씨티촬영인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수 1리터를 가지고 혹시 상처 부위에 나쁜 것이 들어 갔을까봐 소독을 계속 했습니다. 씻어낸다고 했습니다. 씻어낼 때 약간 따가운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그 당시로서는 몸이 전체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이든

2007.8.28일자 박홍우 증언 1

(2)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몬 박홍우

2007.1.16일 서울대 병실에서 실시된 2차 경찰 조사에서 박홍우는 ‘김명호의 정신과적인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혹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물	김명호는 잔수인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봉세에게는 말만 하였는데 하는데 역시 김명호가 한 말은 기억 하나요
답	제가 화산을 맞고 김명호가 저지른 <u>무는 석공은</u> <u>잡의연의</u> 바깥에 김명호와 숨어졌는데 당시 김명호가 저에게 죽여버린대요 목쭉위를 보았습니다
물	김명호에게 다른 죄해를 말할 것은 없어요
답	김명호가 화산을 살아 거기 방어하러서 바깥으로 숨어지러서 오른쪽 등과 옆구리에 심한 타박상을 많이 멍이 든 상태예요
물	참으로 더 할 말이 없나요
답	김명호의 정신과적인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면 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합니다
물	이상 진술이 끝났습니다
답	예, 사실입니다

188

2007.1.16일자 박홍우 2차 경찰조서 1

구 소련에서 정신 멀쩡한 정치범들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데, 완전 그 놀음이다.

< 양승태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한 박홍우와 필자의 첫 법리 다툼; 비뚤어진 대한민국

판사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예>

서울고법 2005나84701 사건에서 필자는, ‘교수 지위를 확인한다’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두 개의 청구취지를 냈다. 상식적으로 보면, 두 청구취지는 같다. 교수지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필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재임용 거부가 취소되면 교수 임용이 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양승태는 이상식적인 것을 다르다고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2003재다262]에서 억지 주장을 한 것이다.

박홍우는 필자와의 첫 만남부터 기선을 제압할 생각하였는지 이 두 개의 청구취지를 문제 삼았다. 2006.4.7일 첫 변론기일 날, ‘원고는 수학을 해서 논리적일텐데 왜 같은 두개의 청구취지를 했냐?’고. 박홍우가 묻기에 네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걸 차별하는 판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데도 두 청구취지를 하나로 하자고 고집을 부린 것이었다.

필자는 속으로 얼씨구나 좋아하며 이 인간이 분명히 나중에 양승태의 판결을 알게 되면 나서 탄소리를 할 것이라 확신했고 그 때부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박홍우와의 대화 요지를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2006.5.12일 두 번째 재판에 갔더니...

(필자의 2006.5.13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중에서)

서관 305호 법정 문 앞에 서 있던 경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경비:"법정 안에 녹음기 못 가지고 들어간다."

나:(너무나 뜻밖의 말에)...

경비:"법정 안의 녹음은 신청해야 한다."

나:"녹음 신청했다."

법정내 관리담당자도 가담했다.

관리인:"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 할 수 없다."

나:"알고 있다. 허락받고 하겠다."

4월 7일 준비기일과 달리, 혼잡하지도 않고 법정 안에 사람도 별로 없다.

전례 없이 박홍우 부장판사가 차례대로 사건번호를 부른다.

박: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이유가 뭐니까?"

박:"아직까지 진행상황이 복잡하지 않아 녹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재판진행 상황과 변론조서가 달라서, 재판조서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 때 녹음을 신청하면 됩니다."

나:"미래에 일이 복잡하게 될 지 어떻게 아나요? 이미 지나가면 (재판진행 상황과 조서와 다른)증거도 없고 해서 미리 녹음하자는 겁니다."

박:(답변이 궁했는지 갑자기 말을 바꿔서는)"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하고 있나요?"

나:"네, 하고 있습니다."

박:"인터넷에 지난 재판기일 내용을 올렸나요?"
 나:"지금의 재판 진행과는 관계없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지난 번 (4월 7일)재판 녹음했습니까?"
 나:"하지 않았습니다."
 박:"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메모와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박:"재판장의 허락없이 녹음하면 처벌받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나:"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박:"법원조직법에 있습니다."
 나:"법원조직법 몇 조 인가요?"
 박:"몇 조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나는군요."
 (주: 법원조직법 제59조 (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녹음이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박:"녹음기 있습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까?"
 나:"네, 있습니다만, 녹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보여 주십시오."
 나:(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여기 있습니다." (법정 경비가 가지고 가다)
 박:"사실관계의 정확성이라고 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변론 녹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신청 목적은 법정 내에서의 판사들의 거짓말을 사전 방지하고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위한 것이었음)
 나:"[민사소송법] 제 159조(변론의 녹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음을 명령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입니까?"
 박:"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고지했습니다."
 나:(‘영향력 행사’라는 말에 할 말을 잃고)"..."

그리고 세번째 변론기일 2006.5.26일, 2006.5.28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중에서 박홍우 재판장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두리 문실 요약한다.
 “원고는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임용거부 무효결정에 교수지위확인을 추가하였고...**”
 나:"재판장님,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확인에 교수지위확인을 추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녹음기 있습니까?"
 나:"없습니다."

박:"변론녹음 신청은 지난번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어방법 각하신청은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나:"(항고 대상이 아니라는)근거 법규정이 무엇입니까?"

박:"법률 찾아보세요"

나:"없습니다."

박:"법률서적 찾아보세요"

나:"없습니다." (주: [민사소송법] 제 439조에는 항고대상이라 명시 되어있다)

박:"조서 이의신청은 기록에 철하겠습니다."

나:"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 거부결정무효확인이 같은 것이니 하나로 하자고 하며 청구취지를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박:"**두 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그런 적 없습니다."

박:"지금이라도 하나로 바꾸면 됩니다."

나:"저는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으로 해왔고 판사님이 하나로 하자고 한 겁니다. 저보고 수학해서 논리적일 텐데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은 같은 건데, 하나되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오는 거라며, 판사님이 상식적으로 하나로 하자고 하셨는데... 혹시,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을 보고 생각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박:"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거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따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나:"나중에 어디에서 따로 하자고 했나요? 저는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에 대한 사실심리 하에 교수지위확인을 판단준다는 조건 하에 판사님의 청구취지를 하나로 변경하자는 데 동의했는데, 그 얘기가 어느 부분에서 다시 거론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박:"처음에는 하나로 했다가, 그 후 **문서 제출명령에서...**"(* 거짓말 이다)

나:"어떻게 교수지위확인과 문서제출명령이 관계가 있나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알면 정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대 본고사에서도 입시문제 출제 오류를 할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판사님도 처음에 잘못 판단하셨다가 나중에 양승태 대법관 판결을 알고 나서 두 개를 따로 판단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두개를 따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나:"(더 이상 다뤄봐야...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그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① 첫째는, 필자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는 의도이긴 하였지만 박홍우는 상식적으로 출발했다가 대법관 양승태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알게 된 후,

그를 따르기 위해 상식을⁴⁶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나라 판사들이 저지르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법을 묵살하고 대법원 판례를 맹종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법도 아니고 결코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② 둘째는, 박홍우가 [민사소송법] 제159조를 위반하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신청을 결사적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변론의 내용이 인터넷에 올려지는 것을 막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이것만 봐도 판사들은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4. 검경의 증거 조작과 그 은폐를 위한 포석

- (1) 검찰의 증거조작 첫 조치: 피의자의 입을 틀어막는 ‘위법 접견금지’

필자가 석궁시위를 하고는 송파 지구대를 거쳐 송파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후, 필자의 가족들이 면회왔는데 통제 정도가 보통 심한게 아니었다. 가족이외의 면회는 철저히 금지되었고, 가족 면회도 경찰들이 참관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짧은 면회시간 동안에 할 수 없는 이야기 등을 적은 서신, 심지어는 당시 미국에 있었던 집사람으로부터 온 편지조차 건네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경찰이 편지 내용을 미리 다 읽어보고는 필자에게 그 자리에서 읽어보라고 하였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검사의 ‘접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다. 10일간의 경찰 유치장 생활을 끝내고 2007.1.24일 검찰로 이송되어 담당 백재명 검사와 대면하자 마자, ‘접견금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자기라고 대답한다.

<백재명의 ‘접견금지’ 위법>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⁴⁷ 에 의하면 접견금지 명령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검사가 명령을 내렸나?’

‘(필자가 들고간 [형사소송법] 복사본을 보자더니) 여기 보면 피고인에 해당된다. 김명호씨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된다’

⁴⁶ 상식이 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니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위법이다.

⁴⁷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은 멀쩡한데, 이들은 안 지키다. 여기에 필자는 또 다시 절망감을 느꼈고 메시지 전달할 방법은 모든 것을 내던지는 방법 밖에 없음을 깨닫고 단식 시작했더니 형사들이 우유를 들고 와서 ‘여기서는 먹고 검찰에 송치되면 거기서 단식하라’고 권고한다. 힘도 없는 중에 어이가 없었다.

‘무슨 (개)소리냐?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⁴⁸에 의하면, 접견금지 관련 제91조를 피의자에게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백재명이 깍소리 못하자 옆에 있었던 덜 떨어진 사법연수생과 수사관인 듯한 인간이 검사가 접견금지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동조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접견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조문을 제시하라’고 반격 하였더니 제시도 못하면서 궁시렁 궁시렁. //

(2) 증거 조작의 하수인, 송파 경찰서

① 비공개된 현장 검증에서의 증거조작

박홍우 아파트에서 체포되어 송파 지구대로 호송되는 경찰차 안에서, 필자는 YTN 김백에게 사건을 만들었으니 법원 놈들의 만행을 알려달라고 전화했다. 김백 왈, ‘왜 그랬냐? 네가 옳기는 하지만 결국 너 혼자만 손해 본다.’ 지구대에서 자술서를 쓰고 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관들이 필자의 휴대폰만 가지고 가고 신문도 하지 않기에 멀거니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MBC 여기자가 카메라 기자와 함께 쳐들어오니 그때서야 경찰들이 필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갔다. 그러더니, 저녁 9시나 되었을 까?

<기자회견 시켜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심야 조사에 동의>

형사과장 이희성이 지금 밖에 기자들이 와 있는데 만나겠냐고 묻길래.

‘물론이다.’

‘마스크와 모자를 써라’

‘내가 왜 쓰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차후에 명예 훼손이니 인권 침해니 하며 문제삼지 않겠다는 자술서를 써달라’

‘그러겠다’

수갑차고 양 옆에 수사관들이 팔을 끼고 나가 보니 창살 문 너머로 십 여명의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 댄다. 덤덤히 기다렸더니, 여기자가 ‘교수님 할 말 있어요?’ 하길래, ‘할 말 많죠’ 하니 수사관들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에 기자들이 ‘할 말이 있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니, 마지못해 형사들이 몇 분을 주고는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자들이 앞서서 보도하면 우리 수사관들이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일단 진술 조사를 빨리 받으면 기자회견을 시켜 주겠다’

‘그러냐?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시작하자’

⁴⁸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심야조사에라도 응하겠느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의서 쓰겠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슨 회의인가를 한다고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니 자정 무렵에 뭔가를 확인하더니 박홍우 아파트로 필자를 데리고 갔다. 기자들은 물론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경험없는 필자는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 검증이었다.

그저 경찰들이 이렇게 계단 위에 서서 석궁잡고 있으라는 등 주문을 하기에 포즈를 취했더니 사진을 마구 찍어댔다. 나중에 보니 그런 사진들이 법정에 유죄 증거라며 제출되어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채종기 남대문 방화사건, 김길태, 강호순 사건은 대낮에 일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현장검증을 하더니, 석궁사건은 증거 조작하느라 현장검증조차도 기자들을 피해 그 밤중에 한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 놓고도 장시간 증거조작 회의를⁴⁹ 하며 필자의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해 놓고는 진술 조사에서 실수하기를 노렸고 현장검증도 조작된 사진을 남기려고 비공개로 하면서 난리를 친 것이 분명했다.

새벽에 시작한 첫 경찰 조사가 아침 9시 정도에 끝났기에, 기자회견 약속을 지키라고 했더니 피의자에게 기자 회견을 허용한 예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당시 옆 유치장에 골프채 사기로 구속된 사람이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기자들에게 가자고 하길래 싫다고 했단다⁵⁰. 그랬더니 경찰들이 ‘곱게 나가서 기자들한테 사진을 찍힐래? 강제로 끌려 나갈래?’하기에 하는 수 없이 옷을 꼭 뒤집어 쓰고 나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하기 싫다는 피의자에게는 협박, 공갈, 거짓말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필자에게는 안된다고.//

② 필자의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com/henrythegreatgod>⁵¹의 효과

기자회견을 시켜준다는 말에 심야조사 동의서를 써주었는데도, 이들은 필자를 어린이 성추행범 조사실에 붙잡아 놓고는 마냥 기다리게 한다. 그 때 같이 있던 형사에게 ‘지금 밖의 상황이 어떠냐? 김명호 죽일 놈이라고 난리 나지 않았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놀랍게도 75%이상이 교수님 입장을 옹호하고 사법부를 비난한다. 정말 나는 깜짝 놀랐다. 교수님이 만든 웹 페이지가 여기저기 링크되면서 성대 입시 출제 오류, 박홍우의 재판 진행상황 진실이 알려져서 그런 것 같다’고.

⁴⁹ 다음날(2007.16) 아침 검찰총장 정상명이 서울동부 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형사과장 이희성이 ‘전직 교수 현직 부장판사 석궁테러’ 제목의 기사를 필자에게 슬쩍 보여주었는데, 철저한 수사 즉 증거조작하라는 동부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이희성은 그 준비작업을 위한 회의를 장시간 하였음이 틀림없다.

⁵⁰ 참조: ‘세관원 사칭 가짜 명품 골프채 판매’, YTN, 2007.1.23일자

⁵¹ <http://seokgung.org/>로 변경

③ 박홍우 생소를 보도하며 증거조작에 가담한 언론들

석궁 사건 1심 7차 공판에서(2008.8.28일) “앰블런스 타고 온 아저씨가 치료하라고 해서 그래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서울의료원’에 도착 시, 간호사가 진통제 맞아야 겠다고 해서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주사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듯이, 박홍우는 멀쩡했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18일 임종인 국회의원이 특별 면회를 와서 필자가 사건에 대한 당시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임의원이 박홍우가 석궁을 잡고 싱갱이한 후 아파트에 올라가 옷을 갈아 입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놀라는 표정으로 ‘별로 다치지 않았네’ 하여 필자도 놀랐다. 나중에 알고보니 박홍우가 들것에 실려가는 생소를 벌였던 거다. 그러고 보니 119 구조대 경찰차로 호송될 때, 서울의료원으로 가는 앰블런스를 지나쳐 가면서 박홍우가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는데...

더욱이,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금 전 박부장 판사가 있는 서울 의료원을 위문 방문하였다’(KBS, 황진우 기자 2007.1.15일)고 보도하였다면 박홍우가 서울의료원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도 취재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멀쩡하던 박홍우가 갑자기 누워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하였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박홍우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교활한 대법원의 장단에 언론이 적극 동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차 대전 때 나치 선전 장관 괴벨스는 이런 말을 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당시의 나찌 선전 언론이나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이나 똑 같은 꼭두각시이고 법정과 사회라는 장소만 다를 뿐, 실제적 진실 규명에 관심없기는 판사들이나 기자들이나 똑 같다. 그 판사들에 그 기자들이인 것이다.

(1) 조작 은폐 작업의 포석: 기소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상해’로 변경

사건 당일 수사가 시작 되기도 전에 필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몰고 가던 검찰이 ‘상해’로 변경하자 그 검은 속셈을 모르는 지인들은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눈치였지만 공소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같은 법원 1심 재판계
속 중에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991 3. 1. 성균관대학교 이과
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95. 4.경 및 1995. 10.경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1996. 2.경 조교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
되자 재임용거부결정의 이유가 1995. 1.경 위 성균관대학교 수학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에 자신을 부교수
로 승진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23. 패소확정된 뒤
해외로 출국하여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거주하다 2005. 3.경 귀국하여 다
사 200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교수지위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5. 9. 21. 패소한 뒤 2005. 10.-18. 항소하고,
2006. 3. 3.부터 위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인
피해자 박홍우(남, 54세)의 재판진행이 피고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이유로 재판진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진쟁을 제기하고, 위 법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2006. 11. 10.경 현금

살인미수 혐의 공소장 1

400,000원을 지급하고 석궁과 화살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1주일에 1회 정도 수십발의 석궁화살을 쏘아보고, 2006. 12. 22. 위 항소심 재판이 변론종결되자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 위하여 2006. 12. 28.경부터 2007. 1.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의1 소재 잠실우성아파트 부근을 (7회) 정도 찾아가 피해자의 집 위치와 피해자가 귀가하는 시각을 확인하는 등 범행현장을 사전에 답사하고 그 와중에 2007. 1. 8.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생선요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요리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칼 1채를 81,000원에 구입하여 석궁가방에 넣어 보관하던 중, 2007.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패소하게 되자 이에 상고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결국 자신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위 항소심 판결은 자신에게 살인판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위 판결을 선고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석궁 및 석궁화살 등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1. 2007. 1. 15. 18: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2동 현관의 승강기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궁에 화살 1발을 장전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살인미수 혐의 공소장 2

를 발견하고 이름을 불러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 서는 피해자에게 “항
소각 이유가 뭐냐”는 등 재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며 피해자
에게 다가가 석궁에 장전된 화살 1발을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살 부위 등을 잡아 그 곳 현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
게 약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오
른쪽 팔꿈치의 열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 등 상해를 가하고,

2. 2006. 11. 3. 서울동작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석궁 소지
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석궁을 소지하게 되었고,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는 그 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석궁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석궁을 허가받은 용도외로 사용한 것이다.

살인미수 혐의 공소장 3

살인미수의 경우, 1심은 서울동부지법 합의부, 2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는 반면에,

상해의 경우 1심은 서울동부지법 단독부에서 2심은 서울동부지법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이것이 검찰이 죄명만 바꾼 이유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하는 경우, 석궁사건의 증거조작이 기자들에⁵² 의하여 국민들에게 까발려질 것을 두려워한 검찰의 잔머리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검찰의 속셈을 파악한 필자와 민교협은 2007.2.27일 성명서를⁵³ 발표하였고, 우리의 예측은 입증되었다.

<조작 은폐 포석의 성공적인 결과>

2007.8.28일 1심 7차 공판에 박홍우가 현직 고법부장판사로서 사법역사상 최초로 출석, 거짓 증언하였다. 그런데도, 이 역사적인 현장에 기자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박홍우의 법정 출두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법원과 언론의 뒷 담합이 있었을 거라는 거다. 만약에 그 공판이 후미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면, 상주하는 기자들이 지나가다가도 들렀을 것이고 박홍우의 거짓말이 일찍 알려졌을 것이다⁵⁴//

<상해죄의 형량 비교: 법 앞의 평등([헌법] 제11조)을 위반한 법원>

필자가 의정부 교도소에서 만난 수용자 이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는데, 죄명이 ‘살인미수’였다.

2007년 12월 31일 오후 7시, 2007년 결산과 새해소망 ‘인권의 눈으로 본 2007년’ CBS 시사자키에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형량과 필자 형량을 비교 분석한 바와 같이,

	김승연 사건 ⁵⁵	석궁사건
사건 시기	밤 11 시 이후	오후 6시 30분경
전과	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	없음

⁵²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건물안에 있고 기자실에는 20여명의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기자들이 대법원의 보도 자체 요청을 받고 눈치를 보기는 하여도 완전히 통제될 수는 없다. 가뒀 놓은 물의 독이 자그마한 구멍으로부터 무너지듯이, 주수도의 제이유 사건도 거의 모든 언론을 막았으나 인터넷 신문 하나를 막지 못해 터지게 되었다고 한다. 허니 검찰로서는 그러한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터.

⁵³ <http://www.professornet.org/webbs/view.php?board=professor-10&id=626&page=18>(민주주의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홈페이지)

⁵⁴ 혹시 그래도 석궁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기사가 나온 것은 언론 덕분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몰라 덧붙인다. 석궁사건의 증거조작이 이렇게 까지 알려진 3가지 요건은 1. 필자의 웹 페이지 2. 증거조작 공판의 생생한 속기와 녹취, 3. 연합뉴스의 장재은 기자의 연속 보도다.

⁵⁵ ‘술집 종업원들, 김회장 본 후 폭행한 사람 맞다’, 조선일보 2007.4.30일자(주: 흥미로운 것은 권총이 언급된 이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다), ‘김승연 회장 영장신청, 흥기 폭행감금 등 6가지 혐의’, 조선일보 2007년 5월 10일

경찰수사	축소 은폐(총,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	증거 조작 확대(석공)
상해 정도 및 증거	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	전치 3주(자해 상처 거즈로 덮은 사진)
가담자	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	단독
적용법조	[폭처법] ⁵⁶ 집단 흥기 상해, 집단 흥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흥기 상해
검찰 구형	2년	10년
최종 형량	집행유예	4년 징역

구형 10년에 징역 4년은 대법원의 사적인 테러 그 자체였다. 초범으로서 전치 3주 상해죄로 이러한 터무니 없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사법역사상 결단코 없었다.

다음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7고합66(2007형제15456), 이xx(83312-10**) 장 xx(891116-116**)의 공소내용 일부다.

‘피고인 이xx은 2005.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장xx은 2007.2.7 같은 법원에서 폭처법(공동 상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10. 12 같은 죄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감정적 보복테러의 측면으로 보아도 대법원과 그 줄개 판사들이 필자에게 가한 사적인 테러는 김승연이 술집 종업원에게 보복 폭행한 것과 그 격이 다르게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범죄인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석공사건은 국민적인 감시와 견제가 없는 경우, 법을 집행한다는 기관들의 방자함에는 한계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이다.//

II. 대법원 주도의 증거 조작 및 은폐 강행 재판테러

1. 증거조작 침병, 김용호 1심 재판테러 일지

- (1) 증거조작을 은폐하겠다는 내가 왜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였지? 실수했네.

석공 사건의 증거조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요인은 다음 3가지다, 첫째, 필자가 만든

⁵⁶ [폭력행위 등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약자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⁵⁷, 둘째,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의 지속적인 보도 그리고 셋째, 항소심의 신태길과 달리⁵⁸, ‘변론의 속기 및 녹음 신청’을 받아들인 김용호의 오만함이다.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판사들의 그 오만함 덕분에 증거조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박홍우도 [민사소송법] 제159조를 위반하며 거부했던 변론의 속기 및 녹음 신청을 김용호는 덜컥 받아들인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한다는 무의식의 발로: ‘법전에 따라 판결하겠느냐?’에 대한 ‘대답하지 않겠다’>

2007.3.5일 첫 공판을 시작하자마자, 휴대하고 간 소법전을 들고 필자는 ‘법전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상해행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해 줄 것을 약속 내지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당황한 김용호는 얼떨결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며 고개를 돌렸다. 약 5-7초간 고개를 돌렸던 김용호 스스로도 잘못 대답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간신히 뱉었다.

이 질문은 필자가 이혁우 박홍우, 이훈훈 등과 2년 간의 소송과 면담을 통해 판사라는 인간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쿡 찢어본 것이었는데, 사람이란 급할 때 또는 당황할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니, 법 무시하고 멋대로 재판해 오던 김용호는 반사적으로 ‘대답하지 않겠다’고 반응한 것이다.

김용호는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2007.1.19일 전국법원장 회의 결의 대로, 유죄선고의 위법수순을 밟을 생각만으로 꽉찬 인간이었다. 그래도 첫 공판이라 허세 부리느라 이 정도였고 결국은 필자의 예상대로 유죄추정의 원칙 하에 형식적 유죄선고절차를 밟는 본색을 드러낸다.//

(2) 불구속 재판? 증거조작을 다 폭로시키려고? 법? 우리 그런거 몰라. 그냥 우리 판사들은 끌리는 대로 결정한다.

① 닭 대가리 수준의 논리에 의한 구속취소 신청 기각

[헌법] 제27조 제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 1항⁵⁹

⁵⁷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2009년 없어진 웹페이지 제공사로 인하여 웹페이지가 소멸되었으나 현재 <http://www.seokgung.org>로 회복되었다.

⁵⁸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고 협박한 신태길(<http://www.seokgung.org/seokgung/2hearing5.htm> 참조)

⁵⁹ 필자의 석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법조항은 2007.6.1일자로 걸레가 되었다. 판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 2항에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라고 명시 되었듯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판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 1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완전 묵살하고 **피의자 구속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피의자도 마구 구속하는 마당에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검사들이 이 모양이니 한심한 국민들도 범죄만 발생하면 일단 구속하라고 떠들어 댄다.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법원에서는 피의자/피고인 구속 사례가 줄었다고 통계자료를 내놓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 동안 묻지마식으로 구속영장을 남발해 온 인간들의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짓거리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불구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91조를 위반하며 판사도 아닌 검찰이 위법하게 접견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은 행사할 수 조차 없다. (석공사건을 보라, 일방적인 검경의 조작된 보도만이 있었을 뿐, 구속된 필자의 입은 철저히 봉해졌었다.) 법원, 검찰과 대등하게 피의자 편에 설 수 있는 수준의 유명 변호사는 일반인이 선임할 꿈도 못 꾀다. 일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구속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없다.** 나중에 가중처벌하는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 재판하여야 한다. //

필자에 해당되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구속사유가 없기에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첨가 됨으로써, 걸레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95조의 ‘필요적 보석’과 마찬가지로, 이 법조항은 판사의 개인판단과 관계없이 객관적 이유의 구속 사유들이 규정되었었는데, 판사의 사건이 개입되도록 허용한 이 조항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인 것이다.**

취소하여야 한다’.
에 따라, 2007.2.15일 구속취소를 신청하였더니

구속 취소 신청

사건: 2007 형제 3995 폭력행위등 상해 (서울 동부지법 형사 6 단독)
 피고: 김명호

위 사건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취소 신청합니다.

다 음

피고인에 대한 구속명장 사유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중한 처벌이 예상, 도주 위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검찰 공소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재 비오에서 살수 있듯이,

조주태 동부지법 부장검사	검찰 공소장(조주태검사)
“경찰은 김씨가 박부장 판사를 조준해 석공을 쏘았다고 했지만, 박부장 판사 조차 어떻게 석공이 맞았는지 기억이 안나고 진술했다” (한국일보, 2007. 2.9일자 기사, ‘경찰 살인미수 짜맞추기 논란’)	“피해자(박부장 판사)에게 다가가 석공이 장전된 화살 1발을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2007. 2.8일자 2007 형제 3995호 공소장)

구속취소신청 1

공소 제기한 조주태 검사는 말뚝이 맞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 조동수사가 부실하였고 그에 기초한 검찰 조사 및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93조제 1항에 의하면,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검찰의 지휘하에 청구된 경찰 구속명장 사유는 조작된 짜 맞추기 수사의 일환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위 피고인 김영호

2007. 2. 15 A h K

첨부 자료

1. 경찰 '살인미수 짜 맞추기' 논란, 한겨레 2007. 2. 9

구속취소신청 2

김영호는 구속사유가 소멸되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없이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라고 뚝뚝한 소리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중형이 예상되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 며 기각하였다(첨부자료 7).

(첨부자료:

구속취소 신청 기각결정문 -----342)

<3심제는 법원의 홍보일 뿐이다>

이 구속취소 신청 사건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김용호가 열토당토 않은 이유로 기각하고 그 기각사유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당하자 상급심은 김용호의 판단에 대하여 시비는 가리지 않고 또 다른 이유를 들고 나온다. 결국 이 나라의 3심제라는 것은 재판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홍보용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1심 2심에서 엉터리로 기각하고 최종심에서 그래도 봐줄 만한 논리로 기각하면 그에 대한 반박논리를 더 이상 전개할 여지가 없다. 단심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형이 예상되면 모두가 도망갈 거라는 발상은 뭔가? 법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법은 결과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 뿐, 우려 또는 심증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⁶⁰.

이건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중형 아닌가? 그런데 왜 구속하지 않았는가? 이건희는 도망 안 가고 필자는 도망간다는 말인가? 2005년도 국정감사 기간에 건강을 핑계로 이건희가 미국에 나가있었던게 도망 아니었던가?⁶¹ 그런 전력이 있는 인간이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구속은 안 해?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며 대법원은 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 투의 법 정서>

2008년 4 - 7월 사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삼성 이건희의 비자금 사건으로 사회가 시끄러웠는데, 거기서 만난 이부영, 유훈근씨⁶² 등이 왜 이건희를 구속 않느냐고 흥분하는데 필자는 어이가 없었다.

⁶⁰ 영화 ‘Minority Report’(Tom Cruz 주연) 참조

⁶¹ ‘노회찬 이견희 해외체포조 검토’, 연합뉴스 2005.9.23

⁶²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못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범죄자라고 언론에서 떠들기만 하면 그냥 게거품 물며 쳐 죽여야 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처럼, 배웠다는 인간들이 제대로 된 기강하나 세우지 못하고 허둥대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는 권력 가진 놈들이 국민들 선동하기가 쉬운거다.

오히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법의 원칙인데, 왜 나는 법대로 불구속 수사, 재판하지 아니하고 이견희만 법대로 하나? 왜,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나?’고 판검사들에게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이 구속되었다고 남들도 구속되어야 하는가?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이견희를 구속하라고 하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불법을 권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판검사에게 법위에 군림하라고 권장하는 멍청한 짓인 것이다.//

② 연역적 논리 전개 하나 못하는 판사들

보석 신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의한 ‘임의적 보석’이다.

<p>[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p>[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p>
--	---

<p>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	--

‘필요적’, ‘임의적’이라는 자체 뜻에서 명백하듯이, ‘필요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사의 개인적 판단과 관계없는 것이고** ‘임의적’은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 필자가 필요적 보석의 95조에 따라, 보석청구를 하였더니, 이들은 95조 제 1호의 ‘10년 넘는 죄를 범했다’며 기각을 하였다⁶³.

⁶³ 2007.3.23일 2007초보74 사건을 시작으로 항소심까지 10여 차례의 보석신청이 김용호, 신태길에 의하여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7초보202 보석
 {2007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 고 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1316 1223
 주거
 본적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보석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아래 1 호의 사유에 의한다.



1.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상습범인 죄를 범하였다.
4.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였다.
5.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6.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7. 피고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등본입니다
 2007. 8. 3.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 김진석

1-1-10
 49

보석기각 결정문 1

필자의 확정형량이 4년, 구형도 10년인데 어떻게 10년이 넘는다는 건지. 김용호가 10년이 넘는다 길래, 상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떤 근거로 10년 넘느냐며 항고하였더니 김용호의 후원자, 윤남근과 이승규, 남세진이 ‘항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형법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다시 제한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라는 얼간이들의 합창으로 기각.

무법인 창조는 2007. 3. 23. 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법원에 보석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2007. 3. 30. 항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보석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바,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인 형법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항고인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는 3년 이상 7년 이하라 할 것이어서, 항고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항고인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항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형법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다시 제한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항고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의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달리 항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10
42

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열간이들의 기각 결정문

이 논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상해죄는⁶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10년 이상의 범죄를 범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 나. [폭처법] 상해죄가 3년 이상이므로 윤남근의 말대로 [폭처법]이 [형법]에 제한 받지 않는다면, 징역 10000년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인가?
- 다. 더욱이, [폭처법]이 특별법이므로 [형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3년 이상이라는 것은 맞지만, [형법]이 완전히 묵살되는 것은 아니다. [폭처법]에 그 형량 상한선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형법] 제257조⁶⁵ 상해죄의 7년의 상한은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형법] 조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는 [폭처법] 제 2조 제 4항에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다. 윤남근의 말대로 [폭처법]이 [형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 단서조항을 무엇 때문에 삽입했겠는가?**
- 라. 윤남근의 엉터리 논리를 지적비판하는 재항고를 대법원에 했더니, 그 결과는 여전히 기각인데, **대법원의⁶⁶ 말이 슬그머니 바뀌었다.** [형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윤남근의 논리를 바꿔 [형법]에 제한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42조의 상한선 15년을 끌어들이 3년 이상 15년 이하니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웠다

⁶⁴ [폭처법]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6.3.24>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0.12.31, 2006.3.24>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⁶⁵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⁶⁶ 석공사건의 대법원 담당 주심, 이홍훈이 2007모314 보석사건에서도 주심이라는 사실을 주목. 이홍훈이 2006년도 피켓 구호에 앙심 품고 필자에게 보복하려고 이미 작정한 듯 싶다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등본입니다.

2007. 5. 23.

법원사무관 송 환



사 건 2007도314 보석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 고 인 김명호 (570217-1066932), 무직(전 성균관대 교수)
 주거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본적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5-23
 재 항 고 인 피고인
 원 심 결 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4. 25.자 2007로15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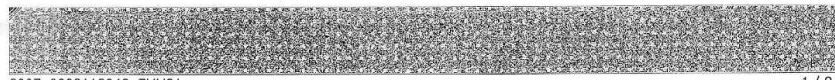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다만, 유기징역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법정형의 범위는 3년 이상 15년(다만, 유기징역형을 가중하는 때



2007-0002118042-7HU91

1 / 2

이흥훈의 보석기각 결정문 1



에는 25년) 이하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의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2.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

2007-0002118042-7HU91

2 / 2

이홍훈의 보석기각 결정문 2

<말로만 3심제, 실상은 단심제 또는 무심제>

결국 구속취소 신청의 경우와 똑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1심, 2심에서 엉망인 논리가 난무하는데도 대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자체 비판이 없다.

애초부터 대법원의 논리가 1심에서 나와야만 그에 대한 반박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데, 막판에 나오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다.

대법원의 1,2심 논리에 대한 비판이 없으니 하급심은 계속적인 엉망논리로

기각하고 대법원에서 마무리 기각. 이게 3심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냥 단심제지.//

<법원의 횡설수설 논리에 대한 비판>

이흥훈의 논리에 의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에 해당되는 징역은 모두 10년 넘는 징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받은 4년 징역도 10년 넘는 징역에 해당된다는 얘긴데, 이게 모순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모순 투성이의 어거지가 통하는 곳은 OECD 국가들 중 한국 법원 밖에 없을 거다. [형법] 제257조(상해)의 유기징역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7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즉 징역 1개월 ≤ 상해 ≤ 징역 7년 이며, 상해죄 중 특별한⁶⁷ [폭처법] 상해죄는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하여 처벌의 최저 수준을 상향 조정, 3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3년 ≤ [폭처법] 상해 ≤ 7년 ! 이런 중학수학의 집합론 논리 전개도 못하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재판을 하고 있으니..

68

멍청한 판사들의 형편없는 논리 때문에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떠도는 거다. 필자가 아는 한, 선진국에서 베껴온 법조문들은 대단히 정확하여 대부분의 경우 답이 하나 밖에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의 판사들이 그 좋은 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 판사들은 2+3x5를 계산할 때, 지들 기분내키는 대로 또는 돈 처먹은 대로⁶⁹ 덧셈을 먼저 하기도 하고 곱셈을 먼저 하기도 하여 17이라고 했다가 25라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법이 아니라 이렇게 법리도 모르는 멍청한 판사가 어딴냐?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을.

2007.6.12일 경 김용호, 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김영란, 김항식, 이흥훈, 안대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서울중앙지검 2007형제65871)했는데 당연히 묻지마 불기소 각하되었다.//

⁶⁷ 정삼각형도 삼각형이다. 다만 삼각형 중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뿐, 정삼각형도 삼각형의 일종이듯이, [폭처법] 상 상해죄도 상해죄의 일종이다. 정삼각형은 세 변이 같다는 조건이 추가된 삼각형이듯이, [폭처법] 상 상해죄는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추가된 상해죄라는 것이다.

⁶⁸ ‘어느 분야에서든지 수학이 빠지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모든 학문에는 수학적 논리가 기본이다. 그 수학 논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집합론인데, 선천성 법률 기형아들에게 이 집합론 개념이 있을리가 없는 것이다.

⁶⁹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판사의 재량이니 직권이니 그럴싸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다.

<묻지마 불기소 처리반>

보석과 증거보전청구 관련 고소건(2007형제70232) 그리고 박홍우에 대한 무고건(2007형제80197)에 대하여 진술하러 7.2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였는데,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검찰이 기소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을 전담하는 검사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 폭탄처리반이라고나 할까?

그 당시에 담당자가 그 자리에 걸맞게 얼굴도 고민깨나 하게 생기고 이름 또한 고민석(420호실)이었다. 이용훈 명예훼손건은⁷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하여 은근히 부아가 나 있었는데, 수사관 김대욱이 고소사실을 축소하려고 깐죽거리는 질문을 해대며 필자의 신경을 긁어댄다.

‘석궁사건 증거조작하여 승진한 조주태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는데 모르냐?’, ‘법무시하는 판사 인간쓰레기 새끼들을 기소도 하지 않는 검사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라고 해 댔더니, 옆에서 다른 사건의 대질신문 조서 꾸미고 있던 멍청한 수사관이 주제넘게 ‘욕하지 마라’고 참견.

‘니 할 일이나 해라’

‘옆에 (고민석)검사님이 있는데 웬 욕이냐?’

‘검사가 욕 들으라고 하는 거다. 당신 일도 아닌데 찌그러져 있어라’

등등. 김대욱과의 진술이 끝난 후, 킁 소리 하지 않고 그 소란을 듣고만 있었던 고민석이 묻는다.

‘석궁 쏘지 않았냐?’

‘안 쏘다’

‘박홍우의 무고죄는 쉽지 않다’

‘그럼 직권 남용죄는 되냐?’

‘...(묵묵답답)’

‘내가 쓴 고소장의 법리에 따른 논리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라. 지적당하면 내가 무고죄가 되니 나를 무고로 기소해라.’

‘...(묵묵답답)’

‘검찰에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지 마라’

‘사건접수 후, 이용훈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6개월 지났는데도 기소여부 결정 안했는데, 검찰 사무 규칙 위반 한거 아니냐?’

‘...(묵묵답답)’

고민석은 ‘그렇다’라고 답해야 할 곳에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지 킁소리도 안하고 묵묵답답으로 일관했다.

⁷⁰ 2007.1.15일 석궁시위 당일 오전에 주진우 검사에게 진술했던 사건으로 ‘검찰의 조서를 내 던지라’는 등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이용훈을 고발한 사건(서울중앙지검 2006형제135005)이다.

<선진국 법률전문가 vs 한국 법률전문가: 과학적 입증 및 사고력 부재차이>

(가) 논리적, 연역적 사고의 중요성

살아 가면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는가? 그 논리적 사고, 연역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는 수학만큼 확실한 학문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수학이란 쓸모없이 골치만 아픈 것이라는 통념이 퍼져있다. 당장 눈앞의 빠른 효과만 바라는 위정자들과 그에 빌붙는 학자들 탓이다.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랭킹 100’에서 마이클 하트가 지적하였듯이, 서양이 과학에서 동양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조그마한 기본적인 원칙으로부터 여러가지를 연역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 중 가장 큰 공헌한 사람이 ‘기하학 원론’의 저자인 유클리드다.

중국인도 실용 기하학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이 있었으나 연역적 구성으로 변환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클리드의 영향으로 유럽인은 아주 조그마한 기본적 원칙이 있으면 그로부터 여러가지를 연역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경쟁을 수천년 간 해온 것이다. 그 결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하였고⁷¹, 천체 행성들의 관측이 케플러 법칙, 뉴턴 역학을 거쳐 양자역학으로 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나) 법 선진국 법률가들의 집안 환경

지금도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폰이 1800년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James Clerk Maxwell)이 순전히 수학적 논리로 예언한 전자기파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아는가? 그 맥스웰은 변호사의 아들이었고, 유명한 수학자 페르마는 변호사였다. 대법관을 지냈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경험적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법의 정신’의 몽테스키외는 실증적 방법론을 중시하였다. 한때 법률을 공부하였던 볼테르는 ‘뉴턴 철학의 원리’를, 법률가 아들로 태어난 존 로크는 자연과학 방법론에 근거한 ‘인간 오성론’을 집필하였고, 법학박사인 과학 철학자 데카르트는 어느 분야에서든 수학이 빠지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여겼다. 이와 같이 법 선진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법률을 공부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판사들은 논리적 사고의 훈련없이 고시원 골방에 처박혀

⁷¹ 유클리드는 기하학 원론에서 기하학에 대한 5개의 공리를(*공리는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정립하였는데, 후대 사람들은 5번째 공리를 앞의 4개의 공리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믿고 2천년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실패하고 그 5번째 공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모순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단이 되었다.

법조문만을 달달 외워 사법고시를 합격하였으니 비정상적인 법률가로 탄생된 것이다. 자신의 논리에 이상이 있는지를 인식 못하는 논리 장애인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한국과 선진국의 법 집행에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법 자체는 좋은데 그 법을 운용하는 판사들의 자질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연역적 사고의 훈련 없이 조문만 외었으니 당연히 응용문제인 실제 사건을 대하면 논리적 판단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얼토당토한 ‘화광동진’과 같은 사자성어나 인용하고 판결 이유에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된다’는 비논리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고 급기야는 선진국에서 베껴온 그 좋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자신들 수준에 맞추려고 그런지 뭔지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여 걸레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하여 뒤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논한다)//

<대법관들의 논리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대법관 이인복, ‘부정확해도 근접하면 객관식 정답 인정’”(연합뉴스, 2011.8.5) 기사에 대하여 절묘하게 비유한 ahyieon님의 댓글.

1 더하기 1은 몇인가? 물으면, 사과 배 몰라 2~3개? 바보 이런 객관식에선 부정확해도 번이 답이란 거야?

게임에서는 심판이 오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순간적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심도 게임의 일부라고 본다. 하지만 심판의 자질이 형편없어 오심이 자주 나오거나 심판이 의도적으로 오심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질과 흥미를 떨어뜨려 관중이 외면하기에, 요즘은 미식축구, 야구, 축구 게임 등에서는 리플레이 제도를 도입하고 명백하게 오판한 심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판결은 게임에서와 같은 순발력이 필요한 판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 등 명백한 재판테러를 수없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단 한번도 그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있으나 마나한 합의부>

재판장이 좌우 배석 판사들에 대한 승진 심사 및 인사고과 권한이었고⁷², 공사 구별도 못하는 위계질서 정서가 공고한 한국의 풍토에서 합의부는 아무 쓸모없는 제도이다.

재판정에서 재판장 옆에 있는 판사가 질문하거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을 거다. 재판장은 소송 지휘만 하고 옆에 있는 좌배석 또는 우배석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데도, 질문은 하지 않고 그저 재판장이 하는 양을 지켜본다.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는 나머지 판사는 심지어 재판 내내 졸기도 한다. 결국 합의부란 재판장이 좌우 배석 판사들 데리고 재판테러의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다.//

<교수사회의 수준을 알수 있는 일화>

필자가 성대에 재직할 때, 교수회의는 어떤 안건이든 일단 최고 연장자가 말을 시작하는 ‘형님 먼저’ 분위기이었다. 그가 한마디 하면, 다음 사람은 그 말에 찬성하거나 만약 반대하는 경우에는 묵묵담담으로 그 말을 묵인한다. 그래서 교수회의는 항상 만장일치이고⁷³ 생산적인 의견 교환이란 것은 전혀 없다. 나이 많이 먹은 게 ‘왕’이다.

교수 채용같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도 나이든 교수가 중심이 되어 그들은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뽑을 생각만 하고 있다. 후보자의 연구실적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수나 세고 있다⁷⁴.

학자에게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학문을 미칠 정도로 좋아하느냐다⁷⁵. 논문 수나 세고 있는 교수들은 학문에 미친 인간이 아니라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 인간들인 것이다.

예전에 지방 대학에서 수학 교수 간에 다툼이 벌어졌었다. ‘3 이상’이면 3이 포함되느냐 않느냐라는 건데, 젊은 교수는 포함된다고 했고 나이 먹은 교수가 아니라고 우겨대서 결국 그 학교 이사장한테 판단을 받게 되었다. 설명을 들은 이사장이, ‘거~ 학설 차이구면’이라는 명판결(?)을 내려 두 교수들을 모두 만족시켰다.

⁷² 필자의 재임용 판결문 쓴 이정렬이 한 말, ‘나도 2월에 법관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있다’(‘김보협의도전 인터뷰, 한겨레 21, 645호, 2007.1.30). 박홍우가 이정렬의 목줄을 틀어 쥐고 있는데, 이정렬이 박홍우의 뜻을 감히 거스를 수 있었을까?

⁷³ 판결문에서 항상 보는 표현,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이렇게 탄생한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의 경우에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하는 것이겠지만,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마련된 형식에서 대법관의 이름들만 바꾸는 것.

⁷⁴ 수학의 경우는 같은 분야라하더라도 논문을 이해하기 어렵고 한국같이 저변이 얇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여 판단기준이 그 논문이 이름있는 잡지에 게재되었는가로 평가한다.

⁷⁵ TV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대사에도 나왔지만, 재능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고, 노력하는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노력도 않고, 재미있어 하지도, 재능도 없는 아무만 하는 인간들이 제일 잘 나간다. 정말 웃기는 사회다!

누가 지어낸 개그가 아니다. 필자가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 유학시절에 바로 그 학교에 사표를 던지고 유학은 교수에게서 들은 실화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수학 교수들이 수학에 문외한인 이사장에게 의견을 구하러 갔다는 그 발상이다. 학교에서 가장 권력 센 인간이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다투다가 엄마한테 이른다며 쪼르르 달려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다. 권력가진 자의 말을 맹종하는 사회 분위기 말이다. 정치계, 경제계, 학계 등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문제를 비 전문가인 판사에게 판단해 달라고 한다. (*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말, 즉 모든 것은 법원을 통한다?)//

(3) 증거조작의 몸통, 대법원이 드러날라. 박홍우의 통화기록을 인멸하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파트 경비원과 박홍우의 운전수가 박홍우와 필자를 뜯어 말린 후, 박홍우는 옷을 갈아입으러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 5~10분을 머물렀다. 그 시간에 과연 옷만 갈아입었을까?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특히 법조계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했을 것이다. 당시 대법원에는 경북고를 72년도에 졸업한 박홍우 동문으로 배기원 대법관(경북고 59년졸), 박일환 대법관(경북고 69년졸), 동기 차한성(경북고 72년졸)⁷⁶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있었다.

화살이 몸에 박혔다는 박홍우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그 통화 상대방을 알아내 통화 내용을 들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통화기록에 대한 증거신청했더니, 김용호가 기를 쓰고 기각했다.

박홍우는 처음 경찰 조사시 1-2 m 전방에서 쏜 화살에 맞았다고 하였다가 후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살에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⁷⁷.

⁷⁶ 2008년 대법관이 되었다.

⁷⁷ 참조: ‘석궁은 정말 죽음을 겨누었나’(한겨레21, 2007.2.13), ‘전직 교수 김명호, 석궁사건의 진실은’(SBS < 뉴스추적>, 2007.2.14)

(3)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석궁을 발사하여 화살이 피해자의 복부에 맞은 후 피해자가 손으로 화살을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단, 피의자가 어느 위치에서 석궁을 발사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1925

박홍우의 검찰조사 상황 1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사라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에 의하여, 직권으로 박흥우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①

김용호의 '기각병'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김 명 호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사실조회 할 곳

1) 집전화에 대하여

KT송파지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1

2) 핸드폰에 대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 SK T타워

2. 사실조회할 사항

2007. 1. 15 16:30부터 2시간동안 박홍우 부장판사의 핸드폰
(011-9933-1952)과 집 전화(02-425-0054)의 통화기록과 통화내역
(이 사건 수사기록 32쪽 진술조서 참조)

공정
인감 **범무법인 창조**

주사무소 : 성남 시 분당구 서현동 265-6
(대성빌딩 404,405호)
T.(031)701-0900 F.(031)709-1717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T.(02)588-4411 F.(02)588-4415

통화기록 사실조회 신청 1

사건 당일인 2007.1.15일 18:30 부터 2시간 동안의 박홍우 핸드폰과 집전화에 대한 통화 내역에 대하여 필자 대리인 이기욱이 사실 조회하였는데, 김용호가 '통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도 없는데 알아서 뭐하냐?' 며 '기각병'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통화기록을 인멸하였다.

터 정도 거리에서 맞았다.

판 사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변호인 이기욱

예를 들어서 누구와 통화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름대로

판 사

더 나가 봅시다. 더 나가서 대법원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한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거나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에서 1.5미터라고 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이 자꾸 물어보기에 1.5미터라고 그냥 말했다

판 사

그게 통화내역을 조회한다고 나오니까? 통화내용이 안 나오는데. 통화내용을 모르는데 통화내역을 누구랑 통화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그러니까 내용을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판 사

그런 이유면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김용호의 박홍우 통화기록 인멸 1

왜냐하면 김명호 교수에 대해서도 통화내역을 다 조회를 했었습니다.

판 사(검사에게)

CCTV에 대해서는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있는지 없는지 검찰에서 밝혀주시
죠.

검사 백재명

요구하시는 CCTV가 구체적으로 어디 CCTV를 말씀하시는지요.

변호인 이기욱

아파트 현관 CCTV입니다.

검사 백재명

아파트 현관에 CCTV 없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없습니까?

검사 백재명

예, 검찰자료로 CCTV를 가지고 있는 바 없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그러면 현재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어떤 겁니까?

검사 백재명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증거목록 드린 바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CCTV 녹화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검사 백재명

없습니다.

<공판 속기 및 녹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일반인들은 법원 재판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속기 내지 녹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판사가 막말을 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 대법원에서는 판사들에게 윤리 교육을 시킨다는 등 개수작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 판사의 막말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규정된 속기 및 녹음이다. 녹음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막말을 할 배짱있는 판사가 과연 있을까?

필자의 교수지위확인 사건에서 박홍우가 그렇게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속기·녹음을 기각시켰기 때문이고, 석궁 사건이 증거조작이라며 MBC <PD 수첩> 제작진,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가 자신있게 보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필자의 속기 녹음 신청에 의하여, 모든 법정 상황이 보존된 진실기록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사들의 막말과 재판테러를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속기와 녹음의 의무화다, 박홍우 같은 재판테러범들이 자신들의 재판테러 은폐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② 조정현, 은택, 최용호 똥판 트리오의 증거보전 기각

기각병 걸린 김용호으로부터는 박홍우의 통화기록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필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서 통화 기록에 대한 보전 청구를 하게 되었고 초딩 만도 못한 ‘똥판 트리오’와 부딪히게 되었다. 트리오의 기각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제 1회 공판기일 후의 것이므로 이유없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7초기1045 증거보전(관련사건 : 2007고단203)

신 청 인 김명호 1316 10x3

피 고 인 김명호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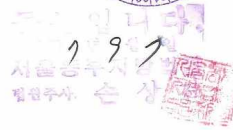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것으로서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7.

판 사 최용호



97

똥판 트리오 조정현, 은택, 최용호의 증거보전 기각사유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 1항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조문에서의 ‘제 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는 제1 회 공판기일 후에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제 1회 공판 기일 전에도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국어 실력만 있어도 이해가 되는 것임에도 ‘최용호, 은택, 조정현’ 3인방은 제 1회 공판기일 후에 했다는 이유로 총 18차례의 증거보전 청구를 돌아가며 기각해 댔다.

이들이 같은 사유로 기각하길래, 법을 전공하는 인간들은 ‘전에만’ 허용된다는 표현을

‘전이라도’라고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였는데,, 알고보니,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제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⁷⁸.

법리고 논리고 없이 1+1=3 이라고 우겨대는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증거보전 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기각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기각사유는, 알기 쉽게 말해서, 담당 재판부가 아닌 별개의 판사가 기각한 것이라서 항고할 수 없다는 말 장난이었다⁷⁹.

첨부자료: 대법원 2007모363⁸⁰ 증거보전청구 기각 결정문 1-----344

대법원 2007모363 증거보전청구 기각 결정문 2-----345

통화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은 압수에 해당되므로 대법원 2007모363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 2항,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는 것이다. 증거보전 청구의 길을 봉쇄한 판례(대법원 1997.6.16 97모1 결정, 1986.7.12 86모25 결정)를 인용하였는데, 86년에 나온 판례로 보아 살벌하던 전두환 시절에 권력의 하수인인 대법원이 증거인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바친 판례가 아닐까 싶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 2항의 ‘압수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말이다.

일단 김지형, 고현철, 전수안, 윤남근, 이승규, 남세진과 은택을 증거보전에 대한 헛소리를 지껄인 죄로 2007.6.25일 경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서울중앙지검 2007형제70232), 어떻게 나오나 싶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이은 헌법소원 했더니, 변호사 선임하라는 보정 명령이 내려졌다.

(첨부자료: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대한 헌법소원 보정명령(2007헌바91)-346)

그러나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말았다⁸¹.

⁷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⁷⁹ 판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그것은 법원을 대표해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니라면, 그 사안에 대하여 모든 판사들에게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⁸⁰ 항고는 보석청구 항고를 기각한 윤남근과 그 풀마니들이 맡아 처리했고. 윤남근과 대법원은 ‘형식논리’라는 부르는 위법 말장난의 대법원 판례(1997.6.16 97모1 결정, 1986.7.12 86모25 결정)을 인용했다..

⁸¹ [헌법재판소법] 제 25조 제 3항,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분을 내팽개친 비겁한 변호사들>

당시 필자의 변호인인 이기욱, 박찬종, 최병모들은 증거 보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리를 거절하였다. 이들은 소위 인권 변호사들이다.

석궁 사건 직후에도, 가족 친지들과 임종인 의원 등이 변호사 백승헌⁸², 진효근⁸³ 등 여러 명을 접촉하였는데 다들 도망갔다. 표면적인 이유야 바쁘다는 것이었는데, 속내야 대법원에게 밉보이기 싫은 것이다. 2006년도 이용훈도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변호사를 해 봐서 안다. 그걸 믿고 재판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였듯이, 제대로 된 변호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

결국, ‘초딩 수준만도 못한 판사들의 위법행위 고발’라는 제목의 서명서를 국민들로부터 받아 놓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삽입자료: ‘초딩 수준만도 못한 판사들의 위법행위 고발’ 서명지)

<대국민 우롱 사기 법률용어, ‘형식논리’>

흔히 ‘형식논리’ 하는데, 법의 문외한이 들으면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그냥 정면으로 법 위반할 때, 법원 판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헛갈리도록 이것저것 문자 갖다 붙이고 아무 생각없이 갈겨쓰는 사기위법 결정문에 대하여, 법 전문가라는 변호사니 법대교수라는 것들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두리몽실 넘어가기 위해 쓰는 표현이다. 한마디로 대국민 우롱 사기위법용어!

형식논리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앞서도 수차례 언급한 $2+3 \times 5 = ?$ 를 계산함에 있어서 곱셈을 우선하여야 하는 기본 대원칙을 묵살하고 덧셈부터 하듯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결론부터 내린 다음 판결문 작성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실제적 진실규명을 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법리를 생각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누구를 이기게 할까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에 맞는 법리를 생각하다 보니 형식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도 헌법소원의 본질인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나 이를 제쳐놓고 기각 내지 각하부터 결정해놓고 결정문을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 같은 형식논리를 들먹이는 것이다.//

<이우영과 채영도는 왜? 사기채점기준을 만들었는가?>

필자가 95년도 성대 입시 수학본고사 문제의 출제오류를 지적했을 때에도, 출제위원 이우영은 실수를 인정하기 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오류지적을 당한 그 다음 날에 필자에게 수정모범답안이라며 내밀었는데, 그 문제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⁸² 당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변호사(민변)’ 모임의 회장

⁸³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

용어들이 있었다. 판사, 헌법재판관들이 형식논리를 사용할 때와 다름없는 마음을 품고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어련히들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오해하도록 수학의 ‘형식 논리’로 ‘사기채점기준⁸⁴⁾’을 마련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 그 실수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기채점기준’까지 만드느냐? 문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대답인즉,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고 동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한 솔밥을 먹는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 폐기차원의 전원 만점 또는 영점은, 수학을 전혀 모르는 교육부 관리라 하더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 새로운 기준으로 부분점수를 주게 되면 눈치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기꾼들이 현재 이 땅에서 교수질을 하고 있다. 이런 교수가 극히 일부라고? 아니다. 채영도 교수는 대한수학회 회장에 두 번 출마해서 낙선되었지만 상당한 득표를 기록했었고 이우영은 계승혁이 서울대로 영입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붙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주목할 사실은 2007년 6월 1일자로 구속취소 관련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추가되었듯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도,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라는 불필요한 군더더기 조항이 추가되었다⁸⁵⁾는 것.(2008.1.1일 시행)

필자가 청구한 증거보전 청구의 재항고 사건(대법원 2007모363)에 대한 기각 결정은 6.15일에 이루어졌다. 구속사유 관련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와 같이, 필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대법원 86모25 판례에 문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대신에 불필요한 법 개정으로 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하는 짓이 똑 같다. 77다300에 대한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한 대법원의 범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하면 될 것을, 2003년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판사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범죄를 은폐하려고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며 ‘판사는 항상 완전무결하게 옳다’는 사기를 치며

⁸⁴⁾ 벡터의 수직을 증명하라는 이 문제에는 모범답안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수학을 모르는 사람에게 ‘수정모범답안’이라고 하였더니, 답안이 존재한다고 오해하기에 ‘사기채점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당시 경북대 이상하 교수는 이 사기채점기준에 대하여 ‘당시 출제위원 이우영과 채영도 교수가 진학지에 발표한 모범답안은 후세에 남아 길이길이 욕을 먹어야 할 가증스런 작품이다.’라고 규정했다. (‘성균관 대학교 입시부정의 희생자, 김명호 사건’, 현장에서 미래를 제 116호)

⁸⁵⁾ 앞에서도 언급한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군더더기를 삽입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연역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로스쿨 지원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교양 수학을 이수하여야 하듯이, 한국의 법률지망생들에게도 논리적 사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 (4)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고, 석궁 수리 조작이 법정에서 한 눈에 들통 나고, 이게 뭐야? 백재명 검사 놈은 이걸 증거조작이라고 하고 자빠졌던 거야? 이런 개판조작을 김용호 나 혼자 어떻게 뺨질 하란 말야?**

‘어찌긴 뭘 어째? 화살이 몸에 박혔다는 박홍우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화살 끝이 뭉툭하고 날개깃이 부러진 화살을 정상적인 화살로 바꿔치기 했다. ‘결자해지’라고 하였으니 니들 판사들이 시작한 일은 니들 판사들이 알아서 마무리 해야지.’ - 백재명

필자와 박홍우의 실갱이 장면을 처음 본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과 곧 이어 박홍우의 ‘사람 살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박홍우의 운전수 문경석이다. 두 사람을 뜯어 말린 후 문경석이 뒤에서 필자를 감싼 채 아파트 현관 앞 보도 블록에 앉혀놓고 있을 때, 박홍우는 김덕환에게 신고하라며 ‘이것도 가져 가요’하며 부러진 화살을 건네주었다.

검사 백재명은 박홍우가 김덕환에게 건넨 그 부러진 화살과 당시에 필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화살 2개를 묶어 박홍우가 맞은 화살이라며 법정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화살 3개 묶음 중에 박홍우가 김덕환에게 건네준 그 부러진 화살은 없고 멀쩡한 화살만 있는 게 아닌가?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3.21일 김덕환은 ‘(박홍우로부터 건네 받은) 화살은 끝이 뭉툭하고 뒤의 날개 부분이 없었다. 여기에는 그 화살이 없다’라고 증언하였고

은 것입니다.

판 사 : 한 번 보세요.

증인 김덕환 :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뚫어진 것이 있었는데 뚫어진 게 없네요.

판 사 : 어디가 부러져 있었다고 기억하나요.

증인 김덕환 : 뒤의 날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치가 없었습니다. 쫓을 때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박찬중 : 증인이 뚫었다는 것은 이 끝을 말하나요.

증인 김덕환 : 예, 이런 결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은 뚫혀있네요. 그 당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변호인 박찬중 : 이것과 똑같았나요.

증인 김덕환 : 제가 볼 때는 깜깜해서 그 당시에.

판 사 : 증인이 보기에는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는 뚫혀있던 것 같다는 것이지요.

증인 김덕환 :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54-55쪽 제시)

문 증인이 처음에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을 적은 것인데, 112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6:30분에 계단 올라올 때 우당탕 소리....증인이 뚫어내려고 하니까.....기사가 와서 그 남자를 잡았는데 그때 보니까 석궁 들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증인이 석궁을 빼앗았다'는 것이지요.

③ 57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는 김덕환의 3.21일자 증언 1

박홍우도 8.28일 자기가 김덕환에게 건네준 부러진 화살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답 예.

문 증인은 증인의 배에 맞았던 화살을 주위에 떨어뜨렸던 것 같고 활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답 주위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그때 화살을 뽑아서 옆으로 던졌다는 말입니다.

문 경비원은 증인으로부터 중간 부분이 부러진 화살을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중간 부분이 부러진 화살을 경비원에게 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그 당시 화살촉 끝이 뭉툭해진 것을 인식하였나요.

답 아파트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앞쪽 현관 사이에 계단이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살이 왜 부러졌는지 그 경위는 모르는데 짐작으로는 아마 제가 오른손으로 화살을 뽑아서 던졌을 것 같고, 던지니까 공교롭게도 그것이 계단 있는데 걸려 있다가 두 사람이 넘어질 때 발이든지 몸이든지 눌러서 부러지고, 계단에서부터 넘어져서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서 화살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화살이 부러졌다는 것의 의미는 제가 설명 드렸고, 제가 볼 때는 화살이 정삼각형이랄까 직삼각형이랄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박물관에 가서 보면 화살이란 게 뾰족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각형처럼 생겨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통의 화살촉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경비아저씨가 증언을 하면서 뭉뚱그려졌다고 증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 30 -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는 박홍우의 8.28일자 증언 1

화살 3개 한 묶음이 조작된 것임이 확인되었기에, 필자는 그에 대한 백재 명의

증거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증거능력 유무 의견서

사건: 2007고판 203 폭력행위등상해 (서울동부지법 단독2부)

피고: 김명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에 따라, 위사건 3.21일 공판에서의 심사추 증인과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변론 진술합니다.

다 음

1. 김덕환, 문정석 증인과 증거물(화살 3개 묶음: '피고가 석궁 가방에서 꺼내 그중 하나를 박홍우에게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검사가 제시한 화살 3개 묶음)

가. 절차적 위법

①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백재형 검사의 설명이 없었는 고로, 검사의 증거신청, 즉 증인신청 방식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를 위반한 것

② 더욱이, "피해자의 목살부위를 잡아 그곳 혈관 바깥에 넣어프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라는 공소사실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느냐 라는 피고 질문에도 백재형 검사는 회피하였다는 것. (3월 21일자 문정석 증인신문조서 p13)

③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사실, 석중발사 사실"을 입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는 곳이 없다는 것.

④ 소결론: 위 ① ② & ③ 으로 부터, 검사측 증인의 증인들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부변하라면,

[대법원 판례 1970. 3. 10. 69도1157]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적시된 것과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은 범위 내에 국한된다."

[대법원 판례 1955. 7. 15. 4288 형상128]

"증거조사의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그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 수 없는 것이다."

이서도 명백하듯이, 3월 21일자 증인들은 공소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실제적 문제점

① 김덕환은 "박홍우에게서 받은 화살은 끝이 뾰족하고 뒷부분은 화살 날개 것이 없는 부러진 것이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3. 21일자 김덕환 증인신문조서 p9-10) 그러나 박재명 검사가 사건현장에서 사용된 화살들이 다써 제시한 화살 묶음 3개 중 하나는 그 어느 것도 뾰족하지도 않았고 부러진 것도 없었으며, 그에 대해 김덕환은 "(자기가 박홍우에게서 받은 화살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3.21일자 김덕환 증인신문조서 P9)

② 뿐만 아니라, 피고는 화살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석공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홍우가 주장한, 좌측 아랫배에 박혔다고 하는 화살이, 검사이 의하여 제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③ 맞갈린 문정석, 김덕환의 모순된 증언들

(i) 김덕환은 피고가 왼손으로 박홍우의 오른쪽 어깨 밑 팔뚝 부분을 잡고 있었다고 증언한 반면 (3.21일자 김덕환 증인신문조서 P5)

(ii) 문정석은 피고가 오른손으로 박홍우의 왼쪽 뺨뺨과 입부분을 잡고 있어서, 피고의 오른손을 뒤로 꺾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3.21일자 문정석 증인신문조서 P3)

(iii) 위 두 증언이 사실이라면, 피고는 석공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결론이기에, 피고는 문정석에게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였는 바, 문정석은 피고가 왼손에 석공을 들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3.21일자 문정석 증인신문조서 P7)

이는 다시 위 김덕환 증언에 모순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3.21일자 김덕환 증인신문조서 P2-3)

(iv) 대법원 판례 1966. 10. 25. 66도1054
“서로 모순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의 취지에 따라, 문정석 김덕환의 증언은 공소사실(범죄사실) 의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㉚. 박홍우의 양복과 셔츠, 비복에 대하여
가. 절차적 위법
공소사실의 비복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백재영 검사의 설명이 없었는 고로, 검사의 증거신청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를 위반한 것.
나. 실제적 문제점
① 박홍우가 주장한, 화살이 박혔다고 하는 양복구멍과 상처만 배 좌측 하단의 위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즉 구멍 쪽의 양복구멍과 상처 위치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② 비복 셔츠에 피물이라고 하는 위치도 양복구멍 위치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③ 따라서, [대법원 판례 2001. 12. 11. 2001도4013]
“범죄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적인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증거능력 유무 의견서 4

이 따라, 박흥우를 증인 소환하여 양복 등을 입힌 상태
에서의 화살 박힌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 3. 31

김명호

Bh-K

판 사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준비서면 8. 4.에 제출한 것입니다. 나는 왜 재판은 거부해야 하는가. 석궁시위는 1. 15. 법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법 무시하며 국민 우롱해 온 판사들에 대한 정면도전이였다, 따라서 석궁사건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여 온 사법부가 심판대에 오른 재판인 것이다. 두 번째, 지난 3. 5. 석궁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질문 '판사님은 법전에 있는 법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맹세할 수 있습니까?'에 대하여 김용호 판사는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러한 언질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을 수십 차례 위반했다, 법에 의해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는 재판권을 위임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참조는 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판사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김용호 판사에게 요구한다, 첫째,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 된 증거조작의 화살 3개 부분과 조작 수리된 석궁에 대한 검찰의 증거신청을 독수독과 법리에 따라 기각하라, 두 번째, 복부에 화살이 박혔다고 거짓 신고한 박홍우를 증인 소환하라, 참조는 서울중앙지검 2007형제 80197입니다. 위 두 가지 신청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용호 판사는 고의적으로 법 무시함으로써 검·경 증거 조작 수사를 은폐 방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무시하는 김용호 판사 즉, 판사 자격 없는 김용

조작된 화살 묶음에 대한 8.14일자 증거신청 기각 요청 1

이에 김용호는 ‘기록에 남기겠다’며 얼렁뚱땅하며⁸⁶ 거꾸로 필자의 당연한 요구를 기각하고 조작된 화살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였다.

⁸⁶ 김용호는 이와 같이 명백한 것들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짓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들에게 재판을 위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 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 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865 판결 참조),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인바 (형법 제21조 제1항),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 와 같이 대법원 또는 판사들에 의하여 피고인 등의 헌법적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행 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위 주 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압수된 석궁과 화살 9개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

피고인은 압수된 석궁은 이 사건 범행 후 수리되었고, 압수된 화살 9개 중 이 사 건 범행에 실제 사용된 화살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증인 고영환, 김홍석, 박홍우, 김덕환의 각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경찰이 압수된 석궁의 위력을 시험하던 중 방아틀뿔치의 편이 하나 빠져 고영환이 이를 수리한 사실,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화 살 3개(나머지 6개는 석궁가방에 들어있었다.)는 모두 혈흔반응이 없고, 위 증인들의



조작된 화살, 석궁을 증거로 채택한 김용호의 판결문



증언과는 달리 부러지거나 끝이 뭉툭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리하기 전 압수된 석공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고, 압수된 화살 9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소지하고 있었거나 범행장소에 가지고 간 석공가방에 들어 있었던 이상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흉기를 휴대하여 상해)을 입증하기 위한 적법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균관대학교의 1995년 수학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으로 조교수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는 주장(피고인은 이를 "성대입시부정"이라 하는 것 같다.)을 피해자들이 불법,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이상훈이 재판을 불법, 부당하게 지연하여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이광범이 피해자 이상훈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거나 두둔하려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외의 석공 사용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007-0003371614-5JF8A

9 / 15

조작된 화살, 석공을 증거로 채택한 김용호의 판결문

<영구 대법관 밑에 맹구 판검사들>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대원칙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학, 과학에서 무언가를 증명할 때, 100가지 단계 중 단 한 단계에서라도 모순이 발견되면 그 증명은 틀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죄를 입증함에 있어 단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박홍우의 복부에 박혔다는 부러진 화살도 없는 화살 묶음을 상해 증거물이라고 제시한 백재명이나 그 걸 증거로 채택한 김용호는 형사소송의 기본대원칙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하기가 ‘부정확해도 근접하면 정답 인정한다’는 대법관 이인복같은 인간이 있는데...//

<‘사라졌다’와 ‘바뀌었다’의 차이>

박홍우가 몸에서 뽑았다며 김덕환에게 건네준 그 부러진 화살이 사라졌다고 법원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써 보도한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다.(예: ‘석궁사건 증거 미스터리’, MBC <PD 수첩>, 2008.3.25일). 화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뀌치기 된 것이다.

사라졌다면, 백재명이 법정에서 제출한 화살 묶음에는 화살이 3개가 아닌 2개이어야 한다. 부러진 화살 대신에 다른 멀쩡한 화살을 끼워 넣은 것이 입증되었는데도, 언론들은 사라졌다는 표현을 고집했다. 왜? 바뀌치기 되었다는 것은 법원과 검경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진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대판 ‘지록위마⁸⁷’이랄까?//.

<‘조서에 남기겠다, 판결로 말하겠다’ = ‘재판테러 하겠다’>

재판테러범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서에 남기겠다’, ‘판결로 답하겠다’며 모든 것을 판결로 미룬다. 마음대로 판결문을 쓰고서 뒷일은 상급심으로 떠넘기고 도망가겠다는 심뻐다. 그리고는 불복하면 ‘항소하라, 상고하라, 재심 신청하라’는 무책임한 말로 피해자의 입장을 지른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일부판결), 제201조(중간 판결)에 의하여, 최종 판결 전에 모든 실체가 드러난 일부 사안에 대하여 결정내지 중간판결할 수 있다. 일부 내지 중간 판결을 하면 소송당사자들은 판사들이 상식과 법대로 판단하는지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중간 내지

⁸⁷ 조고는 진시황의 아들 호해에게 사슴 한마리를 바치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말이옵니다"

왕은 가만히 보니 분명히 사슴인데 말이라 하다니....하고 의아해 했다.

이때 조고는 신하들에게 하나씩 물었다.

대다수의 신하는 사슴인줄 알았지만 조고의 후환이 두려워 임금앞에서도 말이라 했다.

물론 "아닙니다, 사슴입니다" 라고 했던 신하들은 가차없이 죽음을 당했다.

일부 판결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없다. 그것은 판사들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반박할 용기가 없거나 법리에 자신이 없어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거다. 대학에서 실력없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답안지를 나누어 주고 이의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⁸⁸.

한국처럼 판결에 대한 불복하는 사례가 많은 나라도 별로 없다. 어지간해야 승복할 여지라도 있는데,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기에 원심 법원이 실수한 것이라고 착각(?) 하고 상소하는 거다. 그런데, 항소, 상고심에서도 ‘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한다’, ‘이유없다’로 이유로 기각 당하고 나면, 뼈저리게 깨닫는다, 판사들은 사회적 약자의 등골을 빼먹는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을.//

<한국 법원이 서민 착취기구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소송이 1심에서 끝나고,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하찮은 사건들은 법원에 오지도 못하고 상식적으로 끝난다. 얼마나 한국 법원이 개판이면 로비와 뇌물의 힘을 믿고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오는 인간들이 그렇게도 많겠는가?

미국에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게 돈 좀 뜯어 볼까 하는 것이고, 한국은 사회적 강자가 힘없는 서민들 착취하려고 법원에 끌고 온다는 것이다.(참조: 영화 Body Heat, 캐서린 터너, 윌리엄 허트 주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미국의 강자라는 것들은 적어도 공개적인 체면은 차리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적 강자라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성희롱 논란으로 문제가 된 강용석이 갖은 비난 속에서도 버티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거 하며,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국회의원이란 인간들을 보라. 자존심의 밑바닥도 없는 인간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거다.(‘성희롱 강용석 제명안 부결... 치욕의 국회’, 프레시안, 2011.8.31)//

<법원의 송달료와 교정시설의 영치금 이자는 누가 먹나?>

소송이 끝나면, 송달료 등 잔액이 남는데, 필자의 경험상 이것이 교정시설의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은행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고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뒤늦게 찾아가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누가 차지하는 것인가? 은행? 법원? 아니면 둘이서? 법원과 전속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 송달료와 인지대 만으로도 엄청난 이윤을 얻을 거다. 교도소, 구치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수용자들의 영치금 문제다. 필자가 의정부 교도소에 있을 때, 수용자들의 영치금이 규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더니, 한달 평균 약 4억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었다. 이자도 없다고 한다. 그럼 영치금을

⁸⁸ 필자가 성대에 있을 때, 시험이나 퀴즈를 보면 반드시 그 다음 시간에 답안지를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의 이의 신청은 언제든지 받아서 설명해 주고 필자가 실수한 경우는 두말없이 고쳐주곤 하였다.

은행으로 옮기고 그 이자를 수용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별지 #1】

정보 부분공개 결정사유(2009 -22)

1. 결정근거

가. 공개 청구한 1항 “2008. 1. 1. ~ 2008. 12. 31. 기간동안 의정부교도소가 인권위 업무관련 수용자 우편요금 지불한 금액과 그 관련내역” 4항 “이자” 5항 “그 이자 사용처와 그 내역, 특히 인권위 업무와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 및 집행내역” 6항 “인권위 업무와 관련하여 책정된 의정부교도소 예산 및 집행내역(2008.1.1.~12.31.)”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비공개함.

2. 결정사유

가. 공개청구한 “2008. 1. 1. ~ 2008. 12. 31. 기간동안 의정부교도소가 인권위 업무 관련하여 수용자 우편요금 지불한 금액과 그 관련내역” 4항 “영치금 이자” 5항 “그 이자 사용처와 그 내역, 특히 인권위 업무와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 및 집행내역” 6항 “인권위 업무와 관련하여 책정된 의정부교도소 예산 및 집행내역(2008.1.1.~12.31.)”은 먼저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은 우리기관에서 직무상 작성·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비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교도소 영치금 및 이자 관련 정보 1

【별지 #2】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사실확인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중 아래공개 사항은 사본 및 출력물이 아닌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임.

□ 공개사항

1. 의정부교도소 영치금 관리 금융기관 : 농협
2. 2008. 7. 1 ~ 2008. 12. 31 매월 총 영치금액
 - 7월 : 363,554,611
 - 8월 : 364,020,575
 - 9월 : 381,201,881
 - 10월 : 361,929,816
 - 11월 : 361,699,626
 - 12월 : 371,219,391

의정부 교도소 영치금 및 이자 관련 정보 2

(5) 석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도대체 상처는 어떻게 생긴거야? 설마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를?

바뀌치기된 화살과 박홍우의 상처가 석궁에 의한 상처일 수 없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검찰은 입증취지도 설명하지 못한 증거제출에 대한 위법성을 필자에게 지적당했다. 그런데도, 김용호는 무조건 검찰을 감싸고 박홍우에 대한 증인소환을 미루어 필자는 물론 방청객들도 분노케 하였다.

박홍우로부터 건네 받은 화살이 부러져 있었고 화살 끝이 뭉툭했다는 (3.21일 자 2차 공판에서의)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씨 증언에 이어, 4.16일 4차 공판에서 석궁연합회 회장 김인섭씨가 ‘박홍우의 상처가 0.5센티미터라고 하면 미약한 수치인데 박혀서 뺏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박혀서) 뽑혔을 때는 그렇게 상처가 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답 그런 상황일 때는 방아쇠가 충격을 받아서 오발될 수도 있습니다.
 문 방아쇠도 수위총과 원총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당겨질 수 있네요.
 답 권총이나 업총이나 마찬가지로 방아쇠에 힘이 가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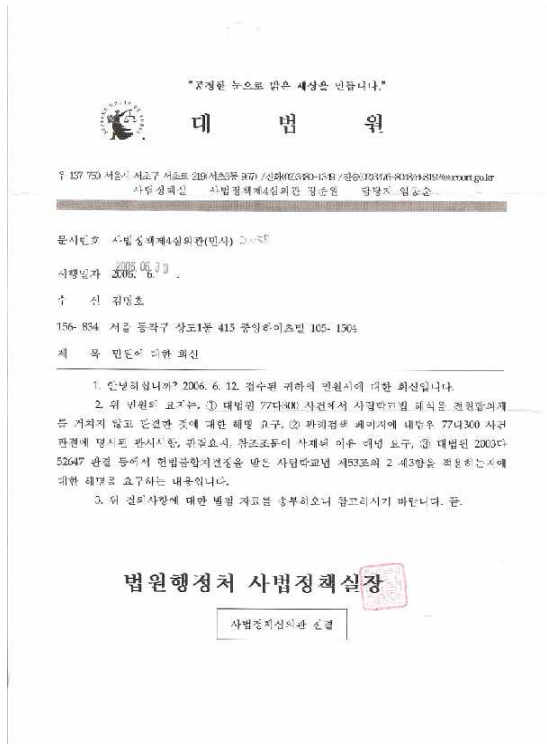
피 고 인
 증인에게
 문 언론에 의하면 박홍우 주장이 피고인이 1.5미터 거리에서 쏘았고 0.5센티미터의 상처가 났다고 했는데, 1.5미터에서 쏘을 경우에 0.5센티미터 상처 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그 상황을 증인이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화살이 맞아서 어떤 부위에는 계속이 되면 상처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경 가운데에 맞았느냐 아니면 비켜 맞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문 언론에서는 박홍우 편사가 전술한 내용만 가지고 말하는데 내용에 의하면 쫓힌 화살을 뽑았다고 하는데, 살검결과 돼지고기가 15cm가 관통된다는데 박홍우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케달 뒤에서 1.5m거리를 두고 쏘았을 때 0.5센티미터가 박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답 글썬요. 0.5센티미터라고 하면 미약한 수직인데 박희서 뺀다는 게 아니냐합니다.
 문 1.5m거리에서 쏘는 것과 석궁이 고장이 났다고 하지만 위력시찰을 한 결과들로 보아 실제 상처 0.5센티미터가 나려면 어떤 상황에 의해

서 가능한가요.
 답 증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5센티미터의 상처가 났다면 비켜 맞은 것이 하나였으나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문 비켜 맞았다는 것은 뺐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예, 뺐혔을 때는 그렇게 상처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 4. 16.
 별첨 주사 김 진 석
 판 사 김 용 호

석궁에 의한 상처일 수 없다는 김인섭의 4.16일 자 증언

석궁 때문이 아니라면 박홍우 복부의 상처는 어떻게 생긴거라는 것인가? 뺐힌결론이다. 자해에 의한 것이다. 상처에 대한 사진이 거즈로 덮여진 것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를 보강해 주는 증거다.



박홍우의 복부 상해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사진

김인섭씨 증언을 들은 후, 검찰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신청은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를 위반했으니 기각해달라는 필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김용호는 즉시 기각하였다. 이런 재판은 계속하는 것은 김용호의 재판테러를 인정하는 자살행위와 다를없다 싶어 휴정을 요청하고 변호사들과 상의하였다.(필자의 2007.4.16일자 일지 기록에서)

나: ‘(김용호)기피 신청하겠다’
 이기욱: ‘실익이 없다. 같은 판사(김용호)가 온다.’
 나: ‘그래도 좋다’
 (이기욱, 박찬중) ‘박홍우 증인 채택 여부를 보고 결정하자’
 나: ‘그럼 박홍우 증인 채택 여부를 물어보고 하겠다’

그리고 재개정되어(* 다음은 2007.4.16일자 4차 공판 속기록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재판테러가 어떻게 자행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김용호와 이기욱의 말에 대한 심층 분석의 코멘트를 달았다)

판사 : 재판 계속하겠습니다.

피고인(필자)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 박홍우 판사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판사 : 보류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할 겁니다.

피고인 :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신청으로) 첫 번째 (공판에서) 검사측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류하면서 구속될 상태가 아님에도 구속취소 신청과 보석청구에 대한 것을 엉터리 법리에 의해서 기각된 상태로 저는 강제억류 구금된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재판을 길게 끌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의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필요없는 증거라던가 검사측의 쓸데없는 증거들에 의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핵심적인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박홍우씨를 증인 채택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판사 : 예, 조만간에 결정합니다

피고인 :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권리행사 방해하는 거 아니죠?

판사 : 피고인, 헌법에는 그것 말고도 많은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 말씀해 주세요. 뭐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법전에 있는 대로 해 주세요.

판사 : 예, 법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 어느 나라 법전에 의해 심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⁸⁹ 언제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일단 기다려 봅시다.

피고인 : 조금이라는 것도 저는 벌써 강제 억류를 3개월째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홍우 증인) **보류에 대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피고인 김명호 교수의 뜻을 십분 참작하셔서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명호 교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법전에서 김명호 교수 내지는 피고인의 직책을 부르지 말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어디 법전에 써 있습니까?⁹⁰

판사 : 변호사님.

변호인 이기욱 : 예, 어느 규정에 그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피고인이라고 안 부르는 것도 아닌데.

판사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인 이기욱 : 제가 여태 재판 여러 번 했지만 피고인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자꾸 하신 분이 없었어요.

판사 :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모 재벌 기업 회장이 재판을 한다. 모 재벌기업회장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변호인이 와서 김회장, 김회장님 피고인 김회장님 이렇게 재판을 하면 여기 있는 방청석이나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판사 : 생각해 보세요.

피고인 : 법대로 해 주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법대로 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박홍우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을 풀어 주시든지**

⁸⁹ 아마도 ‘김용호’표 법전에 따라 소송 지휘하는 재판전쟁.

⁹⁰ 이기욱은 이런 사소한 일에는 달려 들면서, 정작 중요한 박홍우 증인소환에는 기다리자는 등 하여 필자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시사인 김은남이 ‘왜 만만한 것에만 분노하나’라고 그랬듯이(시사인 185호), 사소한 호칭 같은 것을 가지고 늘어지는 이기욱 같은 한심한 변호사들 때문에 판사들이 더욱 더 자신 있게 재판테러 하는 거다. 그런데도 이기욱이 변호사 사회에서는 인권 변호사이며 싸움꾼이란 평판이 나 있다고 한다.

결정해 주십시오.

판사 :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굉장히 열심히 빠른 기일 내에 계속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 간에 증거결정은 할 겁니다. 지금 신청한 증거들이 많은데 그 증거조사를 하면서 증거조사가 마무리 될 무렵에는⁹¹ 증거결정을 할 겁니다.

피고인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조사 신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지, 증거조사(마무리 될 무렵에 증거결정한다는 그런) 무슨 **똥판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판사 : 지금 박홍우의 증인 신청 외에도 증거 제출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날 무렵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피고인 : 검찰에서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신청한 것들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능력부여를 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판사 : 채택 자체가 보류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⁹²

피고인 : 그렇습니까? 그럼 재판이라는 게 본안전 심사가 있고 본안후 심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증거신청하기 전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것은 전부 일단 기각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판사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입니다. 유일하게 그게 피고인으로서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칙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재판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판사 : 무시하지 않았습니까?⁹³

피고인 : 그러면 왜 기각을 안하고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신청하는 사실조회라던가(는 모조리 기각해 대면서)

판사 : 피고인, 검찰에서 증거 조사할 때 무슨무슨 사항에 대해서 입증하는 취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피고인 : 안 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사 : 공소사실의 특정 부분을 지정한 적은 없다?

피고인 : 예.

판사 : 녹취록에 보시면 그리고 증거목록에 보시면 거기에 피고인은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 입증취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⁹⁴.

피고인 : 제가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고법형사 5

⁹¹ 마무리가 될 무렵, '지금까지의 증거들로부터 유죄 증거가 충분하니 박홍우 증언은 들을 필요없다며 김용호는 기각병 환자답게 박홍우 증인 신청 '기각'시킬 계획이 틀림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강제증인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참조: [헌재결 1997.11.27 92헌바28]).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확정 판결문(대법원 2008도2621, 이흥훈 작성) 이를 입증한다.

⁹² 채택 자체를 보류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판결문 쓸 때까지 보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증거능력도 없는, 바꿔치기된 화살, 조작수리된 석궁 등을 판결문 쓸 때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속들여다 보이는 김용호의 재판테러 전략이었다.

⁹³ 김용호는 자기말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있지 않다고 떠드는 것을 보면.

⁹⁴ 증거목록과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 제출하면서 무엇을 입증하려는 거다라는 것만 기재하면 그게 입증이 된 거라고 하는 꼬락서니를 보라.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의 법률전문가 vs 한국 법률가>에서 언급했듯이, 입증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문은 이미 써 놓았는데 뭘 입증하라는 거냐며 왜 자꾸 귀찮게 구느냐라는 거다.

부에 제출된 검찰 답변서⁹⁵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도 증거목록만 제출했는지, 그것이 과연 공소사실의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설명한 것인지 그것을 비교하고 검찰의 위법 증거신청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판사 : 예, 그 부분을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습니다⁹⁶.

피고인 : 다시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죠. 박홍우에 대한 증거신청을 언제까지 결정하실 것인가 하고 그것 보류해서 한 달이나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구속을 빨리 풀어주세요.

판사 : 예, 조서에 기재할 하겠습니다⁹⁷.

피고인 : 그런 식으로 엉렬똥똥 넘어가지 마십시오. 결정해 주세요.

판사 : 제가 조만 간에 결정하겠다고 답을 드렸잖아요.

피고인 : 조만 간이 언제입니까?

판사 : 조만 간에 하겠습니다. 재판 계속 진행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몇 가지 묻겠습니다⁹⁸

(6)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 우리 그런거 몰라 !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입증 취지 설명할 필요없이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

머리말에서도 얘기했듯이, 흔히들 법은 수학과 달리 답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물론 수학과 법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답과 그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다. 오히려 법이 수학보다도 더 엄밀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의 재산, 자유 심지어 생명을 다루니 말이다.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는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 하에,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 규칙]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관련성 입증에 대한 엄격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 규칙] 제132(증거신청의 방식)

⁹⁵ 이상훈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니 소명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었다. 필자는 그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와(‘에버랜드 재판부, 검찰 입증 부족 석명 요구’, 머니투데이, 2006.7.20) 비교함으로써 김용호의 영터리 소송지휘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⁹⁶ 일단 그 순간을 넘기는 상투적인 재판테러 수법이다.

⁹⁷ 요즘 공판중심주의라며 소송당사자들의 얘기를 듣는 척 하지만, 듣는 척만 할 뿐 재판테러는 여전하다. 박홍우도 필자가 변론조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때마다 조서 뒤에 편철하겠다고 편철만 하고 판결에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의제기에 대한 박홍우의 반박도 없었다. 필자는 확신한다, 최소한 95%이상의 판결문이 이런 모순 투성이 개판 판결문이라는 것을. 그러니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헛소리로 판결문 공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⁹⁸ 박홍우 증인 신청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하고는 김용호에게 따지기는 커녕 동조하고 있다. 호칭에 대하여 따진 태도와 비교해 보라는 거다. 그저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는 박홍우 증인신청에는 ‘가급적 빨리 결정해 달라’는 하나마나한 발언으로 엉렬똥똥 넘기고는, 그저 만만한 호칭 문제 같은 하찮은 것만 떠들고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꼬락서니다.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증거신청함에 있어 증거를 특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은 더욱 엄격하다.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의2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알기쉽게 얘기하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증거들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증거들의 연관성을 논리 정연하게 꿰어 어떻게 혐의 입증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데, 김용호와 백재명은 이 형사재판의 핵심 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지적받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를 위반한 검찰의 증거신청을 마구잡이로 수용한 김용호는, 백재명이 증거랍시고 법정에서 제출하지만 하면 증거능력과 나아가 증명력까지 저절로 생기는 줄 알고 있다.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는 증거로 제출된 것이 채택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증거 신청할 때는 그 증거들이 피고인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 백재명은 증거를 제출하면서 그 증거가 피의자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단 한번도 명확히 한 적이 없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박홍우 몸에 박혔었다는 화살 3개와 석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백재명은

첫째: 그 화살들이 박홍우에서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을 거쳐 119구조대 송철호 경찰관에게 적법하게 넘겨진 것들이란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박홍우가 건넌 부러진 화살은 그 화살 묶음에 없었다. 따라서, 화살들이 사건현장에서 적법하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그 화살들이 박홍우 몸과 접촉하였다는 즉, 박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써, 화살 측에 박홍우 혈흔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궁과 화살들이⁹⁹ 영장에 의한 적법한 압수 및 원형보전으로(석궁의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실패) 수거되었다는 입증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흔 감정을 의뢰한 화살 3개에 대하여 ‘혈흔 음성 반응’ 즉 피가 전혀 없다는 국과수 감정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필자의 혐의 입증은 커녕 백재명 자신의 증거조작임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⁹⁹ 4.2일 3차 공판에서 석궁전문가 고영한씨 증언에 의하면(첨부자료: 속기록), 석궁이 수리되었고 지문조차 채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문채취도 하지 않은 경찰들이 기자들이 만지도록 허용하는 등 증거 인멸하였다(참조: ‘이래 놓고서 CSI(과학수사대)가 웬말? 방송기자 석궁 함부로 만져…경찰, 판사 피습사건 증거물 관리 허술’, 세계일보, 2007.1.16) 박홍우가 석궁을 잡지 않았다고 한 거짓말에 꿩 맞추느라.

유전자 분석 감정서

국 과 수 유전자분석과 - 호 접수 2007-1795 호 (2007년 1월 17일)
의 퇴 관 서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227 (2007년 1월 16일)

1. 감정 물 증1호: 피해자 김명호의 상의(무스탕) 왼쪽 주머니 부분에서 채취된 적갈색 이물질이 묻은 면봉 3점.
증2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12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수거된 군밤 5점 및 군밤 껍질 5점.
증3호: 피해자 박홍우의 감정색 조끼 1점.
증4호: 피해자 박홍우의 흰색 속옷 상의 1점.
증5호: 피해자 박홍우의 연하늘색 내의 상의 1점.
증6호: 피해자 박홍우의 군청색 양복 상의 1점.
증7호: 피해자 박홍우의 흰색 와이셔츠 1점.
증8호: 석궁 화살 3점.
* [별첨 2] 감정물 사진 참조

2. 감정사항 상기 감정물의 유전자(DNA)형 분석.

3. 시험방법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 KSA17025:2000=KOLAS 10.004 DNA형 검사에 의함.
- STR형 분석

4. 감정결과 위 감정물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첨 1]과 같음.

- 1) 증3호, 증4호, 증5호, 증7호에서 모두 혈흔이 발견되며, 유전자형 분석결과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됨. (* 박홍우 피관 매기가 없다)
- 2) 증1호에서 혈흔이 발견되며, 유전자형 분석결과 관련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됨.
- 3) 증6호는 혈흔반응 음성임.
- 4) 증8호는 혈흔반응 음성이며,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음.

- 1 / 5 -



1866

화살에 혈흔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보고서 1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경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교과서에 있다’라는 식의 증거제출이나 하고 있고, 그에 걸맞게 법원은 ‘응, 뭔가 답안지에 시커멓게 많이 썼으니 만점 주어야 한다’라는 수준이라는 것.¹⁰⁰

다음은 2007.4.16일자 4차공판 속기록 일부다.(* 앞에서 같이, 각주에 코멘트를 달았다)

판사 : 예, 같은 취지입니다. 압수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은 방금 검찰측에서 알린 바와 같습니다. 양복 상의, 와이셔츠. 조끼, 내복 상의, 메리야스 등을 압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의견 있으십니까?

피고인 :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와 제132조의 2를 위반한 위법 행위입니다.

판사 : 의견으로 기재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¹⁰¹.

피고인 :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님은 단 한 번도 제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검찰에 한번이라도 권유라던가 경고라던가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요?

판사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 지금 제가 분명히(말하지만) 사건 현장입니다. **전 범행한 적 없는데 왜 자꾸 사건 현장이라고 해야지, 범행 현장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죄를 확정시켜놓고) 너무 일방적으로 재판진행 하시는 것 아니에요?**

판사 : 피고인 주장도 피고인이 억울해서 다 위법하고 쓰레기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확인됐습니까?

피고인 : 맞습니다. 확인됐죠. **양승태 판결문을 읽어 보면 제가 지적한 것이 옳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판사 : 위법하다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 주장이구요.

피고인 : **주장 아닙니다. 저는 주장한 적 없습니다.** 지적한 거지.

판사 : 위법하다는 것 어디서 확인합니까?

피고인 : 어디서 확인하긴요. 거기 (양승태 판결문에 보면 양승태가 위법행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 :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적인 행위를 비롯해서 범죄 또는 공권력의 행사든지 그게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 **법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법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죠. 국민들이 위법한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 :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법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는

¹⁰⁰ 2008년 1월 성동 구치소에서 항소장(2007고단2199) 작성 도움을 요청하여 필자가 초안을 잡아준 수용자가 있었다.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10여 바늘을 꿰맨 상처를 입히고 1년 6월 형을 받은 수용자였는데, 그 칼을 못 찾아 다른 칼을 법정 증거로 경찰이 제출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 수준이 이 모양이다. 그저 제출만 하면 증거로 인정해주는 믿음직한 판사들이 있으니, CSI? 그런게 왜? 필요하겠나? 어쨌건 항소심 재판장이 검경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항소장 보더니 ‘법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라고 하더니 1년 2월로 4개월 감형시켜 주었다. 대강 수사에 대강 형량, 그 검경에 그 판사라는 거다.

¹⁰¹ 이들 재판테러범들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당하면 이런 식으로 허위 기재한다. 그리고 기각병 중증 환자답게 이의 신청은 0.01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겁니다¹⁰².

피고인 : **판사가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믿고 기다립니까?

판사 : 그만하시죠.

피고인 : 판사님, 맨 처음 말씀하신 것 기억해 주세요. 법대로, 법전에 의해서 심리 판단해 준다는 그 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판사 : 그리고 순번 9번입니다. 검증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동의 하고 있는데 부동의한 이상 달리 이것을 보정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쪽에서 검토를 해주시죠.¹⁰³

검사 백재명 : 예, 알겠습니다.

(--기일 지정에 대한 것으로 지면상 생략. 스캔한 첨부자료 참조)

판사 : 예, 관계 없습니다.

피고인 : 아니 저기 좀 빨리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제가 못 나와요. 그날 3시까지.

피고인 : 아니 제 이야기는 날짜를 앞당겨달라는 것입니다.

판사 : 저희가 매주 두 번씩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2시간이 넘었는데요. 이 사건 하나 재판할 시간에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 **법대로 만 하시면 그런 것들이 신속히 처리됩니다.**

여자(권현옥) : **맞죠.**

판사 : 방금 누가 '맞죠'라고 대답했어요? 일어나세요. 이야기하신 분 없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청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 '맞죠'라는 말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¹⁰⁴

남자(이호형) : 말해도 됩니까? 대답을 해도 되냐구요.

판사 : 일어나 보세요. 맞죠 이야기한 사람 일어나 보세요.

피고인 :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판사 : 안됩니다. 아무도 말하신 분이 없어요?

남자¹⁰⁵ :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판사 : 일어나 보세요. '맞죠'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남자 : 들었습니다.

판사 : 누가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남자 : 대답할 수 없습니다.

판사 : '맞죠'라는 사람은 왜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남자 :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¹⁰² 최종 판단? 1+1도 너희가 판단해야 하나? [형사소송규칙] 132조도 모르는 주제에 판단을 못해서 법원에 온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빌리러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치다..

¹⁰³ 법대로 재판 진행하겠다고 맹세해놓고 그것을 추궁하니깐. 탄청을 피우는 모습이라니.

¹⁰⁴ 필자와 법리 설전에서 패배한 김용호가 '남산에서 뽕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옛말을 입증하듯, 화풀이 대상을 찾으려고 재판진행하지 아니하고 방청객을 향해 독기를 뿜어대는 김용호를 상상해 보라. 김용호는 약 30초간 누구냐며 물었다, 법정 분위기는 영하 30도 얼음 창고 안에 있는 것처럼 싸늘해 지고. 그 공포 분위기에 누가 선뜻 내가 그랬다며 나서겠는가? 종놈이 상전 헐박하는 고락서니, 대한민국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¹⁰⁵ 이 사람은 필자가 아는 전 계명대 교수 이호형이다. 신학과 교수이자 목사로서 계명대에서 신일희 이사장의 부정에 맞서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다.

판사 : **잘못했으니까 불 이익을 당해야죠.**¹⁰⁶

남자 :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 최소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권위적인 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 권위적이라구요?

남자 : 예.

판사 : 제가 알기로는 방청석에서 말할 수 있는 법정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¹⁰⁷.

피고인 : **그런데 이렇게 재판인 재판정도 없습니다**¹⁰⁸.

판사 : 피고인 감치재판 하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계없이 방금 법정을 모독했기 때문에 감치재판 합니다. 피고인 김명호씨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알면서 뭘 물어봐? 시발놈들이 이렇게 필요도 없는데에서는 절차대로 하는 척한다. 정작 중요한 [형사소송규칙]의 절차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이런 걸 보고 병신육갑한다고 한다)

판사 :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본인에게 불리한 신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위반사실은 피고인이 방금 뭐라고 했지요.

(--- 생략---)

피고인 : 법 위반하는 판사들이 판치는 이런 법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 : 무슨 판치는 법정이요? 저희 다 속기하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 그런데 지금 계속 법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 :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묻습니다.

피고인 :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판사 : 재판인 법정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피고인 : 법을 안 지키는 판사들에 대해서

판사 : 재판인 법정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피고인 : 그 뜻은 아닙니다.

판사 :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피고인 : 했습니다.

판사 : 예, 법정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정의 질서를.(김용호가 법전을 뒤적인다)

피고인 : 대단하시네요. **그 동안 법전 한 번 안 꺼내 보시더니...** 판사님¹⁰⁹

판사 : 가만히 계세요.

변호인 이기욱 : 죄송하지만 방청객들 가만히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¹¹⁰

판사 :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¹⁰⁶ 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에 ‘맞췄’라고 동조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 재판권의 주인이 법대로 하라고 상기시켜 준 것인데, 똥 썩 놈이 성낸다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종놈이 주인을 처벌하겠다고 협박까지 해?

¹⁰⁷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한 존재로서 국민들로부터 재판권을 위임 받은 것일 뿐,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은 언제든지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참견할 권리가 있다.

¹⁰⁸ 법을 위반하는 김용호 같은 판사들이 소송 지휘하는 재판정은 폭력의 장이지 재판정이 아니다.

¹⁰⁹ [형사소송규칙] 132조등 위반하는 것을 지적당했을 때는 쳐다 보지도 않던 법전을 뒤적거리는 꼬락서니를 보니 오장육부가 뒤집혀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판사들이 이렇다. 정작 중요한 곳에서는 법을 깔고 뭉개면서 만만하고 별 볼일 없는 곳에서는 법 대로 하는 척하는 생소를 한다는 것이다.

¹¹⁰ 이기욱은 뭐가 미안하다고 알아서 기고 있다, 필자가 뭘 잘못한게 있다고. 이러니 판사들이 기고만장 한거다.

행위에 대해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판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판사 : 할 말이 없으세요? 변호인에게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용호에게 ‘감치 7일’ 테러 당한 이야기다. 성동 구치소에 돌아오자마자 김용호 기피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방청석은, 국민이 재판권 주인으로서, 판사들의 재판에 대한 감독·견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소>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한 존재로서 국민들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것일 뿐,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은 언제든지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참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 신분으로 참석한 방청객은 판사의 법 위반 소송지휘에 대하여 지적 비판할 수 있고 판사는 그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7) **법관기피 신청? 조관행 등 법조비리 관련된 판사가 그렇게 많아도 사법역사상 법관기피 신청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 없는 거 몰라?**

[형사소송법] 제18조에 규정된 기피신청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기피재판을 동료 판사들이 한다는 데에 있다([형사소송법] 제21조). 더욱이 ‘소송의 지연 목적이 명백한 때’라는 이유만 갖다 붙이기만 하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자신이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0조도 있다. 이 조항은 재판테러범들의 전가보도다. 그 각하 결정에 불복, 항고 재항고 해보야 상급심 동료 재판테러범들이 알아서 ‘이유 없다’는 4글자로 일괄 기각해준다. 2006년 장윤기 법원 행정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듯이, 한국에서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예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2006년도에 뇌물 수수죄로 복역한 전 서울고법 부장 판사 조관행도 2002년도 담배사건에서 기피신청 대상이었는데 당연히 인용되지 않았다.¹¹¹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들은 판사에 밍 보여 패소할까 두려워, 판사들의 위법행위를 뻔히 보면서도 기피신청하지 못하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찍힐까 봐 기피신청하겠다는 의뢰인을 적극 말리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람 들의 그러한 비겁한 근성 때문에 작금의 법원이 이렇게 개판인 것이다.

<노예근성의 결과>

필자가 2006년에 1인 시위할 때 만난 아주머니의 사건 담당이 대법관을 노린다는

¹¹¹ 다시 말해서, 기피를 받아들여 다른 판사로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담배 요지서’ 논란 재판부 재배당 자진요청 [담배소송] 원고측 법관기피 신청 ‘각하’될 듯, 오마이 뉴스, 2002.12.6)

이인복 판사였다. 이런 권력 추구형 인간들의 특성이 그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남한테 욕 먹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필자는 그 아주머니에게 피켓 구호에 ‘이인복’ 이름을 쓰라고 조언하였다. 역시나 하루도 안돼 점심시간에 이인복이 아주머니한테 와서 ‘무슨 일이나? 문제 있으면 사무실로 와서 얘기하라’고 했단다. 이에 감격한 아주머니는 그 다음 날로 피켓 구호에서 ‘이인복’ 이름 석자를 지웠다. 필자가 ‘승소 판결문 받을 때까지 압박을 가해야지, 왜 이름을 지웠냐?’고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판사님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판결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주머니는 당연히 패소했고 2011년에도 법원 주위를 헤매고 있다고 한다. 이게 대다수 한국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노예근성이다.//

<공식화된 기피기각 이유: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유 없다’, ‘기피 이익이 없다’>
첨부된 김용호 기피신청서, 기피기각에 대한 항고, 재항고장의 기각 사유를 보라. 논리, 법리 아무 것도 없다. 그냥 무조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유 없다’가 전부다.

판사들은 기피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서류상으로 남기기 싫다는 거다.

그리고 여론의 조명을 받는 기피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기피 대상인 판사들을 다른 재판부로 전보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지른다. 그리고는 기피당한 판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 ‘기피 이익이 없다’는 기피신청의 본질을 내팽개치는 형식논리로 각하한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도 담배사건의 조관행 기피사건, 2010년도 검찰의 이광범 기피신청 사건 등이다. 이와 같이, 재판테러범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사기수법을(= 일명, 재판테러 매뉴얼) 개발해왔다.//

재판테러 선배범 서울고법 서기석, 대법원 이흥훈, 김황식, 김영란 등의 ‘기각병’ 말기 환자들의 든든한 ‘기각’ 지원을 받고, 돌아온 석궁사건 조작 첨병 김용호의 자신감 넘치는 활약을 보기 전에,

<서기석이란 인간에 대하여 한마디>

서기석은 필자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142 사건에서(원고:필자, 피고:교육부) 한 번 겪었던 재판테러범이다. 서기석이 설령 설령 소송지휘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이유로 패소 시킬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여 필자는 서기석에게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것도 판단할 거냐고 묻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법정에서 답을 받았고 그에 대한 서면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그 이유로 패소시켜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2008년 4월,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이부영씨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당시의

사건의 쟁점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는데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았다. 하여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알선수재에 대하여 무죄 입증에 골몰하였다. 헌데, 무죄임을 입증할 수사기록을 검찰 놈들이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필자는 알고 있는 판례 [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검찰의, 피고인에 유리한, 수사기록 제출의무>를 알려주었다. 그 덕에 이부영씨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검토 결과 알선수재 혐의가 풀렸는데,,
 서기석이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는 거죠?’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부영씨에게 하더라.(* 유죄 죄명을 바꾸는 놀이하자는 건지, 일단 감옥에 들어왔으면 무죄로는 못 내보내겠다는 건지) 1심에서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 판단 받았고 심리도 한번 안 했는데, ‘이 쪽이 무죄니까 저 쪽것은 유죄로 하자’ 는 식의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판사들의 뇌는 정말 연구 대상이다.
 //

(8) 어딜 감히 하늘 같은 박홍우 고법 부장 판사님 더러 법정에서 증인으로 오라고 지랄이야 ?

박홍우가 8.28일 증인으로 서울동부지법에 출두했다. 사법역사상 최초로 현직 서울고법 부장 판사가 증인으로 소환되었건만 언론들은 담합했는지, 보도하지 않았다.¹¹²

출두 과정은 정말로 쉽지 않았다. 박홍우 증인 소환을 위하여 변호사들은 판사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김용호와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다.

형사 피고인에게는 헌법에서 보장된 강제적인 증인 소환 권리가 있다(주: [헌재결 1997.11.27, 92헌바28]). 그런데 필자의 박홍우 증인 소환 권리를, 김용호가 ‘보류한다’는 말만 하며 묵살하고 있는데도, 이기욱, 박찬종 변호사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

<최병모, 인권변호사 ?>

최병모 변호사는 민변¹¹³회장이었으며 필자의 고교 선배이기에 체면치레는 하리라 기대했는데, 완전히 ‘꿈 깨라’였다.

법정에는 한번이나 출석했나 싶을 정도로 기억에 없고 가끔 변호사 접견으로 왔었는데 한번은 뜬금 없이 필자 친구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다. ‘내 친구를 불러서 뭘 증명하겠다는 거냐? 박홍우나 불러서 서울고법 2005나84701

¹¹² 인터넷에서 2007.8.28일 이후 박홍우 증인에 대하여 보도한 언론 있나 찾아보면 나오는 기사가 하나도 없다.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러진 화살’을 쓴 서형 작가의 재판 방청기에 의하면 그 날 재판 후, 박찬종씨가 기자들과 인터뷰했다는 데도 기사는 없다.

¹¹³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건에서 거짓말 한 것과 위법한 소송지휘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석궁시위의 정당성을 밝혀야 한다'고 했더니, '법원에서 박홍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다. 짐작컨대 이 사람은 필자를 달래서 대법원의 눈도장을 받고는 어떻게 대법관 내지 헌법재판관으로 제청받고 싶어서 무료 변론에 나섰으리라. 대법원과 싸우는 필자에게 대법원의 눈치나 보려는 사람이 무슨 변론을 했겠는가? 결국 1심 판결 나기 전에 이기욱과 함께 해임시켜 버렸다.//

검찰도 마지 못해 박홍우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김용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보여주기 위한 쇼로 한 것이다. 이는 박홍우에 대한 필자의 신문을 결사적으로 막았던 행태로부터 입증되었다.

대법원도 박홍우의 거짓말과 검경의 증거조작 수준이 그렇게 형편없는 줄은 몰랐을 것이다. 박혔다는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면서 혈흔 묻히는 조작 작업을 빠뜨리고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은 와이셔츠에도 혈흔을 묻히는 작업을 빠뜨리는 정도니 말이다.

상습적 거짓말에 불고 신자라는 위선의 탈을 뒤집어 쓴 박홍우는 대법원의 신망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석궁사건의 충격 때문인지 119 구조대, 검경 조사에서 튕겼다 (119)→맞았다(경찰)→꽃혔다(검찰)라는 횡설수설이나 하고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사만 되풀이함으로써 대법원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것이다.

김용호 입장에서는 박홍우를 덜컥 증언대에 내 보냈다가는 건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시간 끌면서 한편으로는 언론기자들을 회유하고 관심이 멀어졌을 때 '박홍우의 증언 없이도 유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박홍우 증인신청 기각한다'며 선고할 심산이었을 것이다¹¹⁴. 이에 필자는 김명호 교수 대책위에게 박홍우 소환 없는 재판 규탄 기자회견 열 것을 부탁하며 김용호를 압박하였다.('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관계 왜곡하는 사법기관', 월간 말, 2007.5.24)

박홍우 증인 채택을 계속 지연시키다면 재판을 거부하기로 이기욱 변호사와 상의하고 재판정에 들어가니 김용호가 여전히 상투적인 소리로 미루길래, 기피신청이 아닌 '재판거부'를 선언하고 법정을 걸어 나왔다.

¹¹⁴ 이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된 것에 대하여 '나머지 증거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문에(2008도2621) 밝혔다.

호에 의한 재판을 거부한다. 이상입니다.

판 사 .

기피신청 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기피신청하는 것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판 사

예, 기피신청 하실 거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요.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님.

변호인 이기욱

조금 기다려 보세요.

피고인

아니요. 대리인으로서 지금 하세요.

변호인 이기욱

기다려 보시라구요.

피고인

몇 분이요?

변호인 이기욱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 보세요.

피고인

저는 이미 거부했습니다.

박홍우 증인 소환을 위한 재판 거부 1

변호인 이기욱

알았어요. 기다려 보세요.

판 사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전 나가 있겠습니다(피고인 퇴정).

판 사

교도관님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죠. 들어오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한다고 하세요. 변호인께서 한 번 만나 보시죠. 만나보시고요. 저한테 이야기해 줄 게 있으면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계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정했기 때문에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시죠. 30분에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재개정)

판 사

피고인 법률에 의하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하면 안 됩니다.

피고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을 무시하는 판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판 사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를 변조한 혐의가 있으므로 석궁과 화

박홍우 증인 소환을 위한 재판 거부 2

교도관들 호위 하에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간 후, 얼마 있으니 교도관이 왔다.

“판사가 들어오란다. 안 들어오면 꺾석 재판하겠다고 한다’,
 ‘꺾석 재판하라고 해라. 난 안 들어갈 테니’
 그리고 얼마 있으니 이기욱과 박찬종이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왔다.
 이기욱 알, ‘일단 송철호(경찰관) 증언을 듣자. 화살을 건네 준 것을 확인하자’
 ‘송철호의 그 증언에는 의미가 없다.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된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는데 그걸 물어서 뭐하냐? 화살의 증거인멸 내지 은닉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도대체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냐? 검찰이 그 증거인멸에 대하여 수사하도록 압박을 가해야지
 않느냐¹¹⁵’, 하였더니, 이기욱이 한다는 말이
 ‘교수님이 신이 아니다. 교수님이 항상 옳은 게 아니다’라는 둥 횡설수설.
 ‘물론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하지만 (박홍우 증인 채택하라고 압박을 가한다는) 이
 점에서는 내가 옳다. 분명히 얘기하겠다. 지금 들어가서 변호사님이 물어봐서 박홍우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재판거부다.’
 ‘그래도 나는 송철호의 증언을 들겠다. 변호사는 반드시 의뢰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¹¹⁶’,
 (박찬종) ‘의뢰인이 완강하니 이 변호사 그렇게 하도록 하지’
 (이기욱) ‘나는 박홍우 증인 채택하지 않아도 그냥 재판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¹¹⁷’,
 그리고 이기욱과 박찬종이 법정으로 들어갔다가 들어와서는 박찬종씨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김교수, 박홍우 증인채택하기로 했어’

[헌법] 제12조와 [헌재결 1997.11.27, 92헌바28]에 보장된 너무나도 당연한 박홍우
 증인소환이 이렇게도 힘들었다.

<판사들은 왜 변호사를 통하는 것을 선호하나?>

소송당사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것일 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¹¹⁵ 송철호는 2007.1.15일 석공시위 당시에 이동복 경찰관과 함께 출동하여 석공과 화살을 수거한 잠실 지구대
 경찰관.

¹¹⁶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이요 앵무새다. 변호사의 본분도 망각한 소리하는 이 사람이 민변의 부회장을
 지냈단다.

¹¹⁷ 이기욱의 본색이 드러나는 말. 박홍우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최병모와 공모한 듯 싶다.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뢰인은 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즉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지식 제공자이자 영무새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판사, 법원 직원들은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며 소송당사자들의 기를 꺾는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변호사의 목줄을 쥐고 있어 마음대로 휘둘러 수 있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돈을 벌어야 자신들 주머니에도 그 돈의 일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판사 자신도 언젠가는 변호사가 될 테니 변호사를 통한 소송만이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9) 백재명, 이희성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나? CSI 시대에 와이셔츠의 화살 구멍 근처에 혈흔 묻히는 작업도 빠뜨리고. 미치겠네



그림: 박홍우 옷가지 혈흔 사진들

서울 동부지검에서 칼라로 찍어 온 박홍우 옷가지들, 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복> 러닝의 혈흔 사진을 보던 가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화살구멍으로 보이는 구멍 근처의 조끼와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는 없는 것이었다. 거짓말의 달인 박홍우가 갑자기 ‘모르쇠’로 돌변한 것을 보라

% 2007.8.28일 7차 공판 조서 일부

증인 박홍우: 어떻습니까? 어디에 피가 묻어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배 왼쪽 정도에 맞았는데 나중에 경비원이 먼저 지적을 했는지 증인이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올라간 것이지요.

증인 박홍우: 예.

변호인 이기욱: (와이셔츠의 화살구멍 근처를 가리키며) **이 쪽 여기에는 왜 핏자국이 없 나요? 오른쪽 소매에만 묻었는데.**

증인 박홍우: 다른 옷은 어떻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러닝, 내의, 셔츠, 조끼를 순서대로 제시하며) 조끼에는 핏자국이 있는데 왜 와이셔츠에는 없나요 ?

증인 박홍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화살이 박혔었다고 하니까 옷 구멍 좀 한 번 맞춰보지요. (조끼 위에 러닝 셔츠 위에 내의, 위에 와이셔츠 위에 양복상의 맞춰보다) 양복에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화살을 직접 걸어보세요.

구멍이 제대로 맞나.

판사: 한 번 넣어보세요. 와이셔츠는 빼고요.

피고인: 와이셔츠는 왜 뺐니까? 다 집어넣어야지.

판사: 구멍이 없으니까

변호인 이기욱: 구멍은 있습니다.

판사: 예, 있으면 넣으시죠. 전 구멍이 없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구멍은 있는데 핏자국이 없다.**

피고인: 한 번 누가 입어보고 화살을 꿰어볼 수 없을까요. 제가 입어볼까요. 그럼.

판사: 아니요. 됐습니다

<김용호가 옷입고 화살구멍 맞춰 보자는 것을 저지한 이유>

위 옷가지 사진을 보면, 양복의 화살 구멍 위치는 가슴 한복판에 가까운 반면에 다른 옷의 화살 구멍 위치는 좌측 배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 옷을 입고 화살을 끼워 본다면 당연히 끼워질 수가 없다. 경찰이 무엇으로 화살 구멍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석궁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멍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김용호는 이 사실이 드러날까 옷입어보는 실험도 저지한 것이다.//

<세탁의 달인, 박홍우 노모>

박홍우는 와이셔츠 소매에는 혈흔이 있는데, 왜 화살구멍 근처에는 없느냐는 이기욱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헌데 <한겨레 21> 기사, ‘석궁의 피는 어디로 사라졌는가?’(701호, 2008.3.18) 에 의하면, 박홍우의 노모가 와이셔츠를 빨았다고 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뒤 출근했을 때 박판사의 어머니가 옷을 빨기 위해 물에 담갔더니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와 가슴이 떨렸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내 뺐으니까 빨았지’- 박홍우 노모의 거짓말

거짓말의 달인 박홍우의 노모는 세탁의 달인인 모양이다. 와이셔츠의 화살 구멍 근처의 혈흔은 빨고 팔꿈치 부분의 혈흔은 남겨 놓는 달인 말이다. 위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홍성훈 경사의 증언과 모순이 생긴다. 홍성훈은 박홍우의 옷가지를 사건 당일 1.15 밤과 1.16일 오전 사이에 수거해서 국과수로 감정 보냈다고 했기 때문이다. 언제 세탁해서 말리고 홍성훈이 그 말린 것을 국과수로 보냈느냐 말이다. 와이셔츠 말고 다른 옷, 러닝, 내복도 빨았는가? 그것들은 박홍우가 내놓지 않았는가?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박훈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그 옷들이 박홍우의 옷이 아닐 수 있다고 했는데 설마? 다른 옷들을 증거라고 제출한 건가?//

(9) **하늘 같은 고법 부장판사님을 감히 신문하려고 ?**

‘도대체 증인이 누구야? 박홍우야, 김용호야? 왜 박홍우에게 물어보는데, 김용호가 나서서 가로막는거야? 대 놓고 박홍우 거짓말과 증거조작을 은폐하는 거냐?’라고 필자는 외치고 싶었다. 아래 기록은 8.28일자 속기록 일부와 재판 참관한 서형 작가의 생생한 기록을 보완한 것이다.

판사: 아니요. 신문사항을 제출하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신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주신문을 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보충설명. 어느 사이에 써서 신문사항을 써냅니까?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 제가 몇 번 그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신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인 박찬종: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소송 진행이예요.

판사: 아니예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만 하라고 하면 그만 하셔야죠. 그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변호인 박찬종: 제 보충신문을 허락 안 하십니까?

판사: 예, 신문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허용된 것만 신문하고요.

변호인 박찬종: 같은 변호인이 신문하면서 빠뜨린 것을 현장에서 언제, 그럼 휴정해 주십시오. 휴정해 주셔야죠. 이런 소송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 제가 신문할 기회를 드렸잖습니까?

변호인 박찬종: **나는 난생 처음 봅니다. 이런 소송진행.** 녹음기도 있고 다 있는데.

판사: 예, 그럼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사항을 들어보고 그만 물으십시오 하면 그만 물으시겠습니까?

변호인 박찬종: **이게 어떻게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법원 재판정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세요?**¹¹⁸

판사: 박변호사님이 소송지휘권에¹¹⁹ 승복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아니 보충신문에 신문사항을 써 내라고 한다면 시간을 주셔야죠. 그럼 또 지연되지 않습니까? 긴 것도 아닌데

판사: 제가 신문을 그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박찬종: 두 가지 남았습니다.

판사: **약속부터 해 주십시오.**¹²⁰

¹¹⁸ 대법원을 적당히 비난하면서 눈치 보던 박찬종씨도 김용호의 위법 소송지휘에 참 수 없었던 듯.

¹¹⁹ 존 로크가 ‘국민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할 권한을 정부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위법한 소송지휘권에 대한 저항은 항상 정당하다.

¹²⁰ 뭘, 약속해? 박홍우의 거짓말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덮을 것을 약속해달란 말인가? 대놓고 석궁사건 증거조작의 공범으로 동참하라고 권고하는 것 같다.

- (박찬종 변호사) 판사님, 저도 경험이 적지 않은 사람인데,.. 중요한 거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김명호 교수 재임용 탈락 사유란 게) 4개 중 3가지는... 불출석, 학생 결석에 관한 것인데,

△ (박홍우) 그건 다 고등법원 법정 민사사건 기록에 있는 거라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 (김용호 판사) 아, 그만하십시오!!

- (박찬종 변호사) 이건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납니다.

- ▲ (판사) **제가 그만하라면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신문은 안 됩니다.**

- (박찬종) 제가 신문할 기회에 들어보고..

▲ (판사) 제 소송 지휘권에 승복하시면...

그때 방청객 몇몇이 “**질문하게 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판사는 “누구세요!! (경찰에게 지시하며) 저분도 퇴장하세요!! 나가세요!!”라 명했다. 지목된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나가요!!”라며 알아서 나갔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박홍우)에게

(--생략)

<문> 그 과정에서 이변호사께서 신문사항에 내놓은 것처럼 5-6번 이상 석명준비명령을 원고로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증인 기억하나요.

답 => 관련해서 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것이고, 변호인께서 기록을 다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생략)

판사: **예,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판사: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 하시죠.**

(--생략)

판사: **그만 하시죠.**

(--생략)

변호인 신문이 끝났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다. 판사는 피고인, 김명호 교수의 질문지 복사본(3~4장 가량)을 훑어보고 있다¹²¹.

- (김명호) (증인에게) 질문해도 될까요?

▲ (판사) 아뇨. 잠깐만 기다리세요., (질문지를 보고 나더니) 이것은 (본 형사소송과 관련 없는) 민사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호인에 대한 후 신문이나 변호인이 한 동기 부분, 반대 신문들은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반적 진술, 관련된 진술, 피고인 주장하는 부분들은 대법원 상고 이유서에 써야 할 부분입니다.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하지 않도록**

¹²¹ 김용호는 필자의 신문을 경계했는지, 신문 차례가 되자 곧 바로 신문사항 준비한 것 있느냐고 물고는 그 즉시 직원에게 복사 시켜서 훑어 보고 있었던 것.

하겠다.¹²² (변호인에게) 더 제출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신문할 게 있으면) 저에게 (제출) 하셔서 종료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 (김명호) 지금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박홍우를 향해) 변호사 분들이 질문하는 도중에 제가 의문이 생긴 것인데, 먼저 저랑 실랑이를 했던 것을 부인했는데, (강하게) 참 신기한 것은 1월 15일, 16일 진술한 건 (이제 와서) 다 부인하는데 모든 일반적인 사건들은 시간이 더 흐를수록 기억이 흐려져요. (그저 앞만 주시하고 있는 박홍우를 향해) (내가) 평소에 박홍우씨한테 당한 경험으로부터 능히 이럴 거라고 추측했어!!! 거짓말할거라고!!! 그리고 계속 (배에 화살을) 맞았다 주장하는데 경찰의 석궁 실험 보셨습니까? 실험결과를 보셨습니까?

△(박홍우, 김명호를 쳐다보지 않고) 못 봤습니다.

- (김명호) 예, 제가 알려드리죠. 경찰 석궁 실험을 보면¹²³ 돼지고기를 놓고 해보면 완전 장전시 15cm가 들어가고, 이거 당시 입었던 그대로 양복, 천조각도 다 겹쳐놓고 실험한 거고, 돼지고기도 15cm 관통했고.. 최악의 경우, 불안전장전 즉, 화살을 고정시켜 놓지 않고 발사했을 경우에 6.5c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화살이 박혔는데 의식도 못했다, 6.5cm 박혔습니까? 15cm가 박혔습니까? 그것을 뺄 수가 있었습니까?**

△(박홍우): **병원에서 2cm 박혔다고 그랬고요. 제가 손으로 뺏습니다.**

-(김명호)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 **피고인! 생각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 (김명호, 김용호 판사를 보며 강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박홍우 증인이 판사 아닙니까? 판사가 판단을 하죠. 판사로서 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왜 자르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말을 자꾸 자르시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한 번 말하지 않았나요? 내 말을 자르지 말라고.** 지금 박홍우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생각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편파적 위법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나 있습니까?

- (판사 잠잠히 있음. 김명호 다시 박홍우를 보며) 증인의 말과 경찰의 실험결과가 틀린데, 누가 맞습니까?

△(박홍우) 제가 아는 것은, **들은 얘기로는...**

-(김명호, 호통을 치며) 들은 얘기하지 말고 경험한 그대로 말하세요!!!!

△(박홍우) 피고인이 상처에 대해 궁금하시면 병원에 입원당시 CT 촬영 결과가 있으니깐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깊이라든가, 방향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김명호) 답변을 회피하는 겁니까?

△(박홍우)(앞만 주시하며 침묵)

¹²² 박홍우의 거짓말을 추궁하기 위한 증인 신문 자체를 김용호가 가로 막고 있다.

¹²³ 경찰의 석궁 실험 결과(첨부 자료). 자신들의 증거조작행위를 입증해주는 모순된 실험결과를 법정에 증거라고 제출하는 경찰들이 한심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들이 알아서 해 줄 것을 믿었던 것인지.

-(김명호) 회피하는 것 맞죠?

▲(판사) 피고인!!

-(김명호) 지금 묻고 있습니다.

▲(판사) 예,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거짓말한 거죠? 맞습니까?

△(박홍우) : 법정에서 명예훼손적인 언급¹²⁴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 소리치며) 생각을 묻은 거 아닙니다! 그럼 거짓말이네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처음부터 정당방위를 주장하였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실시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박홍우 부장 판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기를 무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당방위를 위한 저의 박홍우 증인신문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판사) 피고인 제가 말씀드렸지요. 증인 신문사항은...

-(김명호) (박홍우를 보면서) 서울고법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사건(원고:김명호, 피고: 성대)의 재판장으로서 소송을 지휘함에 있어, [헌법] 제103조(법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는), 제13조(일사부재리 원칙),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36조(석명권, 구문권 등),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제146조(적시제출주의), 제147조(제출기한의 제한),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익권),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제207조(선고기일),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99조(소명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43조(변론재개 결정과 변론기일 지정), 제121조(음성, 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대법원 재판예규(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지침) 송무심의 제65호, 법원실무제요 제24장 제3절 (법정 외의 증인채택),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등을 **위반 내지는 위반 방조한 위법재판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박홍우)(침묵)

▲(판사): 피고인 제가 본 **신문사항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 그거 어느 나라 법이예요?¹²⁵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

판사: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불응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법을 어기는 (소송 지휘권에는 불응하겠다)

▲(판사): 불응하시는 겁니까? 불응하시면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¹²⁴ 거짓말 하였느냐고 묻는 것이 왜 명예훼손이란 건가? 대한민국의 기득권층들은 여기 박홍우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은 명예훼손 운운하며 입막음의 협박을 한다.

¹²⁵ 대한민국 법이 아닌 '대법원 표' 또는 '김명호 표' 법?

알려드립니다.¹²⁶

피고인: (이기욱 변호사를 보며) 변호사님

변호인 이기욱: 지금 질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질문을 왜 못하게 합니까?

판사: 제가 질문을 다 봤지 않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핵심적인 동기에 대한 사항들이잖아요.**

판사: 제가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은 이유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이 답변을 안 하시거나 판결문을 보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판사: 여기는 증인을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정치 ‘쇼’를 하는 데도 아니고요.

변호인 이기욱: 무슨 쇼예요? 피고인은 (박홍우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하는 건데)

판사: 제가 증인을 신문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증인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민사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판결 및 기록을 참조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판결문에 이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 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께서 답변을 안 하시거나 대답을 안 하시거나 판결을 보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판사: 이 부분은 **소송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신문하지 않도록 합니다.**¹²⁷

- (김명호, 대답하지 않는 박홍우를 향해) 빨리 답변하시죠 !

△(박홍우)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판사: 더 신문하지 않으실 겁니까?

피고인: 합니다. 두 번째 현저한 사실(대법원 1996. 7. 18. 94다20051) 즉 기록에 의하면 2005. 10. 18. 접수되어 15개월 만인 2007. 1. 12. 선고되었는데

검사 백재명: **재판장님 제지해 주십시오**¹²⁸.

판사: 예, 피고인 그만 하세요.

-(김명호, 아랑곳없이):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선고기간)이 정한, ‘항소심 판결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를 위반한 것을 인정합니까? **묵비권 행사입니까?**

△(박홍우).... (침묵¹²⁹)

¹²⁶ 대놓고 위협하는 김용호

¹²⁷ 소송지휘권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증거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것. 김명호가 2011년 현재 춘천지법 부장판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법원이 석공사건에서의 증거조작 은폐의 공로를 승진 고과에 반영하였음이 틀림없다.

¹²⁸ 백재명도 박홍우 위법행위에 대한 신문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 증거조작을 진두지휘한 백재명은 박홍우의 증언 마치기를 주장하며 김명호를 압박하고 있었다.

¹²⁹ 누가 그랬던가?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박홍우가 [민사소송법] 제199조 위반한 것은 맞다. 2005.10.18일

판사: **피고인 그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증인 박홍우씨 ! 네 번째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와 제147조 (제출 기한의 제한)의 제한을 증인이 위반한 것인데 인정합니까?

검사 백재명: 재판장님 증인 신문할 사항이 없으면 증인신문을 마쳐주십시오. 판사: **피고인 그만 하세요.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소송지휘권에 불응하고 계신 겁니다.**

피고인: 이기욱 변호사님, 재판 거부해 주세요.

변호인 이기욱: 물어보시던가 안 물어보시던가 본인이 결정하세요¹³⁰.

피고인: 예, 좋습니다.

판사: **계속 소송지휘권에 불응하시는 거죠?**

피고인: 아닙니다. (박홍우를 향하여) 피고 성대는 매번 기한을 위반하며 서류를 제출했는데, 소명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서류를 각하시켜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 299조(소명의 방법)에 의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한다고 하였는 바, 피고 성대가 위 법에 따라서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합니까?

판사: 그만 하세요

변호인 박찬중: 재판장님 피고인이 신문사항을 써낸 이것을 왜 증인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지 이 변호인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 제가 말씀드렸지요.

변호인 박찬중: 글썩요. 그것이 저희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1. 15.에 물리적 육체적 조우로 구속이 되었지만 그것에 이르게 된 배경 원인이 증인이 재판장의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소송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그계 동기유발의 원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꼼꼼히 교도소에서 썼는데 성의를 생각하더라도

판사: 증인으로 신문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인신문 하는데 증인한테 **그 판결을 담당한 판사한테 증인으로 나와서 잘잘못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¹³¹.

변호인 박찬중: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는 증인의 자유지요. 신문 자체를 막는 것은

판사: 아니요. 이미 증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변호인 박찬중: **신문 자체를 막는 것은 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증인이 답변하셨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은 판결과 사건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신문을 해도 참조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¹³².

피고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러진 화살과 바뀌치기 된 화살 3개 묶음에 대해서

접수된 사건을 2007.1.12일 선고했으니까.

¹³⁰ 의뢰인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할 소리가 아니다.

¹³¹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라. 김용호를 비롯한 판사들의 정서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판사는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재판권 행사에 대한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매년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¹³² ‘판결문과 기록을 참조하라’는 것을 답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증언의 취지와 공판중심주의를 묵살하는 행위다.

증거능력 부여를 취소해 주십시오.

판사: 그 부분은 증인신문을 마치면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소송지휘권에 따라주시면 앞서 이야기했던 불응한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¹³³. 뒤에 신문하실 것 있으면 신문하시고요. 아니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아니요. **재판거부 하겠습니다**. (서류를 들고 나가면서 변호사를 향해) 제 뜻에 따르지 않으면 변호사도 해임하겠어요¹³⁴.

변호인 이기욱: 한 5분만 휴정해 주십시오.

판사: 아니요.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백재명: 증인신문부터 마쳐주십시오.

판사: 예, 진행하겠습니다. 교도관 한 번 들어와 보시죠.

변호인 이기욱: 판사님 1, 2분만

*박홍우에 대한 증인 신문 시작 전, 김용호가 필자의 증인신문을 저지하리라 예상하고 5분간 휴정 요청으로 휴정하였을 때, 그런 경우에 재판거부하기로 박찬종, 이기욱 변호사와 약속하였었다. 예상한 대로, 박홍우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함구하고 김용호가 결사적으로 필자의 박홍우 신문을 저지 하였기에 ‘재판거부’ 선언하고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갔다. 이기욱 박찬종이 따라 들어와 재판거부에 합류한다고 하고 돌아가더니 다시 와서는
이기욱: ‘김용호가 석궁사건에 대한 것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자: ‘그건 의미 없으니 거절한다’
박찬종도 ‘구질구질하니 깨끗하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좋다. **내 상식으로 영터리 재판이다**’

판사: 예. 잠깐만 기다립니다. 변호인이 들어가셨으니까요. 변호인보고 들어오라고 하시죠.

교도관: 얘기 중에 있습니다.

판사: 피고인이 재판장 허가없이 법정을 나갔으므로 [형소법] 제330조에 의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김명호씨에게) 가서 돌아 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 하겠다고 하세요.

변호인 이기욱: (3~4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흔들어보이며) 문게 해주세요. (그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질문지) 몇 자 안 되는 거 못 문게 하시겠다는 겁니까?¹³⁵

¹³³ 질문을 가로 막은 인간이 누군가? 적반하장.

¹³⁴ 이 때, 이기욱 해임할 생각을 굳혔다.

¹³⁵ 문게 해주세요? 변호사라는 인간이 참 어처구니 없다. 변호사가 해야 할일을 피고인이 하고 있고. 판사는 소송지휘권 운운하며 피고를 위협하고 변호사는 그런 판사에게 문게 해달라고 애걸이나 하고 있고. 영구 맹구의 봉숭아 학당인가?

판사: 피고인은 재판관 허락없이 불출석하고.....

변호인 이기욱, 박찬종: 우리는 피고인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 물어보신 교도관님 누구시지요?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교도관: 교위 이장구입니다.

판사: 어떤가요.

교위 이장구: 불출석입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¹³⁶ 퇴정하였지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따라서 변호인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질문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증인신문을 마치시면 저희들도 피고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검찰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백재명: 예, 증인신문 더 할 것이 없으면 마쳐주십시오¹³⁷.

판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신문하지 않기 때문에¹³⁸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¹³⁹.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 대기실에 와서는 이기욱이 뭔가 느꼈는지 필자에게 묻는다.

‘다음에는 아예 출정도 안 할거냐’

‘그렇다. 이런 재판 재판 안 한다.’¹⁴⁰

(10) 아~ 이런 젠장, 검경이 의뢰한 영터리 국과수 혈흔 감정결과 인멸하려다 들켰네!

석궁 시위 다음 날인 2007.1.16일, 송파경찰서 홍성훈 경사가 혈흔 감정을 위하여 박홍우의 옷가지를 국과수에 보냈고, 그 결과인 유전자 감정 보고서를 멍청한 백재명이¹⁴¹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김용호가 6차 공판에서 그 보고서를 은폐하려고

¹³⁶ ‘법의 입’에 불과한 재판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다는 생각도해야 하는데

¹³⁷ 백재명은 증거조작이 드러날 까봐 박홍우의 증언을 끝내기를 줄창 주장하고 있었다.

¹³⁸ 증인신문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¹³⁹ 이 말의 의미 = ‘부장님 거짓말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¹⁴⁰ 참석한다는 자체가 김용호의 재판테러를 합법화 포장을 해주는 멍청한 짓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용호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고 선고하여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를 위반하였다.

¹⁴¹ 이 국과수 유전자 감정 보고서에는 ‘몸에 박혔었다’고 박홍우가 주장한 화살에 혈흔이 없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박홍우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홍우의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와의 일치 여부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박홍우의 옷가지 혈흔을 조작하는 데 제3자의 피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백재명은 1차 공판에서 유죄 증거라며 멍청하게도 법정에 제출한 것이다. 하기가 증거조작은 이미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으니, ‘호랑이 등에 탄 격’인 백재명으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필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선처를 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영성한 증거를 조작했었는데 이렇게 까지 치열하게 다들줄을 몰랐을 것이다.

하였다가 7차 공판에서 필자에게 발각되었다.

2007.8.17일 6차 공판에서, 검사 백재명이 대답해야 할 사안까지 가로막고 나서서 판사라는 인간이 검사의 증거조작을 은폐하려고 ‘국과수 감정 보고서’가 검찰에 의하여 제출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연거푸했다는 것이다.

(6차 공판 속기록에서)

피고인: 잠깐만요. 제가 검사측에 한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전에 1차인지 2차 인지 공판할 때 피묻은 옷가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국과수 감정결과를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과수 감정결과를 제출하셨습니까, 백재명 검사?

판사: 피고인, **저한테 물어보세요.** 재판은 제가 해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출한 적 없습니다.**

피고인: 그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7.12. 오마이뉴스에 제목 ‘김명호 석궁사건 의혹 · 논란 증폭’으로 올려진 기사가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예, 제출하세요¹⁴².

피고인: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가, 형사에서는 검사, 피고인이 공방을 하고 판사는 법리 및 공방 사실 입증으로부터 누가 더 옳은지를 판단합니다. 흔히 판사들은 이러한 재판을 권투시합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권투시합 심판에 자주 비유합니다¹⁴³. 그런데 심판이 한 선수와 합세하여 상대방 선수를 두들겨 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김용호 판사는 백재명의 대변인 노릇을 합니까? 피고인의 질문에 백재명 스스로 답하도록 하십시오.**

판사: 피고인, 피고인이 주장하면 제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¹⁴⁴.

피고인: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소송지휘권이 아니라 지금 저랑 검사랑 다투는데 왜 거기에 심판이 끼여듭니까?

판사: 그럼 심판이 심판하지 뭐합니까?

피고인: **거기서 저를 두들겨 패잖아요.**

판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 안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이야기했어요? **증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다른 이야기했습니까? **그와 같은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¹⁴⁵.

피고인: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안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¹⁴⁶.

¹⁴² 이 말의 의미 = ‘응, 제출해! 판사인 내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마음껏 제출해.’

¹⁴³ 법정 다툼을 권투에 비교하는 것은 글에서도 보았지만, 법정에서 직접 들은 것은 필자의 교수지위확인사건의 1심 재판장 이혁우로부터이다.

¹⁴⁴ 김용호는 소송지휘권이 양아치들이 행인으로부터 뺨뺨을 때 회칼 쓰는 정도로 아는 듯.

¹⁴⁵ 판사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듯이, 일단 부인한다. 그러다가 눈 앞에 증거를 들이대면 얼렁뚱땅 넘어간다. 다음 7차 공판기록을 보라, 김용호가 거짓말한 것을 지적당하고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¹⁴⁶ 김용호는 유전자 감정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5번 이상 거짓말을 했다. 괴벨스의 말이 맞기는 맞는

판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구요¹⁴⁷.

피고인: 어쨌든 제가 그동안 5차 공판을 겪으면서 심판이 월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판사: 피고인, 월권행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보시면, 당사자주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권주의도¹⁴⁸ 포함되어 있어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피고인: 직권주의라는 것이 그렇다고 **상대방 권투선수를 두들겨 때는 데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사: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구요.

피고인: 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수도 없이 (김용호 네가) 어기니까 문제죠.**

판사: 피고인 생각이구요

피고인: 피고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수도 없이 법을 위반해 왔지 않습니까?**

판사: 자꾸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제가 법을 뭘 위반했다는 뭘니까?

피고인: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뭘요.

피고인: 제가 서면으로 다 지적하고¹⁴⁹.

판사: 제가 다 아니라고 답변 드렸잖아요.

피고인: 글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판사: 증인 신문 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몸에 박혔다는 화살은 부러져 있었는데, 그 대신에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된 것을 지적하며 증거조작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판사는 ‘아니다’고 말한다.

1+1=3 이라고 우겨대는 인간에게 무슨 말이 필요있는가? 이래도 석궁시위가 폭력이라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는 인간은 인간답게 살 자격 없는 인간이다.

국과수 감정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검사 백재명에게 하는 질문도 가로막고 부인하던 김용호가 7차 공판에서

(2007.8.28일 7차 공판 속기록에서)

피고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화 공판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6차 공판에서에서 나왔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출한 적이 없다고 **두 번 강조하신 것**

모양이다. 계속 듣다보니, 필자도 성동구치소로 돌아가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멈추었던 것.

¹⁴⁷ 필자가 물러서는 기미를 보이자, 김용호가 기고만장하게 변한다. 판사들이 이렇게 뻔뻔하다.

¹⁴⁸ 직권이란 사건의 실제적 진실 규명하기 위하여 법원이 발동하는 것이지, 은폐하려고 검사에게 하는 질문도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¹⁴⁹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 검찰의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위반 등을 지적했다.

기억납니까?¹⁵⁰

판사: 예.

피고인: 그런데 여기 4.2일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판사 1864-1870쪽 수사보고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감정서로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홍우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검정색 조끼, 속옷상의 내의 와이셔츠 등에서 같은 양성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유전자 분석감정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판사: 방금 몇 차 공판조서라고 하셨지요?

피고인: 4.2일자 2차 공판입니다.

판사: 순번은 몇 번입니까?

피고인: '1864-1870 수사보고에 대해서 증거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판사: 예, 제가 받은 것은 국과수 감정의회 회보서 말 그대로 이 부분입니다. 옷 부분에 대한 감정의회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거기에 화살 3개에 대한 DNA 감정결과가 없습니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판사: 글썄요.

피고인: 백재명 검사 이런 것 제출한 적 없습니까?(피고인이 유전자 분석감정서를 들고)

검사 백재명: **재판장님 답변 들으십시오**¹⁵¹.

판사: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봅니다. 아,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피고인: 죄송한 것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재판진행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6차 공판조서 녹취록에 의하면 6페이지부터 8페이지 까지, 7페이지부터 **피고인 저한테 물어보세요. 재판은 제가 해요.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출한 적 없습니다.**

판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건이 많다 보니까

피고인: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사: 사건이 많다 보니까 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증거기록을 언제 다 외우겠습니까?

피고인: 그러면 **재판기록도 안 보고 무조건 부인부터 합니까?**

판사: 제가 재판기록을 본다고 봤는데 그 부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제가 몇 번을 이의제기를 한 사실입니다.

판사: 예, **죄송합니다.**

피고인: 그러면 여태까지 재판기록을 보지도 않고 나오셨다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에서 무조건 묵살부터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뭐니까?

¹⁵⁰ 정정: 2번이 아니라 5-6번 제출한 적 없다고 했다.

¹⁵¹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판사 뒤에 숨다니? 이런 인간을 검사라고 할 수 있는가? 상대방 선수의 공격을 피해 심판 뒤에 숨는 권투선수의 모양새와 같다.

판사: 제가 채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피고인: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판사: 제가 피고인 사건도 중요하고 다른 사건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많아서 채 다 못 기억을 해서 그렇습니다.

피고인: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대로 하면 재판들 순식간에 다 끝납니다. 이 재판도 한 달도 안 걸려요.

판사: 피고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피고인: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번에 제가 감치 3일을 받았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 안 지키는 판사들을 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생각은 국민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은 다 판사 선서를 합니다. 법을 지키기로. 그런데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저는 그래도 ‘김용호씨’라고 존칭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판사: 재판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¹⁵²

피고인: 글썬요. 저는 판사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죠.

판사: 혼자 인정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피고인: 혼자 아니에요. 지금 방청객들 중에도(**판사라고 인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판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써내는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써내든 방청객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 혼자 읽고 넘어가면 되는 데요¹⁵³. 법정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법원관계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과 함께 저 혼자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를 대표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¹⁵⁴.

피고인: 그러면 **법을 지켜 주셔야죠.**

판사: 피고인 똑바로 앉으세요. 지금 저한테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법부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 맞아요. **그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을 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법부에 대해서**

판사: 피고인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본 사법부의 위엄과 권위를 훼손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감치 재판을 할 겁니다.**

피고인: **법전에도 없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판사: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번 기일에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증인

¹⁵² 법도 안 지키는 인간이 재판장이라고 대접받고는 싶었나 보다.

¹⁵³ 소송서류 제출할 때 마다 위법한 소송지휘에 대하여 반박 법리를 전개하였고 적절하게 김용호에 대하여 해덴 욱을 읽어 보고 하는 소리다. 법 위반하는 김용호에 대하여 고소, 기피신청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도 ‘그래 김명호 너는 법리적으로 해봐, 우리 법원과 검찰은 법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라며 유죄판결의 각본대로 밀어 부치는 김용호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법정에서 말다툼하다 보복성 위법 감치를 두 번씩이나 받고 난 필자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글로 욱하는 것밖에 없었다. 예: ‘법무시하는 판사들에게 정면도전했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재판하지 마라’(8.21일자 준비서면), ‘삼권분립 무시하는 반 민주인사 김용호에게, 법원이 국회 권한 접수했냐?(보석청구 5), ‘돌대가리들 은택, 최용호, 조정현에게, 너희들 법전은 보냐? 너희들은 판사자격 없다. 이 돌대가리들아’(증거보전 청구9).

¹⁵⁴ 사법부 대표? 양아치 조폭집단의 돌격대원인 주제에.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던데요. 제출하셨나요. 검사 백재명: 제출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피고인: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부인하지 마십시오.**

판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공무원은 ‘무조건 안 된다’, ‘없다’라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법을 들이대든가 증거를 제시하면 그때서야 바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이기욱: : 검사님 송성욱씨 신청하신 겁니까?¹⁵⁵

<‘사법부의 위엄과 권위를 훼손하면 언제든지 감치 재판을 할겁니다’의 의미>

사법부의 위엄과 권위 ? 그런게 언제 있거나 했는가?

1995년 2월에 부교수 승진 탈락 사실을 알고 난 후 3월 초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당시의 총장 정범진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교무처장 심윤종이 총장을 만나기 전에 잠깐 보자고 하였다. 얘기 중에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이 인간 한다는 소리가 ‘성대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하여 깜짝 놀랐다. 부교수 승진 탈락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데, 성대의 로비력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심윤종 처럼 논리 없고 자신감도 없는 인간들이 권력이나 다수를 등에 업고 ‘우리 양아치 집단을 물로 보지 말라’는 것.(참조:‘아주까만의 죄수, 석궁 김명호 교수’ 참세상TV, 걱정영상 2008.3.39) //

(11) **내가 재판테러한다고 자꾸 떠들래? 방청객, 니들은 그냥 이 형식적인 증거조작 재판의 들러리 소품일 뿐이라고. 감치 받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다음은 김용호가 국과수 감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6차 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2007.8.17일 6차 공판 속기록에서)

피고인: 급속한 재판이라는 게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판사: 아닙니다.

피고인: **김용호씨 멋대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판사: **김용호씨라고요? 지금부터 감치재판 하겠습니다.**

방청객 남자¹⁵⁶: **아, 너무 합니다.**

판사: 방금 말하신 분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¹⁵⁵ 이기욱이 탄청 피우는 것 보라. 판사가 증거인멸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변호사를 돈까지 쥐가며 선임해야 되는가?

¹⁵⁶ 여우성이라는 ‘전국민주노조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의 회원, 훗날 서울구치소에서 만났다.

판사: 유지합니다. 있다가 **감치재판할 거니까 유지하세요.**

방청객 남자: 유지 거부합니다. ‘너무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갈 테니까 놓으세요 (불응하고 거부하면서 유지실에 들어감).

변호인 박찬종: 재판장님 피고인하고 잠시 의논하게 잠시 휴정해 주십시오.

방청객 남자는 감치 5일을 받았고, 필자는 재개정할 때 법정에 들어오지 않아 불출석 재판으로 감치 3일을 받았다. 독재자가 국민의 입을 철저히 막고 정적을 숙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12) 검경의 증거조작 은폐하랴, 박홍우 부장님 보호하랴 정신없다 보니
 대법원 형님의 명령을 깜빡했네 !

박홍우 증인신문을 저지한 김용호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지 서둘러 끝내자는 생각에 8, 9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필자 없이 개정하고 ¹⁵⁷10차 공판에서 선고를 때렸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를 위반한 것이다. 징역 4년을 선고한 김용호가 제282조를 위반한 것이 무슨 대수이겠느냐마는, 이 법조문은 사정이 좀 다르다. 김용호가 충성을 바치는 대법원의 엄명이 있는 조문이기 때문이다. 빨리 항소심으로 넘길 욕심에 그만

[대법원 2002. 9. 4. 자 2002모239]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항소심으로서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공판절차에 따른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를 거역한 것이다¹⁵⁸.

<영양가 없는 법조문만 살벌(?)하게 지키는 법원 검찰>

법원 놈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정기간에 대한 법조문은 하나도 안 지킨다.

¹⁵⁷ 박홍우가 증언한 날, 증인신문을 못하게 한 김용호의 재판을 거부하고는 다시는 1심 재판에 출정하지 않았고, 이기욱, 박찬종, 최병모, 이원구 등 모든 변호사를 해임시켜 버렸다. 그랬더니 김용호는 필자와 변호인 없이 8.9차 공판에서 검사놈과 각본대로 생소를 벌인 것.

¹⁵⁸ ‘내 사전에 법은 없다’는 듯이 밀어부친 신태길 항소심 재판장도 다른 항소 이유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필요적 변호 위반한 것만은 인정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판사 집단이 법은 우습게 알아도 대법원 판례는 하늘같이 받드는 양아치 집단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선고기간, 제출기간, 자신들이 내린 명령기한 등 제대로 지키는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소송 결과에 결정적으로 미칠 법조문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안 지키다. 그런 중요한 법조문을 지켰다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 2,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반면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282조 같은 것들은 아주 철저할 정도로 지키다. 그래야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간 동안의 구속기간 같은 것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정작 중요한 피의자의 방어권 관련 접견금지 법([형사소송법] 제91조)은 지키지 않는다. 헌재가 국민 기본권 침해방지 기구라는 이미지의 관리 차원에서 생색내기용 사건만 심판에 회부하듯이, 검찰도 홍보차원에서 지키는 법조항이 몇가지 있다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용으로.//

<필자의 구속취소 및 보석 청구 기각해대던 재판테러범 김용호의 법 준수 정서>
2011년 8월 1일 연합뉴스에 김용호 관련 기사가 났다.

춘천지법 김용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이 신청한 A(47) 경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사안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말은 법과 원칙에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법과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있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와 같은 사람들의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와 방어권은 철저히 묵살하면서 재판테러범들이 돌봐 주어야 할 인간들을 위해서는 방어권이니 뭐니 하며 지키는 척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춘천지법은 2004년도 판사 성접대 사건등 서로 챙겨주기로 유명한 지법이다.//

<단식 이야기>

무지막지한 재판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필자는 절망에 빠졌다. 언론은 대법원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대리인이라는 변호사들마저도 대법원 눈치나 보고 있으니. 기델 곳이 전혀 없었다.

하여, 언론의 속성이란 것에 기대를 걸고 시도한 것이 단식투쟁이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30일을 단식했더니 몸무게가 12kg 빠지고 혈당량이¹⁵⁹ 떨어져 거의 누워 지내며 식은 땀을 흘리며 잠만 잤다. 한번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벽을 짚고 걷는데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해지더니만 눈을 떠보니 양 옆에서 사람들이 일으켜 앉히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뒤로 그냥 자빠진 거였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단식이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한다. 어느 순간에 징후도 없이 어떤 장기가 그동안 근육에서 꺼내 쓰던 단백질을 다 소모하고 나면 예고없이 작동을 멈춘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때부터 그 장기는 평생의 고질병이 된다는 것.

친지들의 성화에 단식은 계속하면서 병원에 끌려 갔다. 영화에서 처럼, 교도관 2명이 병실문 밖에서 경비하고 불상사에 대비해 1명만이 병실 안에서 죄수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병실 독방에 수용자와 교도관 3명아 함께 기숙한다. 손에는 수갑, 발에는 족쇄를 채우고 말이다. 병실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구치소보다 훨씬 불편하였다. 하루 밤을 거의 뜯눈으로 새우고 퇴원시켜 달라고 난리쳤다. 그랬더니 병원 밖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피해야 한다며 필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통째로 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과 지하통로를 이용, 대기한 교도소 차량으로 도망치 듯 돌아왔다.¹⁶⁰//

2.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의 소심한 재판테러 일지

법원을 통해 접촉한 박훈 변호사가 다행히도 법원과 싸워 보겠다고 하기에 항소심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곧 이어 단식을 중단했다.

- (1) 2007.11.12(월): 빨리 기각시키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자
이회기는 김용호의 재판 기록을 대강 읽어 보고는 얼른 기각시켜 대법원으로 넘길 속셈이었다. 필자가 단식 후유증으로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느라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는 박훈 변호사만이 참석했는데, 이회기가 속내를 드러냈다.

(서형 작가의 공판 참관기록에서)

- (재판장) 그러니 아직 통보가 안 됐겠네요.

△(변호인) 그 전에..(공판) 기일 잡기 그 전에 ***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으면 형사소송 규칙에 국선변호인을 설정해서라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약하게) 그렇죠....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한데, 피고인 **김명호가 재판을 빨리 받길 원한다고 (재판 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인, 화를 내며) 그건 1심에서 했던 말이고, 그게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¹⁵⁹ 혈당량 최저기록이 62.

¹⁶⁰ 이 전격작전이 필자의 처형이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간 사이에 벌어졌는데, 잠시 후에 병실로 돌아온 처형이 아무도 없어 황당했었다고 한다.

(2) 2007.12.10(월): 이기욱, 박찬종, 최병모는 암전했다는데, 박훈은 왜 이렇게 증거 신청이 많아? 골치 아프게

① 변호사다웠던 변호사 박훈

필자가 구속되자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하였을 때, 필자는 필요 없지만 굳이 선임한다면 박훈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박훈도 선뜻 나서지 않았고 여러 변호사들을 알아보았지만 다들 공무니를 빼기에 이기욱을 선임하게 된 것인데, 앞에서 보았듯이 법원의 눈치를 보면 적당히 때웠다.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변호사들을 해임하고,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90조(변호인의 의뢰)에¹⁶¹ 따라, 법원에게 박훈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였고, 법원의 통지를 받은 박 변호사가 창원에서 올라와 이틀간의 대화 끝에 항소심을 맡게 된 것이다.

필자가 박훈이라는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은 미국에 있었을 때, 해직 교수들의 웹 페이지를 통해서 였다. 2003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노조의 고문 변호사였던 박훈이,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난도질 당하여 걸레가 될 거다’는 평을 했다는 것이다. 멍청한 대부분의 해직 교수들처럼 터무니 없이 낙관적이지 않고 교육부와 국회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2007. 10.10일 처음 만난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전문 변호사라 그런지, 번지르르한 말만 해대는 흔한 변호사들과 달리, 말 표현이 투박하고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실제로 겪어 보니 필자가 직 간접적으로 겪어본 변호사들 중에서 박훈 만큼 변호사다운 변호사는 없었다.

법을 위반하는 판사와의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정교한 재판전략을 짜고 정면으로 맞서는 변호사. 무엇보다도 패소할 때 하더라도 할 말을 다하는 자세가 맘에 들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동료의 정의’>

가. 성대 채영도 교수의 ‘친구의 정의’

채영도 교수는 95년도 성대입시 수학 본고사의 오류 문제 출제자이자 당시의 학과장이었는데 필자를 학과장으로 추천하였으나

(첨부자료: 채영도의 학과장 추천서 1-----361)

출제 오류를 필자가 지적하자 돌변하여, 필자의 징계 청원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어느 날 채영도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세상의 사람들은 친구 아니면 적으로 구별되고, 친구란 나쁜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¹⁶¹ 평소에 인권이니 사법개혁 운운하는 박원순 변호사, 전 법무부 장관 강금실, 정영진 판사 등에게도 [형사소송법] 제90조에 의거하여 법원과 성동 구치소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의뢰를 하였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나. 대법원은 교수의 자질이 책임용 탈락의 원인이 된다며 박홍우의 재판판결을(서울고법 2005나84701, 대법원 2007다9009, 주심 박시환) 확정했다. 교수의 자질에 대한 판단은 성균관 대학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위법하게 성대의 편을 든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필자가 나쁜 짓에 동참하지 않았기에 성대에서 쫓겨난 것을 대법원은 합법화 시켰다. 대학에게 나아가 국민들에게 조직적으로 뭉쳐 범죄를 저지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법 법리를 태연하게 만드는 대법원과 현재의 동료의 정의는 채영도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원들이 어떤 인간들로 구성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사법파동을 일으켜 진보 인사라는 평을 듣는 박시환 등을 포함 모든 조직원들이 기존의 대법관들과 나쁜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질을 엿보였었기에 그 자리에 발탁된 것이라는 얘기가. 대법원의 눈치 보는 헌재야 말할 필요도 없고(* [헌법] 제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다. 인권이란 간판을 내건 변호사들
 유신시대에 독재권력의 개 노릇을 한 판사들에게 법정에서 ‘개새끼’라고 일갈한 인권 변호사가 있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필자가 만난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모두 대법원 권력에 아부나 할 뿐이었다.

이석태, 이기욱은 판사한테 미움을 살까 봐¹⁶² 말도 제대로 못하고 패소 당했고, 석궁 시위 직후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진효근, 이기욱은 필자의 입회 요청도 거절하였다. 이들은 그저 인권 변호사라는 허명을 얻고 언론에 거론되어 훗날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에 지명받으려고 기웃거리는 인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박훈이 석궁사건 항소심에서 변론하지 않았더라면, 인터넷 상에서 박홍우가 호신강기를 익힌 무공고수라고 비웃음 거리가 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박홍우 옷가지 혈흔이 제 3자의 피로 조작된 사실 등이 밝혀지는 데에도 시일이 지연되었을 것이다. 박훈의 활약으로 인터넷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몇가지 소개한다.

② 박홍우 판사는 반탄 강기를 익힌 무공 고수였다.

박훈 변호사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으로 얻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 백미가 2007.1.15 일 사건 당일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의 구급일지이다. 권영복 119 구조대원이 작성한 그 구급일지의 구급대원 평가소견에 의하면,
 ‘피의자가 1~2 m 전방에서 석궁으로 활을 쏘았다고 하며 화살이 복부에 맞고

¹⁶² 대법원에게 찍히면,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에서 담합해서 그 변호사 사건을 패소시키기 때문이다. 대법원을 비판했다가 판사 책임용에서 탈락한 신평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개업한 후 한달이 지나도록 고작 한건의 사건 밖에 수임하지 못했다고 한다.(‘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신동아, 2006.9.1 통권 564)

튀겨져 나갔다고 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별지 제5호서형]

송파소방서 송파출소
TEL) 411-0111

구급 활동 일지

차량번호	구분	특수	일반	SA
신고일시	2008.1.15. 18:36	신고자	성명	연락처
재난관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할 <input type="checkbox"/> 타관할	환자	성명	연락처
출동시간	18:37	환자	주소	신고방법
현장도착 (환자접촉)	18:40	환자	직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거리	1 km	환자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무선페이징 <input type="checkbox"/> 리모컨 <input type="checkbox"/> 단말기 <input type="checkbox"/> 블루투스
처리완료 (현장출발)	18:46	환자	성명	<input type="checkbox"/> 관제
병원도착	18:52	환자	주소	연락처
귀소	19:15	환자	직업	011-1122-1122
출동유형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오인 <input type="checkbox"/> 허위	환자	발생장소	
발생유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의도성 유무	환자	장소(택1)	
환자발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침방의	환자	증상(택2까지)	
의식상태	MOA <input checked="" type="checkbox"/> V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U	환자	증상(택2까지)	
동공반응	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축동 <input type="checkbox"/> 산동 <input type="checkbox"/> 반응 <input type="checkbox"/> 무반응 <input type="checkbox"/> 축정불가	환자	원인	
생체징후	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축동 <input type="checkbox"/> 산동 <input type="checkbox"/> 반응 <input type="checkbox"/> 무반응 <input type="checkbox"/> 축정불가	환자	원인	
환자분류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응급 <input type="checkbox"/> 사망	환자	원인	
구급대원 평가소견	구급대원 평가소견	환자	원인	
응급처치 (복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도확보(<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수조작 <input type="checkbox"/> 기도유지기 <input type="checkbox"/> 후두마스크 <input type="checkbox"/> 기도삽관 <input type="checkbox"/> 흡인기 <input type="checkbox"/> 기도배치) <input type="checkbox"/> 구조호흡 <input type="checkbox"/> 산소투여(<input type="checkbox"/> 마스크 <input type="checkbox"/> 포켓마스크 <input type="checkbox"/> 안면마스크 <input type="checkbox"/> BVM <input type="checkbox"/> 산소생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CPR(<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ECG <input type="checkbox"/> AED <input type="checkbox"/> 순환보조(<input type="checkbox"/> 정맥도 확보 <input type="checkbox"/> MAST) <input type="checkbox"/> 약물투여(<input type="checkbox"/> 분말 <input type="checkbox"/> 혈당체크(①) <input type="checkbox"/> 고정(<input type="checkbox"/> 경추고정 <input type="checkbox"/> 척추고정 <input type="checkbox"/> 부목고정) <input type="checkbox"/> 상처처치(<input type="checkbox"/> 지혈 <input type="checkbox"/> 상처드레싱) <input type="checkbox"/> 보온(<input type="checkbox"/> 기타(안위도포·안경 포함))	환자	원인	
의사 지도	소속	성명	지도 및 조치사항	
환자이송	이송기관명	도착시간	거리	의뢰기관명 선정자
이송자	구급대원	구급대원	구급대원	구급대원
통계용	진료과목별	구급효과	구급활동	구급활동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튀겨져 나갔다는 119 구조대의 구급일지 1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가 ‘석궁테러, 화살이 배 맞고 튕겨나갔다’라는 제목으로 2008.2.25일 인터넷에 올렸더니 댓글 고수들의 격론이 벌어졌는데, 재미있는 글 하나를 소개한다.

제목: **생사경의 고수, 박홍우 부장 판사의 금강 불체**

조회 440 공감 7 비공감 0 작성일시 2008.03.01. 15:24

outc**** IP 141.223.xxx.42

젊은 시절, 혈기왕성한 시기부터 고시 급제를 위하여 신림동 고시촌에서 법(法)전을 붙잡고 수련을 닦은 자 중 특출난 이가 있었으니 이가 곧 박홍우 부장 판사이다. 무릇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 공부라 함은 법전으로 시작해 법전으로 끝나는 바, 주거와 학습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시원에서 법전 수련을 실시하는 것이 그 큰 흐름이었다. 박부장판사가 특출나다 함은 그가 모든 욕망을 끊고서 젊은 시절 법전의 수련에 몰입하던 중, 본래의 목적인 법전 수련 뿐만이 아니라 온 몸에 호신강기의 기운이 함께 쌓이는 수행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래 호신강기의 기운을 쌓는 이 수행은, 무림의 세계에서도 사바세계와 인연을 끊은 불법이 높은 노승들이 동굴 속에서 면벽수행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나, 사방이 네모난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고시원에서 온갖 욕정을 끊고 법전의 탐독에 몰두한 바 그 법전 탐독의 자세가 남보다 독하였던 박부장판사는 이를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나 사바세계의 인간이 아무나 고시원에서 지낸다 하여 면벽수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박부장판사의 득술은 매우 드문 일이며 여기서 바로 그가 특출나다 하는 것이다.

박부장판사의 수련은 고시급제 이후에도 자연스레 이루어져 본인도 모르는 새에 호신강기의 단련으로 생사경의 고수가 되어 있었다. 호신강기로 몸을 단련하여 무도의 고수가 되면 생사경의 단계에서 자연스레 금강불괴의 비술을 얻게 되는데 이는 온갖 종류의 위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중 뜻하지 않게 박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자에게 석궁으로 위해를 받게 된 것이 세간에 알려진 박부장판사 피습 건의 전말이다. 석궁으로 위해를 받은 당시 금강불괴의 신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술을 발동하였다. 허나 당시 박고수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서방세계의 매수매덕수(MATHMATICS)라는 무도로 스스로를 갈고 닦은 자인데다 그 위해의 기세가 대단하였고 거기에 판결에 대한 앙심으로 독기까지 스며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금강불괴의 신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사경의 고수만이 시전할 수 있는 무아지경의 비술을 함께 발동하여 고비를 넘겼다. 이 무아지경이 발동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없어지니** 이 비전의 시전 당시에는 사바세계의 모든 상식이 무효가 된다. 석궁의 위해를 막은 것도 금강불괴의 신체가 석궁의 화살을 튕기었는지, 배에 꽂힌 석궁을 뽑은 것인지의 구분이 없어지는데, 무아지경이 시전될 때엔 실은 이 둘은 같은 것이다.

박부장판사도 법전 수련의 고수이기에 이것이 사바세계의 상식으론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허나 박부장판사는 그 성질이 대나무와 같이 곧고 원리원칙의 자세가 배어있음에, 무아지경의 경지에서 자신이 겪은 바를 진실되게 그대로 진술하니 **'석궁이 배에 튕김과 동시에 배에 꽂혀 자신이 스스로 이를 뽑아 육체를 보전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를 사바세계의 무지몽매한 자들이 문제 삼으니, 어찌하랴 석궁이 배에 튕길수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는 사바세계의 대중이 박부장판사의 신체가 이미 금강불괴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어찌 무아지경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던 그 긴박한 순간에 대한 진실을 곧이곧대로 늘어놓는다 하여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진실을 모르고 사바세계의 논리로 박부장판사를 위증이라 하는데, 만일 정말 박부장판사가 위증의 명목으로 사바세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반도국가에 드물게 나타난 특출난 인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슬프고 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 통재라, 세상이 박부장 판사의 특출남을 모르는 터에 또 한번 기인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구나! 어허, 통재라!!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 나갔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도한 언론은 연합뉴스 외에 노컷 뉴스 밖에 없었다.

③ 부러진 화살을 바꿔친 화살의 증거 사진을 찍은 모 방송사 기자

‘검경이 왜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 치기 하였는가?’에 대한 박훈 변호사의 논리적인 추리,

‘박홍우가 복부에 박혔었다고 하는 화살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씨의 증언대로 화살 끝이(화살 축) 뭉툭했었을 것이다. 뭉툭하다는 것은 발사된 화살이 뭔가 단단한 곳, 즉 벽이나 바닥을 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몸에 박힐 수 없다는 사실도 입증할 수 있기에 검경은 화살축이 뾰족한 멀쩡한 화살로 바꿔친 것이다. 따라서, 검경이 확보한 화살 수는 9개가 아니라 모두 10개다. 3개는 사건 당시 119구조대가 수거하였고 나머지 6개는 나중에 석궁 가방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검경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가방 안에 7개가 있었고 그 중 하나를 꺼내 부러지고 뭉툭한 화살과 바꿔치기한 것이다.’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가 2007.10.15일 보도한 기사, ‘화살 맞은 셔츠에 혈흔 없지만 증거조작 아니다’에 삽입된 사진에 의하면, 실제로 우연인지 아닌지, 화살 7개를 그려 넣었고, 강철원, 김정우 기자에 따르면, 석궁가방에 있었던 화살들을 최초로 꺼내

사진을 찍은 사람이 검경이 아닌 모 방송 기자였다는 것이다¹⁶³. 박기자가 그려넣은 이 화살 7개는 모 방송기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그린 그림이 아닐까? 그 사진에 7개의 화살이 찍혀있다면, 그것은 검경의 석궁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조작도 엉망, 증거물 보존도 엉망>

2007.1.16일자 세계일보 기사에 삽입된 사진을 보면, 여기자가 지문을 채취하지 않은 석궁을 들고 있다. 증거물을 아무나 만지도록 한 것은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51조 위반¹⁶⁴ 행위다. 따라서 당연히 이 석궁은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지적한 언론은 세계일보 밖에 없었다.

"이래 놓고서 CSI(과학수사대)가 웬말?"

방송기자 석궁 함부로 만져...경찰, 판사 피습사건 증거물 관리 허술

'서울경찰청에 한국판 CSI 실험실 생긴다', '한국판 CSI 실험실 내달 문연다', '한국판 CSI 만든다... 혈흔 등 국과수 도움 없이 독자 감식'

2006년 10월11일자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는 'CSI 라스베이거스'로 시작해 'CSI 마이애미', 'CSI 뉴욕' 등 시리즈 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우리 경찰의 발표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발생한 교수 출신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테러사건은 우리 경찰이 과학수사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요원함을 보여줬다. 이번 사건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 충격적이었다. ...(중략)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었을까. 경찰도, 언론도 침착함을 잃은 것 같다. 15일 밤 늦게 모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서 테러사건을 전하는 여기자의 목소리는 흥분한 상태였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 현장에서 방송기자 특유의 급박한 목소리 톤으로 리포트를 했다. 리포트를 하던 기자가 갑자기 경찰서에 있던 문제의 석궁(石弓)을 집어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흰 비닐백에 아무렇게나 담긴 석궁을 경찰 제지없이 꺼내들어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합뉴스가 각 언론에 전송한 사진에도 석궁을 들고 있는 다른 기자의 모습이 찍혀 있다. '15일 오후 판결에 양심을 품고 전직 교수 김모씨가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를

¹⁶³ “검 ‘석궁테러’ 살인미수 아닌 상해혐의 기소”(한국일보, 2007.2.9, 강철원, 김정우기자)

¹⁶⁴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51조(증거물 등의 보전)

① 혈흔, 지문, 족적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전에 유의하고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19>

② 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훼손 기타 원상의 변경을 요할 검증 또는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피습하는데 사용한 석궁을 '경찰'이 공개하고 있다'는 사진설명과 함께.

이번 사건에서 **석궁은 결정적 증거물이다. 부장판사의 피해자 진술과 아파트 경비원·판사 운전사의 정황 진술보다도 유력한 증거물이다.** 그 석궁에는 피의자의 지문이 담겨 있다.

경찰과 검찰이 검토 중인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석궁에 대한 면밀한 감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부장판사의 지문이 석궁에 있다면 서로 밀고당기는 과정에서 화살이 발사됐다는 피의자 주장을 아예 배척할 수 만은 없게 된다.**

수사 관계자도 이날 "살인미수냐, 중상해죄냐를 확인하려면 총 파지 자세, 각도, 의사로 하여금 상해부위가 어느 입사각도로 들어갔는지 추가 조사할 것"이라며 "고의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느낀 당시 상황, 행위 등도 구체적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궁의 지문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중략)**

무엇보다 중요 증거물을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경찰 책임이 매우 크다. 나중에는 경찰 관계자가 아파트 사건현장에서 직접 석궁을 들어 **언론에 자세를 취해 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그 것도 맨 손으로.**

드라마 상에서 CSI는 사건이 발생하면 늘 현장을 샅샅이 뒤져 실밥 한 올, 혈흔 한 점이라고 찾아내 비닐봉투에 조심스럽게 담는 것으로 수사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피의자의 지문이 담긴 증거물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2007.01.16 (화) 11:07

<검경의 증거조작 천국, 대한민국>

석궁시위 당일부터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박홍우가 생소를 부리고 있던 서울대 병원은 물론이고 송파경찰서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이목이 집중된 상황을 감안하면, 경찰이 사건현장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화살을 그 짧은 시간에 어디서 구해왔겠는가? 물론 가능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이다.

와이셔츠 혈흔을 그렇게 영성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면, 증거조작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검경의 정서를 읽을 수 있고 그런 정서상 석궁가방에 있었던 화살과 바꿔치고 10개였던 화살이 9개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터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경의 증거조작은 수사의 일부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의미한다.

2010년도 양천 경찰서의 고문수사 사건¹⁶⁵ 등, 한국의 경찰은 아직까지도 '네 죄는 네가 알렸다'식의 조선시대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칼이 없어졌으면 아무 칼이나 범행에 사용된 칼이라며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들은 그걸 인정하고 있는게

¹⁶⁵ 영등포 교도소에 있을 때, 양천 경찰서 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 김모씨를 운동시간과 모포 넣고 터는 시간에 만났는데 그들에 의하면, 양천 경찰서는 미해결 사건들을 자신들이 저지른 것으로 덮어씌우기 위해 고문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현실인 것이다.¹⁶⁶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들여다 보면 이 나라에는 증거조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가. 범죄자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국민의 정서
범죄사건만 터지면 국민들부터가 ‘구속하라’며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묵살하라고 아우성을 친다. 신정아가 전 국무총리 정운찬의 도덕성을 비난했을 때, 유부남과 놀아난 인간이 누구의 도덕성을 논하냐고 비난하는 것을 보라.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발언하는 권리를 사수한다’는 볼테르의 말이 씨도 안 먹힌다.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치주의를 바란다면, 남의 권리도 인정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데 말이다.

나. 비겁한 피의자/피고인과 그 변호사들
죄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형량만 적게 받으면 좋아하는 피의자/피고인들이 문제다. 이들은 자존심도 없는지 판검사를 욕하면서도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판검사들에게 온갖 아부를 떠다. 이런 습성을 이용하여 검경은 짓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면 구형을 낮추어 주겠다고 유혹하고 피의자/피고인은 얼른 받아들인다. 이러니 판검사들은 이들을 당연히 업신여기고 자신들을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
형사재판에 한번 가 보시라.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판사 앞에서 조아린다. 변호사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량해 달라고 판사에게 간청한다.
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조귀장에게 2006.7.4일 첫 재판을 받을 때 구속된 피고인들의 재판을 보았는데, 아무런 변론없이 덮어놓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만 하여 충격을 받았다. 헌데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동구치소에서 알게 되었다. 95%이상의 피의자들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쓴다는 것이다. 800억원 정도 사기친 사람이 형량을 줄이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 쓰는 것을 보았다¹⁶⁷ (* 한번은 필자에게 까지 반성문 작성을 부탁하기도 했다) 더 웃기는 것은 수 백개의 반성문들이 구치소에 시험 족보처럼 돌아다니고 수용자들이 그걸 인용하고 있다는

¹⁶⁶ MBC <PD 수첩>의 ‘석궁증거 미스터리’에 나온 어떤 판사가 부러진 화살이 바뀌치기 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총알이 없어졌다고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단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것들은 O.J Simpson 재판 얘기도 못들었나? 100% 심증이 가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렇게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소리를 방송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판사가 판치는 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¹⁶⁷ 어처구니 없는 것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런 거짓 반성문을 많이 쓰면 판결문에 반성의 빛이 보인다고 형량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거짓 반성문 안 쓰고 검찰의 조작에 반항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형량을 높게 때리고, 하여간 이래 저래 웃기는 인간들이다. 종종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출소하자마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대부분이 이런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형량을 감량받거나 교도소 비리를 눈감아 주며 교도소에 아부하여 수용생활 점수를 높게 받아 가석방 혜택을 받은 수용자들이다.

사실이다.

다. 검경의 증거조작에 장단 맞춰주는 판사들
피의자/피고인이 검경의 조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범죄자인 주제에 반항해?’
하며 검사가 구형량을 높이고 그 장단에 맞춰 판사가 선고한다. 그러니 누가 감히
검경의 증거조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결국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판사가 문제다. 판사들은 검경의 증거조작을 경계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검경과 어리석은 대중의 흐름을 타며 사리사욕을
채운다.//

(3) **2008.1.28일(월):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까지 하셨으면 옷가지
혈흔은 당연히 부장님님 피로 조작했어야지 ! 제 3자의 피로 조작하다니, 백재명 이
한심한 인간은 이걸 조작이라고 한 거야?**

조작된 화살 구멍 근처에 조끼와 내복에 혈흔이 있음에도 그 사이에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검경이 혈흔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박홍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다. 앞뒤를 맞추려면 박홍우의 피로 조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였기에,
박홍우 옷가지 혈흔에 대한 국과수 감정,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됨’에서의
동일한 남성이 박홍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유전자 분석 감정서

국 과 수 유전자분석과 - 호 접수 2007-1795 호 (2007년 1월 17일)
의 퇴 관 서 서울총과경찰서 형사과-227 (2007년 1월 16일)

1. 감정 물
- 증1호: 피해자 김명호의 상의(무스탕) 왼쪽 주머니 부분에서 채취된 적갈색 이물질이 묻은 면봉 3점.
 - 증2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12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수거된 군밤 5점 및 군밤 껍질 5점.
 - 증3호: 피해자 박홍우의 검정색 조끼 1점.
 - 증4호: 피해자 박홍우의 흰색 속옷 상의 1점.
 - 증5호: 피해자 박홍우의 연하늘색 내의 상의 1점.
 - 증6호: 피해자 박홍우의 군청색 양복 상의 1점.
 - 증7호: 피해자 박홍우의 흰색 와이셔츠 1점.
 - 증8호: 석궁 화살 3점.
- * [별첨 2] 감정물 사진 참조

2. 감정사항 상기 감정물의 유전자(DNA)형 분석.

3. 시험방법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 KSA17025:2000=KOLAS 10.004 DNA형 검사에 의함.
- STR형 분석

4. 감정결과 위 감정물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첨 1]과 같음.
- 1) 증3호, 증4호, 증5호, 증7호에서 모두 혈흔이 발견되며, 유전자형 분석결과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됨. (* 박홍우 피관 매기가 없다)
 - 2) 증1호에서 혈흔이 발견되며, 유전자형 분석결과 관련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됨.
 - 2) 증2호는 타액반응 음성이며,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음.
 - 3) 증6호는 혈흔반응 음성임.
 - 4) 증8호는 혈흔반응 음성이며,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음.

- 1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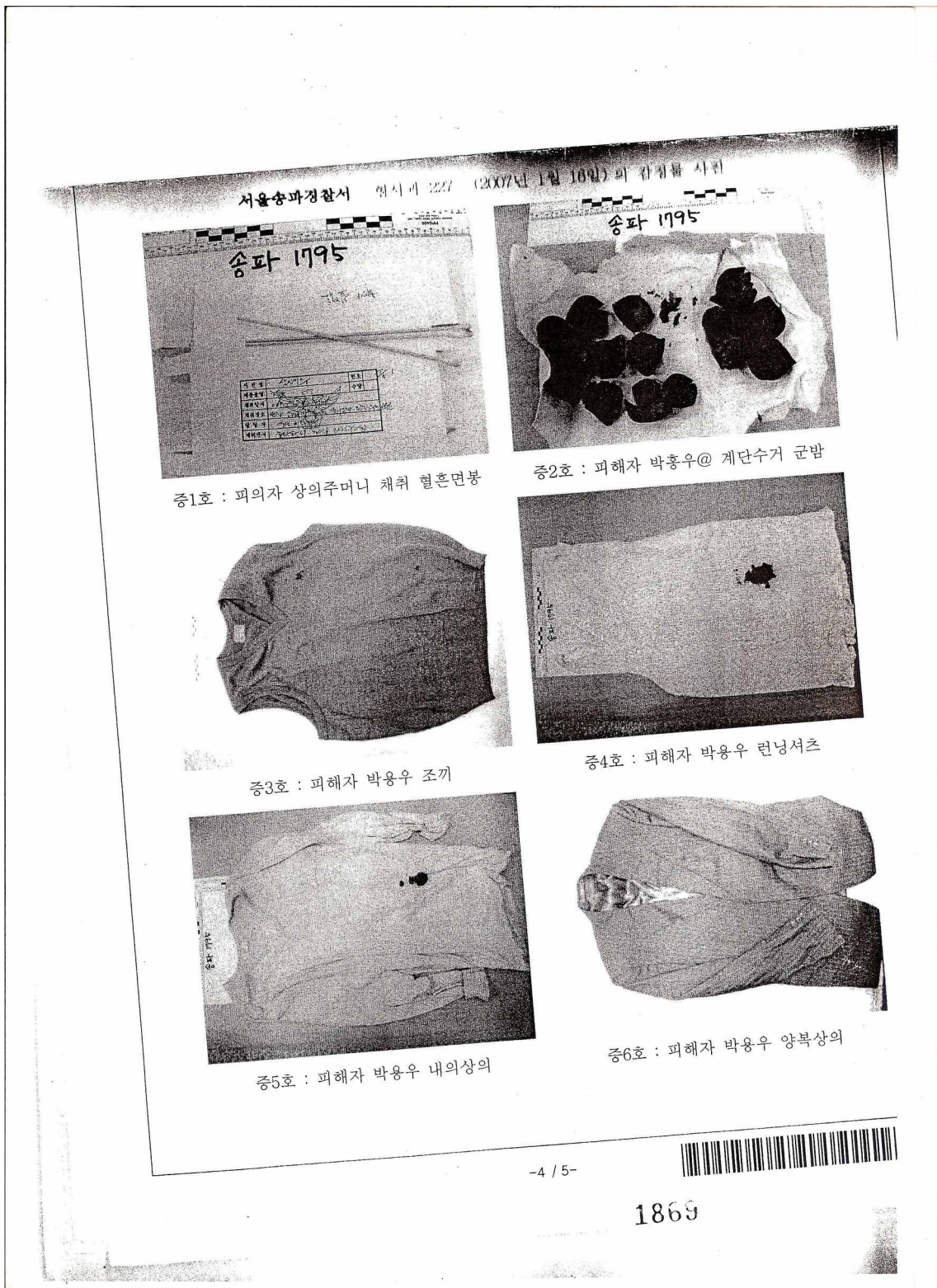
1866

국과수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그런데, 박훈 변호사가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해보자는 거였다. 그 말에 ‘동일한 남성’이라는 표현을 다시 검토하게 된 필자는 국과수 보고서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였고 나아가 혈흔이 박홍우의 피와 일치하는 지에 대한 감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박홍우의 옷가지 혈흔	필자의 무스탕 혈흔
국과수 보고서 표현	동일한 남성 의 유전자형 검출	관련 남성 의 유전자형 검출
시료 채취 여부	박홍우 피를 채취한 기록없음	필자의 DNA 채취 국과수에 동봉

국과수는 사건 당시에 필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에 묻은 혈흔이 필자의 혈흔임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증 1호(필자의 무스탕)에서 혈흔이 발견되며, 유전자형 분석결과 **관련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박홍우 옷가지 혈흔은 ‘동일한 남성’의 표현과 차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자의 DNA가 국과수에 보내진 기록이 있는 반면에, 박홍우의 DNA가 채취되어 국과수에 보내진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국과수 유전자 분석 감정서 2

2007.1.15일 밤인가 1.16일 새벽에 필자는 무스탕의 오른쪽 주머니에 1원 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약간 거무죽죽한 것이 보이길래 그것을 지우려고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형사가 ‘잠깐 기다리라’며 면봉으로 두어 번 훑고는 필자의 피를 채취해 갔고 재판 때 국과수 감정보고서를 받아본 후 그 혈흔이 필자의 피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피가 박홍우와 실랑이하다 아파트 현관 계단으로 옆으로 넘어졌을 때 손가락에 생긴 상처에서 흘러나왔다는 것과 구치소에서 샤워¹⁶⁸ 중 발견한 왼쪽 허벅지 바깥쪽의 퍼런 멍도 당시에 넘어졌을 때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 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한 필자는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일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검경은 옷가지 혈흔 조작을 박홍우가 아닌 제 3자의 피로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① 박홍우 피로 조작하였다면

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때, 자신 있게 박홍우의 혈액도 같이 보내서 옷가지 혈흔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신청을 하였을 터이다. 그런데 송파경찰서는 박홍우 혈액을 보내지 않았다.

나. 검증은 증거채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2007. 12. 10 일 첫 공판부터 결심까지 항소심 재판부는 필자의 혈액감정 신청을 결사적으로 기각해뒀고 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박홍우의 피로 조작하였다면 검사는 물론 재판부도 흔쾌히 검증하자고 나섰을 터.(* 박홍우의 조작된 옷가지는 결국 혈액 검증 없이 증거 채택되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 2항,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다. 필자의 첫번째 혈액 검증신청에 대하여 ‘박홍우의 피라는 것이 판명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던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가 돌연 사표를 내던지고 변호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박홍우의 피로 조작하였을 수 없는 이유

박홍우의 피로 조작하였다면 박홍우가 옷을 갈아입었을 때 ‘집에서’ 직접했거나, 누군가 옷가지를 박홍우 집에서 수거하고 박홍우가 누워 있었던 ‘서울대 병원에서’ 채혈하여 조작했을 것이다. 송파 경찰서 홍성훈 경사가 옷가지를 1.16일 국과수에 감정 의뢰 하였으니 그 시기는 15일 저녁과 16일 오전 사이이어야 한다.

¹⁶⁸ 구치소 교도소에서는 매년 10월 경부터 다음해 5월 말 까지 일 주일에 한번 약 15분간의 샤워를 허용하는데, 목욕탕 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지만 목욕이라고 부른다.

가. 병원 관계자의 혈흔 조작 가담 가능성

i. 석궁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병실 밖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15일 저녁과 16일 오전 그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가 증거조작을 위한 채혈에 가담하였겠는가? 서울대 박규주¹⁶⁹ 처럼 증인으로 나와 박홍우에게 유리한 위증이나 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주사기까지 들고 적극 가담할 가능성은 없고, 했다고 하더라도 검경 입회 하에 하였을 터이고,

ii. [구급활동일지]의 0.5cm 자해 상처로부터 옷가지에 묻혀진 만큼의 혈액량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니, 경찰 또는 검사가 직접 주사기까지 들고 증거 조작용 채혈을 하였다면 검경과 박홍우는 긴밀한 협조 하에 서로 입까지 맞추었을 것이나

iii. 2007. 2. 2 일자 조주태 검사와 박홍우 사이의 진술 조서를 보면, 의기 투합은 커녕 서로 간의 불신만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기록 1910쪽) “서울대 병원 경찰 1차 조사 시 우리 검찰청의 백재명 검사가 참석하여 질문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왜 ‘1.5m 거리에서 정 조준해 쏘았다’는 직접 경험의 경찰 진술과 달리, 여기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 반복하느냐?”라며, 조주태는 박홍우를 추궁하였던 것.

(첨부자료:

2007.2.5일자 조주태에 의한 박홍우 신문조서 일부 1-----362)

그리고

iv. 검경이 증거조작용 채혈을 하였다면, 당연히 국과수 감정의뢰용의 채혈 확인서 및 박홍우의 피 표본도 만들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박홍우는 박홍우 대로 자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검경은 정상명 검찰 총장의 지시도 있고 하니 눈속임 정도의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한 것이다.**¹⁷⁰

나. 옷을 갈아입을 때 ‘집에서’ 박홍우가 손수 혈흔 조작했을 가능성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구급대원에게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라는 거짓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필자가 아파트에 도착한 시각이 대략 6시 30분, 구급대 신고 접수 시각이 6시 36분([구급활동일지]). 박홍우가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렀던 시간은 길어도 5분, 그 5분 동안에 박홍우가 대법원의

¹⁶⁹ 제대로된 의사라면 분명히 박홍우 상처가 석궁에 의한 상처일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¹⁷⁰ 교수회의, 합의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여기서도 벌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검경과 법원 간에 증거조작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누군가와¹⁷¹ 통화한 후 사건을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틀림 없다.

그 근거로서

- i. 수사 및 법정 기록에 의하면, 박홍우는 신고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화살이 복부에 박혔다는 인간이 신고를 망설인다?¹⁷²
(첨부자료: 신고를 망설였다는 박홍우의 증언 1-----363)
- ii. 박홍우가 집안에 머물렀던 동안의 ‘통화 기록’에 대한 사실 조회 및 20여 차례의 증거보전 청구들을 김용호가 [형사소송법] 제1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결사적으로 모두 기각한 사실. (*박홍우가 통화 상대방에게 진실에 가까운 사건 정황을 설명했을 터이고 그 통화 상대방을 증인소환하여 실상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기각한 것은 대법원의 증거조작 몸통과의 커넥션을 단절시킨 것)
- iii. 짧은 시간 내의 결정이었기에, 박홍우에게는 구체적인 조작 계획이 서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복부에 화살이 박혀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진일보한 거짓말을 할 준비가 미처 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집에서 피를 묻히는 조작을 끝냈다면, 애초부터 구급대원에게 ‘화살이 복부에 박혀서 내가 뽑았다’라고 얘기했을 터이고 [구급활동일지]에도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 iv. 소결론: 박홍우는 집에서 자신의 피로 혈흔 조작을 하지 못했고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다. 결론: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채혈을 하지 못하였다면, 결론은 검경은 박홍우 피가 아닌 제 3자의 피로 혈흔을 조작하였고, 그렇기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때, 박홍우의 피를 함께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검경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박홍우의 옷가지 혈흔을 감정할 목적이 무엇인가? 박홍우의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의 피가 일치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박홍우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 아니었던가? 단순히 ‘동일한 남성의 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란 말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피를 묻힌 옷만 제출해도 김용호, 신태길, 이홍훈 처럼 그 옷의 혈흔을 상해의 증거로 채택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 아무도 상해죄에서 벗어날 수

¹⁷¹ 당시의 법원 행정처장 장윤기 또는 박홍우 경북고 동기인 차장 차한성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¹⁷² 화살이 빗나가 피해상황도 없는데 신고했다가 일이 커지면 박홍우 자신이 저지른 재판테러가 까발려 질까 고민한 것일 게다.

없다.

필자는 확신한다. 김용호, 이회기, 신태길, 이홍훈 등은 박홍우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죽어라고 혈흔검증을 거부한 것이었다. 혈흔이 사라졌다는 표현으로 사기치고,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뀌치기된 것도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법원도 ‘박홍우 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까지 부인할 수는 없기에, 그렇게도 혈흔 검증을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것일 게다.//

<국과수의 조작 공모 정도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떠도는 말에 의하면, 국과수 앞에 브로커들이 많단다. 그 얘기는 감정 결과들이 브로커들과 국과수 직원들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얘긴데...

궁금하다. 국과수가 왜 이 혈흔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로만 해주는 선에서 방관하겠다는 것이었나? **국과수는 검경에게 박홍우의 피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라는 보고서만 보냈다. 이는 국과수가 공모하지는 않지만 조작을 폭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부러진 화살과 혈흔이 사라졌다는고?>

법원과 언론은 ‘혈흔이 사라졌다’, ‘부러진 화살이 사라졌다’고 했다.

와이셔츠 혈흔이 사라졌다고?¹⁷³ 혈흔이 있는 것을 보거나 했는가? 증거 조작할 때 와이셔츠 화살구멍 근처에 혈흔을 묻히는 작업을 멍청하게 빠뜨린 거지. 애초부터 혈흔은 없었다는 거다.

부러진 화살도 사라졌단다. 그 대신에 박홍우 몸에 박혔었다고 해도 거짓말이 단박에 들통나지 않을¹⁷⁴ 멀쩡한 화살을 갖다 놓고, 멍청하게도 그 화살에 피 묻히는 작업을 빠뜨려 조작이 들통났는데도 그걸 사라졌다고 떠벌린 법원과 그 장단에 맞춰 나발 분 언론들 !

성대 입시의 출제오류를 필자가 문제가 지적하며 틀렸다고 하니까 출제위원이었던 이우영 교수가 큰소리로 화를 냈다. ‘틀린게 아니라 잘못된 문제’라는 거다. 어이가 없어서 국문과 강신항 교수에게 ‘잘못되었다’와 ‘틀렸다’와의 차이를 물으니, 틀렸다는 표현이 좀더 강한 표현이라고.

하여튼 이 사회의 기득권층은 매즘 일찍 맞고 끝내면 안되는 근성을 가진 듯 싶다. 걸리면 재수없다는 생각으로 밑바닥이 다 드러날 때까지 버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난

¹⁷³ 현대과학은 세탁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혈흔 흔적을 잡아낸다.

¹⁷⁴ 부러진 화살은 화살촉 끝이 뭉툭했었는데, 그 화살로는 박홍우 몸에 박힐 수 없었던 것이 그대로 입증되기에 검경들은 그 부러지고 뭉툭한 화살을 폐기하고 뾰족한 멀쩡한 화살로 바뀌치기 한 것.

일은 잇으랴'며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회 정서가 문제인 거다.//

(4) **2008.1.28일(월): 머리 나쁜 검경 때문에 판사가 피고로부터 법정에서 고발당하다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증거조작에 대한 것들은 대강 넘어가며 선처만을 요청하고 법리도 엉터리였던 이기욱, 박찬종과 박훈은 재판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랐다.

‘항소심을 시작하기 전에 복사한 재판기록이 너무 재미있어 밤새워 읽었는데 석궁사건을 개그콘서트의 코너로 만들면 대박난다’며 열정을 가지고 임한 박훈의 활약은 필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던 석궁과 화살들>

석궁과 화살 등은 사건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당하였다. 헌데,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 3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궁과 화살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다.

(참조: 서형작가의 항소심 4차 공판참관 기록, <http://2bsi.tistory.com/108>)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석궁과 화살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석궁과 화살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소위 그 증거물에 대한 조작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이회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에, 필자는 마주 앉은 박혜경 검사에게 이회기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위반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마주 앉은 검사에게 재판장을 고발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회기에 대한 고소사실의 법리>

박훈우와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은 박훈우 몸에 박혔던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다'라고 증언한 반면에, 검사 백재명은 멀쩡한 화살이라며 법정에 제출하였다.(* 국과수는 제출된 그 화살에 혈흔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원이 위증했거나([형법] 제152조) 백재명이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둘 중 하나를 고발하라고 2008.1.28일 공판에서 촉구하였더니, 이회기가 거부하였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34조 위반의 직무유기로 구술 고발한 것이다.//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의 혈액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혈흔 검증신청을 박훈이 제안하였을 때

(첨부자료: 박훈 변호사의 혈흔검증 신청 1-----364)

솔직이 필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당연히 박홍우의 피로 조작되었으리라 짐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의 반응이었다.

2007.12.10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필자가 첫번째 혈흔 검증을 신청 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 박홍우의 피라 입증되면 공소사실(유죄)을 인정하시겠습니까?’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더니, 2008.1.28일 3차 공판에서는 태도를 돌변하여 ‘박홍우의 혈액을 채취할 방법이 적절해 보이지 않다’며 기각하고, 기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더니 사유도 들어보지도 않고 기각하고는 ‘박홍우의 피를 채취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라’며 혈흔 검증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첨부자료: 2007.12.10일자 항소심 2차, 3차 공판 속기록 일부)

(첨부자료:

결사적으로 박홍우 혈흔 검증 거부하는 이회기 1--- 365

결사적으로 박홍우 혈흔 검증 거부하는 이회기 2-----366

결사적으로 박홍우 혈흔 검증 거부하는 이회기 3-----367)

<박홍우의 DNA 채취 방법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하던 판사들이 필자의 DNA 채취에는 폭력까지 동원>

혈흔 일치 여부도 검증하지 않으려던 이런 개만도 못한 판사들이, 필자가 만기 출소하기 4일 전인 2011.1.20일 영장을 두 번씩이나 발부하면서 필자의 머리카락 10개를 채취해 갔다.

DNA 채취동의를 거부했더니 구강에서 채취한다는 영장을 들고 왔다. 완강하게 거부하자, 반환하고 머리카락을 채취한다는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독방에 있는 필자의 양팔과 두 다리를 4명의 교도관이 붙들고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아 간 것이다. (참조: ‘미결수 경범죄도 막무가내, DNA 강제채취’ 헌법소원, 한겨레 2011.2.11)

[별지 제5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채취대상자	성명	김병호
	주민등록번호	570217-1066932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2동 247
	연락처	
사건번호(채취번호)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사유		
시료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구강상피 <input type="checkbox"/> 모발(모근포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채취방법		
<p>1. 저는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습니다.</p> <p>1. 저는 시료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p> <p>1. 저는 시료채취를 함에</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부동의 사유 : 소급 적용은 T권법 제13조에 정변배치된,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헌법소원청구서 참조 (2011.1.11일 제출)</p> <p style="text-align: right;">2011년 1월 10 채취대상자 김병호 <i>[Handwritten Signature]</i></p>		
<p>위 각 사항을 고지하였음</p> <p style="text-align: right;">2011년 1월 10</p> <p>채취자 소속 : 영등포교도소 직위 : 교시 성명 : 김광수 <i>[Handwritten Signature]</i></p>		

→ 그리고, 법에 의하면 DNA 채취할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근데 왜? 그렇게 박작같이 DNA 채취하려고 지킬들이야? 나쁜 건사들 하는것기다가 국민들 신상정보 유권하고 괴롭히는게 일법칙에 - DNA 채취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라! 석경사건 가해자 박홍우 DNA 채취도 안하고 버리는 주제에 이 지랄들이야?

교도소의 DNA 채취동의서 1¹⁷⁵//

(5) 증거조작에 대하여 연속 보도하는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판사 짓도 못해먹겠다.

사법부를 성토하는 네티즌들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사건 초기에 사법부 보호차원의 선정적 보도만 하였을 뿐 중요 쟁점에 대하여 거의 보도하지

¹⁷⁵ 영등포 교도소에서 필자가 작성한 동의 거부서. 소명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강세현,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남기주.

않았다. 진보언론들조차도 석궁사건을 2007년도 10대 뉴스에 선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단순 보복폭행 사건을 10대 뉴스로 선정하며¹⁷⁶ 석궁사건의 증거조작을 은폐한 언론기자들 속에서 연합뉴스 장재은의 활약은 발군이었다. 연합뉴스는 기사를 제공하지만 언론사들이 담합하여 장재은의 보도를 인용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석궁사건 초기의 선정적 보도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 법원 경검 합작의 증거조작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¹⁷⁷.

장재은 기사는 이회기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 법원장회의가 개별 재판 공정성에 영향 없어’라는 첫 기사를 쓰고, ‘피고인이 법정서 공판검사에 재판장 고발’(2008-01-28 18:04), ‘석궁테러’ 화살이 배 맞고 튕겨나갔다’(2008.2.25), ‘석궁테러-있을 수 없는 상처’(2008.03.11), ‘석궁테러,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2008.03.14 18:19), ‘석궁 김명호, 법대로 하면 나는 무죄, 상고’(2008.04.28 15:50) 등을 연속 보도함으로써, 네티즌에게 석궁사건의 증거조작을 알린 일등 공신이다. 듣자 하니, 주위 사람들이 장재은 기자에게 은근하게 ‘(석궁사건 보도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압력을 넣었고 장기자 자신은 불이익을 당할 각오로 보도했다고 한다.

석궁사건 직후, 오마이뉴스의 추광규 기자가 증거조작에 대하여 집중 취재 기사들을 쓰기는 했지만, 오마이뉴스가 대법원의 회유를 당했는지 기사를 메인인 아닌 잉걸로 처리함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을 얻을 수 없었다. 다음은 2007.7.12일자 추광규 기자의 ‘김명호 석궁 사건 의혹논란 증폭’ 기사에 대한 댓글이다.

3. 비겁한 오마이뉴스에 고함.(9)

귀가 있는 나무 2007.07.13 02:39 조회 803 찬성 25 반대 0

이렇게 중요한 기사를 '잉걸'로 처리해야 합니까? 즉시 사회면 톱기사로 올릴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시민기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편집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기획 취재하여 심층 보도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이 사건 초기 오마이뉴스의 애매한 보도 태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진정 '사회정의'를 위한 언론을 자처한다면, '시사저널 사태'에 못지않은 열정으로 이 사건을 기획 취재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오마이뉴스에 촉구합니다. 억울한 시민의 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오마이뉴스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¹⁷⁶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김승연 회장은 석궁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과 언론은 석궁사건의 증거조작을 은폐 목적으로 단순 보복폭행사건을 사회적 이슈로 과대 포장시켰다는 것이다.

¹⁷⁷ 2011.8.29일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74878 사건의 재판에 참석하러 갔다가 2006년 일인시위할 때 당시 알고 지내던 법원 경비를 만났는데, 그 경비 역시 석궁사건 증거조작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법부만 썩었을까? 별 다르게 없는 주변 사람들>

대다수 기자들이 돈과 권력에 빌붙어 사는데, 최소한 장기자는 석공사건에서 남다르게 행동한 것이다.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법조 출입기자와 수석논설위원을 지냈던 신성호는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다. 필자가 성대에서 입시출제 오류지적으로 해고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아마 1995년 4,5월경), 가장 먼저 찾아가 상담한 기자가 당시 사회부 차장이었던 신성호이었다. 상당한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무 소식이라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어보니, 사회부 부장과 얘기한 결과 ‘입시 채점도 끝났고 좋은 일도 아닌데 지난 일을 들추는 것이 사회 정의는 아니다’라고 하여 그냥 덮기로 했단다¹⁷⁸.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비교적 잘 아는 사이였기에 성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더니 그 모양이었다.(당시의 성대 교무처장 심윤종이 말한 ‘성대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성대 출신들 끼리 푹푹 뭉친다는 것을 의미한 듯 하다) 그 10년 후, 2006년,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신성호를 만났는데 필자가 동기 홈페이지에 쓴 ‘조관행 판사 노릇 제대로 해라’에 대하여 언짢은 소리를 하기에, 한바탕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한심한 것은, 필자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기 모임에서 신성호, 조관행 등이 공로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의 동기회장이 특허 전문 변호사인 진효근이었다. 조관행이 특허법원이 소재한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진효근이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공로상을 준거라고 생각한다.) 끼리 끼리 논다고 조관행, 신성호, 진효근 등이 같이 어울리니 조관행을 비난하는 필자에게 신성호가 필자에게 반발한 것이었다.

‘세상에는 친구와 적이 있을 뿐이고, 친구란 나쁜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채영도의 말에 따르면, 조관행, 신성호는 필자의 친구가 아닌 적인 것이다.(참조: ‘서울고 27회 수난시대’, 매일경제, 2006.08.13)//

즐기찬 박훈 변호사의 혈흔 검증신청 등에 ‘기각’을 남발하던 이회기가 필자에게 고발당하자 ‘결정’ 보류한다는 말로 순간을 모면하고는, 2월 정기 인사 때 사표를 쓰고 도망갔다.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던 이회기가 다음 기일을 4주 후로(2.25일) 멀찌감치 잡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때 사표를 내 던질 요량이었던 모양이었다. 이회기는 곧 바로 김앤장에 취직했다.

3. 이회기의 후임자 돌격대장 신태길의 재판테러 일지

느닷없는 이회기의 사표에 대법원은 신태길을 투입하고, 2007.1.19일 전국 법원장 회의

¹⁷⁸ 이것이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다. 관용을 베풀어야 할 곳에서는 엄벌에 처하고 엄벌에 처할 곳에서는 ‘지난 일은 잊으라’며 잘못된 관용을 베푸는 잘못된 정서 말이다. KBS 드라마 ‘추노’의 천지호의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다’는 말이 왜 한국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겠는가? 한국사람들은 수십년 아니 수백년을 목말랐기 때문이다.

이후의 두번째 단합대회인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2008년 3.7일 소집하여 석공시위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게 법치를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할 짓인가?

<국민 세금만 축내는 인권 보호 기관들>

2008년 1월 4일, 필자가 ‘석공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엄단에 처하겠다’고 결의한 2007.19일자 전국 법원장 회의의 회의록 공개 청구를 하였더니,

‘법원장 회의의 논의 주제 중에는 아직 의사결정에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사항들은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헛소리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별지 제7호 서식]

우)137-75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전화(02-3480-1149) /전송(02-536-0296) /종합민원
과 /정성엽

정보(☐ 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종합민원과-568
수신자 : 김명호

접수일자	2008년 01월 04일	접수번호	5번
청구정보내용	기록 보관처:대법원 내용:2007.1.19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록 중 2007.1.15.일의 석공시위 관련 회의록 전체		
공개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비공개 내용 : 청구정보 전부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인의 공개청구대상인 법원장회의의 논의 주제 중에는 아직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사항들은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개를 청구하신 법원장회의록은 공개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방법	공개형태		
	교부방법		
공개일시(기간)		공개장소	
수수료(A)		우송료(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수수료 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 (입금시)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에 규정되어 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2008년 1월 18일 법원행정처장 (인)</p>  			

2007.1.19일자 전국법원장회의록 비공개 결정문 1

그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2008행심3) 또한 기각되고 헌법소원(2009

헌마440)을 제기하였더니, 역시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었다. [헌법] 제26조에만 청원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어느 기관에 청원권을 행사해도 나오는 짓거리가 천편일률적이다.

3.7일자 전국 수석 부장판사회에 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더니 각하하길래, 헌법소원을 하였더니 ‘생색내기용’ 사건이라고 판단했는지, 이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현재¹⁷⁹⁾)’가 심판에 회부하고는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기각 이유는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7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떤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 당시 회의에서는 ‘석궁사건도 있었으니 보안문제를 보완하자’는 정도의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

이란다(“‘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한 인권위 진정 각하조치는 정당”, 법률신문 전문지, 2009.09.24)

2008.3.7일자 전국 수석부장 판사회회의는 대법원에서 열렸다. [법원 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¹⁸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국 수석부장 판사회회의의 책임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살인범이 ‘살인한 것은 내 손이 했으니 손에게만 벌을 내려라’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석궁 사건도 있었으니 보안 문제를 보완하자는 정도의 의견개진이었을 뿐’라며 내용상 특별한 것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

(1) 짜질한 이회기가 사표를 쓴 덕분에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대법원 형님들이 또 한번의 단합대회로 밀어 준다고 했겠다, 확실하게 보여주마.

2008.3.13일자 필자의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메모되어 있다. ‘일이 끝난 오모씨가¹⁸¹ 와서 하는 말, 이용훈이 신태길을 불러다가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이 들린단다’ 65년생 이회기와 같은 부장판사였던 신태길은(1955년생) 2009년 3.20일자로 사표쓰고 변호사가 되었다. 아마도 승진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가 대법원의 부름을 받고 석궁사건에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보답을 제대로 못 받은 모양이다.

신태길은 첫 공판부터 소송지휘는 하지 아니하고, 속기사의 속기나 들여다 보더니 ‘속기를 하는 것은 공판조서를 만들기 위해서지 인터넷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라는 똥땀지 같은 소리로 변론의 속기와 녹음을 중단시켰고, 물리학회에로의

¹⁷⁹ 헌법재판소의 약칭,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이나 편의상 현재라고 부른다.

¹⁸⁰ [법원 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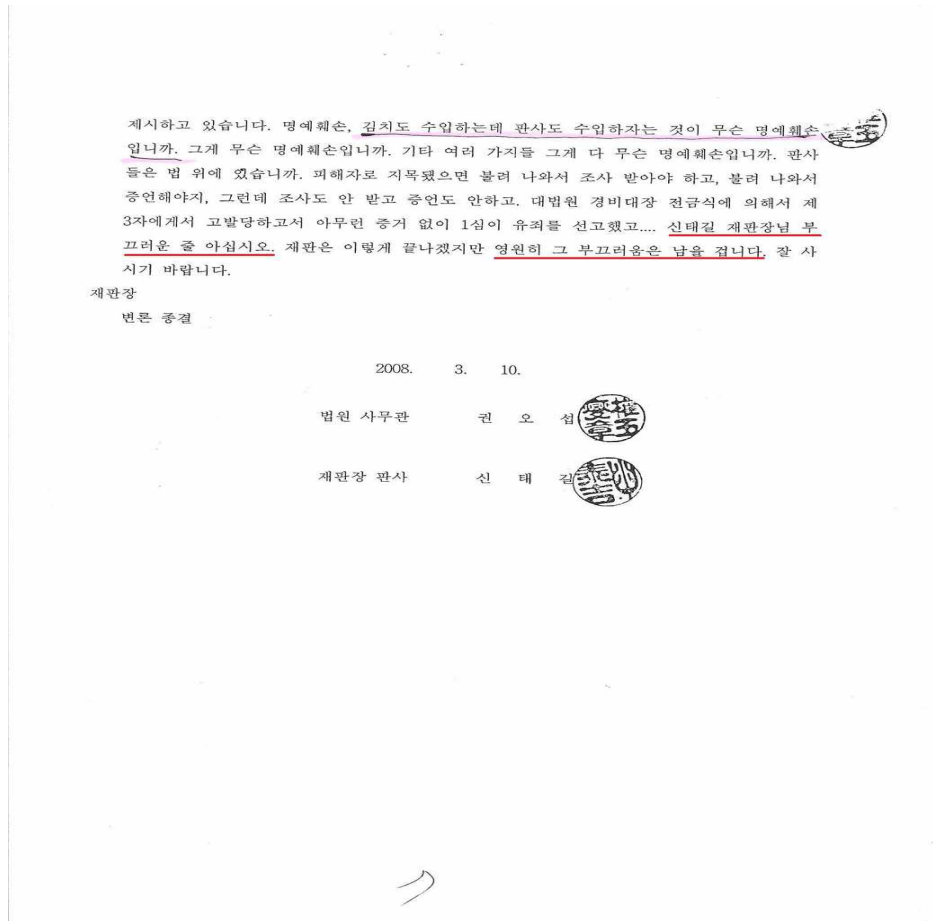
②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¹⁸¹ <뉴스시스> 서울지부 부사장

혈흔감정 신청기각, 소송지연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다. (참조: 서형작가의 부러진 화살)¹⁸²

이러한 신태길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위법행위를 인정해 주는 자살행위와 다를없기에, 필자는 재판거부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방청객들의 노성에 이어 조남숙씨가 계란 두어 개를 신태길을 향해 던졌고¹⁸³ 피고 퇴정!

필자의 퇴정에 기다렸다는 듯이, 신태길은 피고인없이 재판을 강행 하였다. 박훈 변호사의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신태길에게 부끄러워 할 줄 알라!는 박훈의 일갈

<국민적 감시·견제 장치인 방청석을 감치협박으로 탄압하는 판사들과 그를 호도하는 언론들>

¹⁸² 2007.1.19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2008.3.7일 전국 수석부장 판사회의에서 엄단하겠다고 결의한 바대로, 신태길은 증거조작에 의한 유죄선고 절차를 밟을 생각 밖에 없었던 것이다.

¹⁸³ 조남숙씨는 2007.3.21일 1심 재판에서도 몸자보 두르고 '김명호의 석공사건은 정당방위다. 구속취소 석방하라' 구호를 외쳤다.

2008.3.10일(항소심 5차 공판), 신태길에게 계란을 투척한 조관순씨는 감치 14일 받았다. 법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죄목으로 말이다.

2007.3.21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화살을 제출했을 때, 방청객 현준희씨가 ‘화살에 피가 묻었냐?’고 물었더니 판사가 감치하겠다고 하며 법정경위를 시켜 대기실에 유치시켰다가 혼방하였고. ‘구속사유가 뭐냐?’라고 물은 방청객도, 휴대폰 소리 낸 사람도 퇴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SBS에 ‘난동으로 3명 추방’이라는 자막뉴스로 나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조에 의하여, 국민은 언제든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하여 응징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국민이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을 질책한 것을 난동이라고 보도한 언론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질>

석궁재판 이후의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거치며 여러 재판테러범을 겪어보았지만, 신태길 처럼 막무가내는 겪지 못했다. 하지만, 김용호나 다른 판사들도 같은 상황에 처하면 별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

석궁사건 재판이 확정된 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혈흔검증의 민사사건이 기각되어 항소하게 되었는데¹⁸⁴. 첫 변론기일에 원주교도소가 출정시키지 않아 필자는 참석할 수 없었다. 소송 당사자가 첫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항소심 재판관이었던 서울고법의 민중기는 그것이 골치 아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던 같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에게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면서 원고인 필자에게는 최악의 진행인 선고기일을 잡고는, 선고 전에 제출한 필자의 ‘소송절차 중지’ 신청조차 묵살하며 기각시켰으니 말이다.

(아래 참조: 김춘기씨의 김교수 이지매 재판동정)//

<불구속 재판 원칙 위반은 곧 피고 방어권 묵살>

신태길의 재판테러에 퇴정하여 피고인 대기실에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는데, 박훈이 따라 들어오지 않는다. 알고 보니, 성동 구치소의 김진복 교감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왜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고 난리냐?며 한바탕 욕을 했더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 주면서 기분 나쁘단다.

그러고도 사실조회 신청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또 방해한다, 보고전에 휴대만 할 수 있고 제출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이유로. 구치소 교도관들 하는 일이라는 게 그저 이렇게 수용자들 권리를 묵살한다. 구속된 것만 해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데 보고전을 써야한다니 뭐니 하며 소송서류 제출 마저 마음대로 못하게 통제하며 방어권 행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

¹⁸⁴ 노정희가(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 1심 재판장이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민중기가(서울고법 2009나 103112) 담당하였었다.

(참조: 성동구치소의 보고전 1-----368)//

<인터넷 등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은 국민의 기본 권리>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재판실황에 대한 기록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한 신태길의 꼬락서니를 보면, 박홍우와 마찬가지로 신태길도 재판이 판사들만의 유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며 법원 도서관에 가면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요즘 같이 바쁘게 돌아가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법원 도서관까지 가야 한단 말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법원 도서관에 가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2006년도에 자주 법원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모든 판결문이 법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필자가 원하는 판례가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을 정도로 형편 없었다. 인터넷에서 정보 찾듯이 그냥 판례 검색 페이지에 가서 ‘사기’이라고 치면 ‘사기’ 관련 모든 판결문들이 올라와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말하는 공개는 사건번호를 알아내어 법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자기들 컴퓨터에 소장된 판결문을 복사해 준다는 것이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번호를 어떻게 알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대법원처럼 편하게 사기치고 돈 버는 기관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게다가 판결문 공개 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70%이상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5% 미만이란다. 얼마나 판결문이 영터리이면,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발버둥치는가를 상상해 보라. 필자가 훑어본 수백여편의 판결문 중 95%이상이 재판이었다.//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판사한테 자신에 대한 기피를 판단케 한다?>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동료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조는 ([민사소송법] 제46조) 명백하게 민주주의 원칙인 ‘감시와 견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항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 그 자신이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다. 어떻게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자신이 판단한다는 건가?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재판을 하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말이다.//

<역시나 만만하고 영양가 없는 법만 지키는 신태길의 위선적인 배려>

3.13일 선고일에 출정 거부했더니, 중요한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신태길이 ‘위선쇼’를 했다. 피고인의 불출석을 배려해서 선고기일을 하루 연기한 것이다. 실제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법 조문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사소한 법 조문을 지킨다며 국민들에게 이런 위선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역시 교수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형편 없어.

논문 발표 수가 많아졌고, 한국 대학의 랭킹이 세계적으로 올라갔다길래 좀 나아졌나 했는데, 법조계만큼이나 학계도 여전히 개판이었다. 신태일이 기각한 혈흔 감정신청을 필자의 구명대책위가 물리학회에 보냈더니 물리학회도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신 한 것이다. 96년도에 성대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에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세계적으로 망신살 뽐냈던 대한수학회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2007.12.7일자 기사 “‘오류 나왔을 때 바로 잡아야’ 물리학회 결단력 돋보여, ‘석궁 테러’ 불렀던 대한 수학회 대응과 대비”를 읽고 필자가 보낸 물리학적 판단 요청은 다음과 같다.

“조끼와 내복에 혈흔이 있을 경우, 그 사이에 끼워 입었던 와이셔츠에 생긴 화살 구멍근처에 혈흔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의 확률이 높은가?

가. 조끼, 와이셔츠, 내복의 혈흔의 (인위적) 조작 가능성

나. 화살 구멍 근처에 조끼와 내복에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와이셔츠에 피가 묻지 않은 것은 물리적인 자연 법칙에 따른 것.”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의 확률이 높으냐고 물었더니 물리학회장 김정구 교수는 똥판지같이 수사역량 운운하며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법인 한국물리학회

☎ 02-556-4737(대) FAX 02-554-1643

문서번호 물일거 2008-03-01호

시행일자 2008. 3. 11.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			공람		
	시간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상처의 피가 옷들에 순차적으로 배어 나오는 현상에 대하여

귀 단체에서 위 건으로 공개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과학수사 전문기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물리학회는 전문학술단체로서 수사 역량을 내부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공개질의에 대한 공식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회 장 김 정 구



수신처: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해직 교수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한국물리학회 회장 김정구의 답변 1

<전 한국고등과학원 원장과 한국 교수들의 학자적 양심 수준>

필자가 95년 성대입시 출제오류를 지적하고 해고된 사건에 대하여 당시 한국고등과학원 부원장이었던 명효철 교수가 ‘성대가 망할려고 환장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낸 사실조회에 대하여 명교수는 수학과 동기인 대한수학회 회장 주진구 교수에게 학회답게 회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주진구는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양승태가¹⁸⁵ 한국고등과학원으로 똑같은 사실조회를 보냈고, 당시 원장은 공석이었고 부원장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대한수학회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떠들던 명효철이 막상 자신의 일로 닥치니 묵묵담담으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예일대 Serge Lang, 영국 케임브릿지 M. Atiyah 교수 등이 필자 김명호를 지지하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명효철과 새 대한수학회 회장 연세대 장건수 교수에게 팩스까지 보냈는데도¹⁸⁶, 그들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¹⁸⁵ 기회주의자 이용훈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된 그 양승태다.

¹⁸⁶ 필자가 Atiyah와 Land 교수에게 팩스를 보냈다. 사실 명효철, 주진구, 장준철 등의 태도를 보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시도도 하지 않고 주저 않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평소의 신조 하에 보내게 된 것.

From SIR MICHAEL ATIYAH, O.M. F.R.S.

Telephone (01223) 338400
Direct Line (01223) 338417
Fax (01223) 338500



THE MASTER'S LODGE
TRINITY COLLEGE
CAMBRIDGE CB2 1TQ

6th May 1997

Taxed 1131

Fax message to

Professor Hyochul Myung
Vice-President
Korea Institute of Advanced Study

Dear Professor Myung,

I have just received disturbing information about the case of Dr Myung Ho Kim and his difficulties with Sungkyunkwan University where he was Assistant Professor of Mathematics.

I know from my contacts with Korean scientists the enormous strid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 and the efforts you are making to establish scientific contac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have supported such moves, particularly when I was President of the Royal Society.

In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standing and reputation of Korean science, it would be helpful if you could look into the merits of Dr Kim's case and give him the appropriate support.

Yours sincerely,

Michael Atiyah

Atiyah 교수가 명효철 교수에게 보낸 팩스 1

필자는 그 당시 한국과학기술원의 조장희 박사의 도움으로 연구실을 사용하며 수시로

조박사의 조언을 듣고 있었다. 명효철이 답변하지 아니하기에 조박사가 전화했더니, 명효철이 조박사의 연구실로 찾아와 답변해서는 안되는 이유 10가지 정도를 거론했다고 한다. 이것이 한국의 교수라는 인간들의 실체다. 누군가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70% 이상의 교수들이 명효철과 다름없다. 간단한 산수를 해보라. 당시 전국의 수학과 교수가 1000명이 넘었을 텐데, 성대입시 출제오류와 그를 지적한 필자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서명한 교수가 189명이었다. 그리고 필자의 동문인 서울대 수학과 교수 27명 중 서명한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

편하게 살겠다며 교수하겠다는 인간들이 줄 서있는 사회가 한국사회다. 선진국에서는 교수 시켜준다고 해도 그 전공을 좋아하지 못하면 견딜수 없는 분위기인데, 이 나라에서는 위선적인 똥품을 잡을 줄 알고 열심히 인맥만 만들면 얼마든지 버틸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으니, 너도 나도 교수질 하겠다고 나서는 거다.//

<대법원장 양승태에 대하여>

간 Deng이 얼마나 작은지 양승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할 인간이다. 70년대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것은 기본이고 필자의 '성대입시 부정 은폐' 피켓구호 무서워서, 수 개월간 대법원 정문으로 출근도 못했다. 돈은 어찌나 밝히는지, 1년에 재산을 2억 7천만원 불렀고(참조: 200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멍청한 인간들 헛갈리게 하는 교활한 위법 판결문을 써대는 능력이 탁월하다(예: 대법원 2006.3.9 선고, 2003재다262)

쓰레기 언론들은 그가 보수성향이라고 떠드는 모양이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저 권력과 돈에 맹종하고 국민 탄압과 착취에 앞장서며 수시로 법 위반 하는 전형적인 재판테러범에 불과하다.

양승태에 대한 인물평 중에서 '누구한테나 원만하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게 없다는 것과 통한다. 특히나 대법원장은 이 나라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그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는 것을 제재해야하는 자리다. 그런데 누구한테나 원만하다고? 좆대 없고 두리뭉실하고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았는가? 윗사람들이 까라는 대로 까는 인간이니, 결론은 그 윗사람들 눈에만 원만해 보이고 민초들에게는 천하의 죽일놈이라는 것이다.//

<학계까지 만연된 자신감 결여의 사회적 현상이 법조계의 권력을 키운다>

‘그래도 법원은 나올 것’이라는 국민의 미련 내지 착각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법원으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사건을 문외한 집단인¹⁸⁷ 법원으로 끌고

¹⁸⁷ 법원의 판사들이란 학계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결코 아니다. 살아가며 생기는 일반적인 일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은 사람들일 뿐이다. 물론 한국의 판사들 중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은 인간도 거의 없다.(참조: 위 <선진국 법률 전문가 vs 한국 법률 전문가>

들어와 인맥, 권력, 금력을 동원하여 승소하겠다는 사람들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제 역할 못하는 썩어 빠진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들에게 있다. 그들은 학문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¹⁸⁸ 그런 인간들이 똬들 제대로 하겠는가? 학문을 스포츠 육성하듯 교육·연구 정책을 결정하고 자빠져 있다. 노벨상을 올림픽 금메달로 알고 연구를 태능선수촌에서의 합숙 훈련쯤으로 알고 있는 미친 놈들이라는 거다. 그러니 나로호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세계적인 엘리트 학교인 프랑스의 에콜폴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e)은 장기적으로 기술 및 과학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나폴레옹이 만든 군사학교인데, 전황이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미래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없다’며 이 학교 학생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필자가 Rutgers University에 있을 때, Lawrence Shepp 교수의 연구실 벽에 한국으로부터 받은 언뜻 보기에 그럴듯한 명칭의 대한민국 국회 주관의 committee와 그 멤버들을 소개한 팸플렛이 붙어있었다. 자신이 그 멤버에 포함된 것이 자랑스러웠는지 Shepp는 그것을 벽에 붙여놓았던 것이었는데, 뒷면을 보니 영어로 된 그럴싸한 committee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한국말로 ‘노벨상 수상 추진 본부 위원회’라고 적혀있는 게 아닌가? Shepp에게 그 뜻을 알려 주었더니, 그 다음 날로 팸플렛이 벽에서 사라졌다.

독일은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하여 교육부를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이 바뀐다고 해서 교육이나 연구정책이 바뀌지는 않는다는데, 이 나라처럼 교육과 연구가 삼류 정치가의 손에서 돌아나는 환경에서 전문가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자연 전문성 없는 인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으니 어설픈 정치나 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 전문성도 없는 법원이 모든 일에 참견하게 되고 판단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4. **이흥훈 회심의 보복판결: 결과는 2007.1.19일자 전국 법원장 회의 결의 대로, 판결이유는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대로**

- (1)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뒷북이냐? 행동력 없는 ‘냄비근성’이 얼마나 가겠냐?

오늘의 유머라는 웹페이지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203161>에서
발견한 재미있고 정확한 표현,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국민은 썩은 사법부에 대해서 석궁 사격권을 가진다.”

¹⁸⁸ 예: 명효철 전 한국고등과학원 원장, 김정구(서울대) 전 한국물리학회 회장, 주진구(충남대) 장건수(연세대) 전 대한 수학회 회장 등

111 (2008-06-13 17:09:32) 추천:9/반대:1 IP:210.92.***.157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서 퍼온글
1.15 석궁의거....김 교수님 지지합니다.| 자유게시판
다시가자 조회 283 |추천 0 | 2007.01.16. 23:06

그간 지나온 과정을 보니 교수님 심정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왜 임시정부가 외교론 등에서 선회하여 나중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며 무장투쟁을 하였으며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혁명선언문' 에서 그렇게 폭력을 강조하셨는지...

역시 역사를 보더라도 **말로 안되면 마지막엔 폭력 밖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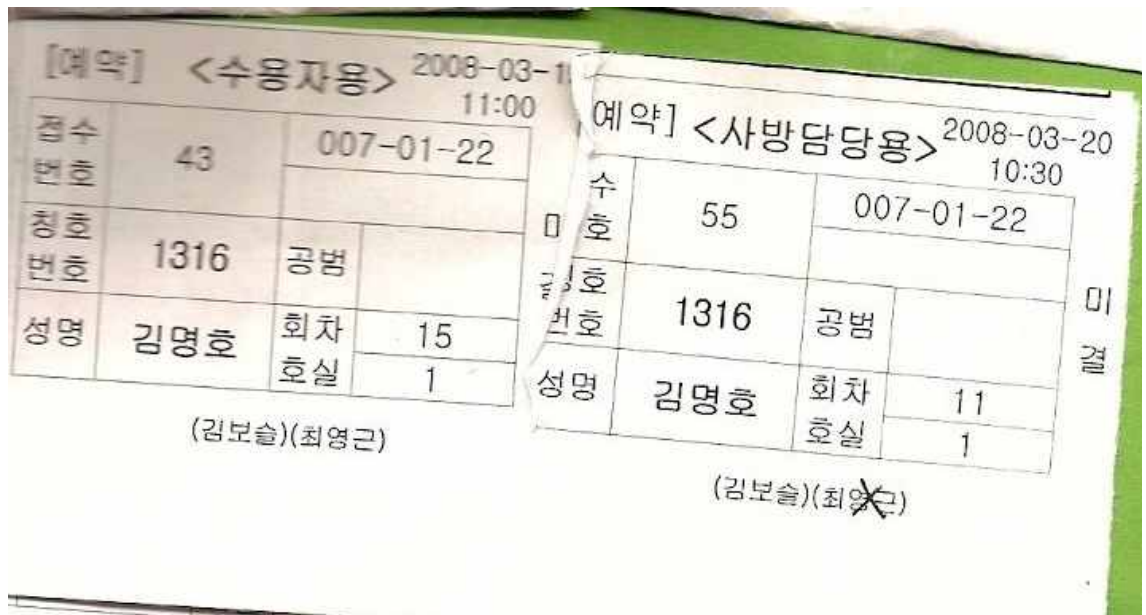
김교수님 힘내십시오. 멀리서나마 지지를 보냅니다.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사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조선혁명선언문 중) 혁명은 전쟁이요 폭동은 예술이다.’

① MBC <PD 수첩>의 석궁사건 증거조작 심층 보도

장재은 기자의 연속 보도에 왜곡 보도만 일삼던 다른 언론들도 뭔가 켕기는지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역시 영악한 조선일보가 선수를 쳤다. 항소심 판결 4일전
3.10일 조선일보가 ‘석궁 테러 증거 미스터리’라는 제목 하에 증거조작 사실을
보도하였고 뒤이어 3.25일 MBC <PD 수첩>이 증거조작 사실을 심층있게 보도했다.
2008.3.12일 김보슬과¹⁸⁹ 최영근 씨가 처음 면회왔을때 사법피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PD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¹⁸⁹ 광우병 보도하여 이명박정권으로부터 미움받아 결혼식을 앞두고 검찰에게 고초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신문기사로 알았다(‘광우병 보도 ‘<PD수첩> 김보슬 PD 체포’, 2009년 4월 16일, 한국일보).



교도소 접견표 1

3.19일, 20일에 두 번 더 만났고 ‘왜 하필 석궁을 들고 갔냐?’며 안타까와 했으나 석궁사건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¹⁹⁰

제작된 프로가 종종 외부 압력으로 방영되지 않는다기에 3.25일 방영되는지 궁금했었는데, 4.5일(토) 이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이산’을 보는 중에, ‘혈흔 없는 와이셔츠, 사라진 화살, 증거 조작설 의혹 증폭, 박홍우는 정말 석궁을 맞았나?’의 자막예고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정 교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응능력을 감퇴시키는 교정시설의 방송 편성>
수용자를 교정·교화 한다는 구치소 교도소에서는 정작 사회적응과 교화에 필요한 SBS <뉴스 추적>, MBC <PD 수첩>, KBS <시사 투나잇> 등의 시사프로그램들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모든 방송을 녹화하여 보여주다가, 수용자들의 성화로 2007년 후반인가부터 평일에는 SBS 8시 뉴스 생방송, 주말에는 KBS 12시 뉴스를 생방송으로 1년여 보여주었다. 헌데 2008.5.23일(토)에는 12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오후 1:35-2:05 운동시간에 만난 전군표씨가 ‘새벽에 노무현 죽은 거 아느냐’고 묻는다. ‘예?’ 법무부 교정국에서 생방송 뉴스를 막아버린 것, 그 다음날 12시 뉴스 역시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더니 기어이 생방송 뉴스를 전부 없애 버리고 2010년 9월 경부터 KBS 12시 뉴스를 녹화 편집해서 저녁 5:30분 경에 내보내고 있었다. 사람의 눈과 귀를 막고서 무슨 얼어 죽을 교정 교화라고? 사람을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범죄 양성소지.

¹⁹⁰ 박훈도 첫 만남에서 각목이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가지 그랬냐고 했었지만. ‘공공의 적’인 법원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인 석궁시위를 김보슬 PD 역시 판결 불만의 보복행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매주 영화 비디오를 틀어 주는데, 교정 교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폭력 등 오락 영화다. (예: Forbidden Kingdom, Doomsday, Fool's gold, 장강 7호, Iron Man, Hancock, 미이라3, Taken, 화피 등) //

<구치소 교도소의 면회 내용 위법 청취 및 녹음>

필자의 구치소, 교도소 면회 중에는 항상 교도관들이 [형집행법] 제41조의 단서조항을 위반하고 면회 내용을 청취, 기재하여 검찰 법원 등에게 보고하였다. 면회 신청자가 기자라는 것을 알면,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신청하라고 하기 때문에 김보슬씨도 기자임을 밝히지 않았던 듯하다¹⁹¹.

한명숙씨 재판에서 건설업자 한만호씨의 교도소 면회 녹취록이 쟁점이 되었는데, 교도소 면회시, '접견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전 고지' 와 '왜 녹음하는가에 대한 적법한 소명'없이 접견내용을 청취 내지 녹음할 수 없도록 [형집행법] 제41조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조문을 위반하는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의하여 위법수집된 것이기에 유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교도소는 뻔뻔하게 그 위법한 녹취록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한다.

법 집행한다는 검찰, 법원에서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힘없는 민초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다,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면서.//

② 해도 너무한 증거조작 재판에 분노한 교수들

너무나도 뻔한 증거조작을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하는 1심, 2심의 재판부를 보고 '김명호 구명 대책위'의 교수들이 분노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과), 강내희 교수(중앙대 영문학과) 주도 하에 약 한 달 간 6.12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고

¹⁹¹ 2007.2.15일 성동구치소의 고충처리반 교감이 필자에게 윤창현씨에 대하여 이것 저것 물는데, 그 전날 방송된 SBS <뉴스추적> '전직 교수 김명호 석궁사건의 진실은' 프로에 필자의 접견하는 모습이 찍혀서 구치소에 난리가 났었다는 거다. 뉴시스 기자인 오모씨 말에 의하면, 접견오는 부하 기자들이 구치소에게 거실 방의 사진 좀 찍자고 했더니 구치소에서 오모씨에게 뭐가 부족하냐며 제발 사진만은 안된다며 사정 사정 했다.



김세균 교수의 대법원 정문 시위 1

2008년 5월 30일에는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는 제목의 토론회가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개최되어 고영남 교수(인제대 법학과), 박훈 변호사, 최정학 교수(방송 통신 대 법학과), 최강희 변호사, 강내희 교수가 발표하였다. 전국 법원장 회의(2007.1.19일), 전국 수석부장 판사회의(2008.3.7일)¹⁹² 등에서 보여준 대법원의 의지를 좌절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사법역사상 교수들이 법원의 판결에 이 정도로까지 저항했던 일도 없었다.

<석궁사건 재판의 성격을 정의한 강내희 교수>

‘김명호는 옳은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하였기에,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언론·학계 한국사회 지배불록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석궁 사건에서의 증거 조작 재판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이었다’(강내희 교수의 ‘김명호 교수의 재판결과를 보고’에서)//

<대중의 어리석음을 악용하는 대법원>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 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¹⁹²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

믿게 된다¹⁹³.";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 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 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 하다"라며,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대중을 선동한 독일 나찌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말했듯이 대중은 어리석다.

2006년에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이용훈이 ‘검찰의 조서를 내던져라’, ‘변호사는 거짓말장이다’라고 한 것도 대중의 어리석음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 이후 법원은 재정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을 대폭 이양받았던 것이다. (주: [검찰청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재정신청 사건을 확대하였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반대 급부를 얻기는 하였다.)

대법원은 괴벨스의 전략으로 석궁사건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하여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MBC <PD 수첩>, SBS <뉴스추적>,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에 의한 증거조작보도가 있었음에도 국민의 대다수가 석궁사건을 ‘테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 (2)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였던가? 딴 애들은 만나주기만 해도 황송해 했는데, 뽀뽀하게 굴고 피켓구호로 망신까지 준 김명호!

필자가 이홍훈을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되어서 였다. 당시 법원 주위에 이홍훈이 대법관을 노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9월에 취임하자마자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표방하며 ‘꿀뚜기’ 이용훈이 설쳐대니, 대법관을 바라보는 ‘망둥이’ 이홍훈도 뭔가 보여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이었던 거다¹⁹⁴. 그래서 이홍훈이 벌인 일이 서울 중앙지법 주변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한마디씩 해주는 은총을(?) 베푼 것이다. 그 위선을 까발린 이홍훈과 필자의 면담에 대한 기록이다.

(2005.12.29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의 면담(오후 1시 10분 경 부터 약 15분간)

사무국장과 박만호 총무과 직원 참석.

한마디로 내용없는 시간낭비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는 없고 자기집 앞마당에서 시위하는 것이눈에거슬리는가보다.

2006년에 대법관이 되기 위한 언론플레이만 관심있는 듯.

¹⁹³ 중국 고사성어에 세사람이 작당하여 시내에 범이 나왔다고 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의 ‘삼인성시호’ 가 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혁명가 당통은 ‘공론은 창녀이고 후세는 백치다’라고 하였다.

¹⁹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다.([헌법] 제104조)

=====

이홍훈: 지난 11월에 부임해서 보니 추운 데 나와서 1인 시위하던데 얘기 좀 해보자

김: 시위하는 목적은 법을 위반하고 소송 지휘한 이혁우 판사의 징계요구다

이홍훈: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니 간섭하기 어렵고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지킨다.

김: 이혁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양심도 팔고 법도 어긴 것이 보이는데, 그런 소리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판사들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다. 이혁우 판결문에 대하여 공청회라도 열고 법리 논쟁해 보자

이홍훈: 글썄? 판사들이 법대로 하는데¹⁹⁵ 간혹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고 거기에서도 불만스러우면 대법원에 가는 3심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 제도다. 이미 우리 지법에서는 끝났는데, 1인 시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김: 1심은 끝났다. 그러나 판사들이 그렇게 엉터리 판결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 스스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는가? 결국 국민이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1인 시위하는 것이다. 나는 교수의 고유 권한인 학점부여로 인해 정직3개월을 받고 재임용도 탈락되었다. 판사는 무소불위냐? 법을 어기는 것도 판사의 고유권한이냐? 판사가 법 위에 있냐? 도대체 왜 이혁우 판사 징계하지 않는가?

이홍훈: 그건 대법원에서 하는 거다.

김: 그러면 법원장으로서 (징계)건의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요즘 사법개혁 한다며 말도 많고, 얼마 전 법원장께서 법정에 참관인으로 들어갔다는 기사도 읽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판사 한 두 명만 징계해 보라. 사법개혁이 확실히 된다.

사무국장: 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고발해라. 왜 안하냐?

김: 나더러 또 검찰과 싱강이 하라는 소리냐? 여기서 1인 시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주: 뱅뱅이 돌리는 수작. 검찰, 법원이 서로 봐주는데... 더군다나 이혁우는 "검찰 끼워 맞추기 수사도 적법"¹⁹⁶)이라는 판결로 유명한 판사인데...)

이홍훈: 추운데 고생하고 있는게 안타깝다. 생업도 있을텐데...

김: 다른 생업 없다. 1인 시위하는 것이 내 생업이다.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전부다. 여기 <서울대 대학신문>에 나왔듯이 이혁우 판사 징계하라고 시위한다.

이홍훈: 그러냐? 언제 기사냐?

김: 11월 7일에 나온 기사다.

이홍훈: 추운데 고생한다.

김: 걱정 마라. 계속 고생할 거다.

혹시나 했는데 만나고 나니 역시 뒷끝이 개운치 않았다. 이홍훈은 한 건 올렸다고

¹⁹⁵ 이것들은 그저 입으로만 법대로 재판한다고 거짓말 한다.

¹⁹⁶ '검찰 끼워맞추기 수사도 적법', 헤럴드경제 사회 2004.04.09 (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¹⁹⁷. 하여, 2006년 1월 2일에 피켓 구호를 ‘이홍훈 법원장님, 공공의 적 (지법 민사 23부)이혁우 감싸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입니까?’로 바꾸고 시위하고 있었다.



이홍훈, 이혁우 비난 구호

헌데, 새해 시무식 후 이혁우를 포함한 판사들을 데리고 점심 먹으러 나가는 이홍훈이 피켓구호를 보더니 당황하며

(2006.1.2일자 대법원 규탄일지에서)

이홍훈: 오늘도 나오셨네요?
 김:네(꾸뻏 인사)
 지나가던 사람: (‘이홍훈’ 글자를 가르치며)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
 김: ‘뭐가 너무한가요?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피켓 구호를 보고 눈에 띄게 당황한 이혁우 판사가 신호등 바뀌기 기다리며 이홍훈 법원장

¹⁹⁷ 필자가 2005년인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간 적이 있었다. 조연을 얻으려고 갔었는데 피곤한 표정의 상담 변호사는 필자가 이미 알고 있는 말만 하였다. 좀더 파고 들으니 성의없는 답을 하고는 다음 상담자를 받았으면 하는 표정이 역력하였다. 거기서 알았다, 이들은 여기 와서 상담하였다는 것과 몇 명을 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완전 껌데기만 있는 제도가 깔려있다, 법무(無)부, 사법부(死法)부라는 말이 왜 나돌겠는가?

옆에 찰싹 붙어서 뭔가 열심히 속삭인다.

이용훈에 대하여, 안기부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해온 이기적인 성품의 보신주의적 인사’(‘안기부, 말 안듣는 대법관 옷 벗기기’, 경향신문 2007.10.25)라고 평가하였고, 장기표는 ‘군사독재시절에는 순응해서 출세하고 민주시대에는 민주세력에 아첨해서 출세하니 어찌 기회주의의 전형이 아닐 수 있겠느냐’면서 “자기 챙겨먹을 것 다 챙겨먹고 옳은 말은 골라 하려고 한다’라고 평했다 한다. 이런 인간이 대법관이라고 추천한 이홍훈이 어떤 사람일지는 뻔하지 않은가? 유유상종.

<편가르기 잣대로 씹어대는 한국 정서>

이 땅에는 자기들 맘에 안들면 아무 이유없이 좌파니 빨갱이니 하며 떠들어 제끼는 인간들이 있다. 논리도 없고 말도 안 통한다.

노무현이 이용훈을 임명했다고 좌파니 뭐니하며,,, 이용훈이 좌파? 그 좌파가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홍훈을 임명했는데? 제발 좌파니 뭐니 웃기는 소리 그만 해라. 노무현은 입만 까진 무능한 대통령이었고, 이용훈, 이홍훈은 기회주의적 위선자였을 따름이다¹⁹⁸.

니 편이니 내 편이냐 또는 자기에게 불리 하나 유리하냐로 판단하지 마라. 공사 구별하라는 말도 모르냐? 판사를 평가할 때는 법에 의한 명 판결들을 얼마나 내렸는지로 판단해라.

미국 매릴랜드대 정치학과 프레드 앨퍼드(C. Fred Alford) 교수가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 악의 실체가 존재하는데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악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악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듯이, 한국인의 판단기준이 엉망인 것은 사회의 기본 틀을 만드는 신상필벌의 대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엄벌하여야 할 곳에서 관용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곳에서 엄벌하는 사회, ‘괘씸죄’,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기준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법치국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출세하라니? 권력을 잡든지 돈을 벌어서 법을 위반하는 위치에 올라가라는 얘기 아닌가? 아주 대놓고 법을 묵살하라고 권장하는 사회다. 또 있다. ‘학교 우등생이 사회에 나가면 열등생이 된다’고?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거다. 공부한 것은 모두 헛 일이고 사기나 쳐야 된다는 얘기가.//

<‘법관 징계는 대법원이 한다’면서 건의를 거부한 이홍훈의 태도에 대하여>

¹⁹⁸ 한나라 시대의 왕망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위선적인 행위로 황제까지 올라 ‘신’이라는 나라까지 세운 인물이다, 얼마 안가 망했지만.

공무원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상급자에게 미룬다. 그래서 건의는 해 보았냐고 물으면 당연히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건의하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필자가 의정부 교도소에 있을 당시, 자주 얘기를 나눈 교도관이 있었다. 석궁사건 증거조작의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 사진과 토론회 책자,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 재조명한다’ 를 빌려 주었는데, 돌려 주며 그 교도관 하는 말이 부인인 경찰관에게 이것들을 보여주며 ‘송파경찰서가 혈흔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부에 시정 건의하는 게 어떠냐’고 했단다.(* 시정건의가 채택될 경우, 승진 고과점수에 반영된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부인 왈, ‘이런 거 건의했다가는 고과 점수 반영은 커녕 찍힌다’고.//

(3) 권력에 아부하고 국민에게는 위선 떠는 게 내 장기야!

실태길과 차원이 다른 위선으로 무장한 이홍훈에게 넘어간 멍청한 사람들 참 많다. 필자의 ‘대법원 규탄일지’ 중 2006.1.27일자에 보듯이 위선자를 떠발드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그런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나가던 60여세 되어보이는 사람이 피켓 구호, ‘이홍훈 법원장님, 공공의 적 (지법 민사 23부) 이혁우 감싸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입니까?’의 ‘이홍훈’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이홍원 법원장과 이혁우가 어떻게 관계있냐고 따진다.
행인:"이홍훈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8천만원 짜리 전세에 산다. 그만큼 결백하다는 거다."
나:"누가 결백하지 않다고 했나? 그리고 결백은 판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지법 판사들을 제대로 감독 관리하지 않은 것은, 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다."
행인:"양심과 법률에 따라... 어찌구 저찌구"
나:"양심 팔고 법도 어기는, 그런 판사 처벌하지 않고도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냐?
행인:"여하튼 이홍훈 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존경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알아서 맘대로 해라."

<판단기준이 뒤죽박죽인 사회>

2011.6.1일 이홍훈이 은퇴하며 전관예우 금지법을 자신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판사로서 ‘법을 지키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무슨 자랑이나 하듯이 말한다. 그동안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재판을 해 왔길래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을까?¹⁹⁹.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언론들이 다투어 이를 보도했고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손학규씨는 검찰 개혁관련 공청회에서 똥똥지같이 “이홍훈 대법관, 정말 깨끗하고 올곧게 산 친구”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다.

‘전관예우 금지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건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요란을 떠는가? 이홍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판사로서 내린 판결문들로 평가해라, 석궁사건을 어떻게 판결하였는지를 그리고 유신시대에 어떻게 처신했는지를.(참조: 과거사위 보고서에 나온 전현직 법관 판결 내용 및 반응표²⁰⁰)

판사란 판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와 관계없는 봉사 활동이니²⁰¹ 뭐니 개수작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를 패소시킨 보충사유로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를 언급한 이정렬은 여론에 두들겨 맞았다. 그런데도 이홍훈의 이런 발언이 나오고 그에 장단 맞춰 춤추는 언론의 꼬락서니를 보면, 법원, 언론, 정치인들 할 것없이 이 사회의 판단기준은 완전히 개판이라는 것이다.

이러다가 도둑도 경찰한테 들켰을 때 도둑질한 물건을 돌려주면 칭찬받고 언론들이 서로 경쟁 보도하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다.²⁰²//

<전관예우에 대하여>

‘전관예우’란 글자 그대로 보면 선배를 대우한다는 건데 뭐가 나쁜가? 선배가 법리에 능통한 변론을 해서 승소한다면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다.

시중에 떠도는 전관예우의 정확한 정의는 ‘선배 판사가 변호사가 되어 수임한 사건은 후배 판사들이 법리고 뭐고 없이 무조건 위법하게 승소시킨다’는 것이다. 선배 판사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위법하게 승소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잘못 사용되고 있다. 돈이 있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¹⁹⁹ 판사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가 ‘법전에 있는 조문대로 재판할 것을 맹세할 수 있나?’고 물었을 때 김용호가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당연한 말이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 필자가 누누히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고시 붙은 순간 법을 위반하는 면허를 딴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²⁰⁰ ‘대법원 법조계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오’,(중앙일보, 2007.2.1)에 삽입된 표

²⁰¹ 이홍훈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사회복지 시설 방문했다며 신문에서 칭찬하고 난리를 떨었다(‘이홍훈 대법원장 열린 행보 눈길’, 경향신문 2005.12.6). 웃기는 이홍훈에 웃기는 기자들이다. 이 사회에는 자신의 일은 개판으로 하는 인간들이 꼭 주변잡기에 열을 올리고 그 주변잡기로 칭찬받는다. 자신의 직무인 ‘판사들이 법 대로 판결하는 가를 감독’하는 일에 충실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하라는 거다.

²⁰² 코메디 퀴즈 프로에서 다른 경쟁자가 뭔가 하겠다고 버저 열심히 누르다가 점수 깎아 먹어 단 한번도 버저를 누르지 않고 앉아만 있던 구봉서씨가 우승하는 우스개 한 토막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한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본만 지키면 칭찬 받는 웃기는 사회 그 짝이다.

승소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돈이 없어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법리를 몰라 패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이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철저히 법리로 승패가 결정되는 장소다. 문제는 판사들이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와의 연출만으로 위법하게 승소시킨다는 것이다.

필자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1인 시위할 때(2005.7.18- 2007.1.5), 법원 경비들과 대부분 친하게 지냈는데, 그들이 한 말이다.

‘여기 판사들 말야, 변호사 차 타고 나갔다가 점심 먹고 들어올 때면 낫술 처먹어서 얼굴 벌건 판사새끼들 많아’//

(4) 역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오니까 나를 비난하는 언론은 없잖아²⁰³.

필자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이홍훈이 석궁사건의 주심을 맡았으니 판결은 보나마나였다. 필자의 혈흔 검증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언급없이 김용호, 신태길이 쓴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

“변호인은 압수된 물품 중에서 피해자의 몸에 박혔다고 주장하는 부러진 화살 1개가 증발하는 등²⁰⁴ 증거물이 조작돼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일부러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없어 이를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²⁰⁵ 이 경우 나머지 증거물로 판단하면 된다²⁰⁶”, “속옷과 내의에는 복부 부위에 다량의 출혈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되지만 조끼에는 육안으로 혈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량의 흔적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그런데도,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 의혹 하나도 풀지 못해’라는 제목을 뽑은 인터넷 신문 <로이슈>와 그를 받아 쓴 <브레이크 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론들은 ‘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만 내보냈을 뿐 대법원의 범죄적인

²⁰³ 대법원 놈들이 어떻게 기자들을 구워 삶았을 까? 궁금하다. 1996년에 만난 한국일보 조모기자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성대에서 동대문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뭔가 제공했다고.(*성대가 명륜동에 있으니 동대문 경찰서 출입기자들이 성대관련 기사들을 담당한다.)

²⁰⁴ 증발한 것이 아니라, 끝이 뭉툭하고 날개 깃이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했다.

²⁰⁵ 뭉툭한 화살을 제시했다가는 당장에 ‘복부에 박혔었다’는 박홍우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기에 바꿔치기 한 것이다.

²⁰⁶ 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운 말인가? 조작이 확실한 증거들을 제외하고 조작을 증명하기 어려운 증거들은 모두 유죄증거로 삼겠다는 이 말!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증거조작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말이다²⁰⁷.

대법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한 후, 박훈 변호사는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낯술을 마셨단다. 그 전날 이미 대법원의 판결을 예상했는지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가 전화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울먹였단다.

(참조: 2008.6.14일자 박훈의 인터넷 서신 369)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법원은 언론에 끊임없는 영향력을 가해 석궁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였다. 그 정황 증거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연합뉴스와 오마이뉴스의 추광규 기자의 보도이외에 한국일보가 검경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檢 '석궁테러' 살인미수 아닌 상해혐의 기소, 경찰 '짜맞추기 수사' 논란”(2007.2.9), “경찰, 혈흔 등 물증 못 찾은 채 석궁 테러=살인미수 몰아세웠다”(2007.9.6), “경찰, 석궁테러 엉뚱한 해명”(2007.9.7), ‘석궁테러’... ‘증거주의’ 어긋난 판결 논란, 화살 맞은 셔츠에 혈흔 없지만 증거조작 아니다?”(2007.10.15) 등을 내 보냈었지만, 정작 중요한 박홍우 증언에 대한 보도는 외면했고, 그나마 파고들었던 박상준 기자는 중간에 다른 부서로 전보 되었다.

<전보관련 하여 생각나는 일화>

성대에서 해고된 후, 1996년 5월에 고교 동기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의 소개로 경실련에 도움을 청하러 간 적이 있었다.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여직원이 필자의 사건을 맡아 열성적으로 성대 수학과에게 사실확인 등을 하고 성대 수학과 교수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들었다. 한번은, 필자가 잠시 서울에 없는 사이에 이 인간들이 경실련에 무더기로 몰려가 수학기문제에 오류가 없다며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의했단다. 돌아온 필자가 당장 하자고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고 뭉갸다. 어찌되었건 경실련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 보나 싶었는데 얼마 후부터 수시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던 그 여직원의 연락이 뜸해지는게 아닌가? 알아보니, 그 직원의 근무부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 후임인 남자직원이 심드렁하게 일을 하더니만 경실련의 개입은 흐지부지 되어 버렸는데, 그 당시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이 양대석이었다. 바로 김현철²⁰⁸ 비디오 사건에 연루된 그 사람이²⁰⁹ 끼어 있으니 안되는 게 당연했다.

필자가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게 성대입시 부정에 대하여 얘기한 것은 ‘

²⁰⁷ 성동구치소에서 만났던 뉴시스 기자 오모씨에 의하면, 기자들 모임에서 증거조작에 대하여 대법원 놈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석궁사건에 대하여 다같이 합심하여 터뜨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한다.

²⁰⁸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 아들

²⁰⁹ 참조: ‘한국 현대사 산책’ 1990년 대편 3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던 것. 더 기막힌 것은 초기에 '성대 놈들 나쁜 놈들이라며 혼내주어야 한다'고 흥분했던 홍준형도 점차 태도가 변하더니, 필자에게 '너, 왜 그렇게 사니?'하고는 끝이었다.//

<만만한 것들에만 분노하는 사람들>

1996년 부교수 승진거부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법 95가합96142, 부교수 지위확인)에서 필자의 수학과 동기인 서울대 계승혁 교수가 수학과 교수들 189명의 서명과 관련하여 5.10일 증언하였다. 증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교수가 지하철에서 하는 말이, "며칠 전 성대 이우영 교수로부터 전화왔는데, 'YTN 정재훈 기자가 계승혁 교수를 인터뷰하러 간다고 들었다'²¹⁰. 내가 이미 입시문제 오류를 인정했으니 이야기를 잘 해 달라더라'고 했다. 그런데 이우영 교수도 참 답답하다. 그걸 일단 무조건 부인했어야지. 인정하면 어떡해". 당시의 필자에게는 충격적인 말이라 어안이 병병했었다. 필자를 구명하겠다고 서명을 주도했던 인간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그때 확실하게 알았다, 계승혁이 만만한 것에만 정의를 찾고 정작 중요한 곳에서는 공무니를 빼는 인간이라는 것을.

당시에 이인석, 김현광, 이경호, 필자 등이 모여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 서명받는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계승혁으로서는 분위기상 공무니를 뺄 수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전국 44개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에는 계승혁의 역할이 컸었다. 하지만, 막상 일이 진행되어 예상을 훨씬 넘는 교수들이 서명하니 계승혁은 은근하게 그 기세를 꺾은 것이다.

1996년 당시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27명이었는데, 젊은 교수 9명(강정혁, 계승혁, 김창호, 김홍중, 신동우, 이인석, 조영현, 지동표, 최서영) 외에 나이든 교수들은 서명하지 않았다²¹¹. 계승혁은 원로교수들의 눈치를 살핌과 동시에 이우영 교수를 통해 성대를 안심시키는 짓을 한 것이다.

시사인의 김은남 편집장이 '왜 만만한 것에만 분노하나?'라고 개탄하였듯이, 불행하게도 이 사회의 주류가 계승혁 같은 인간들이다.²¹²//

<법원이 사법피해자들을 우습게 보는 이유>

경실련 국장 양대석과 관련된 비뇨기과 의사 박모씨(익명)가 있다. 석궁사건 초기에 자기도 사법피해자라며 필자를 돕겠다며 성동구치소로 면회를 2번 정도 왔었는데 가족과 카페지기 현종석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café.daum.net/henrythegreatgod 카페지기가 되었다. 그리고는 한다는 짓이

²¹⁰ 실상은 계승혁을 먼저 하고 이우영을 나중에 인터뷰 했는데, 그 때 이우영이 하도 입시문제오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해대길래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정재훈 기자가 둘러댄 것이라고 말했다.

²¹¹ 필자가 시사인 183호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 원로 교수들이 반대했으면 성대에서 감히 필자를 해임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서울대 수학과는 성대가 필자 해고하는 범죄행위를 동조 내지 묵인한 것이다.

²¹²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이용훈을 고소할 때 교수들이 도망간 사건을 상기하라

필자의 흠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는 대법원에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라는 법원 앞 시위는 하지 아니하고, 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홍우 집과 박홍우가 다니는 절 앞에서 시위하며 석궁사건을 필자와 박홍우간의 개인문제로 축소시키고, 필자의 가족들에게 필자를 정신병자로 진단받게 하여 형량 줄이자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질 않나, ‘김명호 심신이 허약하니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다. 카페지기를 그만 두라니까 거부하며 후원금도 떼어먹었다.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옛말 그대로다. 어떤 인간은 필자를 위해 일하겠다고 박홍우 집 앞에서 시위한다면서, 술 먹고 취해서 누워있었다. 이런 인간들이 사법개혁, 사회정의 운운하며 법원 주위를 떠돌고 있으니 대법원 놈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는가? 사법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 십만 많게는 수 백만명인데도 대법원이 저렇게 방자하게 법을 위반하면서도 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사법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III. 대법원에 맹종하는 판사들의 혈흔 검증거부 일지

‘조끼와 내복에는 있는 혈흔이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에 없는 것은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사들은(주심 이홍훈, 재판장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지결여 댔다. 이홍훈이 징역 4년의 확정 선고를 하자마자, 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증거 신청대상은 오직 하나, 혈흔 검증이었다. 과연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이 박홍우의 피가 아니라는 검증 결과 앞에서도 조작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쟁점이 여럿인 경우, 재판테러범들은 패소시킬 당사자의 핵심적인 쟁점은 언급하지 않거나 얼렁뚱땅 넘어가고 가장 취약한 쟁점에 대하여 횡설수설하여 패소시키다. 이에 대응으로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패소시킬 당사자의 증거물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도록 증거신청을 이유없이 기각시키고 ‘증거 불충분’이라며 패소시키려는 재판테러범들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받아들일도록 만들어진 강제 규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을 견제·처벌할 법조문이 없다는 것을 악용, 어떻게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 검증신청을 거부하는가를 독자들은 목격할 것이다. 그리고 판사가 법을 위반하며 소송지휘할 경우, 소송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을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1. 박상길: 김명호에게 존경한다고 하는 방청객들은 뭐야?

필자는 김용호, 신태길, 이홍훈으로 이어진 재판테러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별로 달라질 것 없다고 판단했지만, 증거조작의 핵심인 혈흔검증을 지속적인 논란거리로 만들기 위해 손해배상 10원 짜리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그 소송의 담당판사가 박상길이었는데(서울중앙지법 2008가소163612), 재판 10분 만에 본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은 박상길이 필자와 방청객을 구박하는 상황을 묘사한 서형 작가의 방청기록 중 일부다(2008년 9월 4일 오후 2시부터 약 10분간).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제출한 청구이유를 보충하거나 부연설명할 게 있으면 변론해 보세요.
 △**(김명호)** 아, 그것은 제가 준비서면에서 썼듯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 것이고, 일단 제가 8월 27일 쓴 거였는데 9월 1일자로 제출됐더군요. 준비서면에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 두 가지를 썼습니다. 대법원 2008도2621(주심 이홍훈) 석궁사건은 의혹이 아닌 100% 증거조작사건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채택된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부러진 화살과 바뀌치기한 멀쩡한 정상화살에 대해서인데요. 이걸 국과수 혈흔감정을 받고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채택하도록 만든 검사 백재명의 행위가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죄, [형법] 제155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를 판사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석궁사건에서 검증도 없이 증거채택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 혈액에 대한 유전자 비교 감정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제3기관에 요청하고, 두 번째는 부러진 화살과 바뀌치기한 검사 백재명의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를 피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민사소송법] 제200조와 201조에 따라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길 재판장)** 변론 끝났습니까?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략)

-**(박상길 재판장)** 재판 끝났습니다. 재판 끝났어요!

.....(중략)

-**(박상길 재판장, 속기사에게)** 속기 이제부터 안 해도 되요

△**(김명호)** 법대로 해주세요. 무조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박상길 재판장)** 민사소송법을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김명호)** 민사소송법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박상길 재판장)** 호송경관! 원고를 다시 데려가세요²¹³.

호송경관이 김명호 교수를 데려가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립자세를 취했다. 몇몇은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광경에 재판장은,

-**(박상길 재판장)**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방청석)** 방청하려고 왔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방청석, 어이없는 듯)** 우리는 그냥 방청하러 왔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끝났으니깐 돌아가세요. (방청석에서, 방청하는 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나며

²¹³ 필자는 당시에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항의하자 단호하게) 다음부터 이러면 방청을 제한할 수 있어요!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끝)

<승패를 정해놓고 소송지휘하는 재판테러범들>

공판 중심주의란 법정에서의 논리적인 공격, 방어 진술이다. 그런데 박상길은 피고 측이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라고 하는 데도 그냥 넘어간다. 필자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박홍우가 ‘판결문에 있으니 참조해라’는 답변을 김용호가 ‘답변한 거다’라고 하더니, 박상길도 이 모양이다.

시험에서 ‘책과 노트에 답있다’라고 쓰면 점수를 받는가? 사법시험에서 ‘법전에 답있다’라고 하면 합격인가? 박상길, 박홍우, 김용호으로부터 발견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판사는 승소시킬 당사자가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상투적인 진술을 해도 지적비판없이 다 넘어간다는 것이다. 반대로 패소시킬 당사자가 같은 식으로 진술하면 ‘소명이 부족하다’느니 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시킨다.

‘민사소송법을 읽어 보라’는 무책임한 말도 같은 맥락이다. 정확히 어떤 법조항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한다. 안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다. 이렇듯 재판테러범들은 승패를 결정해 놓고 그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을 구박하거나 감싸준다²¹⁴. //

2. 지영철: ‘혈흔검증을 명령할 수 없다’는 판례까지 위조했는데도 속지 않네

손해 배상액을 1억 5천만원으로 올리고²¹⁵ 만난 판사가 지영철, 노정희(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 지영철은 재판은 열지않고 필자를 탐색하듯 석명준비명령을 두 번씩이나 했다. 어떻게 하든 [민사소송법] 제290조를 피하고 혈흔 검증을 하지 않으려는 수작이었다.

십 수차례의 기일 지정서를 묵살하고 필자의 송달료나 낭비하는 쓰레기 석명준비명령이나 보내며 흠집이나 잡으려고 한 것이다. 바로 박홍우가 서울고법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에서 필자에게 사용했던 그 재판테러 수법이다.²¹⁶ 다음은 지영철이 담당했던 기간 동안의 대법원의 사건검색 기록이다.

²¹⁴ 예외없는 규칙이 없다는 말처럼 여기도 예외는 있다. 판사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상대방 변호사를 야단을 치길래 ‘이 재판을 이기겠구나’ 했는데 판결문에서는 패소했다는 해직교수들이 많다. 애기인즉 판사들이 승소대가의 향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듯 싶다.

²¹⁵ 인지대는 손해배상액에 비례한다. 필자가 10원짜리 배상청구한 이유는 법원의 배만 불려줄 인지대만 더 내는 결과가 뻔하였기 때문인데 박훈 변호사가 손해배상은 1억 5천만원 정도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결국은 필자의 예상대로...

²¹⁶ 박홍우는 쓰레기 석명준비명령에 의한 정신적인 고문과 함께 송달료를 낭비하고는 추납요구의 지분거림으로 일석이조의 고문을 가했다.

2008.10.02 접수
2008.10.10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0.10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0.1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촉탁신청 제출
2008.10.23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촉탁신청 제출
2008.10.23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0.29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0.3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2008.11.03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제출
2008.11.0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1.10 원고 김명호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08.11.12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1.14 원고 김명호 증거보전청구 제출(박홍우 옷가지에 대하여)
2008.11.17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8.11.18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답변 제출
2008.11.19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1.24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8.11.26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01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8.12.03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0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2008.12.08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8.12.10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1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8.12.17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 답변-법정 중계 방송 허가신청 제출
2008.12.17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17 원고 김명호 법정중계방송허가신청 제출
2008.12.22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26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29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8.12.29 원고 김명호 박홍우 혈액채취 및 영치 촉구 제출
2008.12.3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0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1.07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12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1.14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16 원고 김명호 증거보전청구3 제출
2009.01.19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1.2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22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1.2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30 원고 김명호 박홍우 혈액채취 및 영치 촉구 제출
2009.02.02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2.0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정본/석명준비명령 등본 발송
2009.02.03 신청인(원고) 김명호에게 보정명령등본(2009카기801) 발송
2009.02.04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2.09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2.09 원고 김명호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09.02.1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2.16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 답변 제출
2009.02.1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2.23 원고 김명호 신체감정촉탁신청 제출
2009.02.2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도, 필자의 실수를 유발시키지 못하자 지영철이 생각해 낸 것이 판례를 위조하는 사기였다. 석명준비명령문에 “‘혈흔검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허위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지영철의 판례위조>

2008.12.5일자 석명준비명령에서 ‘수검 명령은...민사소송사건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므365 판결 참조)’라고 기재함으로써, ‘수검명령은...민사소송사건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라는 문구가 대법원 판례 2005므365에 판시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그런 문구는 없다.

원자료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9 민 사 부

석명준비명령

사건 2008가합96470 손해배상(기)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민국

위 등본입니다.
2008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정 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관을 명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 등을 2009. 1. 15.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사항

이 법원의 2008. 10. 29.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는 별첨과 같이 법원이 소외인에게 그 혈액 등을 영치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혈액 등 채취의 수검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이 친생자 관계 가사소송 사건에서 혈연관계의 존부 확정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규정한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과 같은 것으로, 위 수검명령은 가사소송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증거조사 이외에 위 가사소송 사건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된 증거조사에 해당하여 민사소송 사건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다른 수검 방안 및 그 법률적 근거, 만약 원고가 이에 대한 임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



지영철의 판례위조 석명준비명령 1

진부각료
2-1

【판시사항】

-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2] 유전자검정의 권유 또는 수령영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 [1]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울)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21. 선고 2003르1392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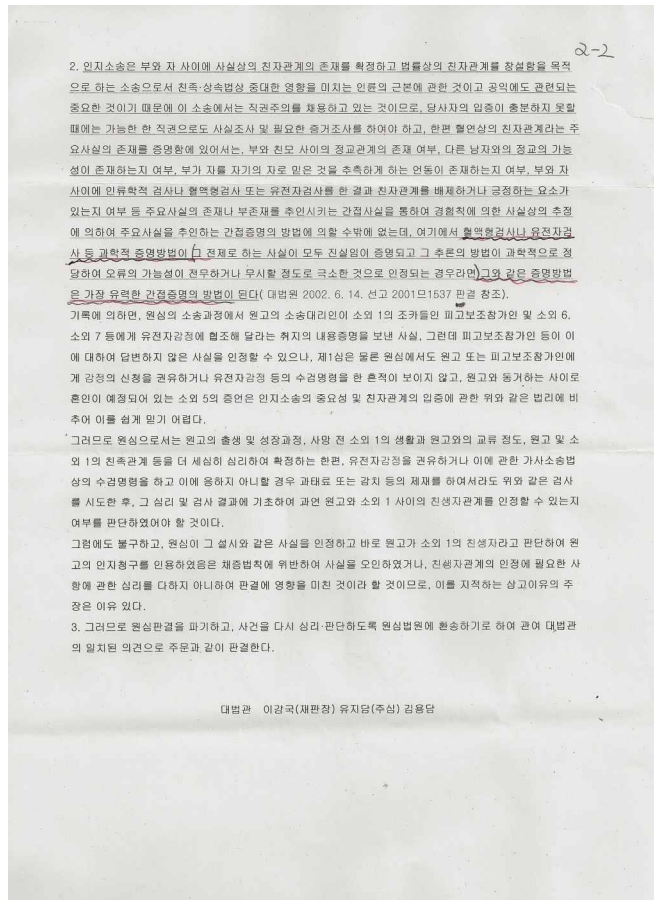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2002. 12. 8. 사망)은 1952. 12. 7. 소외 2와 이혼하고 1960.경부터 소외 3(2000. 4. 24. 사망)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65. 6.경부터 원고를 양육하였고 1968.경부터는 소외 3과 부침(부침)관계를 유지하며 소외 3 및 소외 3의 모, 원고와 함께 동거를 한 사실, 소외 3은 1976. 5. 19. 원고의 취학을 위해 호적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소외 3과 소외 4(소외 3의 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원고의 호적에는 원고의 어머니로 소외 4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 소외 1를 모시고 살았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인정 사실 및 원고에 대한 출생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소외 1이 원고를 보양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인 유전자검사를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을 하게 될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고 있는 점(감 제10호증의 1 내지 감 제13호증의 2), 소외 1이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고령인 45세에 원고를 출산한 사실이 부끄러워 친척들에게도 원고의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 점(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2005므365 판결문 전문 1



대법원 2005므365 판결문 전문 2²¹⁷

대법원은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1395]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라고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명시하였다.

‘수검 명령은...민사소송사건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라고 만 기재하였다면, 지영철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판결요지를 인용할 때, 지영철이 하였듯이, 괄호안에 ‘사건번호, 참조’라고 기재하는 것은 판례를 인용해온 법원의 관행인 것이다. 지영철이 판결 내용에 위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므365 판결 참조’라고 명시한 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의도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박홍우의 혈흔 검증신청을 기각할 요량이었던 것이다.

설사 지영철이 조작한 바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례는 [

²¹⁷ 지영철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자마자 필자는 ‘민사소송 사건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라는 문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즉시 의정부 교도소측에 판결문 전문을 프린트 요청하여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 5절 검증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 366조 (검증의 절차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례가 법이 될 수도 없고, 법 위에 존재할 수는 더더욱 없으므로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폐기되어야 한다.//

지영철의 판례위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고소는(서울중앙지법 2009형제 42004) 또 다시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 신문 의무) 위반한 ‘묻지마’ 불기소 각하되었고, 제24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더니 현재도 ‘묻지마’ 각하했다.

<법을 위반하며 판사 등 기득권층을 처벌하지 않는 검찰과 그 후원단체 현재>

검찰들은 기득권층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묻지마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다. 엄연히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피의자 신문은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 피의자는 부르지도 않으면서 검찰 출두의 의무도 없는 고소인은 꼭 불러다가 진술을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서면으로 고발한 경우에 진술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소환하는 이유는 실수를 할 경우 고발인을 무고죄로 엮거나 진술을 받아서 피의자에게 고발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리려는 속셈인 듯하다.)

이렇게 [형사소송법] 제242조를 위반하는 검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2010헌바202 사건은 ‘입법부작위’라는 상투적인 위법용어에 의하여 각하되었다.

검찰이 오만방자하게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뒤에서 봐주고 있는 법원과 현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상투적인 재판테러 수법, ‘입법부 부작위’>

헌법소원의 심리는 ‘국민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고, 헌재도 [헌재결 1997.1.16 90헌마 110,136] 등에서 명확히 실시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보다 ‘심판에의 회부 여부’와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그 결과 99% 이상을 심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가관인 것은 사건을 기각 내지 각하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용어들과 결정문 작성 공식들을 수 십년에 걸쳐 개발해왔다는 거다. 그 개발된 용어 중 하나가 이 ‘입법부 부작위’인데,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듯 해 보이지만 아니다. 그렇게도 ‘입법부 부작위’ 운운하며 기각·각하를 남발하던 그들이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3항에 대하여는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2000헌바26) 내렸다. 즉 국회에 법률 개정하라는 합리적인 요청을 한 것이다²¹⁸.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입법부 부작위'니 뭐니 하는 결정문은 헌법소원의 본질을 내팽개친 현재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

지영철은 필자에게 고소당하고²¹⁹ 이회기처럼 인사철인 2월에 사표 쓰고 변호사가 되었다. 석궁사건 항소심에서 이회기 후임으로 신태길이 임명되었듯이, 노정희가 돌격 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참고로 지영철과 노정희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같은 시기에 지낸 적이 있었고 우연인지 필자의 사건을 물려 받았다.)

3. 노정희: 대법원에게 눈도장만 잘 받는다면, 국민의 비난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지영철의 후임인 노정희라고 다를 게 뭐있겠는가? 아래 보듯이, 십 수차례의 기일지정신청서, 수십차례의 혈흔 검증 신청서에 마지 못해 재판을 열고는 혈흔 검증 신청을 기각해댔다.

2009.03.02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발급불가
2009.03.04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3.09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제출
2009.03.1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3.16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발급불가
2009.03.1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3.23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제출
2009.03.2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3.30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촉탁신청(30) 제출
2009.04.0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25) 제출
2009.04.06 의정부교도소 신체감정촉탁신청 제출
2009.04.0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4.13 원고 김명호 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4.1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²¹⁸ 이들에게 갑자기 사학비리 척결의 정의감이 생겨서 교수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단지 20여년간 400여명의 해직교수들이 줄기차게 헌법소원한 것에 지쳤거나 반복되는 기각 각하 노름에 실증나서 내린 것일 뿐일게다

²¹⁹ 지영철은 [민사소송법] 제 199조의 5개월 종국판결 선고기간도 위반했다. 박상길 담당의 서울중앙지법 2008 가소163612는 2008.6.18일 접수되었으니, [민사소송법] 제40조 (이송의 효과) 제 1항,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지영철은 2008년 11월 18일 까지 선고를 내렸어야 했기 때문이다

2009.04.20 원고 김명호 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4.22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4.27 원고 김명호 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4.29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5.04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촉탁 제출
 2009.05.06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5.11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 제출
 2009.05.13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5.18 원고 김명호 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5.19 원고 김명호 변론의속기와녹음신청 제출
 2009.05.20 원고대리인 박훈 기일 변경신청 제출
 2009.05.2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 제출
 2009.06.01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6.02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추가지정서 제출
 2009.06.03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351호 11:30) 기일변경
 원고 김명호 **법정 중계 방송허가신청** 제출
 2009.06.05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6.15 원고 김명호 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6.16 이광열 **'혈흔검증 촉구하는 국회의원 7명과 교수 44명의 의견 서명서'** 제출
 2009.06.17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351호 11:30)
 추정기일(추정사유:법관기피 신청결과보기위함) 속행
 2009.06.26 원고 김명호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09.07.29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7.30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7.31 원고 김명호 녹음신청 제출
 2009.08.05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8.12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8.19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8.26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9.03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9.09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9.16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9.17 원고 김명호 법정 중계방송 허가신청 제출
 2009.09.23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9.25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09.30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351호 11:00) 변론종결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노정희 기피신청 제출>(* **잠시 휴정하더니 냅다 각하**)
 2009.10.06 원고 김명호 기피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
 2009.10.07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
 2009.10.14 판결선고 '기각'(민사 법정 동관 351호 10:00 => 판결문)
 2009.10.26 원고 김명호 항소장 제출
 2009.11.03 원고대리인 김명희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09.11.06 원고 김명호 보정서 제출
 2009.11.16 헌법재판소 보정서류 이송 제출

교수 44명과 국회의원 7명의 혈흔검증 촉구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첨부자료: 혈흔검증 촉구하는 교수 44명과 국회의원 7명의 서명서 1-----373)

석공사건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처럼, ‘혈흔 검증방법이 적절치 않다’를 되풀이하 였다. 이에 필자는 노정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김용호처럼 다시 돌아와 혈흔검증을 기각해냈다.

‘검증하겠다고 남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법원이 박홍우의 DNA 채취는 이유도 없이 기각하느냐’고 따졌더니 ‘무덤 파헤치는 것과 부장님의 혈흔 채취는 다르다’며 검증신청을 결사적으로 거부했다.

(첨부자료: 속기록: 혈흔검증 결사거부하는 노정희 1-----**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혈흔조작을 은폐하는 뻔한 수작에 또 다시 기피신청을 하였더니, 노정희가 5분간 휴정하잔다. 변론 종결할 계획으로 재판에 임했다가 예상치 못한 두 번째 기피신청에 배석판사들과의 결속력을 다질 필요가 생긴거다²²⁰. 재개정하자 마자 가당치도 않게 ‘박홍우의 DNA 채취는 조사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 아니다.’며 각하한 것이 그를 방증한다. 그리고는 반강제적으로 변론을 종결시키고는 쫓기듯이 법정을 나갔다.

²²⁰ 더러운 인간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꼭 옆의 사람들을 끌어들이 듯이, 기본적인 혈흔검증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엉터리 결정을 하자니 혼자 밀고 나가기가 부담스러워 배석판사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음이 틀림없다

혈흔검증감정신청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기사를 하였습니다.

원 고
또 한 것입니다.

재판장 판사
또 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사정이 있습니까.

원 고
새로운 사정은 같은 것이지요. 법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판사님이.

재판장 판사
새로운 사정이나 조건이 없다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 고
지금 기각하신 것입니까.

재판장 판사
기각할 것입니다.

원 고
그러면 전 기피신청 합니다.

재판장 판사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기일에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재판이 이미 이루어
졌습니다. 아시지요.

원 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재판장 판사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원 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대법원과 다 얘기가 돼 가지고 기각하기로 결정된 것을 왜 제가 거기다가 하겠습니까.

재판장 판사

항고는 안 하셨지요.

원 고

고소를 했습니다. 아, 장재운 판사가 기피신청에 기각사유로 든 대법원 판례가 1973. 12. 11. 선고 73다711 판결입니다. 그런데 거기 판결문에 의하면 판시사항에 유일한 증거방법을 부정기간의 장해를 이유로 조사하지 아니함이 위법한지의 여부, 판결요지는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해가 있었으면 그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판결문에 있지도 않는 증거조사신청의 방법에 어긋난다는 문구를 슬그머니 허위로 삽입하여 판례위조를 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였기에 제가 고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 판사

새로이 기피신청을 하신다는 취지입니까.

385

두 번째 기피신청 각하하는 노정희 2

원 고

예.

재판장 판사

기피사유가 무엇입니까.

원 고

거기 써 놓았습니다.

재판장 판사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재판장 판사

원고의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한 기피신청이어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기피신청은 각하하겠습니다. 더 신청할 증거 없습니까.

원 고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의하면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유일한 증거신청은 반드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조항입니다. 지금 그 예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정기간입니다. 지금 박홍우가 해외연수 나갔습니까. 박홍우가 지금 국내에 없습니까.

386

두 번째 기피신청 각하하는 노정희 3

재판장 판사

그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그리고 유일한 증거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와 관련해서는 지난 기일에 이야기를 한 바와 같습니다. 증거신청이라는 게 유일한 증거신청이라 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어야 하는데, 조사할 수 없는 증거방법의 경우에는 유일한 증거신청이라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다고 본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각하였고 또 신청한다면 재차 신청한 증거신청에 대하여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거신청이 없다면, 그리고 새로운 사정을 들어 증거신청을 할 의향이 아니시라면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원 고

판사님이 법을 어기신 겁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재판장 판사

결심하고 10. 14. 오전 10시에 선고하겠습니다.

도망가는 노정희에게 방청객들이 한마디씩 한다. ‘노정희 옷 벗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맞아! 맞아!’, ‘판사들 맘대로라니깐!’, ‘당연히 받아줘야지’, ‘판사 딱지 떼라’, ‘김정일 데려다가 폭탄 터뜨려야 겠다’, ‘이런 재판부가 어디있어’ 등²²¹. 이런 수모도 감수하며 노정희는 혈흔 검증 신청을 위법하게 기각하고 만든 ‘증거 불충분’을 필자의 패소 이유로 인용했다.

‘유일한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90조를 위반한 노정희를 고소하고(서울중앙지검 2009형제71987, 불기소 각하 2009.7.1, 임석필 검사), 판사 기피신청을 동료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했더니²²², 돌아온 것은 역시나 검찰의 ‘묻지마’ 불기소 처분에 현재의 ‘묻지마’ 사전심사 각하였다.

4. 최상열: ‘재판 안 열고 시간 끝다가 인사철에 다른 재판부로 도망간다’

필자의 서울고법 2005나84701 사건을 담당했던 이상훈은 4개월 동안(2005.10.18 – 2006.2.23) 재판도 안 열고 시간 끝다가 2월 정기 인사 때, 형사부로 전보갔다. 서울고법 2009나103112(2009.11.13 접수) 사건 담당 최상열도 박홍우의 혈액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고는 이상훈처럼 2009년 2월에 도망갔다.

2009.11.1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송서 제출
 2009.12.02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09.12.09 피고 대리인 전대진,손진태,김재란 준비서면 제출
 2009.12.14 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및 해임서 제출
 2009.12.18 원고 김명호 변론의 속기와 녹음신청 제출
 2009.12.18 원고 김명호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신청 제출

²²¹ 서형작가의 2009.9.30일자 재판 방청기에서 발췌

²²² 2010헌바95사건으로 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사전심사에서 위법각하 당하고 있는 중이다.
 민소법46-1(2010헌바95 3.11일 수령) => 민소법 46-2(4.19일 수령한 10헌아81; 발송 3.30일) -> 민소법 46-3(5.24일 수령한 헌아106; 4.26일 발송) -> 민소법46-4(발송 5.31일; 헌아137 6.18일 수령) -> 민소법 46-5(발송 6. 21일; 헌아160 7.22일 수령) -> 민소법 46-6(8.2일 발송; 8.24일 헌아218 수령) -> 민소법 46-7(9.3일 발송; 9.30일 헌아241 수령) -> 민소법 46-8(10.4일 발송; 10.22일 헌아262수령) -> 민소법 46-9(10.25일 발송; 11.18일 헌아271 수령) -> 민소법 46-10(12.1일 발송; 12.17일 헌아321 수령) -> 민소법 46-11(1. 26일 경 수령한 2011헌아12, 김종대, 12. 31일 발송) -> 민소법 46 -12(2. 7일 발송; 2011헌아38 2.28일 수령; 제2 민형기, 2.22일 결정, 2.24) => 민소법46-13(2.28일 발송; 2011헌아59 4.4일 수령; 제2 김종대 3.29일 3.31) -> 민소법46-14(4.8일 발송; 2011헌아88 4.25일 수령; 제3 조대현 4.19일 결정,4. 20) => 민소법46-15(2011헌아97 6.23일 수령; 제 1 이강국 6.14, 6.20) …이렇게 각하해대던 현재가 웬일로 2011헌바219에서는 심판에 회부했다. 각하할 만한 꼼수를 생각해 낸 듯 싶다.

* ‘민소법46’은 ‘동료 재판테러범 비호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약자.

5. 민중기: ‘아~씨! 원주교도소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김명호를 출정시키지 않았네. 이 기회에 변론 종결하고 즉시 선고기일을 잡아 기각한다!’

원주 교도소에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된 2010.3.2일자 변론기일에 필자를 출정 시키지 않자, 민중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날 그 자리에서 선고기일(3.18일)을 잡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에 따라, 필자는 원주교도소의 위법한 출정금지를 설명하고 소송절차중지를 신청하는 서면을 3.9일 제출하였다.

<소송 절차 중지 신청>

사건: 2009나 103112, 순회배상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반국
위 사건의 3.18일 선고기일 통지(3.3일 통지 수령)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 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한다.
다 음
1. 첫 변론 기일(2010.3.2)에 원고가 불출석한 사유
(1) 원고는 대법원 주도하에 조작된 석공사건의 재판피리로 인해 현재 원주교도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상태다.
(2) 헌터, 3.2일(화)에 위 사건 변론기일임을, 원고에게 송달된 (원주교도소장 경유) 기원 통지서를 통하여 원주교도소는 부부히 인지하였고, 원고가 출석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조: 2.22일 교도소에 원고가 제출한 <공개질의서 8>),
(3) 3.2일 당일 오전 8시 까지 '(원고를) 재판에 출정시키지 않겠다'는 아무런 사전 통지 너지 통보도 없이 원고를 출정시키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첫 변론기일인 (마지막 기일이 될지도 모르는) 3.2일 재판기일에 참석할 수 없었다.

서울고법 민사 29부

소송 중지절차 신청 1

2. 석공사건 증거조작은폐를 위하여, 최상열 재판장과 원주교도소가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씀해서,
 원주교도소는 원고를 재판에 출석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재판장은 불출석·무변론을 구실로 위 변사사건을 기각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럼 뭐냐?
 (1) 통상, 당사자가 출석 못하면, 그 사유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변론기일을 한번 더 지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소송 지휘인데...
 (2) 그것도 첫번째 변론기일에 (3.2일) 불출석 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그날(3.2일) 날짜로 법다 선고기일을 3.18일로 지정하는 수작은 뭐냐?
 (3) 최상열 재판장이 원주교도소측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위사건 관련 모든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3. 아울러, 3.2일 변론기일에 고지없이 불출석시킴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8조(불이익처우금지)를 위반하고 원고의 권리구제 행사를 방해한 원주교도소측(소장 박현조)에 대하여, 원고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10. 3.5

김병호 *Myho Kim*

소송 중지절차 신청 2²²³

그럼에도 민증기는 묵살하고 기각하였다.

1심 판결이 어떠한 이유로 정당하다든가, 원고의 지적이 어떠한 이유로 논리에 어긋난다는 단 한마디도 없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고 기각하였다는 것이다. 박홍우의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혈액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검증 신청을 20번 넘게 기각하며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시킨 노정희의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필자는 법원에 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100만원 넘는 인지대를 납부했다. 100만원 넘게 낸 손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장사가 어디에 있는가?

다음은 김춘기씨가 민증기의 재판을 보고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²²³ 최상열에서 민증기로 바뀐 것을 패소 판결문을 받고서 알게 되었다.

<민중기의 3.2일자 재판테러에 대한 김춘기씨의 목격담(편집)>

- 김교수 이지매 재판 동정-

오늘 김교수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있었다.

나 이외에 김교수의 소송에 관심 있는 3명이 참관한 재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김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장(민중기)이 소송 진행을 시작하자 마자

내가 손을 들으니 재판장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 : 저는 법원의 불법재판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된 사람입니다. 김교수가 데모(시위의 잘못 진술)할 때부터 아는 사이로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을 느끼고 있는 사이입니다. 원고는 지금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 이라서 시간을 자의의사로 맞추어 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민중기 : 피고 2명에게 10분간만 더 기다려 줄 수 있느냐 하고 양해를 구하고 연기를 하였다.

그 다음 재판을 마치고 김교수 재판을 다시 시작하였다.

재판장 피고 2명에게 친절하게도 쌍불로²²⁴ 할까요 아니면 변론종결 할까요 라고 문의하니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들은 소송진행을 요청하였다.

피고 2의 진술을 듣고 변론종결하고 오늘 3월18일 13시50분 선고일로 지정하였다.

오늘이 김교수 항소사건의 첫 기일이라는데 한번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아야 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글을 올려 본다.

나도 법원의 이지매(집단 따돌림)를 당하고 있는 터이지만 나만 당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더욱이 나에게 법관이 마음 놓고 불법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집단으로 불법재판을 하는 심각성이 클수록 영전하는 이번 법관인사가 나에게 깊은 생각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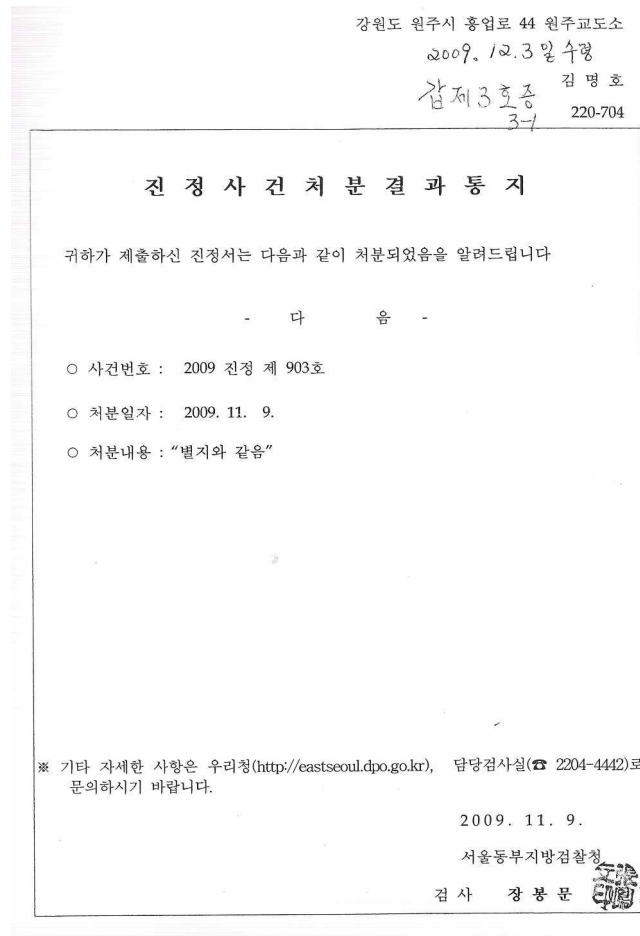
황혼에 불타는 김춘기 올림

6. **김홍도: ‘피고 검찰이 혈흔 조작해 놓고 뭉개고 있는데… 별 수 있나? 선고 마감기간 5개월이 되었으니 대법원이 만든 ‘국민 우롱 판례’로 무변론 각하하는 거야’**

민사재판이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지켜보며, 행정소송을 위한 절차로 서울동부지검에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검증을 청원하였다. 진정사건으로(2009진정903)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예상한 바대로 거부하였는데, ‘유전자 검증을 했고 그 결과 박홍우 피가

²²⁴ 쌍방을 모두 불출석으로 하여 다시 변론 기일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다. 이렇게 묻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민중기는 참석한 사람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원고인 필자가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다음기일을 잡았어야 했다. 그런데, 민중기는 피고에게 쌍불과 선고기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것이다. 참석했는데 누가 불출석으로 처리되기를 원하겠는가? 그러니 피고는 당연히 선고기일을 잡자고 할 수 밖에.

명백하다'는 거짓말을 했다.²²⁵



서울동부지검 장봉문의 거짓 답변 1

²²⁵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의 피 일치 여부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과수 유전자 감정 보고서로부터(2007-M-1795)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부지검은 이렇게 감정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사라는 것들이 이렇다.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도 당당 뻔뻔하게 하는 이런 인간들을 인간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인간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구박까지 받아야 하는거냐를 묻는 거다.

사 실 과 이 유

본건 진정의 요지는 진정인이 피고인인 대법원 2008도2621호 사건(서울동부지검 2007형제3995호)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박홍우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실제 피해자의 혈액이 아닌 제3자의 혈액일 수 있으므로 유전자분석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인바,

- 본건은 이미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피해자의 혈액으로 판명되었음(진정인은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3개의 혈흔이 동일인의 혈액으로 판명되었을 뿐 피해자의 혈액이라는 입증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혈흔은 피해자의 혈액이 명백함).
- 진정인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에 있고,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공람종결함.

서울동부지검 장봉문의 거짓 답변 2

혐의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는 것과

[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

‘[검찰청법] 제 4조와 [형사소송법] 제 424조를 해석해 보건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²²⁶’

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니(서울 행정법원 2009구합53502)

담당 재판장 김홍도가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²²⁷

‘진정을 수리한 국가 기관인 피고가 위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²²⁶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의 전략은 되도록이면 저들의 ‘입’에서 나온 판례로 저들을 공략함으로써, 모순을 지적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례는 [검찰청법] 제 4조와 검사를 재심청구권자로서 최우선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 현대,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마지 못해 재심청구한 사건들 제외하고 과연 대한민국 역사상 검사 새끼들이 자진해서 재심청구한 사건이 있었을 까? 필자는 없다는 데에 걸겠다.

²²⁷ ‘민중에게 정착된 신뢰에 반하는 그런 법률·정령을 발견한 경우에는, 민중은 그 법률을 개폐시키는 우월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존 로크의 말을 빌리자면(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100인), 이 대법원 판례는 당장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할 것.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에 ‘사기’ 양념을 첨가하여

‘헌법 제 2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 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 9조 제 2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청원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이하, ‘김홍도 판례’)

라며 무변론²²⁸ 각하 시켰다.

(참조:

김홍도의 위법 판결 1-----374)

[헌법] 제 26조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을 => 진정 => 민원으로 변질시켜 ‘머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달라’는 것으로 만든 이 과정이 보이지 않는가? ‘도로를 넓혀달라’, ‘건축물 허가’등의 민원과 사회정의 실현의 공무원의 의무를 촉구하는 청원은 명백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처리하는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의 사기 수법이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그럼으로써 모든 국민의 청원을 머슴의 자유재량이라고 멋대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청원권 정의 및 그에 따른 국가기관의무, 그리고 김홍도 논리의 위법성>

심사할 의무가 있는 청원을 국가에게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니 혈흔 검증을 했다는 거짓 답변서만 보내도 공무원의 할 일은 끝난다는 건가?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봉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는 쓰레기라는 말인가?

[헌법] 제27조(청원권)에 규정된 청원의 정의 및 ‘국가기관의 의무’

- (1)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게 하는 신청, 진정, 탄원 등이 모두 청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시비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하는 청원을 ‘소송’,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며 검경에 하는 청원을 ‘고소, 고발’, 법률 내지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하는 청원을 ‘헌법소원’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뿐, 모두 청원의

²²⁸ 재판 한번 열지 않고 각하시킨 것.

일종이다. 이는

(2) 국가와 모든 국가 기관들이 국민의 이익, 행복, 안녕, 편의 및 고충에 대한 청원처리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이기 때문이며

(3) 선거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공무원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며 국민에게 표 구걸하는 사실들로부터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에 따른 국민의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는

(4)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봉사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5) 공무원의 ‘법령 준수 및 성실의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6) 공무원의 ‘범죄 고발의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7) 공무원의 ‘직무상 태만, 남용’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등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기관은 [헌법] 제26조 제 2항에 규정된 청원 심사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원처리절차 및 내용들이 청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의도적인 태만이나 위법행위에 의한 산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과 김홍도는, 종놈인 국가기관이 상전인 국민에게(마치 상전이 종놈에게 은총을 내리듯이) 선처를 베푸는 것이 청원이라고 축소 폄하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국민 청원에 대한 의도적인 직무유기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동네 양아치도 이렇게 할 까 싶은 김홍도의 행위들>

2009.12.10일 접수된 이 사건에서, 김홍도는 피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소장 부분만 달랑 보내놓고는 5개월 후인 2010.5.27일이 되어서야 제출한 피고 답변서도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 위반) 5.28일에 냅다 각하시킨 것이다.

소장 부분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있는 피고 동부지검과²²⁹ 장단 맞춰 5개월 간 빈둥거리던 김홍도가 2010.5.20일 덜컥 선고기일을 잡으니(5.26일 선고기일 통지서 수령함), 그제서야 동부지검장은 혹시 혈흔 검증하라는 판결이라도 날까 걱정이 되었는지, 부랴 부랴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개발새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 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²²⁹ 하긴 무슨 답변할 것이 있겠는가?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 검증 하지 않은 것은 진실인데 이제와서 감정하자니 제 3자의 피로 조작한 것이 공식적으로 폭로되고 사법부는 물론 검찰도 풍지박산이 날 테니 말이다.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인 필자의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판사들의 ‘법 목살 정서’를 과소 평가한 검찰의 그러한 우려는 쓸데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홍도는 그냥 무변론 각하시킨 것이다.

항소장에 답변서도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더니 7.12일에 보내주었다. 공권력을 빌리려고 와서 이런 걸 재판이라고 받아야 하는 필자도 한심할 지경이었다.

검찰이 아무리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원이 언제든지 면죄부를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7. **김용덕: ‘대법관을 노리는 내가 품위를 생각지 않을 수 없지. 얘기 들어주는 척 하다가 대법원의 ‘국민우롱 판례’로 기각하자’**

박홍우의 석명준비명령 수법을 지영철이 베끼더니 김용덕도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게 아닌가? 부아가 터졌다. 여기 그에 대한 필자의 답변이다.

원고(항소인) 춘천시 동내면 1춘천교도소
 춘천교도소
 김명호
 200-710
 2097111 - 022958 ↓
 (행정과 제1행정부)
 2010-034-22742

2010. 9. 15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석명준비명령

9
 190000

사 건 2010누22742
 석공사건증거물의혈흔일치여부유전자감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명호 / 피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원고(항소인) 김명호 (귀하)

귀하의 항소에 따라 위 사건의 소송기록이 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2010. 9. 24.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9. 1.
 재판장 판사 김 용 덕
 등 본 입 니 다.
 2010. 9. 1.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재훈
 용 덕



◇ 유의 사항 ◇

- 준비서면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심판결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이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위 ②, ③항의 주장과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다음 요령에 따라 함께 제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증의 경우 : 사본(상대방 교부용) 및 이에 대한 설명서 제출(이미 제출한 서증 중 상대방에게 사본이 교부되지 아니한 것은 그 사본도 일괄하여 제출하고, 서증번호를 붙임)
 - 증인을 신청할 경우 : 성명 및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 제출
 - 기타검증·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신청 등 :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 제출
-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절차로 진행되며,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149조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법원사무관 김재훈
 직통전화 : 530 - 2329
 팩 스 : 596-1190 e-mail :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1

사건: 2010누22742, 석공사건 증거물의 혈흔 일치 여부 유전자 감정 거부 처분 취소
항소인(원고): 김영호
피고: 서울 동부지검장
위 사건 관련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석명준비명령 에 (9.15일 통지 수령)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다시 밝힌다.
(구체적) 항소 이유
1. 석공사건 담당했던 피고의 서울동부지검장, 기본적인 검증인 박홍우 못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의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 감정은 하진 않았기에 (* 박홍우 피가 아닌 제3자 피에 의한 못가지 혈흔 조 작을 피고 자신이 저질렀는데, 혈흔 일치 여부 감정을 피고가 하진 않는가?)
2. 원고는, 1심(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53502) 재판부에 '혈흔 일치 여부 감정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 뿐이다.
그런데, 개판도 못한 1심 재판장 김홍도는 대법원 주도하에 조작된 석공사건 증거조작에 공모하기로 작정하였는지, 2009. 12. 10 일 사건 접수 후, 피고에게 팔랑 소장부분만 보내 놓고 5개월간 팽팡 놀아 제끼다가 (2010년) (1) 5.27 일 제출된 피고 답변서도 원고에게 송달하리 아니 하고

서울고법 행정부

(*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 그리고 더욱 더 처구나 없는 짓거리는
 5.28일 각하 선고 후, '답변서 미송달'에 대하여 지적한
 6.29일 원고 제출의 <항소장>을 받아보고 난 후인 7.8일
 뒤늦게 원고에게 답변서를 송달하였다는 것.
 이런 '개판도 못한 판사 새끼'가 다 있나 싶다.)

(2)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의 상전이며, 국민의
 요구를 공무원이 들어주는 것은 상전이 종놈인 국민에게 은총
 내지 선처 베푸는 것'
 이라는 퇴치책이 많은 위헌 위법 개소리코 (* 자세한 설명
 은 6.29일자 원고 <항소장>의 '항소이유' 참조)
 퇴고의 변론 재개 요청도 묵살하며 변론 재판 한번 안 열고
 있다 각하시켰다는 것이다.
 > 이런 개판 선고에 승복할 사값이 있겠는가?

김용덕 재판장!

1. 석명준비명령은 퇴고에게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인 기본인 혈혼일치며 부유전자
 감정 안 할냐?'고.

2. (퇴고에게 팔랑 소장부분만 보내놓고 아무런 답변 없는 퇴고와
 함께 광광 놀아 제끼다가 5개월 지나서 선고일은 잡아 땀다
 각하 시킨) 김홍도 개판도 못한 판사 새끼와는 원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거냐?
 그래서 이런 쓰레기 석명준비 명령 날리며, '나 김용득은 이렇게
 열심히 소송지휘 했는데도 비결수 없이 각하할수 없었다'라는
 전서 효과 내기 위해서? ^{밖에}
 아니라면, 6.29일 제출된 <항소장>의 '항소이유'를 이해 못할정
 도로 비가 돌때가리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후시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정부분을 찍어서 나한테 물어봐라, 놓고 자빠
 저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3. 후시? 김용득 너도 석명사건 증거조작범 list에 네 이름
 올리고 싶은거냐? ^{핵심은}
 아니면, ^(석명사건관련) (손해배상권) 이지만, 후시나 ^{핵심은} 혈흔 일치 여부 감정해달라
 는 <서울중앙지법 2008 가합 96470>사건의 담당 재판장이었던
 '지명철' 처럼 이따위 ^(비밀) 석명준비 명령이나 날리면서 피같은 내용
 달로 까치 먹으며 시간 벌다가 (내년 2월 즈음) 적당할시기에
 사들 쓰고 도망가려고 그러는거냐?
 석명사건 항소신 서울동부지법 재판장 '이회기'도 2008년 2월
 정기 인사철에 사들 쓰고 도망가려든, 혈흔 일치 여부 감정을 뺏길하게
 미루더니. (* 그리고 대법원으로 부터 풀려대장으로 임명된 '신대길'이
 혈흔검증기각하는 등의 '재판테러' 하였고 지명철 후임의 '재판테
 러' 풀려대장은 '노정희' 개판도 못한 변이였지)

2010. 9. 18
 김병호 Mr. Kim

석명준비명령답변 3

2010.11.2일 첫 변론에 나가보니, 10.22일 필자의 석명준비명령 신청에 대하여

명령서만 보내고 석명준비명령은 내리지 아니한 압삽한 김용덕의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²³⁰, 김홍도가 하였듯이, ‘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시키지 못하도록 청구취지를

- ① 1심 판결을 취소한다
- ② 석궁사건 수사 당시, 실시하지 않았던 ‘혈흔 검증’을 실시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
- ③ 그리고 피고는 당장 ‘혈흔 검증’을 실시하라

라고 변경하였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김용덕은 김홍도가 사용한 형식적 위법위헌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여 기각하였다.

<대법관을 노린다는 김용덕의 사기>

서울동부지검 장봉문은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의 피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 검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진정사건 통지서에서 검증했다고 거짓 기재하였다. 이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하여 혈흔검증 여부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 사건검색>을 보니

2010.10.22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신청 제출

2010.10.22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답변서부분(10.10.21.자) 송달

2010.10.28 피고(피항소인)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검사장에게 석명준비명령신청(10.10.22.자) 송달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김용덕이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필자의 석명준비명령 신청서 자체를 피고 서울동부지검에 송달한 것이다.

석명준비명령 신청서 자체를 송달 한것과 석명준비명령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석명준비명령’은 혈흔 검증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법원의 명령이고 필자의 ‘석명준비명령 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달한 것은 피고에게 읽어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필자가 그 차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용덕이 신청서만 송달 시킨 것. ‘명령을 내리면 사건검색에 석명준비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석명준비명령 내린 거 맞냐?’고 하니 그때서야 법정에서 피고에게 혈흔검증에 대한 석명요구하겠다고 하였다. 재판테러범들은 패소시킬 소송당사자에게 뭔가 틈만 있으면 파고 들고 들키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 사기칠 능력이 없으면 대법관이 될 꿈조차 꿀수 없는 곳이 한국의 사법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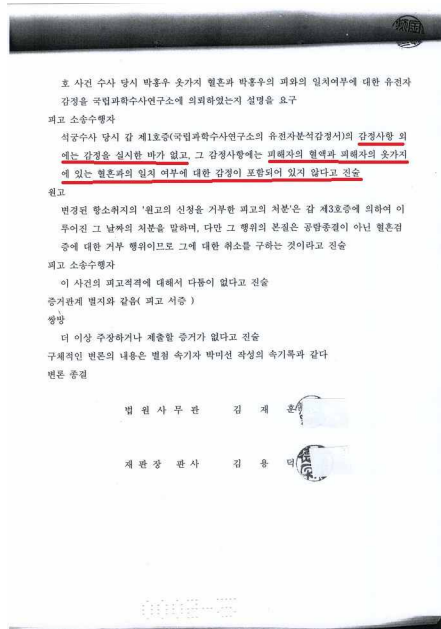
<김용덕, 김홍도 재판테러의 폐해>

²³⁰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74878 사건 담당 정석원이라도 이 수법을 어느새 배워 필자의 석명준비명령 신청에 대하여 명령은 내리지 않고 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달만 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오면 검경은 일치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법조문보다 대법원의 판례를 우선적으로 왜곡 인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문법 국가임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경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사람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길을 터 준 것이다.

<김용덕의 재판테러 속에서 얻은 성과>

필자는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을 검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김용덕에게 피고에게 검증여부를 추궁함으로써, 피고 서울동부지검이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었고**²³¹ 그 기록을 변론 조서에 확실히 남겼다.



박홍우의 피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자백 증거 1

그리고 덩으로 밝혀낸 것은 검찰, 법원, 헌재 3기관 공모의 국민 청원 묵살 공식이다. 이는 뒤에서 정리한다.//

IV. 검찰, 법원, 헌재 노는 꼬라지들

²³¹ 서울동부지검측은 혈흔일치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뺨질거리는지, 그리고 그를 은근히 돕는 김용덕의 작태가 12.14일 변론 속기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1. 이강국의 후배 신영철 구하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시위한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판사들로 하여금 현행법으로 재판할 것을 압박한 신영철은 대법관이 되려는 욕심에 정권에 아부한 사람으로 판사로서의 자격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을 위반한 범법자다.

박재영 판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명 ‘집시법’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하자마자, 신영철은 그 법의 전제가 된 모든 재판을 중지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박재영 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재판을 재촉한 것은 판사로서의 법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자 법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1) 박재영 판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판사 개인 자격이 아닌 단체 조직인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한 절차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사건으로 담당하는 법원은(군사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제5항

‘대법원외의 법원이 제 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판결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등으로부터, ‘법원’의 의미는 단체 조직인 법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소송당사자는 소송지휘를 하는 판사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기에 판사의 판단이 곧 고등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소송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심급의 판단을 다른 재판부에서 받을 수 없고 상급 재판부, 즉 대법원에 상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 10월 박재영 판사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서울중앙지법을 대표한 박재영 판사에 의한 것이기에 서울중앙지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인 것이다²³², 박재영 판사가 내렸던 다른 수많은 판단 및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과 선고이었듯이.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집시법이 재판의 전제가 된 서울중앙지법의 모든 사건들은 재판정지 되어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더라도

²³²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제5항을 주목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 (2) 신영철이라는 ‘법 무식이’는 관련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위헌 제청 사건외)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출처: “‘대법원장 개입, 현재 접촉설’ 진실게임양상”, 한국일보 2009.3.7일)라고 하였으니, 이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도 묵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표현들>

김득환이라는 판사가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화광동진’이라는 소리로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더니...²³³,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 법원이 상하 수직관계의 경직된 범죄조직이라는 냄새를 솔솔 풍기는 표현이다.)

석궁시위 직후 보여준 2007.1.19일자 전국법원장 회의, 2008.3.7일 자 전국 수석부장 판사회의 등과 다르게,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법관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아주 묵살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 (3) [법원 조직법] 제29조(지방법원장) 제3항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에 반하는 행위로서 최소한 직무유기요, 법원장 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의 범죄인 것이다.

- (4) 신영철을 고발했더니(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03166 장기석; 2010고불항4061; 2010지불항1107 오정돈; 대검 2010대불재항657 조영곤)
필자가 위에 지적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국회 청문회 운운 횡설수설 문지마 불기소 처분! 헌법소원 했더니 이강국이 2010헌마533 사건에서,
‘기본권과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며 각하였다. 필자의 청원권이 묵살되었는데 자기관련성이 없다니?²³⁴

²³³ 법원 "김 회장,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자세로 사회 기여하라" 뉴시스, 기사입력 2007-09-11 16:04

²³⁴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찰에 누구가를 처벌해달라며 청원권 행사하는 행위를 ‘고소 고발’, 법원에 시비를 가려달라는 청원권 발동하는 것은 ‘소송제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권을 발동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이라고 부르며 각종 민원들이 이 청원권의 일종이다.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2008헌가25)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임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긴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을 살려둔다는 결정이다. 이는 동료들 무조건 감싸주려는 인간들이 아니면 생각해 낼 수 없는 결정이다.

‘헌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라’라고 이메일 보낸 신영철을 꼼짝하게 배려하여²³⁵, 신영철의 범죄를 합법화시키며 은폐하기 위한 결정이다.//

2. 자신이 정한 보정 기간도 위반한 이동흡

검찰들은 판검사들 고발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도 없이 ‘묻지마’ 불기소 각하 처분을 하고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판사들은 검찰의 행위는 ‘무조건’ 정당하다는 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형사소송법] 제242조를 위반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재정신청심리의 판사는 서면 심리하는 마당에 피의자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자료도 없이 일방적인 검사의 불기소 의견에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42에 대한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헌법소원 하였다(2010헌바168).

담당 재판관 이동흡은 2010.4.27일 10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보정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이미 각하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박훈 변호사가 10일 쟀인 5.7일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7일쟀인 5.4일 각하 결정하고 5.6일 각하 결정문을 발송한 것이다.

²³⁵ 사문화된 법관기피 신청 법조항([민사소송법] 제 43조 등) 언급할 때도 강조했지만, 이 판사들의 결속력은 옛날 군대에 존재했었던 하나회 조직의 결속력 못지 않을 것이다.

2010. 4. 28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수신자 춘천교도소장(수용인:김명호)
(경유)
제목 보정명령


사 건	2010헌바16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명호

청구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0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할 사 항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붙임 : 대리인선임에 관한 안내문 1부.

재판장 재판관 이 동 

법원서기관 윤용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04/27

협조자

시행 심판사무-4564 (2010. 04. 27.) 접수 보안과-1757 (2010. 04. 27.)
우 110-250 서울 종로구 가회로 15(재동 83) / http://www.ccourt.go.kr
전화 02)708-3475 전송 02)708-3472, 3596 / yun9753@ccourt.go.kr / 대국민공개

문서관리카드 보안과-175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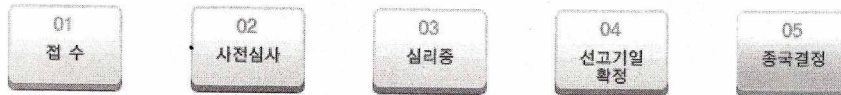
이동흡의 보정명령 1

헌법재판소 - 프린트 페이지

페이지 1 / 1

출력하기

사건진행단계



관련사건

유사사건

전체사항

번호	날짜	내용
1	2010.04.14	사건접수 ⇒ 4.12일 등기로 보냈는데 <모식행위 1>
2	2010.04.27	보정명령등본(송달)
3	2010.05.06	각하결정정본(송달)

http://www.ccourt.go.kr/home/common/print_search.jsp

2010-05-07

2010헌바168 사건검색 페이지 1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2010. 5. 7
<2010헌바168>(4.28) 보정명령
↓
<보정명령>(5.10)

사 건 2010헌바16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명호
춘천교도소 수용 중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61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 1 -

2010-1000012493-FF290

1/3

이동흡의 7일만의 각하결정문 1

박변호사가 5.7일 접수시켰더니 현재에서 위법한 각하를 취소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반환하겠다고 하기에²³⁶ 그냥 놔두라고 했단다.

이런 이동흡을 가만 놔둘 수 있겠나?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자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자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본안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 무가 있다.’

에 근거하여, 직무유기로 이동흡을 고소하였더니, 검찰들이 신문 조사해야 될 이동흡은 하지 아니하고 운용오라는 서기관 하나를 불러다 헛소리 진술 받고는 냅다 묻지마 불기소 처분²³⁷.

²³⁶ 이들이 하는 증거인명하려는 수작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기억하는가? 이용훈의 허위공문서 작성사건에서 허위작성의 공개질의서 원본을 돌려줄 수 있다고 대법원 직원이 하던 수작을 말이다.

²³⁷ <예기(禮記)> 곡례(曲禮)편에서 “예는 대부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법은 대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였듯이, 고위공직자일수록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다스려져야 하고 일반서민은 도덕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대한민국의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기본 덕목인 예(즉 도덕)는커녕 법에 의하여도 다스려 질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검토결과보고서

I. 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동흡

II.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제기한 형사소송범위헌소원 사건에서 2010. 4. 2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그 기한이 도래되기 전인 같은 해 5. 4. 위 사건을 각하 처분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III.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고소인의 주장

- 고소장 기재 고소사실과 같음

나. 참고인 윤용오(헌법재판소 서기관)의 진술

- 고소인은 판사 석궁테러사건의 당사자로서 2007. 9.경부터 2010. 5. 현재까지 220건 이상의 헌법소원(심판회부 5건, 사전심사단계 14건, 나머지는 각하 또는 기각)을 남용하고 있음
- 고소인은 2009. 11. 11. 본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2009헌바314)한 바 있는데,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리인선임 보정을 명하자 고소인은 같은 해 12.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같은 달 22.

4

이동흡이 아닌 윤용오의 진술 1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각하 결정한 사실이 있음

- 그 외에도 고소인은 수차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 등을 청구한 바 있는데, 그때마다 헌법재판소가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고소인은 한번도 사선대리인을 선임한 예가 없었으며, 본건에 있어서도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에 대하여 고소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사선대리인을 선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정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게 된 것임

거짓말
2008헌바12, 25.

다. 판단

- 참고인 윤용호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본건 사건을 각하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정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음

p954 참조
T판
2003.7.11
PP 22-248

IV.. 의견(수사 필요성 여부)

- 각하



2010. 6. 4.

조사팀장관 이영



윤용오는 자신들의 범죄행위 덮기에 급급하여 필자가 사선 변호사를 한번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²³⁸. 2008헌바12, 2008헌바25 사건에서 박훈 변호사 선임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은 자기들은 무조건 다 잘했다고 하며 문제의 핵심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거짓말로 남을 헐뜯는다.

3. 이용훈 범죄 은폐목적으로 파 놓은 법리 함정에 자신이 빠진 송두환

2009헌마356사건은 대법원장 이용훈이 2006년도에 검찰을 명예훼손한 것에 대한 불기소 처분 관련 사건이다(서울중앙지검 2006형제135005). 검찰이 예뻐서 이용훈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신성식 검사가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건으로 필자를 기소하였고²³⁹ 마침 검찰과 법원이 권력 다툼으로 티격태격 싸우길래, 서로 대판 싸워 보라고 이용훈을 고발한 거다. 위선적인 기회주의자 이용훈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 법원 권력을 확대할 속셈으로 ‘검찰의 밀실 조서 내던져라’등 떠들었을 때, 당시의 검찰 총장 정상명이 유감을 표시한다는 등 난리를 피웠다.(참조:‘정상명 총장 이 대법원장 발언 유감’, 뉴시스 2006.9.21).

그렇게 길길이 뛰던 검찰이 1년을 끌더니만²⁴⁰ 이용훈을 조사하기는 커녕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임수빈 검사가 서울고법으로 넘겼다는 항고처분통지서(2008불항710)를 2008.4.24일 보내왔다.

²³⁸ 혹시 이동흡이 결정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윤용오가 작성한 것이 아닌가? 여하튼 이들의 습성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법관기핀신청에 대한 인용이 없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동료감싸기에 미친거 아니냐고 질타하니까 장윤기 왈, ‘실제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소송지연 목적, 해당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감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로 인한 절차의 지연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참조: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장윤기의 답변, 2006년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 국민들은 왜 이런 인간들에게 월급까지 줘가며 욕을 얻어야 하는가?

²³⁹ 이상훈, 양승태, 이혁우 등을 명예훼손 했다면,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을 시켜 필자를 고발시켰고 그 사건 2007 고단373은 석공사건(2007고단203)에 병합되어 필자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²⁴⁰ 2007.1.15일 석공시위 날 2006형제135005 사건 담당 검사 주진우가 고발인 진술받고 하더니, 1년이 지나 국민들이 다 잊고 있을 즈음 김희관이 2008.3.15일 ‘증거 불충분’이라며 혐의 없다고 조용히 불기소 처분했다(참조:‘검찰 대법원장 고소사건 수사 착수, 서울경제, 2007.9.28; ‘이용훈 대법원장 탈세의혹 사건 5개월째 방치’, 한겨레 2008.2.14). 증거불충분? 언론에 그 증거들이 돌아다니는데 증거불충분이란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 4. 14.

수신 항고인 김명호 귀하
 제목 항고사건처분통지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수빈



피항고인 이용훈 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처분	사건번호	2008 불항 제710호
	년월일	2008. 4. 14.
	결과	귀하가 항고한 사건기록을 2008. 4. 14.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하였으나 사건 관련 문의(항고번호, 주임검사 등)는 서울고등검찰청 전화민원상담센터 (전화 02-530-3114)를 이용해 주시고,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위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7(서초동 1724)
 (홈페이지: <http://seoul.dpo.go.kr/>) 항고



1 3 7 7 4 1
 (전송, 발송 부진지)
 9시 40분(4) 이송
 2. 주소
 3. 수취인 국경(전화)
 4. 기타
 2008. 4. 24
 성동구청소 2과

수신 : 서울송파구 가락2동 162번지 성동구청소
 (수용자번호 1316번)

김명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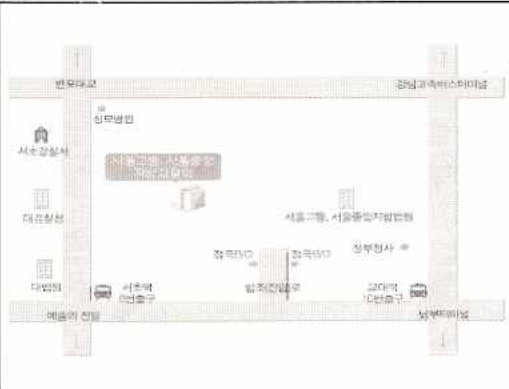
1553 138-810

행정우편

- 주차시설이 부족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교통편
- ◎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6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300미터 거리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하차,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600미터 거리에 있는 15층 높이의 고동색 건물
 - ◎ 버스
 - 시내버스 : 5413, 730, 340, 41
 - 마을버스 : 서초11, 서초12, 서초21

법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약속 우리가 지킵시다

서울고등검찰청



이용훈에 대한 항고처분 통지서 1

(1) 그리고는 항고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길래, 현재에 공권력 불행사로

2009.6.1일 헌법소원 했더니

(2) 헌재가 검찰에 연락해 보고는 결정문에 '2008.4.30일 항고기각 결정났다'며 사전 심사에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라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판례집 17-1, 455, 458-459; 헌재 2005. 10. 11. 2005헌마866 참조).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항고사건 결정 지연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2008. 4. 2. 성동구치소를 통해 제출하였고, 위 항고사건은 2008. 4. 4.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서울고등검찰청은 2008. 4. 30.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를 두고 항고사건 결정의 지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항고를 한 자는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

2009헌마300 결정문 일부 1

요놈들 하는 꼬라지 보라, 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고 결정 때리면 될 것을 이렇게 검찰에 연락해서 알아보고는 필자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는 척

하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헌재가 국민이 아니라 검찰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짓거리를 잔뜩 해놓고는 일 많이 했다고 한다. 시험문제의 핵심을 못 잡은 학생이 이것 저것 아무 관련 없는 것을 잔뜩 써 놓듯이 말이다.

(3) 필자는 2009헌마300의 각하 결정문을 받고 항고기각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 다음 단계로 6.29일 위 서울고검 2008불항710에 대한 결과 통지, 즉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못 받았다고 헌법소원을(2009헌마356) 하였다. 그에 대하여 현재는 서울고검 2008불항710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7.27일 수령).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2068.
5FP.

수신자 의정부교도소장(수용자:김명호)
(경유)
제목 보정명령

사 건	2009헌마356 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명호


청구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할 사 항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 불기소처분사건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710호의 항고사건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바람. 끝.

재판장 재판관 송 두 송환환

법원서기관	윤용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07/27
협조자						
시행	심판사무-6254	(2009. 07. 27.)	접수 총무과-5296		(2009. 07. 27.)	
우	110-250	서울 종로구 가회로 15(재동 83)			/ http://www.court.go.kr	
전화	02)708-3475	전송 02)708-3472, 3596	/ yun9753@ccourt.go.kr		/ 대국(6)	



송두환의 2009헌마356 보정명령 1

(4) 필자는 7.29일 서울고검 2008불항710 통지서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더니,

(5) 자신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진 현재²⁴¹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심판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송두환이 8.18일 냅다 각하하였다. 아마도 송두환은 수감 중인 필자가 설마 1년이나 지난 통지서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기한 내에 제출 못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제7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정 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에 따라 각하 시킨다는 알팍한 수작이었으리라. 그러다 예상이 빗나가자 ‘헌법소원 심판 원천 봉쇄 공식’²⁴²대로 [헌법재판소법] 제2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사전심사’에서 각하한 것이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위반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들을 (2009헌아 115, 2009헌아137, 2009헌아152, 2009헌아191...2011헌아118...) 공식의 <2단계>, <3단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전심사 위법 각하’ 범죄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는 중이다.

<심판에 회부 하지 않은 사건을 ‘재심’이라고 사기 치는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위반을 지적한 심판 청구들을 ‘헌아’라는 재심사건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다. 왜냐하면, 재심이란 심판에 회부되었던 사건에만 적용되는 용어이며 <2009헌마356>은 심판 회부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현재의 모순된 행위를 스스로 폭로하는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목영준이 [헌법재판소법] 제28조를 위반하며 위법 각하한 사건 2009헌마174에 대하여 다시 헌법 소원을 하였더니, 이강국이 재심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2009헌마220사건으로 접수 시켰고

²⁴¹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여기에 딱이다. 자신들의 재량권을 규정한 하위법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70조 제2항만 숙지하고 있었지, 재량권 한계를 정한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은 모르고 있었던가? 아니면 애써 묵살한 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들은 상위법 보다는 자신들에게 가까운 매뉴얼이나 하위법을 더 중용한다는 사실이다.

²⁴²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은 뒤에 있다.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9헌마2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명호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08형제130 436호), 2008. 12. 23.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위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인하여 청원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4. 22.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2009헌마174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009헌마174에 불복한 헌법소원 2009헌마220 2

각하한 것에 대하여 또 헌법소원 했더니 그때도 재심(헌아)이 아닌 2009헌마307로

접수하였다.

일사부재리 사건
이공현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례권 헌소 5.
6.3

결 정

사 건 2009헌마3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명호
의정부교도소 수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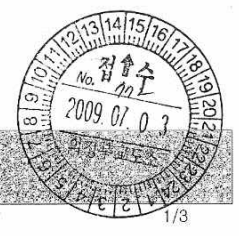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4. 22.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2009헌마220)하였으나 2009. 5. 26.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후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헌마220에 불복한 헌법소원 2009헌마307 1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28조를 또다시 위반했다. 이 사실들로부터 헌재가 법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관성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보다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들>

수학에서 공식이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하여 또는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수학자를 포함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공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공식보다 중요한 원리들이 많기도 하고 필요하면 직접 유도하거나 책에서 공식을 찾을 줄 알면 되기 때문이다.

4년 10일간의 교도소 경험에 의하면, 교도관들은 주어진 법에 대한 토막상식은 많아도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알 필요가 없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내려온 위법한 지침에 근거하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 소위 ‘매뉴얼’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니까.

헌재도 교도관들처럼 법전은 안 보고(* 하는 꼴로 봐서는 가르쳐 주어도 이해 못할 듯) 자기들이 만든 매뉴얼에 따라 헌법소원 사건처리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매뉴얼에 집착하는 것이 유도과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답만 맞춰 성적만 올리려고 그저 공식에만 매달리는 열등생과 다름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2009년 8월 24일 필자는 송두환을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위반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헌데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4. 석궁사건 혈흔 조작범인 이홍훈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심리 조차 봉쇄한 목 영준과 이강국

웃가지 혈흔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된 것도 증거조작이 아니라는 이홍훈을 고소하고(서울중앙지검 2008형제130436), 그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서(서울고법 2008초재2738)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거쳐 헌법소원을 하였다. 2009헌마174의 담당 재판장 목영준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살펴 보아도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라는 것이다.

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2조는 재정신청의 심리와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검찰은 김민수 교수 논문 대필 사건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원본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심사보고서가 원본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²⁴³ 헌재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도 하지 아니하고 각하시킨 것은 검찰이 김민수 교수 사건에서 저지른 행위와 똑 같은 국민에 대한 테러다.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제 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 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보정명령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은 이렇게 명백하게 심판회부 및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가 없다면 모르되 있는데도 위 보정명령 의무를 묵살하고 냅다 각하 결정하는 이런 자들의 범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²⁴⁴.

이와 같은 목영준의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것은,

(1) 2009헌마63사건에서 보정명령 의무 이행한 재판장 김희옥의 예

‘...청구인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08-진인0003533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2009.1.20 수령하였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위 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사본을 제출할 것’이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부터도 입증된다.²⁴⁵

243

244 2009헌마300에서 검찰에 연락하여 항고가 기각된 날짜까지 알려 준 것과 비교해 보라.

245 혹시나 김희옥이 보정명령의무를 지켰다고 목영준보다 나은 재판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한마디. 혈흔을 조작한 것에 대하여 목영준은 기각 내지 각하할 논리를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게 각하시킨 것이고, 김희옥은 나름대로 국민을 속일 법리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2009헌마174 사건의 재판관이 목영준(재판장) 조대현, 김희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수신자 박훈
(경유)
제목 보정명령

사 건	2009헌마63	진정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명호	
	대리인 변호사 박훈	

청구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0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보 정 할 사 항

위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08-진인-0003533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2009. 1. 20. 수령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위 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사본을 제출할 것. 끝.



2009-2000000501-DF5C5

1/3

김희옥의 보정명령 1

재판장 재판관 김희 **김희옥**

법원사무관 정영주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김희옥 03/02

협조자

시행 심판사무-1780 (2009.03.02.) 접수
우 110-250 서울 종로구 가회로 15(재동 83) / http://www.ccourt.go.kr
전화 02)708-3456 전송 02)708-3472, 3596 / yj0014@ccourt.go.kr / 공개



2009-2000000501-DF5C5

2/3

김희옥의 보정명령 2

(2) 목영준이 위반한 [헌법재판소법] 제28조를 지킨다면서 역시나 위반한 이강국

목영준이 위법 각하한 '2009헌마174'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였더니, 담당 재판장 이강국은 2009헌마220에서 자신의 발등을 찍는 두 가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첫째: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함으로써, 목영준이 위반한 [헌법재판소법] 제28조를 반복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 1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2068

수신자 의정부교도소장(수용인 김명호)
(경유)
제목 보정명령

579

사 건	2009헌마2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명호

청구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할 사 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다음, 이에 맞게 이 사건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 만일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음(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70조 제2항).
끝.

재판장 재판관 이 강 이 풍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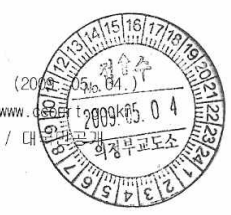
법원사무관 최준수 재판관 민형기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05/04

협조자

시행 심판사무-3885 (2009. 05. 04.) 접수 총무과-3070

우 110-250 서울 종로구 가회로 15(재동 83) / http://www.cjs.go.kr

전화 02)708-3476 전송 02)708-3472, 3596 / cjsgp@ccourt.go.kr / 대



이강국의 2009헌마220 보정명령 1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대하여 2009헌마174에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 39조(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위반하며 각하한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심판과 사전심사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자.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

-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에 규정되어 있듯이,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인으로 구성되는 심판에 회부시키기 전에 사전심사를 거치게 할 수 있다.

2009헌마174 사건은 목영준, 조대현, 김희옥 3명에 의하여 심판이 아닌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었는데²⁴⁶,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각하의 근거인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된다. 이강국은 2009헌마174 ‘사전심사’ 사건을 ‘심판’ 사건으로 사기치고 심판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각하한 것이다.²⁴⁷ 이 사건으로부터 명백한 것은 이강국이 ‘사전심사’와 ‘심판’도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관들이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킨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사들처럼 말이다.

이강국을 고소하고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였다. 고소한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71987 사건은 임석필 검사가 당연 ‘묻지마 불기소’, 2009헌마397로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역시 ‘묻지마’ 사전심사 각하한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필자에게 법리로 무참히 깨지고 나더니만, 다음 부터는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는다. ‘사전심사 각하사건’을 무조건 재심 사건으로 취급하며 ‘헌아’라고 붙이고는 모두 판에 박힌 ‘묻지마’ 각하 결정문을 보내고 있다.

2009헌마307에 불복해서 보낸 사건 기록이다.

²⁴⁶ 법조항에는 사전심사는 3명이 심리하고,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이 전부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밑에 있는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들이 다 한다고 보면 정확하다.(첨부자료: 2009년 8월 당시의 헌법연구관들과 연구관보 명단) 근데, 이 헌법연구관, 연구관보라는 것들이 작성한 결정문을 보면 워낙 개판이라, 그 밑에 있는 사무관들 시켜서 몇 개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예문들을 짜 집기하는 것 같은 의심까지 들 정도다.

²⁴⁷ 법원에도 현재의 ‘사전심사’에 해당되는 [민사소송법] 제 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 현재놈들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법하게 적용하며 소장 각하를 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와 달리, 법원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받기 때문일이다. 그런데, 2010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에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라는 터무니 없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원고의 돈을 갈취하고 법다 각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생각해봐라, ‘청구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했으면 이미 재판 끝난거다. 변론 열지도 않고 소장만 보고 ‘청구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판사가 변론 열고 그 판단을 뒤집는 다는 것도 모순이고 자신이 이미 ‘청구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을 것 같은가?

*재소는 '재판테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약자. 재소8는 2009.7.6일 발송하였고, 2009헌아83으로 접수되어 7.28일 각하결정이 났고 8.3일 수령하였다는 것.

2009헌마307 => 재소8(2009.7.6일 발송; 2009헌아83 7.28일 결정, 8.3일 수령) => 재소12(8.4일 발송; 2009헌아110 9.1일 결정, 9.4일 수령) => 재소15(9.4일 발송; 2009헌아126 9.29일 결정, 10.1일 수령) => 재소20(10.5일 발송; 2009헌아153 10.22일 수령) => 재소24(10.22일 발송; 2009헌아170 수령) => 재소28(11.12일 발송; 2009헌아199 12.8일 수령) => 재소32(12.8일 발송; 2009헌아226 12.24일 수령) => 재소35(12.24일 발송; 2009헌아240 2010.1.19일 수령) =>재소39(1.25일 발송; 2010헌아26 2.11일 수령) => 재소42(2.16일 발송; 2010헌아56 3.11일 수령) => 재소46(3.17일 발송; 2010헌아77 4.13일 수령) => 재소51(4.26일 발송; 2010헌아114 5.18일 수령) => 재소55(5.31일 발송; 2010헌아145 7.1일 수령) => 재소61(7.2일 발송; 2010헌아181 7.26일 수령) => 재소65(8.2일 발송; 2010헌아216 9.2일 수령) => 재소69(9.3일 발송; 2010헌아245 10.7일 수령) => 재소73(10.25일 발송; 2010헌아285 11.22일 수령) => 재소78(12.20일 수령한 2010헌아314, 12.1일 발송) => 재소 82(2011.1.26일 경 수령한 2011헌아6, 김종대, 12.31일 발송) => 재소 87(2.7일 발송; 2011헌아30 3.3일 수령; 제1 이강국 2.22일 결정, 2.25) => 재소 92(2011헌아69 5.9일 수령; 제2 이정미 5.4, 5.6) => 재소98(2011헌아100 6.30일 수령; 제1 이강국 6.21, 27)

국민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이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분부'(가칭: 현재)의 만행을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 필자는 오늘도 복사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 청구인: 김명호

2. '사전심사'를 '심판'으로 또 사기친 상습 사기꾼,
 20. 현 사전심사 위법 각하 결정.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종놈아!
 너희들 언제까지 '사전심사'를 '심판'이라고 사기치고, 사전심사
 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 39조(일사부재리),
 제 40조(준용규정)을 사전심사 결정에 위법하게 적용시켜
 '불지파' 각하시키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냐?
 TV 법리 논쟁 하자! 내가 비뚤을 한테 쫓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석고대죄 하겠다.

3. 20. 현 '사전심사' 결정은 '사전심사'를 '심판'이라고
 사기치고 내린 위법한 재판 테러!
 하며, 같은 헌법소원 다시 한다.
 <청구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등은
 20. . . . 일 작성 제출된 20. 현 사건의 청구서,
 ' 참조하라. (* 폐기
 했으면 연락해! 보내 줄테니)

4. 「헌법재판소법」 제 70조에 따라 극선대리인 신청한다.
 20. . . . 김명호
 Mark Kim

~~헌법재판소~~ (실명칭: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

헌법소원 청구서 틀 1²⁴⁸

<헌재의 법 준수 척도를 보여준, 전효숙 사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의 안정장치로 기회주의자인 양승태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듯이, 노무현도 자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 전효숙을 헌재소장으로 앉히려고 작정하였는데, 좀 걸리는 것이 전효숙의 임기였다. 그대로 임명하면, 전효숙의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던 기간을 차감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6년의 헌재소장을 시킬 요량으로 노무현은 전효숙에게 사퇴하도록 하였고

²⁴⁸ 교도소에서 '제목, 사건번호, 재판장 이름, 날짜'란만 비워 놓고 채워넣을 수 있도록 복사해서 사용해왔다.

전효숙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덜컥 사표를 쓴 것이다. 기회만 노리던 한나라당이 속 들여다 보이는 노무현의 짓거리를 가만히 두고 보겠는가? 감정섞인 무차별 비난을 퍼붓고 있었는데, 조순형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 2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를 언급하며 전효숙은 사표를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이 무슨 할 말이 있나? 꿈수를 들킨거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꿈쩍할 수 없었던 것.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곧바로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땀질에 나셨지만, 꿈수가 떠벌려져 망신은 당할대로 당했지, 헌재소장 욕심에 앞뒤 안 가리고 사표냈던 전효숙도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위반한 사실이 창피했는지 사퇴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무얼 말하는가? 헌재 재판관들의 법 준수 정서가 형편없고 법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니 그때서야 깍소리 못하고 가만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12조가 초등학생 수준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이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어려운 조문이었으면 현재의 평소 꼬락서니로 보아 국민들을 속이려고 별짓을 다했을 것), 공개적이지도 않은 장소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을 테니 이들이 얼마나 개판치고 있을지 끔찍하다. //

5. 춘천교도소의 비리에 기생하는 박홍래의 재판테러

(1) 교도소 내 비리를 은폐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징벌

검경의 석궁 증거조작으로 구속된 필자는 법원, 검찰, 헌재 등의 압력으로 의정부 교도소에서 연고지도 아닌 강원도 원주교도소로 갔다가 급기야는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어 고문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참조: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알몸 검신' 논란, 뉴시스, 2010.4.12).

춘천교도소의 폭행 고문을 면회 온 가족에게 얘기했더니 이 종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벌을 가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 제307조에 저촉되는 행위니 검찰에 고발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이다. 의도는 뻔한 거다. 검찰에 고발해봐야 무고로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고 결정내릴 수 있는 춘천교도소 징벌위원회위원회에서 징벌을 먹이자는 거였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춘천교도소 내에서 필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감옥생활 4년 동안 징벌 한번 받지 않았던 필자는 춘천 교도소에서 연달아 2번 받았다.

그동안 필자는 판검사, 헌법재판관들과 싸우기는 했지만 말단 공무원들과의 다툼은 가능한한 피해왔었다. 하지만 수용자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판검사, 헌법재판관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춘천교도소는 가만 둘 수 없었기에,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징벌 취소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하였는데(춘천지법 2010구합724, 재판장 박홍래), 여기서 박홍래라는 춘천교도소의 방패를 만나게 되었다.

<춘천교도소 대하여>

춘천교도소는 교도관들 사이에 서울 경기 지방에서 징계 받은 교도관들의 유배지로 평이 나있다. 그래서 그런지, 춘천교도소 교도관들 중에는 완전히 양아치 조폭같은 인간들이 많고, 필자가 다녀본 성동구치소, 서울 구치소, 의정부 교도소, 원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영등포 교도소 들 중 수용자를 위한 시설은 최악인 반면에 교도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최상이었다.

웃기는 것은 춘천 교도소 정문에 ‘희망의 마을’이라는 돌비석을 갖다 놓았다, ‘죽음의 마을’ 같은 데 말이다. 징벌방에서 같이 있었던(2010.3.25-4.1) 이모 말에 의하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교도관이 ‘죽으면 나간다’고 했었던다. 필자가 춘천에 도착한 그 다음날인 3.26일 오전에 수용자 하나가 목을 매는 자살을 기도했었는데, 이모씨 하는 말이 ‘저거 다 쇼다. 교도소측이 워낙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갖고 저 쇼를 벌인 거다’.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담보로 쇼를 하는 상황이라면 춘천교도소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2) 변론 종결날에 확연히 드러난 박홍래의 속내

2010.11.11일 변론을 종결하는 날, 박홍래가 피고 춘천교도소에게 필자에 대한 징벌이 끝난 날짜를 확인하고 필자에게 지난 일을 잊으라는 말을 꺼냈을 때, 필자는 박홍래가 이미 필자를 패소시키기로 작정하였다는 사실과 ‘징벌이 종료되어 징벌 취소의 이익 없다’라는 패소 이유까지 짐작할 수 있었다.

치미는 분노를 참고 박홍래에게 한마디 했다. ‘한국의 부정 부패가 많은 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관용을 베풀 곳에서는 베풀지 아니하고 일벌백계를 해야 할 곳에서 영똥하게 용서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한 거고 편지로... 저희 집사람이 아프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내년 1월 말에 출소하게 됩니다.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재판을 밀어주시고 증인신청을 해서 저의 대승적인 목적을 판사님이 고려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제가 자유롭게 춘천교도소의 비리를 아주 낱알이 까발리겠습니다.

재판장: 1월 언제라고요?

원 고: 1월 24일입니다.

재판장: 얼마 안 남으셨네요. 혹시 이동우와 원두연 증인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강 알겠어요,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고가 재판을 받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사건은 여기 까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여비까지도 실랑이가 터지다보니까 저희도 오늘 그냥 잘 소환이 돼서 할 까하다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나가서서는 건강하게 나가실 것 같은데, 나가셔가지고는 이쪽 일을 잊어 버리셔야죠.

원 고: 판사님 죄송합니다만, 흔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보면 일단 가해자가 가해를 해놓고 나서 진실이 밝혀지면 그다음에는 명예회복 했다고 하면서 이만큼 잊어라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제가 잡혀서 들어와서 4년 가까이 살면서 확신을 더욱 더 확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는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신상필벌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결국에 확실하게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확실한 소신이고,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줘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쓸데없는 데에도 관용을 베풀고,

속들여다 보이는 박홍래의 지난일을 잊으라는 말 1



벌을 주지 않습니다. 상을 줘야할 때에서 주지도 않고...

재판장: 자 원고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 정도해서 재판을 마쳐서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를 하도록 하지요.

원 고: 그럼 제가...

재판장: 나중에...

원 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원두연에 대한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강제로 조사했다는 것은 피고 측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증거물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 증인을 신청하는 것을 취소하는 대신에 그 자료에 의해서 그것만 인정하는 것 같다와 판결문에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한 줄만...

재판장: 무슨 이야기인가요.

원 고: 그러니까 원두연이 강제로 제가 변호인 선임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입회 없이는 돌아가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를 하면서 강제 조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장: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원고 우리가 판결 선고를 100% 결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물론...

원 고: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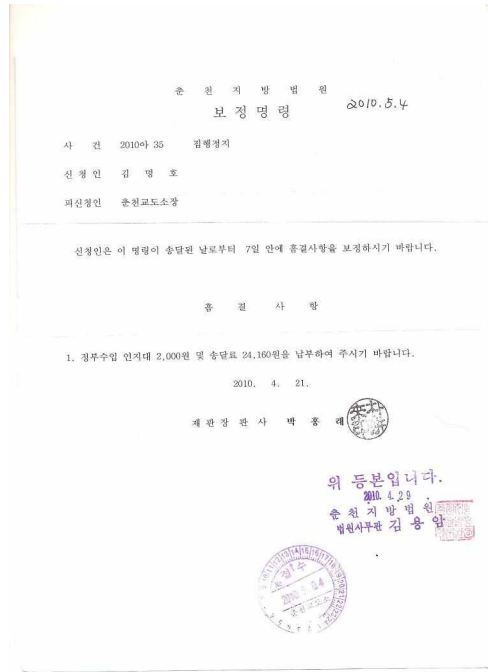
재판장: 예, 재판을 진행할 때는 결론을 전혀 결론을 안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어느 정도... 결론이 바뀌기도 하고 또 판결문 내용은 더더군다나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약속은... 원고 측의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자 그러면 이동우와 원두연은 증인 철회하고...

원 고: 알겠습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재판장: 예.

(3) ‘징벌이 종료되어 징벌취소의 이익이 없으니 각하한다’²⁴⁹라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지연 조치로 징벌을 완료’ 시킨 박홍래

춘천교도소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징벌 집행을 당하고 있었던 2010.4.20일 당시에, 필자는 소장과 함께 ‘징벌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였다. 그랬더니, 금치 징벌(4.21일 ~ 5.4일)이 5.4일에 종료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박홍래는 징벌정지 명령도 아닌, 징벌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보정 명령을 5.4일에 보낸 것이다.



징벌정지신청을 고의적으로 종료시킨 보정명령 1

박홍래의 이 행태는 병원에 들어온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입원비부터 내라는 의사와 다름 없는 범죄행위로, 이미 이 때 ‘징벌완료되어 징벌취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문을 작성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박홍래와 비교되는 전상범 판사의 합리적인 조치>

²⁴⁹ “춘천지법 ‘석궁 테러 김명호 징벌 취소 소송 각하’(연합뉴스, 2010.12.9). 이재현 기자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라. 테러라며 필자의 말은 하나도 인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법원의 말만 전하고 있다.

항

‘보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사법행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사법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을 적용해 대법원에 보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필자는 이미 패소 판결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런 행정규칙이 뭘 말하는가? 대법원이 이렇게 일반 판사의 재판을 통제한다는 것이요,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

(4) 재판테러범이라는 첫 느낌이 틀리는 적이 없다.

의도적인 지연으로 징벌을 종료시키는 것을 보니 박홍래는 박홍우와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재판테러범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춘천교도소를 끔찍히 배려하며 필자 측 증인으로 나온 김성환씨를 두 번씩 오라 가라 하질 않나, 춘천교도소 교도관의 증인신청을 필자에게 취소할 것을 종용하는 등 철저히 춘천교도소를 감싸는게 아닌가? 그리고는 변론 종결일에, 징벌종료된 날짜를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박홍래를 보고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필자는 2010.11.11일 변론 종결 다음 날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제목의 준비서면에서 ‘징벌 취소의 이익없다’는 이유로 각하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석궁사건 증거조작 재판의 김용호, 신태길, 이홍훈 트리오가 하듯, 박홍우는 예정대로 위법 각하한 것이다.

(변형판)
- 재판관 박흥래의 소송기록에 대한 분석 비판 -
< 박흥래에게 보내는 충고 보충 >

사건: 2010 구합 204
원고: 김병호
피고: 충청고도소장 (김종현)

박흥래

11.11 원 판결에서 박흥래 드러냈지만, 예외부위 이상선 결론은 '산출고 기록상도 모른다' 엄청난 피고의 방해 관재없이 소송지휘하는 박흥래 비현대 말의 실정다는 거 박흥래가 더 잘못 있겠지? (ㅇ 맞으리까, 맞음리)

비치권 자신은 과대 평가 하는 등태가라 관사 등태가도 비현문 수동태 법리와 논리를 실시한듯 무슨 소문 있겠냐? 이미 승태 결정해 놓고 그비 부리로 죄 잘못 위법한 형사법이나 관고 있는 재판관 박흥래가 맞이다.

하여, 11월 판결에서 비현대 원판 충고의 보충을 다음과 같이 편역 반복하고 싶으면 변론 재개 하고, 자신 있으면 변론 중지 방송 허가 해라. (비 근태 비는 자신을 비무 모르는 것 같아 백인태 비논리, 법외수준 형편없어, 현비. 어나리 법외가 관사변출사도 무찌 될수려한 있는데로 다 통행하도 부당하다)

다음

1. 보충 이유
충고지변

박흥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1

2

박흥래 재판장은 이 사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하러 선고 해 달라는 원고 요구에 응답을 회피하고는 품판지 같이 (1) 원고의 금지 징벌기간이 (4.16~5.4일) 이미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을 피고에게 확인하였고

(2) 원고에게 '피고와의 지난 일을 잊으라'는 뒤쳐복외 같은 개소리론 하였는 바 ('사약'을 용서한다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한탄'이라는 절망도 포함은지), '하나님 보편 보충 할수 있다'는 옛말과 이같은 박흥래 형태로 부더. 박흥래가

「대법원 2006. 7. 28. 2004누13219, 등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론 구하는 소는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론 구할 이익이 없다'
등을 인용하여 핵심 쟁점 변경없는 각하판결 각성하는 '재판 피더' 지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이와 같은 각하판결 각성의 위법성
(1) 정벌 취소 이익의 존재
「형집행법 제 55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 56조 (거벌처우 계획의 수립 등) 제 57조 (처우) 에 의하여
징벌유무·횡수의 따라 수형자에 대한 각증처우가 달라진다.
비틀 들며, 가석방 전회사를 정전 취소 수형되는 구급시상 등이

박흥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2

결정된다.

그러고 싶사 이러한 정벌취소의의 복잡하고 취소의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그 뿐인 제공자가 박흥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법비가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2) 정벌처분 환도에 대한 박흥래의 귀책 사유
정벌처분이 환회되도록 방지 함으로써, 취소의의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흥래 라는 것.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동시에, 정벌에 대한 '집행 정지신청 (2010 가 35)'도 4.20일 접수하였다. 원회 기각회에도 4.21일 작성된 집행정지 관련 보정명령이 5.4일 (정벌이 끝난날)에 원고에게 배달 되도록 지명시켰다는 것이다, 정지 명령도 아닌 보정명령을!

(※이런 개판도 못한 판사 세기가 다 있나? 실뵈다. 시급을 묻하는 정벌 정지 신청에, 돈주이 묻겠는지 정지 명령도 아닌 신청비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나 내디면서 시간끌고 자빠진 이따위 재판장에게 뭐 기대할수 있겠는가?
시급위주한 부당하게 긴급한 응급조치 취하지 않나하고 일회비부터 묻는다는 병헌의사님들과 뭐가 다른가?)
이 지변을 고의적인 지변이 배라고 할수 있을가?

② 결론부터 내리자면, 없다! 그 이유는

박흥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3

(i) <2010 가 5431> 원상 전상법 판사의 경우
원고의 CCTV 증거보전 청구 등 시급을 묻하는 신청에 대하여 (8.23일, 9.13일 증거조사 관련 <2010 가 220> 등), 집행신청 받아마자, 피고 (충천교도소)에게 그 즉시 증거보전 명령을 내리고 원고에게 증거보전 될 검증되버려 더한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것. (※ 이것이 바로 상식과 법에 따른 판사로서 취해야 할 조치)
그 반면에

(ii) 증인 소환 관련 박흥래의 비주한 변명과 보복성 핑퐁(?)
11.11 불로 예정된 이동주, 원두면 증인 소환 예비 관련 사무 처리를 재판부가 잘못했으면 (박흥래 자신의 주입적 실수가 아니라고 취타라도 재판부 수감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수 없고, 뭐 박흥래의 정발 정지 처리만 보더라도 '그 상헌에 그 증분'이라는 깃발이 튼디지 않나),
원단 증인 소환하고 나서 비비정상 할 것이지 증인 소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증인 취소 증명하고 자빠진 터도!
(※ 전상법 판사의 신속한 조치와 즉명하게 대비되고 박흥래의 변명하는 꼬박서니는 3류 정치인들의 주동이 출리는 것 거리와 다른 것임다)
3. 커우터 보면, 박흥래는 말에서는 실명이 없는 위선적 딱딱이 나 늘비 높여 모든 것을 판결문에서 말리것다며 개판 판결을

박흥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4

으로 주인의 뒤돌아보는 것은 판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1+2=2와 같이 백한 사안에 대한 판단도 모조리 판결로 비추는 이나라 판사들은 자유롭고 기다리는 소송당사자에게 그 백한 사안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없는 재판 기법 판결 종류는 2번이상 주인다. 그리고 '판' 한다는 소리같은 '복합화된' 항소·상소·재심' 하라다. 공판정회의도 다름없는 '이유없다' 부응과 이유로 재판된. 재심까지 끌어 올리는 '복합화된' 법이 그러나 '확수 없다'가 확인 사살하고 자바지인 있는 재판도 또한 인간서자들이 바로 이나라 판사들이다)

3. 이 사건 박흥래의 소송외 회 전역에 대한 분석
 박흥래는 처음부터 피고 측 변호인도소 비디 관련 이 사건 핵심 쟁점 연구 없이 '확수 이익 없다'는 주한 판결 내왕 목적으로 원고의 김벌회 본 동료 시킨 것이다. 그리고는
 (1) 박흥래의 간 배척듯 원고의 승판로 가져 먹고 (사실조회 회보 특지를 불필요한 짓거리로)
 (2) 원고 측에게는 인식했던 편의 제정을 피고에게는 최대한 배틀 기위하러, 원고 측 일성만 증인은 두 배씩 오게 한들면서
 (3) 4,200원 접수된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에 준거 판결 선고기간을 위반하면서 11월까지 끝을 끌은 것이다. 한따로 주고 상비와 원고비용 부담스면서 실수없는 재판들

박흥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5

진행시켜 온 것. (* 이렇게 시간과 돈과 인 소송당사자 진배만 들을 배척다가 마무리 재판 판결로 사회적 악과 생명감시키는 것이 판사들의 '재판태도'다.
 이 '재판태도'를 좌배부·우배부의 비교적 밑 퍼놓은 판사들에게 주입·세비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찍은 판사들의 의회 이따가 그렇게도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4) 박흥래가 진정 법대로 소송외 회 하려고 하든다면
 ① 노리말 집행 집행장리 집행은 내뱉어야 하고
 ② 피지 못할 사정으로 집행판로 되며 이 사건 취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든다면, 소환장에 유별한 판결로 '확수 이익 없다'고 각하사함으로써, 원고 비용은 물론 국민세금으로 운반되는 법원의 정비를 절약 시켜야 할다. (* 이것이 「헌법 제 7조」에 규정된 국민부사 지인 공무원으로서 각광히 해야 할 판사의 의무!)
 집행 집행장리 사키지 않은 박흥래의 의도야 피고 측 변호인도소를 위한 것이면 병박한 의, 박흥래는 무슨 목적으로 재판을 끌을 풀었을까? 그것은
 (5) '재판태도' 판사들의 공식화된 소송외 회 소송을 (불필요한 짓거리 하러) 끌을 지연시킴으로써 (이과 정에서 법전에도 있는 '중시 규정'이라는 위법한 소송외 회, 「민사소송법 제

박흥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6

7

1997년 제226호, 제147호 등의 규정된 기간 속살은 불수!

① 피소시일 사회쪽 박래인 소송공사자를 적체하게 권고회복 의지를 약화 시킨다 등시네

② '우리 관사들은 미결게 사건 하나 하나에 시간과 공물을 들여 심의하고 있다'는 국민무덤 사기소를 연출하기 위한것 즉 일수이조 효과등 받기 위한

이나라 대다수 관사들은 것들이 이따위 짓거리나 하고 자빠져 있어 법원복신과 사안이 변해가는 것이다. 법원의 미결한 속살은 잘 알고 있는 권역의 돈있는 인간 또는 조력이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을 전담성도 없는 법원으로 끌고 오게 만들고는, 들켜서때 모회비 돈내고 변호부 사들, 온갖 로비를 변호부 관공들 끌어내보라고 뜯어다, 그리고 '법원의 관공비 따르겠다'는 개소리도 빼놓지 않고 지껄어대다

③ 결론:

이나라 법원의 사안이 변하는 것은 국민의 ^행소부정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 아니고 순전히 재판테러 저지르는 법원 것이라. 신상판벌의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 봐라!

수가 안된 자상이 파공을 말해서도 ^판정결의 능고 법원의 사건을 끌고 오도록 만들것는가? 내부에서 상역수공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박흥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7

8

법원이 개판이니 그런 법원 판공, 권상다고 설쳐대는 인간들이 상대쪽 약자들 격리하는 일이 비밀비저화해 이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야.

이나라 부패와 비리의 정권에서 시비버부 판공의 최종가인 법원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말이다.

4. 박흥래, 어쩌?

기분 나쁘냐? 불만 있으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뺨쿠제거해!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비가 오려할때면 사과해봐. 그리고, 11월 비가 나한테 '퇴고와의 뜻을 읽었다' 했듯이, 비도 있고, 핵심 정쟁들에 대한 병려한 판공을 작성하라고 비분에 있는 관사에게 ^판정해라. 조목처럼 법위반하는 정쟁하리 받고, 알겠냐? 이 재판테러 봐!

*Cafe.daum.net/myunghonimsarams 에 가봐라.

2010. 11. 14
김병호
Myung Hon

박흥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8

다시 한번 확인한 교훈은 재판테러범들이 작심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것. 하여 박흥우

에게 법정에서 보자는 서면을 제출하고는 박홍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허윤) 제기하였다.

< 재판테러범 박홍래에게 >

사건: 2010 구합 724
 원고: 김병호
 피고: 김근철, 충청고도소장

박홍래,
 너가 의도적으로 진땀 흘린 증거 시켜 놓고도, '진짜 증언되어
 정벌 취소 이익 없다'는 뻔뻔한 이유로 각하한 재판테러의
 판결문 잘 받았냐.
 너의 손 안에서 떠나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가?
 항소 대신에, 비닐의 재판테러에 대한 ^변민사소송을 서울중앙
 지법에 제기 하겠으니 법정에서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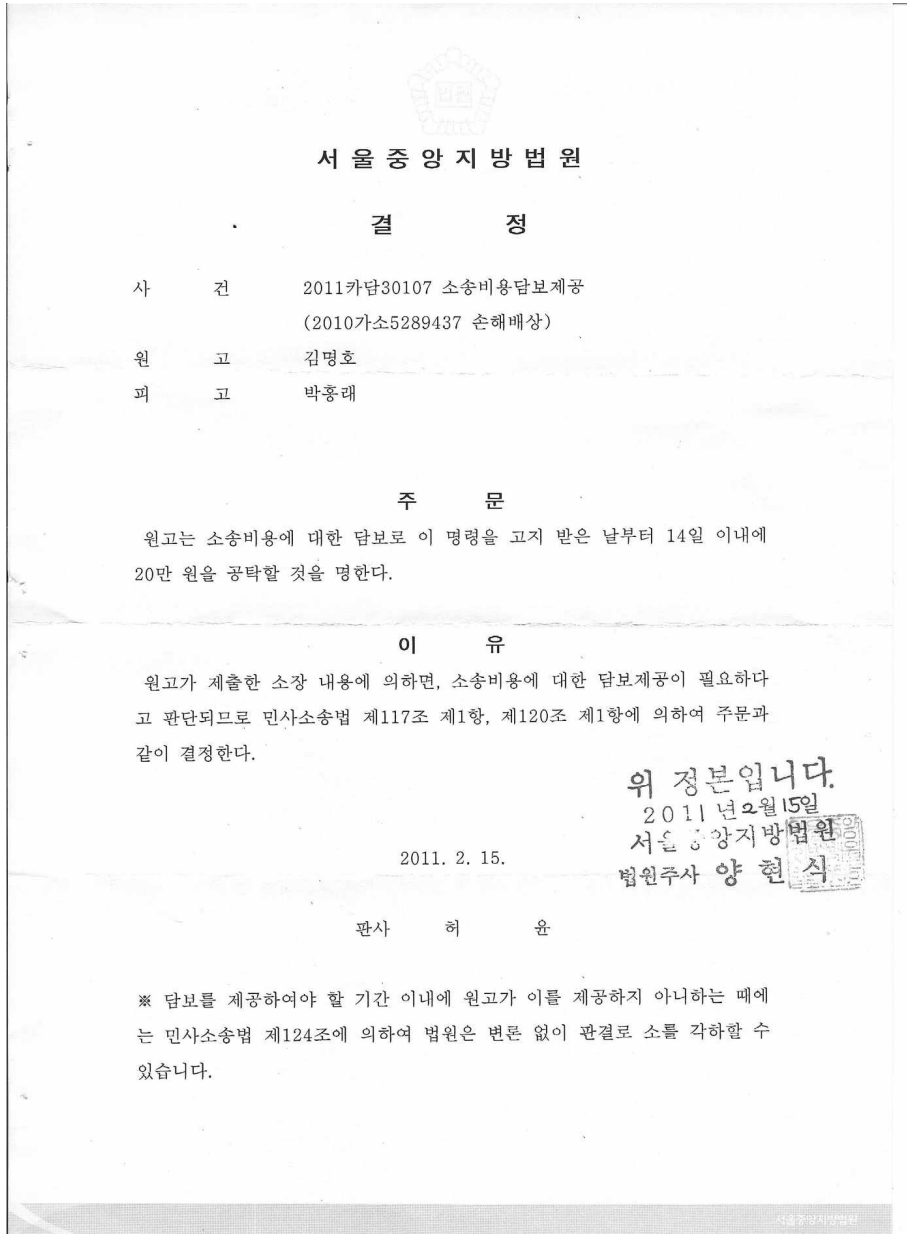
2010. 12. 20
 김병호
 Min Ho Kim

충청지법 행정부

재판테러범 박홍래에게 1

6. **박홍래 구하기에 나선 서울중앙지법의 허윤, 김대웅, 조정래의 세트 플레이**

- (1) 박홍래를 위하여 필자를 괴롭히기로 한 허윤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명령을 필자에게 내렸다. 그에 불복 항고하니,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청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에 해당된다며 김대웅, 오흥록, 김미경이 기각했다.



허윤의 담보제공 명령 1

- (2)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함께 재항고하니, 송달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김대웅이 위법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가타부타 아무 결정 없이 깔고 뭇개고 있다.
- (3)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들을 스캔해서 법원 노조 게시판에 올리고,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명령

[대법원 2007.3.30, 2007마80]

‘인지 등 보정 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규칙 제 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도 여기면서 김대웅은(2011라504 소송비용담보제공) 재항고 각하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 (4) 이 같은 김대웅의 위법 장단에 맞추어, 조정래는²⁵¹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그 공포의 ‘이유 없다’는 4글자로 기각하였다.

²⁵¹ 인사철도 아닌데, 허윤에서 조정래로 판사가 바뀌었다. 조정래에게도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였다는 영수증 사본을 보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가소5289437 손해배상
원 고 김명호

피 고 박홍래
춘천시 효자2동 356 춘천지방법원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1. 7.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소송법 제124조

판사

조정래

조정래

2011-0019043637-FDAF4

위변조 방지용 배코드입니다.

1 / 2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1카기4560 위헌심판제청
신 청 인 김명호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89437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

판사 조정래

위 정본입니다.
201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양 현 식



- 1 -

조정래의 4글자 '이유없다' 기각 결정문

7. 춘천교도소 비리를 감싸는 춘천지검 검사들을 고소했더니 그 뒤를 봐주는 판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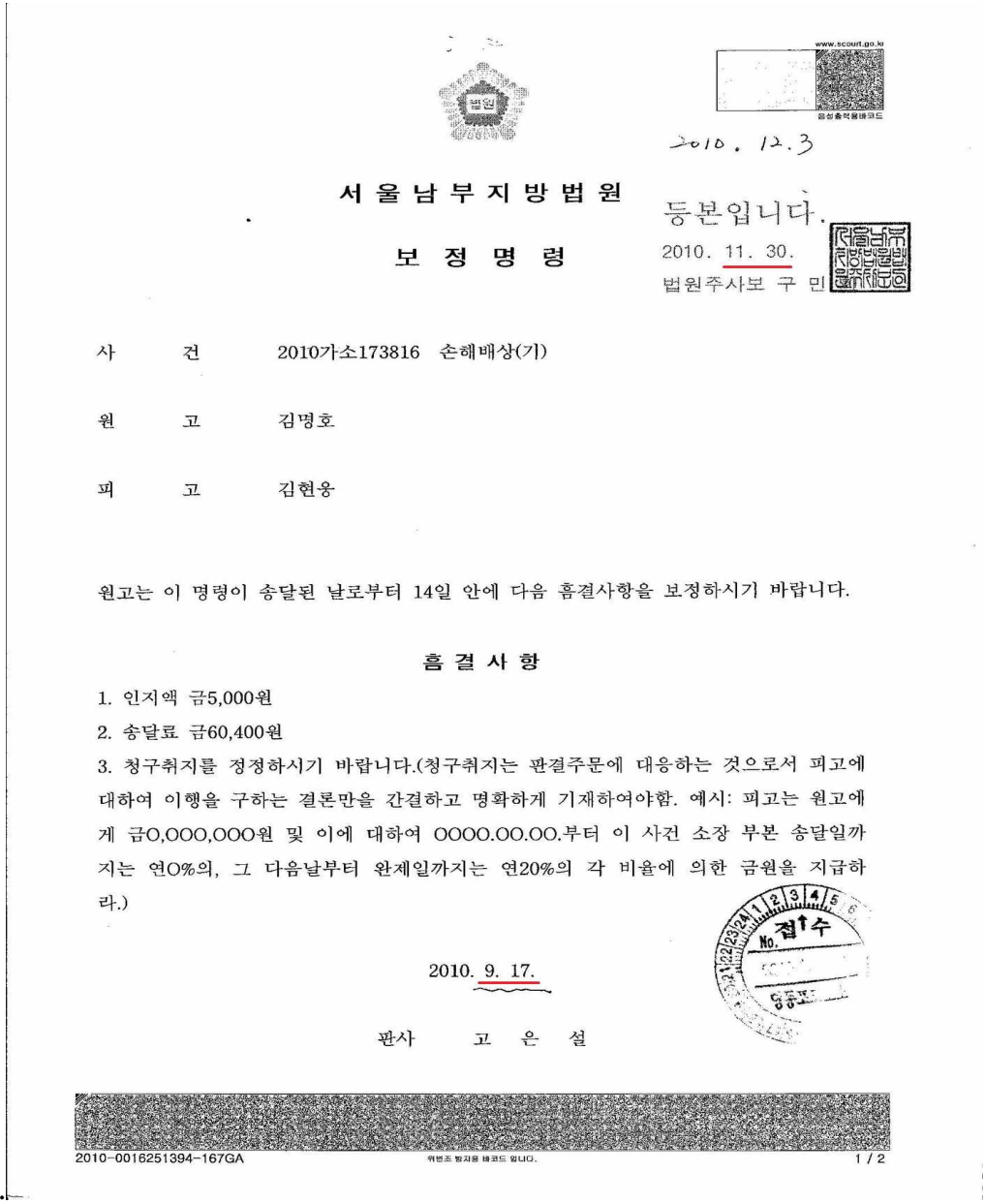
- (1) 춘천교도소 비리에 대하여 고소했더니, 춘천지검 검사 윤중기, 도진호, 위수현 트리오가 '묻지마' 불기소 처분을 하길래, 윤중기와 춘천지검장 김현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 윤중기의 첫 재판은(서울 남부 지법 2010가소190095)

2010.11.26일에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간 윤중기는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판사가 문서송부촉탁²⁵²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며 빈둥거리더니 2011년 11.25일에서야 재판을 열었다²⁵³. 문서송부촉탁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춘천지검은 수사기록을 보내지 않고 있었고 법원도 놓고 있었던 거다.

²⁵² 춘천교도소 비리에 대한 윤중기 수사기록 전체를 문서송부촉탁신청.

²⁵³ 그 사이에 판사가 정덕수로 바뀌었다

(2) 김현웅 사건은(서울남부지법 2010가소173816) 2010.9.7일 접수가 되었는데, 담당 고은설은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9.17일 작성해놓고도 2달 반을 묵혔다가 12월 초에 보내는 등 재판하기 싫어하는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고은설의 직무태만 증거 1

<춘천교도소 비리 은폐한 춘천지검의 수사기록 공개를 방해한 고은설>
 2011.1.20일 첫 변론기일에서 김현웅 구하기에 매달린 고은설의 소송지휘기록이다.
 윤중기사건에서와 달리, 필자는 춘천지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고은설 왈, 김현웅이 춘천지검 검사장이기는 하나

수사기록은 춘천지검 소유이고 춘천지검은 제3자이므로 문서송부를 촉탁해야 된다고 한다. 고은설이 자신있게 우겨대니 그러겠다고 하고 영등포 교도소로 돌아와 법조문을 다시 들여다 보니 문서제출하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에는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문서제출명령에는 강제성이 있는 반면, 문서송부촉탁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춘천지검이 제3자라고 해도 문서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은설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일 의사를 분명히 했으니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에 의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면 될 것을 제3자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핑계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 강제규정이 문서송부촉탁에는 없기 때문이다. 고은설은 피고 김현웅 춘천지검 검사장의 편에 서서 김현웅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다. 다시 말해서 김현웅에게 불리한 수사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김현웅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²⁵⁴. 필자는 문서제출명령을 유지한다는 것과 독촉하는 서류를 2011.1.24일 제출하였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다>(* 11.14일 재판에 가보니 박상현으로 교체되었다)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이다, 기득권층의 비리 부패의 증거들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도록 온갖 꼼수를 쓰는 재판테러범들이다.//

²⁵⁴ 재판테러범들은 패소시킬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여러가지 꼼수를 부린다.

8. **‘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인권침해를 당해라’는 헌재**

헌법소원할 때 필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는데, 단 한번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적이 없다.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고 필자의 경제적 사정이 국선대리인 선정 자격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각병’ 걸린 헌재는 모두 기각한 것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사 진 : 2009 헌바 253
신 청 인 (성 명) 김명호
 (주 소) 원주교도소
 (전 화)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1. 무자격 내역(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 월 평균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소명자료(해당란에 V표 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해당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V표 하신 뒤 소명자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 봉급액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증명서
 기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여기서 발버둥 쳐 봐야 (한갑당 30만원 한다는 불법담배장사 살인한) 한달에 50만원도 못 번다! 무슨 증명을 더 바래야? 바래야지!
3. 국선대리인 선정 희망지역(해당란에 V표를 하십시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의정부
 수원 춘천 청주 창원

4.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규정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별지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2009. 11. 3

신 청 인 김명호 

헌법재판소 귀중

(실명장: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분부)

원주 교도소에 수감 당시 필자는 월 평균수입이 150만원 미만으로서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었다. 그럼에도 매번 기각하기에, 소명 기타란에, ‘원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여기서 발버둥 쳐봐야 (한 갑당 30만원 한다는 불법 담배장사를 얹는 한) 한달에 50만원도 못 번다! 무슨 증명을 더 바라느냐? 바랄 바래야지 !’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에 대한 현재 기각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 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한다는 것이다.



헌 법 재 판 소 2009. 12. 28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9헌사95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명호

원주교도소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9헌바31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2.

재판장 재판관 이동훈 이 동 흠

- 1 -

2009-1000009516-E8747 1/3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결정문 1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의하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선정하지 아니하는 그 단서 조항이라는 것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다.

그렇다면, 심판에 회부할 필요도 없이 헌법소원 자체가 그냥 각하라는 얘기인데, 웃기는 것은 2010헌바253 사건이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이다. 국선대리인 선정 심사 과정 중 이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뭐하러 심판에 회부해? 이 행태는 대한민국에는 지키지도 못하는 걸치레 제도가 많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아니 헌법재판소 자체가 국민 기본권 보장에 별 쓸모 없는 기구다) 헌법소원 하고 싶으면 돈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거고, 돈 없으면 그냥 앉아서 인권침해 당하라는 거다.(* 기각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또 다시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는데 대답도 못 받았다)

<검찰, 법원, 헌재들의 국민 착취, 변호사 선임 강요>

자신들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검찰, 법원, 헌재는 변호사 선임을 강요한다. 검사들은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소명자료 없이 덮어놓고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과 함께 헌재는 아예 법으로 변호사 없이는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황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 구술 심리하는 법원에서조차 변호사 없이 소송진행을 할 수 있는데, 구술 심리도 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 하는 주제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격식에 맞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변호사만 쓸줄 안다는 건가? 노골적으로 변호사들의 수입을 올리며 국민을 착취하자는 수작내지 헌법소원 청구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과거 한때, 법원에서 법대로 불구속 재판을 실행한 적이 있었다는 데, 그 때 변호사 수입이 크게 줄어 검사, 판사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도 확 줄어 들어 결국 구속재판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단다, 이 검찰, 법원들이 말이다.//

9. ‘법 위에 판사가 군림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세뇌시키려다 고발당한 이광범

대법원장 이용훈의 오른팔이자 친형 이상훈과 함께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유명했던 이광범은 2009년 발생한 ‘용산사건’ 항소심과 용산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이하, ‘재정신청건’)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다.

검찰은 ‘용산사건’ 1심에서 제출을 거부했던 수사기록을 재정신청건에는 제출하였는데, 그 수사기록을 이광범이 ‘용산사건’에 공개한 것이다.

용산사건 1심에서 재판부의 증거개시 명령까지 거부하며 2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검찰 행위는,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 [형사소송법] 제 424조와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23447]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제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명백하게 위반한 직무유기 범죄였다.

직무유기까지 저지르며 한사코 용산사건에 제출하기를 거부했던 수사기록을 검찰이 왜 재정신청건에는 제출하였을까?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 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를 믿은 것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이광범이 이 법조항을 지킬 것이라고 믿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광범은 검찰의 믿음을 보기 좋게 깨버린 것이다.

이광범의 이 행위는 치밀한 계산 하에 계획된 것일 수 밖에 없다.

- (1) 검찰의 위법행위를 법률에 따라 바로잡으려는 노력 대신에 용산사건에 대한 동정과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빌미로
- (2) 국민과의 약속 및 맹세이자 법관으로의 생명인 엄격한 법률 준수 의무를 내팽개치고
- (3) ‘법 위에 법관이 군림한다’는 반 법치 주의 국민정서를 심는 노림수의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맞받아 친²⁵⁵ 이광범의 행위는 검찰의 위법행위와 그 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에

²⁵⁵ 아들이 폭행 당했다고 검경에 고소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폭행한 한화 김승연 회장의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광범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법관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발한 것이다.

(첨부자료:이광범 고발장 1-----380)

이광범이 용산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도 없고 공개 이후의 파장이 클거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개하였다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판사가 재판에서 하는 일은 항상 옳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세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웃기는 검찰과 한심한 시민단체>

당시의 검찰총장 김준규는 이광범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이라고 길길이 뛰었다고 한다(‘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검-법 갈등 최고조’, 뉴시스 2010.1.15).

실제로 검찰이 길길이 뿔만한 짓을 이광범은 저지른 것이니 필자가 이광범을 고발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냉큼 이광범을 기소해야 마땅한데 3개월 법정기한이²⁵⁶ 지나도록 기소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다. 하여 2010.5.1일 경 대검찰청에 검찰 청원했더니 그때서야 (5.20일) 서울중앙지검 정대정 검사²⁵⁷ 보자고 부른다.

꼭 이렇게 쑤셔서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야지만 움직이는 척 하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까지 일해 달라고 구걸해야 하다니.

출두해서 친절하게 법리 등을 설명하며 진술조서까지 꾸며 주었는데도 여전히 종무소식이다. 1년이 훌쩍 지난 2011.8.26일 까지도 이광범 기소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아마도, 검찰들은 필자의 고발 건을 법원 협박카드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용산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이광범을 기소하겠다고²⁵⁸.

용산사건에 껌딱지처럼 붙은 시민단체들은 검찰을 비난하기에 바쁘셔서 그런지 법원 놈들의 이 흉악한 행위는 보지도 못한다. 법을 공부했다는 용산 사건 인권 변호사

²⁵⁶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에 따라, 검찰은 고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²⁵⁷ 조서를 꾸미는 중에 정대정에게,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이광범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까지 하고 난리를 쳤는데 기소하라’고 하니, 법리를 따져 봐야 한다. ‘아니 김준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를 위반한 것도 맞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 묵묵담담. 참고로, 이광범 기피신청은 역시 각하되었다. 이광범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놓고 말이다. 여론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 등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이런 경우는 판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기피신청을 각하시킨다. 조관행 기피신청도 이렇게 각하시켰다는 사실. 법원 놈들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한다. 필자가 말했듯이, 단 한번도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인적 없다.

²⁵⁸ 이용훈의 오른팔이었던 이광범은 변호사 되고 그 형 이상훈은 대법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국민들 등친 덕분에.

김형태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이광범 고발장과 함께 ‘불리한 법조항은 무조건 묵살하는 주제에 유리한 것은 무조건 합법이란 말이나?’라는 제목의 글을 레프트21에 보냈는데, 게재를 거부당했다. 김형태가 레프트21 무슨 위원인가 한 자리 하고 있었는데, 김형태를 욕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10.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개념없는 판사들이 벌이는 작태들

(1) 춘천지법 2010가소5431 김신유

(2) 서울 남부지법 2010가소173816(피고: 춘천지검장 김현웅) 담당 판사 박상현

2011.11.14일 재판에서 박상현은 공무원이 소지한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도 문서제출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고 머슴들이 한 일의 결과는 국민이 볼 권리가 당연히 있다. 그런데도 우겨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에서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를 잘못 이해하고 우겨댄 것이다.

가만히 살펴보자. 이 제2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1항의 경우에는 당연히 문서제출의무가 있고 그 이외에도,

즉 제 1항의 조건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를 만족하는 경우들 이외에도(* 여기의 '이외에도'는 추가한다는 의미다)

1.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문서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공무원의 서류는 제외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무원 소지의 서류는 반드시 제1항의 1, 2, 3를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소지의 서류는 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상현은 필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다고 강력하게 우겨댔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상식에 어긋나면 당연히 법에도 위반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344조를 들여다 보았다면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인데, 그런 자세가 없는 것이다, 이 나라 판사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을 선천성 법률 기형아라는 것이다.

(3)

2장. 종놈들의 공식화된 국민탄압 수법

I. 법원의 ‘재판테러’ 수법

1. ‘정답이 있는 사건’을 ‘선택의 사건’으로 사기치기

법원에 오는 사건들은 다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4와 9 어떤 숫자가 더 좋은가?
- (2) 4와 9 어느 숫자가 큰 숫자인가?

첫번째는 ‘선택의 문제’로서 새만금 사건, 안락사 사건, 낙태 사건 등이 해당되고 이러한 사건에서는 ‘주장’, ‘손을 들어 주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답이 9다, 유일한 답이 정해져 있다. 법원에 오는 대부분의 사건이(최소한 95% 이상)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답이 있는 사건’을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사기치고 로비와 돈 받아 쳐 먹은 대로 횡설수설의 판결문을 갈겨쓴다는 것이다.

그에 맞춰 기자들도 ‘누구의 손들어 준다’는 따위의 표현으로 선택문제의 사건으로 국민을 호도한다. 정답이 정해진 사건은 정답을 제시한 당사자의 손을 판사가 들어주어야 하는데, 정답을 찾을 생각이 없는 판사들이 손만 들어 주면 그 당사자가 정답을 제시한 것 처럼 호도한다는 얘기다. 기자들이 사건 파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판사의 말을 옮겨 보도하거나 판사들의 범죄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기사나 쓰고 있으니 재판 테러범들은 이러한 위법 양아치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다.

2. 법률 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하기

대법원은 당초 교수 재임용 관련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대하여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300]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라고 해석하였다²⁵⁹. 그러더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위반하고 즉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1987년 [대법원 1987.6.9,

²⁵⁹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는 하였지만, 이 해석은 연구를 등한시하는 교수들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재임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선고 86다카2622]에서 ‘교수 재임용은 학교 자유재량행위’라고 해석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은 ‘교수 재임용 소송= 교수 자동 패소’를 공식화하여 20여년간 400여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 시켰다.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며 대법원이 교육비리를 고발한 수많은 교수, 교사들 해임시킬 합법적(?)²⁶⁰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한 것이 과연 이 교수 재임용 사건일 뿐일까?

3. 본안전 판단, 위법 형식논리

패소 판결문들이 정형화 내지 공식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법원은 마음먹은 당사자들을 패소시키기 위한 판결문 작성에 대하여 연구를 한 듯하다.

그러한 판결문 작성 방법 중의 하나가 사건의 진상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패소시키고 싶은 당사자가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를 목살하고 패소시켰다가는 욕을 먹기 때문이다²⁶¹.(예: 박홍우가 패소 시킨 필자의 서울고법 2005나84701 판결 등).

그러니, 애초부터 실제적 진실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각 내지 각하시키는 전략이 법원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략인 것이다. 이로부터 ‘본안전 판단’이라든가 ‘형식논리’라는 재판 테러를 위한 위법 용어들이 탄생된 것이다. (* 현재의 사전심사 각하가 법원의 이 본안전 판단, 위법형식논리에 의한 각하 내지 기각에 해당된다.)

1996년 필자의 부교수 지위확인 사건을 패소시킬 때 장준철과 양승태가 사용한 것도, 그리고 김홍도, 김용덕, 노정희, 민중기가 필자를 패소시킨 방법도 이 본안전 판단과 형식논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본안전 판단의 형식논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대법원이 실제적 진실에 대한 판단 없이 본안전 판단만으로 20여년간 400여 교수 재임용 사건을 모조리 기각 내지 각하한 것이다.

교수 재임용 사건에 대해 법원은 대학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던 간에 그에 대한 제재는 커녕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재임용이 학교 재량이니 재임용 탈락은 합법’이라는 86다카2622 위법판례에서의 ‘형식논리’로 교수들을 패소시킨 것이었다.

<법원은 교육계의 에이즈 바이러스>

작금의 대한민국 교육이 형편없는 수준인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법원에 있다. 대학비리를 폭로한 해직교수들을 사학 재단의 로비와 돈 받아 처먹고 생매장 시킨 것이 법원이기 때문이다. 교육계가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수단 즉 교수들의 비리고발 시스템을 영원히 작동정지시킨 것이 법원이니 교육계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에이즈

²⁶⁰ 위법한 법적 근거

²⁶¹ 그래서 판사들이 판결문 쓰기를 아주 싫어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서로 화해시키려고 발버둥을 친다. 시비를 판단해야 할 판사가 판결문 쓰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바이러스와 다름 없다.//

4. 대법원 판례로 (성문)법조문 사장화: ‘훈시규정’으로 패소시킬 당사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기

[민사소송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무려 40년만인 2002년에 (전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제출기한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 147조,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 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판사들이 [민사소송법] 제 199조(종국 판결선고 기간)등 법정기한 관련 법조항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판사들은, 대법원이 만든 ‘훈시규정’이라는 법전에도 없는 위법용어를 언급하며,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정기간을 임의로 위반하고 있다. 대법원이 멋대로 만든 ‘훈시규정’이 [민사소송법] 제199조 등 법정기한을 규정한 법조문들을 사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례는 법이 아니다 ! (* 영국과 미국은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몽테스키외가 말했듯이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한 존재다. [형법]에 살인은 징역 1년에 처하고 절도는 징역 2년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원이 말이 안된다고 살인범에게 1년이 넘는 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그게 성문법 국가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개정하려고 노력해야지 판사가 ‘법관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성문법 국가에서 판례가 성문 법조문 위에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법보다 우선적으로 인용한다. 실제로 판결문들을 보면, 법조문을 인용한 것보다 판례를 인용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마디로, 법은 무시해도 대법원 형님의 말씀에는 맹종하고 있다는 것, 즉 법원은 양아치 조폭 조직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이 모양이니,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 기간)를 하나도 안 지킨다.

이 ‘훈시규정’은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 등이 힘없는 서민들의 소송을 포기시키는 최고의 무기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만이지만 나홀로 소송하는 서민들에게는 생업에서 쪼개쓰는 시간이 돈이다. 그런데 서민의 귀한 시간을 판검사 헌재가 법정기한은 ‘훈시규정’이라며 낭비함으로써, 서민들을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 ‘훈시규정’은 당장 금지해야 할 위법용어다.

5. **법 목살한 <법원실무제요>로 법원 직원 세뇌교육²⁶²**

헌법재판소는 ‘헌재실무제요’를, 법원은 ‘법원실무제요’를 내부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헌재실무제요는 공개되어 있는 반면, 법원실무제요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법원실무제요가 비공개인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사실은 승진시험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 법원 직원들을 세뇌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실무제요에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법원행정처가 멋대로 위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²⁶² “영화 속 ‘도가니 재판’은 낙제점… 채널A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재판 노하우’에 비춰보니”(동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10-05)

가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 그 공격방어방법을 심리하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그 공격방어방법을 심리하게 되면 기일을 속행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입증방법에 비하여 증거조사의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2)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것

(나)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

주로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 절차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이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서면도 반드시 독립된 신청서에 의하여서만 아니라 준비서면 등에 적어도 무방하다. 독립된 각하신청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기록에 가절한다(인지역·원칙방법예규).

각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되지만, 새로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고 변론준비절차가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각하를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여겼던 수시제출주의 하에서의 실무편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각하를 함에 독립된 결정으로 하여도 좋고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도 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재삼스럽게 관

견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각하 당한 당사자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민소 332조). 그러나 각하신청이 배척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에 의하여 소송을 지연시킨 당사자는 상소에 불구하고 증가된 소송비용부담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민소 100조).

7. 재정기간

가. 의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있어서,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만으로는 당사자의 협조와 법원의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기대하기 힘들다. 과거의 실무관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실기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는 아니한 관계로 법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각하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개정전 민소 247조 2항)를 확대하여, 재판장이 사전에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소 147조).

적시제출주의의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바,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그 제출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그 각하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기간을 넘긴 공격방어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대한 신뢰를 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정기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① 서면공방 단계에서 제출기한을 넘긴 사례가 여러 번 있거나 준비서면 제출촉구 또는

위법한 법원실무제요 1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판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법보다 매뉴얼을 먼저 들여다 본다. 그러니 법을 위반한 법원실무제요를 만드는 대법원 행정처는 위법 행위를 권장하는 기관이라는 얘기가.

6.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제적인 증인소환’ 묵살, 기각하기

(1) [헌재결 1997.11.27, 92헌바28]의 결정 요지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이른바 적법절차주의를 채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6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의 전개는 절차 적정성 내지 절차의 정의합치성을 뜻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내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결정 ;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등 참조).

(2) [미국연방헌법수정] 제 6조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움되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의 권리가 있다)

(3) [미국연방헌법수정] 제14조

‘Amendment 14.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어떤 주정부도 적법한 절차 없이 그 누구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지 못한다)

(4) [미연방 대법원 판례 Washington v. Texas, 388. U.S. 14. 1967]

‘Sixth Amendmen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is applicable to the states through the Fourteenth Amendment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을 규정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 6조는 [미국연방헌법수정] 제14조의 규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헌재결에 의하면, 헌재가 [미국연방헌법수정] 5, 6, 14조항들과 판례를 수용하여, 형사 피고인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작용에 의해 침해 받은 국민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강제소환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우, 석공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증인인 박홍우, 양승태 등에 대하여 거부 당하였고, 박홍우는 서울고법 2005나84701사건에서 이용훈, 이광범, 양승태 등의 증인신청을 거부하였다. 이는 명백한 위헌인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다. 이 헌재의 결정은 헌재존립의 가치와 근거를 보여준 훌륭한 결정이었다. 헌데 92헌바인 것으로 보아 92년도에 접수된 사건인데 97년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헌법재판관이란 것들이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180일 법정기간을 수차례 위반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정했다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재판의 독립이니 뭐니 양심이니 뭐니 떠들고 있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7. 패소시킬 당사자의 핵심적인 증거신청 훼방 및 기각하기

박홍우의 혈흔 검증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정희, 지영철, 민중기 등이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규정된 증거채택의무도 위반하듯이, 재판테러범들은 패소시킬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적절하게 방해한다. 그리고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권투시합에 비유하자면 심판이 패배시킬 선수의 손발을 묶어놓고는 상대방 선수와 함께 두들겨 패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2010가소173816 사건의 담당 고은설이 김현웅 비리관련 수사기록들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문서제출명령 신청 대신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도록 종용한 것도 적법한 증거신청을 훼방하고, 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패소 판결내리기 위한 것이었다. (* 강제성이 없으니 쟁기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판사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0년 만에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의 핵심적인 법조항들 중에는 문서 제출의 강제성을 부여한 제347조, 제351조 등이 있다. 그럼에도 판사들이 법을 묵살하니 법을 개정해도 소용이 없다. 법을 드러내 놓고 위반하는 판사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8. 동료 판사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무조건 기각하기

대한민국 판사들은 동료들 감싸기에 미친 집단이다. 필자는 사법역사상 단 한차례라도 법관기피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많은 법조비리가 터지고 기피신청이 있었건만.

그럼에도 전 대법원 행정처 처장 장윤기는 ‘실제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소송지연 목적, 해당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감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로 인한 절차의 지연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반하장으로 국민을 매도했다.(참조: 2006년도 국정감사 답변)

(1) 부러진 화살 대신으로 바뀌치기된 멀쩡한 화살²⁶³, 수리 조작된 석궁 등을

²⁶³ “경찰 관계자는 "구부러진 화살을 봤다는 경비원의 말을 듣고 화살을 찾았지만 없었다"며 "그래서 김씨가 가지고 있던 다른 화살 3개를 보냈다"고 털어놓았다”(‘경찰, 혈흔 등 물증 못 찾은채 석궁테러=살인미수’,

증거로 채택한 김용호에 대한 기피신청(서울 동부 지법 2007고단203)

(2) 부러진 화살 대신으로 바꿔치기된 멀쩡한 화살, 수리 조작된 석궁, 혈흔 조작된 박홍우 옷가지를 증거로 채택한 이회기에 대한 기피신청(서울 동부 지법 2007노1060)

(3) 부러진 화살 대신으로 바꿔치기된 멀쩡한 화살, 수리 조작된 석궁, 혈흔 조작된 박홍우 옷가지 증거로 채택한 신태길에 대한 기피신청(서울 동부 지법 2007노1060)

등이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들이 하나 같이 어처구니가 없다. 예를 들면,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석궁의 안전핀을 수리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서울동부지법 2007초기468, 최규홍, 나상훈, 이재신)²⁶⁴

(4)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 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90조를 위반하면서 까지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 일치 여부를 감정거부한 노정희에 대한 기피신청(서울 중앙지법 2009가합96470)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신청이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711 판결 등 참조)”라며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477 기피신청사건을 기각하였는데, 담당 판사 장재윤, 김태홍, 박미선은 ‘증거신청이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라는 문구를 대법원 73다711에 삽입함으로써, 판례를 위조하고 그 판례를 기각사유로 삼은 것이다.

한국일보, 2007.9.5일)

²⁶⁴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부지방법원 2007노1060호, 대법원 2008도2621호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금 150,000,000원을 구하면서 신청인의 유일한 입증방법으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였던 박홍우에 대한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인 법관 노정희가 위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의 입증가능성을 차단한 위와 같은 재판진행 태도는 담당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거나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추어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 등 참조).

나.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신청이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이거나 증거조사에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때 등에는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71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

면, 신청인의 타인에 대한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은 위 신청이 생명권
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전자검사에 해당한다는 고려하에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유전자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임의로 서면 동의를
 확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신청인의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을 기각하였다. /
 그렇다면, 가사 신청인의 혈액검증 및 감정신청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방식에 어긋나고 그 증거조사에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증거신청을 채택하
 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위 법원과 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자의적이고 편향
 적인 소송 진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부
 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관사

장재윤



관사

김태홍



장재윤의 판례위조 2

장재윤등은 지영철이 필자에게 보낸 석명준비명령에서 판례를 위조하였듯이, 같은

사기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대법원 73다711 전문을 게재한다.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을 부정기간의 장애를 이유로 조사하지 아니함이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었으면 그를 조사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264조, 민법 제1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병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피상고인】 김성린 외 2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3.28. 선고 72나1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소론 증인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애²⁶⁵ 있었음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그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시가에 차이가 있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입장에서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필자는 장재윤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였으나(서울중앙지검 2009년 형제 94914) 역시나 묻지마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2009초재2426 기각, ‘이유없다’ 재항고 기각로 기각당하였다.

<눈뜬 장님, 임석필의 불기소 이유>

‘... 그러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호 판결문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에 있어 “유일한 증거”의 조사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실시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등 다수 판례에 의거한 것임을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의자들이 달리 허위의

²⁶⁵ 대법원 73다711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재확인 것뿐이다. 필자는 판사들이 이 조항을 핑계로 혈흔검증을 거부하기 위하여 박홍우를 해외연수 보내지 않을까 우려했었고, 그에 대비하여 박홍우의 혈액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수차례 하였다. 물론 모두 기각되었다.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임석필 검사는, 77다711 판결 중 ‘증거신청이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판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자료가 있음에도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임석필은 판례위조까지 하며 박홍우의 혈흔 검증을 거부한 장재윤 등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보은성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료인 검사 백재명의 혈흔 증거조작이 공식적으로 드러날 판이니 말이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09. 7. 31.

사건번호 2009년 형제94914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임석필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I. 피의자
 - 1. 장재운
 - 2. 김태홍
 - 3. 박미선

II. 죄 명 허위공문서작성

III. 주 문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인바, 2009. 7. 14. 위 법원 2009카기 5477호 사건을 선고하면서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711호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여 원용하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작성

-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위 2009카기5477호 판결문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원 판결내용에 없는 “증거신청이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이거나”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판례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호 판결문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에 있어 “유일한 증거”의 조사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실시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 등 다수 판례에 의거한 것임을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의자들이 달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임석필의 불기소 결정 1

자료가 없다

○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각 각하한다

검사

임석필 인

임석필의 불기소 결정 2

- (5)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 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90조를 위반하면서 까지 박홍우 옷가지 혈흔 일치 여부 감정거부한 노정희에 대한 두번째 기피신청(서울중앙지법 2009가합96470)
-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조작을 은폐하려고 ‘남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것은 적절하고 박홍우 혈흔 채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어거지
- (첨부자료:무덤은 파헤쳐도 박홍우의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노정희 1-----376
 무덤은 파헤쳐도 박홍우의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노정희 2-----377
 무덤은 파헤쳐도 박홍우의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노정희 3-----378)
- 에 또 다시 노정희 기피신청을 하였더니, ‘재판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이 명백하다’고 각하였다. 기일지정신청서도 무시하며 재판도 안 열고 시간을 끈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처구니가 없다.

위의 사례들에서 드러났듯이, 재판테러범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기피신청이고 뭐고 도무지 대책이 없다.

국민들은 사법불신하면서도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고 있지 않으니... 필자가 석궁시위하게 된 목적의 하나가 재판테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존 로크(John Locke)가 ‘민중에게 정착된 신뢰에 반하는 그런 법률·정령을 발견한 경우에는, 민중은 그 법률을 폐기시키는 우월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듯이, 법원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민중은 언제든지 법원을 타도할 권리가 있다.

9.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걸레로 만들어 국민 탄압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법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법을 묵살하고 재판 진행하는 판사가 어디 있냐?’가 올바른 표현이다.

필자가 아는 한, 2007년 5월까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말 잘 만들어져 모순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딱 한가지 결점이라면 판사들이 법을 위반하려고 마음먹는 경우에 이를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²⁶⁶.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기피신청을 하면 동료 판사들이 서로 막아주지, 고소하면 검찰들이 무혐의로 막아주지, 헌법소원 하면 헌재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무조건 각하시킨다.

법을 묵살하며 소송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결점을 제외하면

²⁶⁶ 유럽은 일반 시민이 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참심제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우롱 배심원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아주 좋은 그 법은 대한민국 판사들의 고락서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법에서 좋은 것만 골라 그대로 베낀 거란다.(*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다, 선진국 판례를 열심히 베끼고 있다.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에 깜짝 놀랐는데, 그것 역시 미국 판례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그런데 잔머리만 발달한 인간들이 그 좋은 법에 손대기 시작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4) [민사소송법] 제117조로 뺄고 변론없이 패소시키기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항에 ‘청구이유가 명백한 때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라는 구문을 넣어 [민사소송법]을 걸레로 만든 사실을²⁶⁷ 2011년 2월 소송 진행 중에 알게 되었다.

2010년에 개정했는데, 변론도 열기 전에 소장만 보고 ‘청구이유가 명백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소장만 보고 청구 이유가 없음을 판단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는 것인가? 소송비용을 피고와 법원이 나눠 먹고 변론 없이 각하해도 된다는 것이다.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때 이미 청구이유 없음이 판명났는데, 재판해서 무엇하겠다는 건가?

판사들이 재판테러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등을 원천 봉쇄하려고 이따위로 [민사소송법]에 장난질을 친거다.

(5)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6 신설하여 국민의 알권리 침해

석궁재판에서 박홍우의 거짓 진술서가 인터넷에 공개되니까, 검사들이 자신들의 증거조작을 은폐하려고 2007년 6월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6조²⁶⁸ 를 신설했다.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린 것이다. 걸핏하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을 공표해서²⁶⁹ 언론과 난리를 치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여부를 국민이 감시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판사의 재판권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기소권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기소한 대리인일 뿐이고, 원고가 국민인데 왜 국민이 알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인가? 웃기는 인간들인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종놈들 끼리 해쳐먹는 사례>

²⁶⁷ 필자가 이 법조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2011헌바173)

²⁶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²⁶⁹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를 수시로 위반하는 것들이 검찰이다.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법에 명시키로” 뉴시스 2011.06.03
 “손학규, '중수부 폐지' 놓고 청와대-검찰 '빅딜설' 공세”, CNB 뉴스, 2011.6.7
 “법원 검찰 저항에 여야 무릎꿇어… 피해는 국민만”, 6월 13일 (월), 경향신문
 “사개특위 활동 중단..!중수부 폐지' 물건너간 듯”, 뉴스토마토, 2011.6.13
 “'견찰'에 굴욕당한 국회”, 6월 15일(수), 레디앙
 “여야 '해보자는 거냐' 격앙… 사개특위 다시 연다”, 한국일보, 2011.8.6 02:41

이 기사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가? 국민의 뜻은 어디에도 없고, 종놈들 끼리의 힘겨루기 싸움이다.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을 들먹이다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 깔고 몽개고 자빠졌던 의원놈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검찰 협박용으로 다시 들고 나오는 꼬락서니를 보라

<요약해보면>

검찰: 저축은행 관련 돈 받아쳐먹은 국회의원 수사 시작
 국회: 국회의원 수사처인 중수부 폐지등 법 개정하겠다며 검찰 위협
 국회, 검찰: 뒷 구멍으로 국회 협박했는지, 저축은행 수사과 법개정 등의 소문이 잠잠. 사개특위 문닫다.
 국회: 검찰 관계자들 국회 출석 요구
 검찰: 증인 출석 거부
 국회: 또 다시 중수부 폐지 등으로 검찰 협박

10. 석명준비명령으로 패소시킬 당사자의 흠집 찾기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법조문이다. 이해관계가 걸린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기꺼이 설명하고 증거로 제시하지만 불리한 것에 대하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제136조는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숨기고자 하는 사실 내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법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인 것이다.

일반 소송당사자들은 법의 무지로 인해 이렇게 중요한 법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법원이 직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법원이 패소시킬 당사자의 약점이나 흠집을 찾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상훈이 2006년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검찰에게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석명요구를 하였고, 박홍우가 서울고법 2005나84701 사건에서 필자의 트집을 잡으려고 냈었다. 석공사건에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을 검증하지 않으려고 김용덕, 지영철 등이 부린 꼼수 역시 석명준비명령 그리고 춘천지검의 위법한 수사를 은폐하려고 박상현이²⁷⁰

²⁷⁰ 서울남부지법 2010가소173816(피고: 춘천지검 검사장 김현웅)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내리지 아니하고 ‘위법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11. 대법원 판례 변조하기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 사건의 재판장 지영철은, 석궁사건에서 조작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 검증신청을 기각할 목적으로, 2008.12.5일자 석명준비명령에서 ‘수검 명령은...민사소송사건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므365 판결 참조)라는 문구를 2005므365 판결 내용인듯이 삽입하였다. 이 판례변조에 대하여 필자에게 고소당한 지영철은 사표쓰고 변호사가 되었다. 노정희가 후임으로 왔는데 박홍우의 혈액 채취 방법이 적절치 않다며 계속 기각을 하기에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랬더니, 기피신청 담당 재판장 장재윤이 기각하였다. 그런데 장재윤도 노정희를 감싸기 위하여 판례를 변조한 것이다.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711 판결]에 ‘증거신청이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라는 문구를 끼워 넣으므로 노정희가 혈흔검증신청을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위법하게 포장한 것이다.

이렇듯 판례의 위·변조는 정착된 재판테러 수법인 것이다.

12. 변론 녹음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조서 위조하기

일반인들은 법원의 재판과정이 속기되고 녹음되는 줄 알고 있겠지만 절대 아니다. 걸핏하면 판사들의 법정 내 언행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자신의 언행이 여과없이 기록에 남는데 판사가 감히 소송 당사자에게 함부로 떠들겠는가?

판사의 당사자 비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 대법원은 진상을 조사한다, 윤리 위원회를 연다, 판사 윤리 교육을 시킨다며 요란을 떠난다. 하지만 정작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한마디 토론도 없다. 판사에게 윤리 교육한다고 굳어진 버릇이 어디에 가겠나?

해결책은 간단하다. 모든 변론을 속기와 녹음해라.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면, 법원의 직권 내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기 녹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법관은 속기와 녹음하기를 꺼린다, 변호사가 이를 신청했다가는 판사에게 찍히고 의뢰인이 하겠다면 대리인 사임하겠다고 까지 한다.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테러 기록이 남기를 원하지 않는 거다.

속기와 녹음을 의무화해야 한다. 최소한 당사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박홍우, 신태길처럼 자신의 재판테러를 은폐하기 위하여 기각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기각 사유는 단 하나. 그 속기와 녹음이 인터넷에 올려지는 것이 싫다는 거다. 위임된 재판권이 ‘법의 입’에 불과한 판사들에 의하여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주인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놓겠다는 건데... 국민의 머슴이 할 소리가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에서는 박홍우가, 석궁사건에서는 신태길, 필자에게 무자비하게 재판테러를 하게 된 것도 대다수 국민의 눈과 귀에서 멀어진 후미진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재판테러범들은 속기와 녹음없는 법정에서 재판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남기는 변론조서(공판조서)에는 ‘원고 준비서면과 같이 진술’, ‘피고 답변서 진술’ 등의 기껏해야 2-3페이지의 상투적인 허위의 변론조서만을 남긴다. 즉, 허위공문서 범죄를 가장 많이 범하는 것들이 법원 판사들이라는 얘기가.

이것이 허위공문서라는 것은 이용훈도 인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13일 광주고법·광주지법 발언 전문’(동아일보, 2006.9.21)에서 발췌

‘민사에서 구술주의라는 것... 그 동안 우리의 재판이라는 것은 소송법에는 전부다 구술로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송법의 구조인데 **그 누구도 법대로 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재판에 많이 참여해서 알겠지만 법정에서 조서에 소장진술 그렇게 쓰지요? 그렇지요? 소장진술이라고 썼지요, 그 동안에? 왜 대답이 없어? 소장진술이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소장진술 한 일이 있어요? 소장진술한 일이 있느냐고요? 거의 없지요? 진술 간주하기는 했어도 불출석한 사람 진술 간주하고 출석한 사람들에게 소장진술한 것과 똑같았지 달랐습니까? 안 달랐지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허위 공문서인가요? 아닌가요?** 재판장이 변론갱신한 일이 있어요?’

13. 정형화된 ‘판단없는 판단’, ‘이유갈지 않은 이유’로 기각하기

힘있고 돈있는 못된 인간들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데 법원을 뺏질나게 이용한다. 일단 나쁜 일을 저지르고 법원에 끌고 온 다음, 모든 비난에 대하여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해 놓고 뒤로 돈과 로비만 하면 면죄부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데 왜 애용하지 않겠는가?

정치권, 교육계, 학계, 의약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온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수입과 향응만 생각하면 권력과 돈있는 VIP 고객들이 많아 좋은만큼 상대편 약자들에 대한 패소 판결문 작성의 부담이 따른다. 이는 판사들에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터이다. 수십 수백건의 황설 수설 판결문을 쓰는 것이 고역인 것이다.

수십년간의 경험으로부터 재판테러범들은 더욱 뻔뻔스러워지기로 작정한 듯, 언제부터인가 판결이유에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을 빼먹기 시작했고 요즘은 아예 판결이유가 없는 것이 수두룩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이유없다’라는 4글자가 이유라는 것. 도대체 뭐가 이유가 없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유없다’라는 거다.(* 그저 날로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판결문 공개를 꺼린다. 엄선해서 공개하는 판결문이 전체의 5%

미만이라나. 그나마 그 안에도 재판 판결이 수두룩하다.

14. 재판테러의 증거물인, 판결문 비공개

미국 대학의 도서관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법대 도서관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판결문을 얼마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판결문이 100% 공개되어 있다.

일본도 판결문을 70-80% 공개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5% 미만이라나. ‘판결문 공개’라 함은 대법원 판례 검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해’라는 키워드를 치면 Naver, Daum 에서와 같이 상해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검색된다는 것이다. (* 법원은 겉으로는 자기들도 공개한다면서,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면 아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주지도 않고 삼성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번호를 알아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공개하지 않는다.) 종종 국회가 국정감사시에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하면, 개인 신상 보호니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면 미국, 일본 등 법 선진국은 개인신상 정보와 명예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 작성시킨 판결문은 당연히 국민에게 제출해야 할 보고서와 같은 것이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일한 결과물에 대한 결재도 안 받는 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석궁사건 판결, 미디어법 관련 헌재 결정, 삼성 X파일 판결, 노회찬의 떡검 폭로관련 판결 등 그 얼마나 재판이었는데?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의 판결도 이 모양인데, 국민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사건의 판결이야 오죽하랴.

그들의 속내는 뻔하다. 워낙 엉터리 판결이 많으니 공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읽어 본 판결문들의 95% 이상이 법을 묵살한 재판 판결들이었다.

15.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위반하고 피고의 방어권 묵살하기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에 의하면, 위 6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없이 무조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9.26일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판사가
곽노현씨에 대한 보석 청구에 대하여 "보석과 관련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따져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듯이, 판사들은 [형사소송법] 제96
조의 '임의적 보석'인 줄 착각하고 있다.

법전을 들여다 보거나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마구 침해하고 있다, 석궁사건에서도 김용호,
신태길이가 '10년 넘는 징역'이라는 거짓말로 '필요적 보석' 청구를 십 수차례 기각했듯이.

16. 국민 우롱의 국민참여법과 영악한 이용훈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2008년 대법원이 내놓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 판사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에 보듯이, 판사가 국민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권한이 있고 게다가 제46조
제5항에 판사가 배심원들의 결정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배심원제도를 오래 전부터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결정에 판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판사는 소송 지휘를 하고 법률에 따라 형량만을
선고할 수 있다.

<타고난 사기꾼 이용훈의 영악함>

생각컨대 이 대국민 사기법은 이용훈의 머리에서 나왔음이 십중팔구 틀림없다. 그 근거는
이용훈이 2006.9.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한 발언이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불란서의 법원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지금 있는 법원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혁명군이
판단하고 모든 재판권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시민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재판을 하려고 보니 재판할 수가 있나요? 그

절차 같은 것이 복잡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란서 혁명 당시에 혁명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판사를 다시 오라고 한 것입니다. 판사뿐만 아니라 법원에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무엇을 시켰느냐 하면 재판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농구의 심판처럼 절차가 옳은지 그것만 판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재판의 법률적용과 모든 사실적용 전부는 배심원 시민들이 하고 법원 직원들은 절차 진행만 해라²⁷¹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위 미국의 배심제도의 역사적인 연유는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받아들인 배심제도는 12세기 영국에서부터 다루는 배심제도가 혼합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적인 기초는 불란서 혁명 때 일어난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안기부가 평가하였듯이, 이용훈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영악하게 잘 파악 하고 저지르는 지능범죄자이자 기회주의자인 것이다.

법대교수,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시민단체들은 뭘 하는 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까발리고 비판하지는 않고 법조비리 터질 때나 난리법석이다. 필자가 제46조 제5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였더니, 현재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기각하였고 현재의 나팔수 언론들은 제46조에 대한 비판은커녕, 필자가 ‘국민참여 재판 받지 못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고 만 떠들어 댔다²⁷². //

17. 삼심제가 아닌 단심제 또는 무심제

위의 구속취소, 보석신청 기각 사유의 예들에서도 보았듯이, 1심, 2심의 판단 및 결정들을 보면 논리는커녕 똥단지 같은 소리가 많다. 그 똥단지 같은 판단을 반박하고 나면, 3심에서 다들만한 논리가 나오는데 더 이상 반박할 기회가 없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개발새발 결정을 하고 무조건 상급심으로 넘기기 때문에 말이 좋아 3심제이지, 실상은 단심제 내지 무심제라는 것이다.

II. 현재의 국민 기본권 침해 수법

1. 헌법소원 본질 목살하기

검찰이나 법원보다는 좀 나올 까 싶어 현재에 헌법소원을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였다.

²⁷¹ 이용훈의 영악함이 돋보이는 것이, 제46조 제5항을 삽입시킴으로써 국민참여의 본질을 완전히 죽여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재판장의 의도와 일치하면 선심 쓰는 척 배심원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고 다르면 가차없이 뒤집는다는 것.

²⁷² ‘석궁테러 교수 국민참여 재판 못 받아도 위헌 아니다’ 매일경제 2009.12.7

국민기본권을 보호한다더니 국민기본권 침해를 방조하며 대법원 눈치나 보고 있다.²⁷³

바둑에 ‘수순의 묘’가 있고, 덧셈 곱셈의 산수에는 셈하는 순위가 정해져 있듯이, 헌법소원 심리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청구기간 준수 등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심리에 들어 가면,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인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2+3x5를 계산하는데 덧셈부터 하듯이, 우선순위를 무시한 위법한 판단으로 헌법소원의 99% 이상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하고 있다.

- (1) 헌법소원의 심리는 청구한 그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제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의 ‘자’는 국민 전체나 다수가 아닌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단 한 사람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 한 사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²⁷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헌재도 자신들의 입으로

[헌재결 1997.1.16 90헌마110,136]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의 기능’

[헌재결, 2005.5.26 2004헌마671]

‘다른 권리 구제수단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도 보충적인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

라고 했으면서도 선진국의 법과 판례들을 베끼기만 했지 그 뜻을 모르는 지, 국민 기본권을 밥 먹듯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위 판례들을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 기본권 침해 여부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2항 제5항에 따라, 그

²⁷³ [헌법] 제111조 제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에 규정되어 있듯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니 헌재에서 대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주인인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는 종놈이 또 다른 종놈을 뽑는 다는 거다. 이러니 종놈들끼리 뭉치기만 하면, 주인인 국민들 착취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 보다도 쉬운 일이다.

²⁷⁴ 이는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대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권력 자체 또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내세우고는 그러므로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내지 각하시킴으로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조차 하지 않는다. 법원이 ‘본안전 판단’, ‘형식논리’에 의하여 각하 내지 기각하듯이.

<헌법소원의 본질을 묵살하고 기각 또는 각하한 예>

헌재는 필자가 청구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8헌바12), [형사소송법] 제308조에(2008헌바25)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고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 조작 등에 의한 필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일언 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탁상공론식의 뜬 구름잡는 소리로 관련 법들이 위헌 아니다라는 결정만을 한 것이다.

재판관을 국민 선거로 뽑지 않을 거라면, 헌재 없애야 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2. 헌법소원 심판의 원천 봉쇄 작전, 일명‘사전심사’ 각하 공식화

법원에 소장을 내서 일단 소장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심리에 들어가기 위해공개적인 변론이 법정에서 시작된다. 이 공개적인 변론이 헌재의 심판회부에 해당되는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의 대부분을 심판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각하시키고 있고 헌법소원 심판을 원천 봉쇄하는 ‘사전심사’ 각하 공식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기본권 향상에 거의 도움되지는 않지만 ‘국민기본권 보호기구’라는 이미지 관리차원의 생색 내기용 사건들과, 미디어법, 유명 여배우 간통법 등과 같은 언론의 조명을 받는 사건들만을 헌법소원의 정식 심리 절차인 ‘심판’에 회부한다. 반면에, 정작 기본권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들은 ‘심판’의 선행 절차인 ‘사전심사’에서 철저히 봉쇄·각하시켜 국민기본권 침해를 방조 및 유린하는 기구가 헌재의 참 모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극소수의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들에 대하여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를 적용하여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여론의 조명을 받는 사건들에게는 요식적인 절차 내지 아예 거론도 안되는 이 ‘사전심사’가 일반 보통의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넘어야 할 커다란 벽이라는 것이다.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 그리고는 국민의 눈과 귀로부터 멀어진 ‘사전심사’에서 문전박대식 위법각하로 일반국민의 헌법소원 의지를 좌절시킨다. 그 단계적 수법도 공식화되어 있다는 것, 즉,

—헌법소원 심판청구 원천봉쇄 공식—

<1단계>: ‘심판’의 선행 절차인 ‘사전심사’에서 무조건 각하한다.

아무리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 할지라도, 일단 눈 딱 감고 ‘부적법하다’며 무조건 위법하게 각하한다. 그리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2단계>: ‘사전심사’결정을 ‘심판’결정이라고 사기치고

사전심사를 심판이라고 우겨대야 하는 이 2단계는, 사전심사가 아닌 ‘심판’에만 적용되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제40조([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 제한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다.

<3단계>: 또 다시 ‘사전심사’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를 위법하게 적용하여 무조건 각하

<연구보, 연구관들에 대하여>

나이가 50이 넘는 헌법재판관들이 사건을 읽어보거나 하겠는가?²⁷⁵

밑에 있는 헌법재판 연구관이나 연구보들이 눈치로 알아 보고 이름을 빌려 오늘도 열심히 공식대로 기각, 각하시키고 결재만 받고 있는 거다, 대법원 연구관들이 하듯이.

대법원에는 연구관이 50명 넘게 있는데, 이들이 대법관을 대신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수를 늘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일을 다 해주고 있고 진정한 속내는 소수의 특권을 누리고 싶은 것 뿐이다. 질이 떨어진다는 핑계는 형편없는 주제에 그냥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헛소리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처럼 하기 쉬운게 없다. 사건마다 그냥 이 사건은 ‘원고 패소, 피고 패소,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의 눈치만 주면 그냥 아랫 것들이 판결문 작성해주지, 아무리 개판 판결이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힘들 일이 있겠는가?//

<헌재의 재판관 독립>

필자가 지적했듯이, 헌재는 여론 또는 언론의 조명을 받는 사건에서는 사전심사 각하라는 것이 없다. 이는 자신들이 소신있게 만든 사전심사 각하의 원천봉쇄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특하면 부르짖는, [헌법] 제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규정된, 재판관의 독립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다.

미디어법 관련 결정(2009헌라8) 등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법률에 의한 명쾌한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권력과 돈에 따라 결정한다. 그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면 반성하기는커녕 재판관의 독립 운운한다. 국민의 재판 간섭은 재판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²⁷⁵ 대부분 근시에다가 돋보기까지 써야 할 정도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말이다

3. 법정기한 위반 및 사기치기

(1)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위반

[헌법재판소법] 제38조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 의하면,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심판에 회부된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위반하고 있다²⁷⁶.

필자는 180일 이내에 선고한 사건을 들어 본적이 없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92헌바27 사건을 보면, 92년에 접수된 사건인데, 97년 11월 27일에 선고했다. 이런 사건이 비일 비재하다. 보통 접수되어 선고나는 기간이 평균 2년이라고 한다. 법원이 위법용어 ‘훈시규정’을 만들어 판사들이 지켜야 할 법정기한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얼씨구나’ 하고 동조한 인간들이 현재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 올릴 때는 여야없이 공모하듯이, 법원, 헌재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결탁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그 사유가 있는 날’ 사기치기

위 (1)에서 보았듯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정기한은 지키지도 않는 이들은 국민의 청구기간은 칼같이 지키기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적법한 청구기간도 사기까지 치며 위반했다고 기각 내지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정의된 그 사유가 있는 날을 자기들 멋대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목영준은 2009헌마336 사건에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에 대한 헌법소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08헌마490 사건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08.8.1일 경에는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 훨씬 경과한 2009.6.2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는 이유로 사전심사 각하하였다. 여기서 목영준은 의도적인 사기를 친것이다. 그 이유는

²⁷⁶ ‘헌법재판소, 판결 못한 ‘우물쭈물 사건’ 2년 연속 증가, 헤럴드 생생뉴스, 2011.9.19, 노철래 “헌재, 중립성 잃고 제2의 법원으로 전락”, 세계일보, 2009.10.5

① 2008헌마490의 당해사건은 서울고법 2008초재389 사건이고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마490 재정신청 결정 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명호
 서울구치소 수용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의 백재명, 이희성, 조주태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19909호)이 이루어지자, 2008. 2. 25.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389)을 한 후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위반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2008.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 1 -

2008-1000000894-A4AD2

1/4

2008헌마490 1

② 2009헌마336의 당해사건은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 사건이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9헌마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명호

의정부교도소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08가합96470), 위 소송 중 혈액검증 및 감정축탁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7.¹⁾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09. 6. 22. 위 혈액검증 및 감정축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1) 기록상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 주장에 기초하여 작성함.

- ③ 따라서, [헌법] 제68조 제1항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횡수에 제한 규정이 없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 현재는

[헌재결 2006.5.25, 2003헌바1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했듯이, 두 사건에서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재판권을 침해 당한 것은 같지만 침해사건은 명백하게 다르고 헌법소원 사건으로도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²⁷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영준은 엉뚱하게도 2008가합96470이 아닌 2008초재389 재판에서의 기본권 침해당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한 것이다.²⁷⁸ 한마디로 기간을 사기치고 각하한 것이다.

4. ‘입법부 부작위’ = ‘나 몰라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 현재는 ‘입법부 부작위’라는 용어로 기각 내지 각하해왔다.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법부 부작위 즉, 법률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유재량이니 어쩔 수 없다며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다. 명백한 위법이다. 그 이유는

- (1) 헌법소원의 본질을 망각하고 기본권침해 여부부터 판단하지 않은 것이 첫번째 위법이고

- (2)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5항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에 의하면, 국민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원인이 되는 법률 또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현재는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 (3) 입법 또는 개정이 국회 재량이라하여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흠결의 법률이 있다면, 현재는 당연히 국회로 하여금 입법 내지 개정하도록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는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2000헌바26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구제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²⁷⁷ 같은 법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여러 차례 당한 경우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목영준의 억지는 어떤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매년 폭행당했고 그 때마다 고발한 경우 단 한번의 폭행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²⁷⁸ 2008가합96470 재판에서의 기본권 침해된 날로부터 계산하면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III. 검찰의 국민 탄압

1.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 위반하며 입증책임 내팽개치기

(1)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의2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수학에서는 답이 맞아도 그 도출 과정을 쓰지 않거나 과정의 논리에 문제가 있으면 점수를 받지 못한다. 증명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서의 혐의 입증은 수학의 증명문제와 다름없다.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서 증거들이 있어도 그것을 유죄의 논리 단계의 적절한 곳에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법 조항들의 요지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들은 공소사실에는 소설을 쓰고 ‘이것이 증거요’ 하면서 증거들을 뭉뚱거리 제출한다, 입증도 없이 말이다. 그러면 판사들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껴 쓰다시피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 연예인들이 유명 재벌가의 애를 낳았다고 떠든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들이다. 검찰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²⁷⁹ 피의자/피고인더러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라며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으박지른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유죄입증하는 검사들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 법정에서 난무하는 말들이, ‘답변서에 답변이 있다’, ‘제출한 서면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개소리들이다. 공판중심주의를 떠드는 판사도 이를 그냥 넘어가니 검사야 더 말할 것없지 않겠는가? 이에 대하여 필자는 항상 지적한다, ‘사법시험 볼 때, 답안지에 법전에 답있다고 쓰고 합격했냐?’고.

2. [형사소송법] 제242조 위반하며 기득권층 비리 부패 방조

검찰은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 등 고위관리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묻지마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피의자 신문은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²⁷⁹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에 의하여 혐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검찰에 대하여 제242조에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했더니(헌법소원 2010헌바202), 현재의 상투적인 기본권 침해 용어,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각하되었다.

박현욱씨 말대로, 검찰, 국회, 법원, 헌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게 각성하고 잘 살고 있다.²⁸⁰ 각성할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 이들을 견제 감시하여야 한다.

3.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는 ‘묻지마’ 명예훼손 기소

- (1)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던 유신시대, 택시 운전사가 은근하게 정부 비판을 하고 그에 맞장구친 손님을 운전수가 고발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시킨 일이 있었다고 한다. 폐지된 긴급조치를 대신하는 것이 요즘 특하면 거론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명예훼손 기소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 (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로 하여금 먼저 증거 신청하라는 얘기는, 기소하였으니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방어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과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를 종합해 보면,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당연히 아무 것도 할 필요없이 무죄라는 거다. 이렇게 법에는 혐의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검찰은 용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입증하라고 하니 기막힐 노릇이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뭘 입증하라는 건지. 한국처럼 ‘묻지마 명예훼손기소’가 많은 나라 없다, 소송이 난무하는 미국에서조차도 말이다²⁸¹. 힘없는 서민들이 몇번 당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쉬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명예훼손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이, ‘고발인이 증거로 제출한 필적감정서는 필적 사본을 비교한 것으로 원본 감정이 아닌 한계가 있고, 필적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내용도 감정 소견에 포함돼 있어 필적 감정서만으로 보고서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²⁸², ‘주어가 빠졌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니 대한민국은 ‘묻지마 불기소 처분 공화국’이다.

검찰은 권력층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고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는 권력의 개라는

²⁸⁰ ‘정말로 그들이 각성하길 바라?’(박현욱, 정세와 노동, 제 55호, 2010년 3월호)

²⁸¹ ‘곰의 습격위험성이 있으니 이 곳에서 야영하지 말라’는 경고판을 무시하고 야영했다가 곰에게 상처입은 사람이 경고판으로 부족하고 사람이 지켜서서 야영을 막았어야 했다며 담당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뉴욕타임즈 수필에 언급됨).

²⁸² 이게 그 유명한 서울대 미대 권영걸 교수의 김민수 교수 논문심사 대필의혹사건에서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 결정사유다.(참조: ‘대필 의혹’ 서울대 미대 학장 무혐의, 연합뉴스, 2005.8.24) 김민수는 왜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그리고 시민단체는 뭘 했는지? 이렇게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니 급기야는 ‘주어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처럼.

것이다.²⁸³

<법정에서 조차 ‘명예훼손’, ‘인격모독’ 운운하며 발언 방해>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74878 사건 첫 변론기일인 2011.8.29일, 원고인 필자는 피고 법무부에게, 서신 내용을 읽고 발송을 불허하기 전에, 어떤 근거로 서신 내용을 검열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피고 측 대리인 김재방은 ‘답변서에 대답이 있다’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진술을 해도 재판장 정석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재판 시작 전에 전자 소송을 설명한다며 시간을 끌더니 소송의 핵심 진술 공판에서는 이 따위로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

그와 같은 행태를 많이 보아온 필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고시 붙었죠?’ 하니 대변에, 정석원이 ‘인신공격’,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고 필자의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 뭔가 필자에 대하여 들은 모양이다. ‘사법고시 답안에 답있다라고 답안에 쓰고 붙었냐?’라는 뒷 말을 못하도록 막은 걸 보면)

도대체, ‘사법고시 붙었죠?’라는 말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인신 공격이 되나? ‘답변서에 답변되어 있다’는 말이 공박당하니 얼렁뚱땅 넘어왔던 정석원과 김재방이야 기분이 나쁘겠지만 진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닐 테고 허위사실유포라면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는 알고나 떠드는 건지. 법정이란 쌍방간의 논리 다툼의 장이다. 그런데 심판이란 작자가 논리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다니...

‘답변서에 답변 있다’라는 말이 공판구술 중심주의라고 떠드는 법정에서 그냥 넘어갈 소린가? 그렇다면 재정신청 재판처럼 그냥 서면심리하면 될걸 재판은 뭐 하러 열어?//

(2) 필자를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로 기소한 검사 신성식

대법원은 재판테러범 이상훈, 양승태, 이혁우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의 경비대장 전금식을 시켜 필자를 고발하도록 시켰다. 그 사건은 2007고단373으로 석궁사건(2007고단203)에 병합되었고 필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성식은²⁸⁴ 법원에 충성을 맹세하기라도 했는지, 필자의 판사 고발사건 들을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명예훼손 사건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검찰 관행상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최초로 기소당하고 유죄선고까지 받았다. 다음은 2006년 4.6일, 4.17일, 4.18일 신성식과 그 수하들(박정수 수사관, 이름 모를 검사

²⁸³ 이런 집단이 개혁대상인가? 타도 대상이다. 판검사들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이 어떻게 반발했는지 보라. 그리고는 비리많은 국회에서 특별수사청 논의가 쑥 들어갔다. 이 예만 보더라도 국회가 검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타협만 할 뿐이지. 이래서 국민이 검사장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²⁸⁴ 사시 37회, 사법연수원 27기, 84년 전남 순천고 졸업, 91년 중앙대졸, 사법연수원 성적이 시원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천정배처럼 성적이 우수한데도 처음부터 판검사 지원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된건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변호사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검사로 임용된 인간이다.

직무대리)을 만나서 발생한 상황이다.

- ① 서울중앙지검 오전 10-11시 사이에 있었던 신성식과 대화 중 일부
필자: "판사가 위법 판결행위 한 증거가 있는데 왜 처벌 하지 않느냐?"
신성식: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못한다. 처벌 규정을 찾아가지고 와라"²⁸⁵
(직무유기 발언: 위법행위 발견 시, 처벌 규정을 찾는 것이 검사 의무 아닌가? 국민한테 월급받는 이유가 그런 일하라고 주는 거 아닌가?)
- ② 4월 17일 1: 20분 경부터 약 15분 진행
(주: 4월 6일 1차 진술 후, 2차 진술약속을 10일로 잡았었다. 증거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주일 연기)
- 여성 직무대리가 진술서 작성을 시작.
시작부터 신성식 검사가 참견, 횡설수설하기에, 진술 전체를 녹음해 달라고 요청,
신검사가 하고 싶으면 녹음기 가지고 와서 진술하라고 하길래, 녹음기 가지고 와서 진술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
그 때 까지 한 것에 확인 도장을 찍는 도중에 보니
신검사가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적하였더니 직무대리가 수정.
지난 4월 6일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박정수 수사관이 작성한 것이니, 그 진술서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거절. (주: 수사관의 진술서와 달리, 검사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음)
- 도장은 다음 녹음기 들고 와서 진술할 때 찍겠다고 하며 금요일 오후 1시 반에 오겠다고 하니, 신검사는 진술을 못 받겠다고 그냥 이대로 끝내겠다고 한다.
- 오늘 오후 4시 20분에 그 직무대리로 부터 전화가 왔다.(536-5404, 12분44초 통화)
<요약>
직:"어제 어떻게 되었냐?"
나:"글쎄, 녹음기 가지고 진술하자고 했더니, 검사가 진술권리를 거부하는데..."
직:"증거자료로 놓고 간 고소장 읽어봤는데, 거기 있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냈냐?"
나:"물론이다. (성대입시출제오류 지적의 보복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들을 고의로 판단유탈한 것은 [헌법] 제103조에서의 법관 양심을 판 행위로 범죄적 판결 아니냐?"
직:"성대 입시부정에 대하여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만나자. 진술 작성은 아니다"
나:"그렇다면 검사실 말고 밖에서 만나자. 조서작성을 할 거면, 녹음기 가지고 가겠다."
직:"근무 중에는 밖으로 못 나간다."
나:"건물 밖에도 못 나오냐?"
직:"...."
직:"법대로 처리하면 되겠냐?"
나:"그건 내가 말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 ③ 18일 대법원 시위를 마치고, 서울지검에 고소장 제출하고 나오는데,

²⁸⁵ 이런 인간이 2006형제42529, 2006형제7931 사건의 피의자들은 조사 한번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불기소 각하였다.

누군가 부른다. 돌아보니 박정수 수사관. 지난 주 부터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이 대신 수사할 거라며, 얘기 좀 하자다.
 박수사관: " 성대 입시부정 사건 당시, 학생들과 뭔가 했으면 복직되었을 텐데..."
 나: "세월이 지났다고 사실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로 유명한 갈릴레이 종교재판도 잘못되었다고 교황이 시인했습니다. 성대입시부정사건 진상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신성식의 노림수>

신성식은 대법원 직원 전금식, 김영수, 판사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고소사건을 2006형제42529사건으로 묶어 2006.5.30일 불기소하고, 이용훈, 이광범 고소사건 2006형제7931은 2006년 8.10일 불기소 각하하였다. 이렇게 [형사소송법] 제242를 위반하며 피의자 신문도 없이 각하하는 자가 필자에게 ‘대법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속들여다 보이는 소리까지 하다가 필자가 굽히지 않으니 명예훼손으로 2006.5.30일 기소했다²⁸⁶.(첨부자료: 신성식의 명예훼손 공소장) 이것은 뭘 말하는 건가? 필자의 1인 시위를 막고 웹페이지를 철거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김용호, 신태길은 명예훼손이 반의사 불복죄임에도 판사들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유죄선고를 때린 것이고.//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는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을 허용할 경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을 했을 때 옆에서 들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그 욕한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유신시대에 택시운전사가 손님의 정부비판을 고발할 수 있듯이, 이는 정부 관리 및 정부 비판 자체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넉넉히 사용될 수 있다. 필자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선고는 구시대의 망령인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살아났다는 의미다.//

IV. 언론: 법원, 헌재의 나팔수이자, 검찰의 사냥개

언론의 사명은 사실 자체는 물론이고, 그 사실들로부터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주변 사실들을 보도함에 있다.
 그런데, 법원, 헌재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취재 자세, 보도 태도, 내용 등이 형편없다. 사법부에 겁을 먹은 건지,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기 때문인지, 아니면 법조 출입기자로서의

²⁸⁶ 6.1일 연합뉴스 기자가 필자에게 기소당했다고 전화로 알려주었다.

능력이 없는 건지²⁸⁷,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불러 주는 대로 또는 보도자료 내용대로 기사를 쓰는 것이 법조 출입기자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건지...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논리 전개는 못할 지 언정, 1+1=2라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주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소송 당사자들의 진술을 무조건 ‘주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오판이 아니라는 오도를 한다. 판사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법원이 누구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표현을 잘 쓴다. 판사는 국민의 재판권을 위임 받은 ‘법의 입’에 불과하니 그들이 법대로 재판하고 있는 가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감시해야 할 언론이 ‘주장’이니 ‘누구의 손을 들었다’느니 하는 표현으로 재판권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니, 판사들이 이렇게 까지 개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더 기막힌 것은 ‘괘씸죄’라는 표현이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단어인가? 사적으로 아무리 밉고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를 지켜야한다고 외쳐대면서, 한편으로는 ‘괘씸죄’ 운운하며 자가당착에 빠져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발표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국민에게 진실을 보도한다는 사명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저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베끼면서 누가 더 선정적으로 보도하나 경쟁할 뿐이다. 송두열 교수 사건, 노무현, 광노현 등 타겟이 정해지면 폭격기가 응단 폭격하듯 투견이 물어뜯을 상대를 만난 듯 왕왕 짚어대듯 떠들어 대는 언론을 보면 마녀사냥에 동원된 사냥개와 다를바 없다.

V. 검법헌 합작 공모

1. 검법헌 합작 공모의 고소·고발권 원천 봉쇄 공식화

강내희 교수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의 법집행 기구들은 간판만 ‘국민용’일 뿐 기득권층을 위해 존재한다. 법원, 검찰, 헌재는 자기들 끼리 권력다툼을 하면서도, 국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데는 철저하게 결속한다. 그 사례들을 소개한다

(1) ‘문지마’ 불기소로 국민의 고발권 봉쇄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2(피의자 신문의무)을 묵살하고 피의자 진술 조서도 받지 않고 기각하고 그에 불복 재정신청하면 고법판사들은 무조건 검사의 행위가 옳다며 기각하며, 재항고 하면 대법원은 ‘이유 없다’는 4글자로 기각한다. 이것이 검찰·법원·헌재(이하 검법헌) 공모의 국민 청원권 침해 공식이다.

검법헌 공모의 국민 청원권 침해 공식

²⁸⁷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선진 언론의 전문 기자들은 그 분야에서 석사정도 받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 | |
|---|---|
| ① | 검찰의, [형사소송법] 제242 위반한 ‘묻지마 불기소 각하’ |
| ② | 고법의, ‘검찰의 위법행위도 무조건 정당하다’며 재정신청 기각 그리고 대법원의, ‘이유 없다’ 4글자 재항고 기각의 ‘재판테러’ |
| ③ | 헌재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의 ‘재판을 제외하고’를 핑계로 ‘재판테러’ 방조하는 ‘나 몰라라’ 사전심사 각하 |

위와 같은 검법헌 공모에 대하여 필자는

[헌재결 2006.6.29 2004헌마826]<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나, 같은 방법의 침해 행위가 현재 및 앞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 질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²⁸⁸’

를 근거로 헌법적 해명을 구하는 헌법 소원(2009헌마447)을 하였다. 당연히 사전심사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원천 봉쇄 전략에 의하여 무참하게 각하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법원과 헌재와 함께 나는 꿈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 반면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2009년 11월 개정된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3항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에 의하여, 재정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90%이상의 고소 고발 사건들은 재항고를 할 수 없고 법원을 거쳐야 하게 됨으로써, 자동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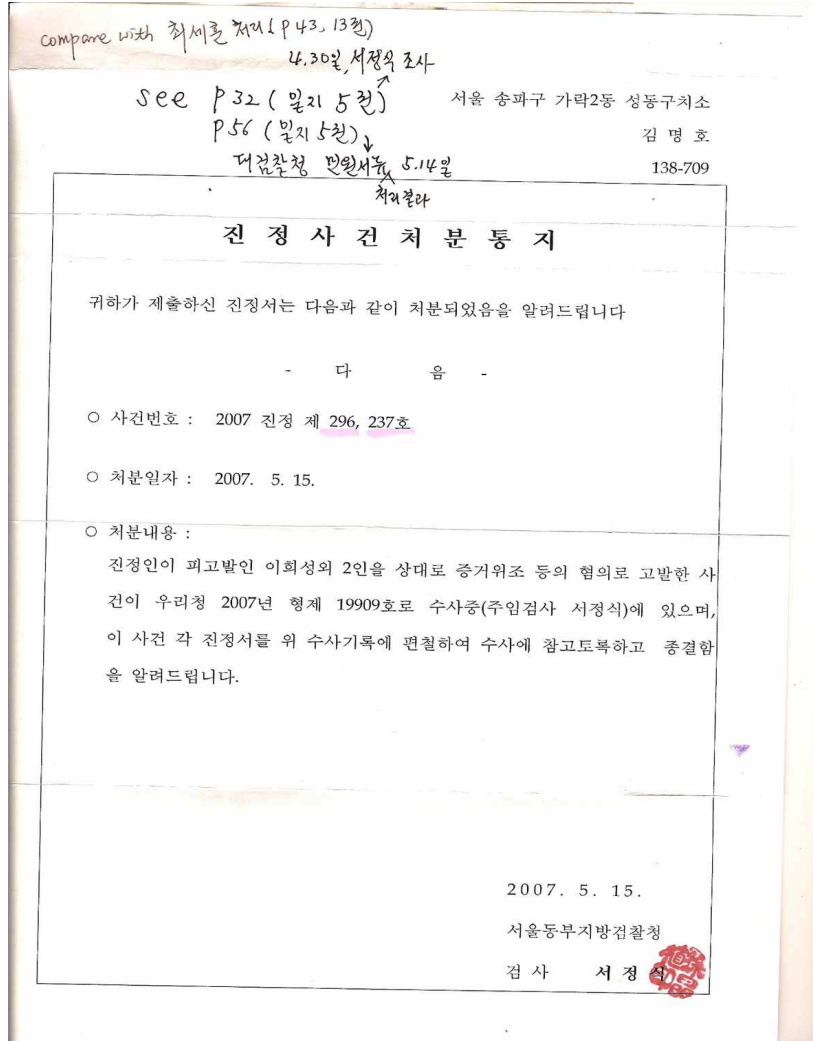
국민의 원성을 왜 우리만 집중적으로 들어야 하나며 검찰이 법원과 헌재로 이를 분산시킨 꿈수인 것이다.

(2) 검찰이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변조하는 이유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당시, 향응 제공대가로 진정사건을 ‘

²⁸⁸ 이 결정도 분명히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베껴왔을 듯. 헌재의 잔머리로부터 나오기 힘든 좋은 결정이다.

공람 종결' 처분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있었다.(참조: '박기준 전 검사장 소환 조사... 혐의 부인(종합)' 연합뉴스, 2010.8.30). 검찰에 고발한다는 말은 흔히 들어 보았어도 진정한다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검찰이란 누군가를 수사·처벌해달라는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관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데 진정이라니 이상하지 아니한가? 필자가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판검사 등 5-6명을 고소하여 서울동부지검에 출두하여 진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 2건이 고소 아닌 2007진정 237, 296 진정사건으로 둔갑해 있었다.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위조한 증거 1

하여, '첫 머리에 고소장이라고 큰 글자로 써 있는데 이게 왜 진정사건으로접수되었냐?'고 따졌더니 담당 검사 서정식이 자기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오리발!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도, 고소장이라고 쓴 제목을 못 보았을리 없는

검찰이 ‘왜 고소사건을 2xxx형xxx가 아닌 2xxx진정xxx으로 분류하였는 가?’에 대한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었는데...

재판테러범 김용덕의 서울고법 2010누22742(석공사건 증거물의 혈흔 검증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이유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국민의 진정을(정확히 말해서, 진정을 축소 폄하한 민원) 의도적으로 묵살해도 좋다는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0.5.25, 선고 96누1458 1991.8.9 선고91누4195]등으로 검찰을 적극 감싸주고 있는 법원과 헌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소 고발에 대한 처리는 검찰의 직무로서, 비록 요식행위로 전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불복절차가 있는 반면에, 진정은 묵살해도 좋다며 대법원과 헌재가 앞다투어 ‘김홍도 판례’ 등으로 보장해주고 있으니, 검찰은 부담없이 수사없는 ‘공람 종결’ 처분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국민을 위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 한다’는 검찰, 법원, 헌재, 3기관 합작의 국민우롱 사기 수법²⁸⁹>

- ① 검찰이 의도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로 작정하고 고소 고발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 ‘공람종결’ 처분하면
- ② 고발인이 그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에서 제 아무리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설명하더라도 검찰을 두둔하기로 작정한 법원과 헌재는
 - 실체적 진실에 대한 심리 판단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²⁹⁰
 - 고소 고발건을 진정사건으로 위법하게 둔갑시켜 놓은 검찰의 위법행위 또한 지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 ③ 덮어놓고
 - 고발인의 불복사건이 2xxx진정xxx의 ‘진정’ 사건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 ‘김홍도 판례’ 등을 언급하며 ‘공권력 행사 내지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위법한 형식논리로 각하내지 기각시켜 버린다는 것이다.(예는, 2010헌마5,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502 등 이루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생리, 다시 말해서
- ④ 결론:
(실체적 진실 규명의 심리에 의한 판결문을 쓰기 싫어하고 위법한 형식논리로 냅다 각하하기 좋아하는 법원 헌재의 생리를 익히 아는) 검찰이 법원 헌재에게 위법형식 논리로 각하할 수 있도록 (고발 등을 진정사건으로 접수, ‘공람 종결’

²⁸⁹ 이 사기수법에 대한 글을 서울고법 2010누22742 사건의 변론재개일인 2010.12.14일날 김용덕에게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함.

²⁹⁰ 법원, 검찰, 헌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작업을 하지 않을 구실을 만드는데 온 정력을 쓰고 있다. A few Goodman 영화 등에서의 대사 ‘You cannot handle the truth ! (너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가 괜히 자주 나오는데 아니다.

처분하는) 밥상을 차려준 것, 즉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 하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며 입으로만 떠드는 검찰, 법원, 헌재 3기관 합작의 국민우롱 사기 수법의 하나!

2. 검찰과 법원의 공모에 의한 고위 공직자 뇌물 장려

성접대 검사, 판사 등 고위 공직자의 뇌물 사건만 터지면, 검찰, 법원이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 애용하는 상투적으로 애용하는 수법이 있는데, ‘대가성 뇌물이 아니다’라며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처벌 규정이 왜 없겠는가? 선진국에서 베껴온 법들이 그렇게도 허술할 것 같은가?

공직자들이 대가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뇌물에 대하여 세금 신고는 했을 리 없다. 그러면 그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공무원의 고발의무) 의거, 처벌할 수 있다.

2011.7.9일 미국 양키즈의 데릭 지터라는 야구 선수가 안타 3000번째로 홈런을 쳤는데, 그 홈런 공을 잡은 관중이 그 공을 선수에게 돌려주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양키즈 구단이 시즌티켓 등을 선물했는데 그것이 14,000\$ 상당의 과세대상이라고 세무서 직원이 밝혔다.(참조: Fan who gave up Jeter's 3K ball hook to IRS²⁹¹, USA today 2011.7.12).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법원, 검찰이 나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뇌물을 장려한다는 것은 심한거 아닌가 말이다.

<대가성 없다며 조세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무서의 직무유기>

법원의 논리대로 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부동산, 현금등도 대가성이 없으니 세무서만 문제삼지 않는다면 증여세도 낼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징수하는 세무서를 보노라면 힘없는 서민들 착취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원, 검찰들과 한 통속인 것이다.//

²⁹¹ Internal Revenue Service 즉 세무서

3장. 종놈들에게 굽신거리는 노예근성부터 버려라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서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있고, 종놈들은 노예로 살라며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득권층에게 검경은 청원 경비업체, 법원은 면죄부 판결문 판매소,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헌포장회사, 언론은 장단에 맞춰 나팔을 부는 홍보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인이라는 국민 개개인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종놈들에게 구걸하며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주인이라면, 격에 맞게 처신하여야 한다.

I. 종놈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려라

(1) 중요한 건 사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시대 때부터 이 땅의 기득권층이 철저하게 해온 것이 하나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괘씸죄’라는 단어가²⁹² 공공연히 떠돌 정도로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여댄 것이다. 깨어 있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임을 아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에 내들린 멍청한 인간들은 비리 주범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를 탓하고 법 제정 운운하며 핵심을 비껴간다. 범법자 처벌을 등한시 하고 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상대방 선수들의 움직임은 놓치고 공만 쫓아다니는 격인 것이다.

‘법의 입’에 불과한 종놈인 판사들이 법을 위반하는데 지키지도 않을 법을 수백 개 만들면 무엇하나? 검사들 못 믿겠다며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특검법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원하게 집행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쓰레기들이 특검 검사로 임명되어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던가?

전태일 씨도 ‘있는 근로 기준법을 지켜 달라’고 절규하지 않았던가? 법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 인물을 죽이는 풍토의 결과들

① 선택권을 박탈당한 국민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명박이 싫다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나아졌을까? 대법원장 양승태 임명에 대하여도 말이 많았다. 현대 이용훈 후임의 대법원장 후보로 함께 거론된 목영준, 박일환 등 또한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다.

²⁹² 아무리 괘씸하고 미워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 법치다. ‘괘씸죄’라는 말이 떠도는 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인적 네트워크(network)와 인력 풀(pool)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였듯이, 못된 인간들이 뿔뿔 뭉쳐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말 뿐이고 쓰레기 통에서 고르라고 국민들은 강요당하고 있다는 거다.

②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들

조선일보는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및 맥을 짚어 내는 점에 있어서 타 언론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다.

1995년도 성균관 대학교 입시문제 오류에 대한 양승태의 개판 위법판결을 유일하게 문제 삼았고(‘대입문제 오류 2년 째 논란’, 1997.5.28일), 석궁 사건에서 부러진 화살에 대한 아파트 경비원의 인터뷰 동영상을 남김으로써, 검경에 의한 짜맞추기 위증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도 조선일보였다²⁹³. 그런 조선일보가 자체 보도를 중단하고 장재은 기자의 연속 기사들마저 외면해오다가 이회기의 사표, 2008.3.7일 전국 수석부장 판사회의 등이 열린 직후 3.10일자 ‘석궁 테러 증거 미스터리’ 제목의 생색 내기용 기사 하나 내 보내는 것으로 그만이었다.

이는 조선일보에 문제의식 있는 유능한 기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하여 사건을 파고 들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이나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 치하에서 동아일보는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말소하여 무기정간 처분을 당하였다. 그런 동아일보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와 더불어 권력에 밀착, 국민을 위한 보도를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들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1980년대 초 동아일보가 군부 독재에 대항하다 광고금지와 기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했을 때 국민들은 동아일보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지켜주지 못하였다. 정확히 말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권력과 기득권층의 탄압으로부터 **국민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런 국민들을 믿지 못하게 된 언론들이 살아 남기 위하여 권력과 기득권층에 빌붙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③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

서울대가 선진국 대학을 따라 갈 수 없는 이유

²⁹³ 검경은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 치기하고 서울대 의대 박규주 교수로 하여금 박홍우에게 유리한 증언까지 하도록 하였다. 그런 검경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지 못한 것은 이 조선일보의 동영상 때문인 것이다.

	서울대	선진국 대학
학자로서의 자세	1. 그저 서울대라면 꼬박 죽는다. 2. 대학이 발행하는 논문집을 스스로 낮추며 우습게 여기고 그저 외국에 이름난 논문집에 게재하겠다고 발버둥 친다.	1. 젊은 사람들은 배우겠다는 자세로 유명한 대학교에 가려고 하지만, 안정된 교수들에게는 학교의 명성이 선택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2. 일본의 유가와 히데끼는 ²⁹⁴ 교토 대학 논문집에 실린 논문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지명도	대학이 교수의 명성을 결정한다.	교수가 대학의 명성을 결정한다.
스카우트	서울대는 스카우트 노력이 필요 없다. 월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만 내밀면 하루아침에 보따리 싸 들고 몸담고 있던 대학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오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능력 있는 교수들 스카우트에 결사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연구비 지원	유명학교의 학생들이 일을 잘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해 준다	교수를 보고 지원하고, 교수가 학교를 옮기게 되는 경우 연구비도 같이 따라 간다.
사회에서의 학생 인정	출신 대학의 유명도	대학의 명성도 고려하지만, 지도한 교수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결론	인물 중심의 조직사회가 형성된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에는 패거리 중심의 조직사회가 형성되었다. 정치, 경제, 문화, 법조, 의학계는 물론 학계 등 전 사회가 양아치 조직의 패거리들로 들끓고 있다.	

(3) 결론

부조리를 폭로한 개인이나 언론이 비상식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자정 능력을 키워주고 우리 모두를 비리와 부패로부터 지켜 준다. 나아가 기득권층의 노예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처럼 팔뚝 걷어 부치고 구호 외치고 시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관심을 가져 주는

²⁹⁴ 입자 물리학자로서 중간자 가설을 제기하여, 1949년 일본인으로서 최초의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II.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하라

(3) 보편적 가치와 판단의 실종

강기갑 의원, MBC <PD 수첩> 관련 신고에 불만을 품은 한나라당은 2010년 3월에 법관 3인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 등이 추천하는 각 2인 등 총 9인의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뻘한 속셈에 야당과 시민 단체들이 앞다투어 한나라당을 비난하였지만 국민을 위한 소리는 없었다.

원주교도소에서 만난 재소자들이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여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정당의 꼬락서니도 이들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유죄 판결을 원한 한나라당은 판결에 문제 있다고 법원 비판에만 열을 올렸고, 민주당은 무죄를 원했으니 기소한 검찰은 나쁘고 법원은 자기들 편이라고 두둔한 것이다.

기소이유가 적법한 것인지, 판결이 법에 따라 판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고 자기들 마음에 맞게 결정했느냐에 따라 비난하고 자빠져 있으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 모양인 것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시민단체들 또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프랑스 대혁명은 국왕과 귀족, 성직자 등의 특권층 간 다툼의 틈새를 부르조아, 시민들이 치고 들어감으로써 역동적으로 시작되었다²⁹⁵. 그런데 200여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나라 시민단체라는 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한나라당의 ‘법관인사위원회’ 안에 대하여 **국민이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다.**²⁹⁶ 그저 자신들과 손 잡은 정당과 같은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가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는 데도 이를 지적하고 깨우치는 지식인도 없다는 것. 즉, 이 사회에 보편적 가치와 판단이 실종된 것이다.

(4) 법률 전문가들의 구제 불능의 자아도취

머리말에서 지적했듯이, 법조문 형성과 그 바탕 구조를 모르는 대한민국 법률 전문가들은 기형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조문 몇 줄 더 외우고 있다는 오만함 하나로 아무나 가르치려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것처럼 위법한 결정을 마음껏 내리고 있는 것이다. 검사, 헌법재판관들 또한 별다르지 않다.

‘법의 입’에 불과한 선천성 법률 불구자들인 주제에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고

²⁹⁵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의 ‘로베스 뵘에르 혁명의 탄생(장 마생 지음)’ 한국어판 머리말 중, ‘부르주아들은 특권층이 국민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국왕과의 혈전을 벌이는 것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이제까지 무대 밖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던 부르주아들이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싸움판에 끼어들었다. 그들은 특권층의 정체를 파악하고는 그들을 국민에서 배제하고 스스로 국민의 대변자로 자처하였다’

²⁹⁶ 2010년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 중, ‘법관 인사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실수이자 국민에게는 기회였던 것이다

자신들의 결정은 항상 옳다고 착각하고 있다²⁹⁷.

(5) 결론: 종놈들에 대한 국민의 감시는 필수다

민주주의는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준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관, 검사,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들이 기득권층의 돈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전 국민의 노예화에 날뛰고 있는 것이다²⁹⁸.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대법관, 검사장, 헌법재판관들을 선거로 선출

지방 의원들도 선거로 뽑고 감시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대법관, 검사장, 헌법재판관을 왜 선거로 뽑지 않는가?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선거로 국민이 직접 골라야 한다.

② 법 준수 여부 감시

법원, 검찰, 헌재 등은 [헌법] 제26조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대여하는 기관들에 불과하다.

공권력의 대여에 대한 결정은 법률에 의하여 하고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므로 상식에 어긋난 결정은 위법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정이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 준수 여부에 대한 국민감시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III. 배타적인 이기심을 버려라

1998년 IMF 위기 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한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진정을 했다. 한국의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니 그 기업들과 거래하는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많은 회사가 도산위기에 빠졌고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100년여 전의 영국의 농부들은 철도파업으로 인하여 운송되지 못한 자신들의 농산물이 썩고 있음에도 철도 노동자들을 지지했다고 한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남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오랜 싸움 끝에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²⁹⁷ 선배들의 업적에 열등감을 느끼고 노력하는 수학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²⁹⁸ 참조: 2008.5.30일 개최된 토론회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공사건을 재조명한다’에서 강내희 교수가(중앙대 영문학과) 발표한 ‘한국에는 멋대로 하는 지배불록이 있다’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에는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범죄자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²⁹⁹. 2011년 한진 중공업 해고자 김진숙의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라고 부르며 부산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단다.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자신들의 적인 강자에 편에서서 같은 처지의 약자를 괴롭힐 수 있는가? 이는 배타적 이기심으로 가득찬 인간들의 자기 무덤 파는 수작이요,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착취 기회만을 엿보는 기득권층의 자양분인 것도 모르는 병신 짓거리였다.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가³⁰⁰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발언하는 권리를 사수한다’라는 기본 사상을 평생 추구하였듯이,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²⁹⁹ 이러한 정서는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 예로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DNA 채취법이 일반 범죄에 까지 확대되고 소급적용까지 하게 된 것. 그리고 한명숙, 광노현이 석궁사건의 위법함을 방관하였다가 검찰, 법원의 위법행위로 고초를 당하는 것 등.

³⁰⁰ 18세기 프랑스의 작가, 대표적 계몽사상가로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찾아 보기

<p>[</p> <p>[검찰청법] 제10조 검찰의 기소권 축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봉쇄-----171, 298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300]-----261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1395] 허위공문서작성 판례-----190 [대법원 94다30478 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36 [민사소송규칙] 제43조 변론재개 결정과 변론기일 지정----31, 32 [민사소송법] 제117조 담보 제공-----235, 249, 250, 276 [민사소송법] 제136조-----32, 192 [민사소송법] 제146 적시 제출주의-----111, 112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60, 76, 279 [민사소송법] 제17조-----159 [민사소송법] 제200조 일부 판결...-----82, 83, 185 [민사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199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 답변서 송달 의무-----20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 의무123, 183, 184, 187, 198, 267 [민사소송법] 제347조-----254 [민사소송법] 제349조-----254 [민사소송법] 제350조-----254</p>	<p>[민사소송법] 제351조-----254 [민사소송법] 제40조 이송의 효과-----193 [민사소송법] 제46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159, 198 [민사소송법] 제94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앵무새-----103 [법원 조직법] 제13조 대법원장의 직무-----153 [법원 조직법] 제29조 법원장의 직무-----215 [법원조직법] 제7조 전원합의체 의무 규정-----22, 261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9, 66, 67, 68 [헌법] 제103조-----32, 215, 243, 287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45, 58, 64, 124 [헌법] 제13조 일사부재리 원칙-----36 [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154, 204, 216 [헌법] 제27조 무죄 추정 원칙-----47, 61, 87, 204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제70조 보정기간 준수-----225 [헌법재판소법] 제12조 헌법재판소장-----23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변호사 선임 강요-----257</p>
--	--

[헌법재판소법] 제28조 보정명령 의무 규정--225, 226, 228, 229, 231, 233	증인신문의 청구...-----77
[헌법재판소법] 제38조 180일의 심판기간-----264, 267, 287	[형사소송법] 제234조 공무원의 범죄 고발의무----147, 204, 3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제청-----214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191
[헌법재판소법] 제42조-----214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 신문 의무-----191, 29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소원의 본질- 10, 191, 234, 276, 284, 297, 298	[형사소송법] 제257 고소, 고발사건 처리 기간-----259, 264
[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대리인 신청-----25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258, 259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284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122
[헌재결 1997.11.27, 92헌바28] 피고인의 강제 증인소환 권리----99, 102, 265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74, 90, 123, 141
[형법] 제257조 상해죄-----65, 66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146, 169
[형법] 제42조-----67	[형사소송법] 제403조 항고...-----77, 78, 80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86, 88, 90, 91, 117, 291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61, 80, 81
[형사소송규칙] 제133조-----292	[형사소송법] 제90조 변호사 선임의뢰-----126
[형사소송법] 제 262조의 2-----258	[형사소송법] 제91조 접견금지-----54, 62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16조-----276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64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76, 80, 143	[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65
[형사소송법] 제18조-----96, 103	[형집행법] 제41조 접견관련 법조문-----169
[형사소송법] 제198조 불구속 수사 원칙-----62	
[형사소송법] 제216조 의무적 영장에 의한 압수-----146	2
[형사소송법]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96, 159	2003재다262 양승태 위헌판결-----29, 164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2005나84701 박홍우와의 서울고법 민사사건...-22, 25,

31, 35, 99, 100, 199

7

77다300
재임용 기대권 당연 인정 판례--18, 22, 23, 29,
35, 48, 81, 261

8

87다카2622
법률해석 위법변경 판례-----22

9

96-2 정직3월처분취소청구
교육부 재심결정-----36

ㄱ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14, 170, 297, 306,
307

강세현
서울남부지검 검사-----150, 195

계승혁
서울대 수학과 교수-----80, 181

고민석
서울중앙지검 검사-----69

고은설
김현웅 감싸기에 미친 판사252, 253, 254,
255, 267

고현철
대법관...-----78, 318

괴벨스
나찌 독일 선전 장관-----57, 117, 171

구속취소-----61, 63, 80, 87, 155, 159, 318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21, 92, 105, 110,
115, 116, 118, 121, 133, 136, 139, 141,

142, 143, 144, 145, 147, 184

국과수 감정보고서
석공사건 조작 증거...-----92, 141

김보슬
MBC <PD 수첩> 기자-----168, 169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170

김용덕
대법관을 노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33,
192, 206, 207, 211, 212, 262, 278, 299,
300, 332

김용호
석공사건 1심 재판장--60, 61, 63, 65, 68,
74, 75, 76, 81, 82, 83, 85, 86, 87, 89,
91, 92, 93, 94, 95, 97, 98, 99, 100,
101, 104, 105, 106, 107, 108, 110, 111,
112, 113,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5, 144, 159, 179,
184, 186, 243, 268, 295, 318

김인섭-----86

김지형
대법관...-----78

김형태
인권변호사?-----25, 260

김홍도
김홍도 201, 203, 204, 205, 206, 211, 212,
300

L

남기주
서울남부지법 판사-----150, 195

남세진
판사-----66, 68, 78

노정희
서울중앙지법 판사-157, 187, 193, 195, 197,
198, 200, 262, 267, 268, 275, 278

ㄷ

대법원 2007모363
'제 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에 대한 재항
고...-----77, 81
대법원 규탄일지-----23, 36, 175
돌림빵
재판테러 돌림빵...-----76, 84

ㄹ

명효철
한국 고등과학원 원장 대리 161, 162, 164
문지마 불기소 19, 68, 191, 198, 204, 215, 216,
220, 236, 251, 271, 292, 293, 297

ㅂ

박규주
위증한 서울대 의사-----142
박상길
서울중앙지법 판사33, 184, 185, 186, 193
박상준
한국일보 기자-----132, 180
박일환-----46, 75
박재영
집시법 위헌법률심판제청 판사--213, 214
박홍우 18, 19, 20, 23, 25, 31, 32, 34, 35, 36,
37, 38, 39, 45, 46, 48, 53, 54, 55, 56, 57,
58, 61, 68, 69, 72, 74, 75, 76, 81, 82, 83,
85, 86, 87, 88, 89, 91, 92,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5, 118, 122, 127,
128, 130, 131, 133, 136, 138, 139, 141,
142, 143, 144, 145, 147, 148, 152, 158,
159, 168, 175, 180, 182, 183, 184, 186,
187, 188, 189, 191, 192, 193, 195, 199,
201, 205, 206, 211, 212, 240, 243, 248,

262, 266, 268, 272, 275, 276, 285, 293,
318, 319, 320, 325
박홍우 노모-----105
백재명
석궁 증거조작 지휘실행범53, 54, 81, 82,
83, 91, 92, 93, 111, 113, 114, 115, 116,
118, 120, 142, 146, 147, 272
법 위반할 수 있는 면허
license to break laws-----54

ㅅ

서기석
이놈의 대구리에는 뭐가 들어 있을 까...
-----98, 99
서울동부지법 2007초기468
김용호 기피 기각 결정문-----268
신영철
촛불집회 탄압자- 190, 213, 214, 215, 216
신태길
석궁사건 항소심 2번째 재판장 12, 60, 65,
123, 144, 152, 153, 155, 156, 157,
158, 159, 175, 179, 184, 193, 243,
268, 295
심윤종
성대 교무처장-----121, 152

ㅇ

앨퍼드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 저자- -174
양승태----29, 48, 49, 52, 93, 144, 162, 164,
222, 238, 262, 266, 294, 304, 318
에쿠우스 9825-----48
윤남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65, 66, 67, 68, 77,
78, 318

은택

서울동부지법 동판트리오...-76, 77, 78,
120, 318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63, 64

이광범- 23, 28, 31, 34, 258, 259, 260, 295,
329

이기욱
해임시킨 1심 변호사...75, 78, 87, 88, 89,
93, 95, 100, 101, 102, 104, 105, 110,
111, 112, 113, 114, 115, 120, 122, 125,
126, 127, 146

이상훈----19, 23, 24, 25, 193, 199, 222, 260,
294, 295

이석태-----25, 127

이승규
판사-----65, 68, 78

이용훈-19, 23, 28, 31, 32, 34, 39, 40, 47, 69,
102, 153, 162, 171, 174, 177, 219, 222,
260, 282, 283, 295, 303

이우영-----45, 79, 145, 181
95년도 성대입시 수학문제 출제위원...79,
80

이인복
한심한 대법관...-----71, 82, 96, 97

이재원-----46

이정렬----35, 36, 38, 39, 40, 46, 74, 75, 206

이혁우
성대출신 판사 23, 61, 116, 172, 173, 175,
222, 294, 295

이흥훈
석궁사건 증거조작 주범- -61, 67, 68, 98,
144, 166,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83, 184, 229, 243, 318

이회기
사표쓰고 도망간 석궁사건 항소심 재판장
----125, 141, 144, 147, 150, 152, 153,

155, 157, 186, 187, 193, 195, 268, 304

이희성
증거조작한 송파경찰서 형사과장 46, 55,
103

임석필
서울중앙지검 검사----198, 236, 271, 272

임종인
17대 국회의원-----56, 78

입법부 부작위
위법용어-----191, 192, 290

ㄱ

장봉문
서울동부지검의 박홍우 옷가지 혈흔 조작
은폐범-----211

장재은
연합뉴스 기자 58, 60, 130, 150, 151, 167,
179, 180, 303
연합뉴스 기자...-----76

장준철-----25

전 판사 신평 교수의 고백-----47

전관예우-----11, 72, 176, 178

전국 법원장 회의
첫 번째 양아치 조폭대회 15, 47, 153, 154,
166, 170

전국 수석부장 판사회의
두 번째 양아치 조폭대회--153, 170, 215,
304

전수안
여 대법관...-----78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237, 238

정영훈-----33, 107

정운찬
전 국무총리-----135, 166

정진경-----39, 40, 41

제132조의 2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88, 90, 91, 92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201조(중간 판결)...82, 83

조관행-----25, 40, 96, 152, 259

조귀장
 명예훼손 재판장-----135

조정현
서울동부지법 똥판트리오...- 76, 77, 120,
 318

조주태-----46, 69, 142, 318

조폭회의-----61, 215

존 로크
 영국의 계몽사상가-----20, 71, 157, 203

지영철-----33, 187, 267, 270, 278

지영철-186, 187, 189, 190, 191, 193, 206

ㅈ

차한성-----46, 75

채영도
 95년도 성대 수학 문제 출제위원... 79, 80,
 126, 127, 152, 318

최병모

인권 변호사?...-----78, 99, 102, 122, 125

최용호
서울동부지법 똥판트리오---76, 77, 120,
 318

ㅎ

홍성훈
 필자 신문한 송파경찰서 경사- -105, 115,
 142

훈시규정-----31, 263, 264

L

license to break laws
 법 위반할 수 있는 면허-----18, 238

M

MBC <PD 수첩>
 석궁사건 증거 미스테리...21, 76, 83, 167,
 168, 305

S

SBS <뉴스추적>
 전직 교수 김명호, 석궁사건의 진실은-----74

첨부 자료

1.

“법원에 왔으면 법의 잣대로 할 수 밖에”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판사가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장판사 피습사건'의 발단이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임용 관련 사건을 맡았던 주심 이정렬(38) 판사를 1월19일 만났다. 이를 전 법원 전산망에 A4용지 5쪽 분량의 글을 올려 재판 전후의 소회를 상세히 밝혔던 이 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언론의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이 판사는 “민사 재판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송 관계자의 절반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자율성을 가진 대학이나 사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법원에 오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복 주장과 별개로 임용 기준은 충족했어야

법원 전산망에 올린 글을 보면 판결을 앞두고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지만, 결국 김 전 교수가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후 언론 보도와 여론 방향을 보면서 정말 민감이 교차했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그런 논의의 발단에 적합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심리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추측하는 방식으로, 또 그 추측이 전제가 되고 증폭돼 '재판이 불공정했다, 법원이 기득권층을 옹호했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물론 판결 내용에서 반드시 유리 판단이 맞다고는 얘기하지 못한다. 상급심이 있고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 판사의 글과 판결문 전체가 공개된 뒤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 않나.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고, 혹은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은, 재판 과정의 뒷얘기를 모두 공개하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되겠나. 결국은 김 전 교수를 두 번 죽이는 게 된다. 묻는 것에 대해 답을 할 수는 있는데 (판결문에 공개된 것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비난한다면 속으로 삭이고 참을 수밖에 없다.

판결의 요지는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 관계

김명호 전 성대 교수의 재임용 사건을 담당했던 주심 이정렬 판사 교육자적 자질·교원으로서 품위 충족 못해 법대로 판결했을 뿐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는 기준에는 현저하게 미달된다. 재임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있다.

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해 법이 명확지 않다. 대법원의 판례는, 2004년 김민수 서울대 교수 사건 이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판결했다. 김명호 전 교수 사건에서 합리적 기준은 뭔가. 학교가 교수를 임용하는 거니까 학교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그 기준은 정관에 있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비합리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연구실적, 교육자적 자질, 교원으로서 품위다. 셋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구실적은 되지만,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되느냐를 따졌다. 김 전 교수에게 보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는 맞았어야 한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데 ‘보복을 당했으니 그걸로 끝 아니냐’ 하는 식은 비법률가적 사고이다.

결국 재판부가 김 전 교수는 교육자적 자질이 없다고 본 것 아닌가.

그건 아니다. 그건 교원인사위가 할 일이다. 교수를 임용하는 학교가 재임용을 않기로 결정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거쳐 재임용을 않기로 했는데 그 결정이 타당하냐 아니냐, 무효냐 아니냐가 심판의 대상이다. 학교는 김 전 교수가 자질이 없다고 봤다. 우리가 심리를 해봐도 그 부분은 맞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했다.

‘왜 나만 잡냐’는 식으로 말해서야

김 전 교수가 입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과 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합리적 기준’은 그렇다 치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했겠는가.

사실 그 부분(보복)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지막 결심 때 피고(성균관대학교) 소송대리인도 “입시 문제 오류 지적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인과 제출된 자료로



김전 전 법원장

“ 학교는 김 전 교수 자질이 없다고 봤다. 우리가 심리를 해봐도 그 부분은 맞다. 법정에 와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의 자율성이 중요하고 그 자율적인 모습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법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법에 해결해달라고 오는데 법이 아닌 다른 잣대로 판단할 수 있겠나. ”

볼 때 이분이 교수로서 자질이 있느냐”라고 했다. 즉, 보복 개연성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었다. 재판부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가를 본다.

김 전 교수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입시 문제 오류를 지적한 이후의 일이 거론돼 있다. 교육자적 자질 문제에 관해서는, 김 전 교수에게 보복을 가한 교수들을 포함해 김 전 교수보다 더 ‘부적절한’ 교수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1993년의 일은 문제 오류를 지적하기 이전의 일이다. 사실(김 전 교수의) 행위 하나, 말 하나를 놓고 보면 너그러이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서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는 다른 문제다. 다른 교수들의 교육자적 자질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통경찰이 적발할 때 ‘왜 다른 사람은 안 잡고 나만 잡냐’는 얘기와 같다.

대학 사회에 필요한 교수상이 인격자만은 아닐 것이다. 학교 정관이 요구하는 교육자적 자질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결함을 메우고도 남을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설 땅이 없겠다.

그런 사회적 문제는 잘 모르겠다. 교원의 자격과 일이 법에 나와 있다. 학생을 지도해 민주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키우고 장차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이다. 살인, 강도 그런 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덕 교과서 같은 내용도 법이다. 그런 상태를 용인할 것이냐 아니냐는 자율성을 가진 대학이나 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법정에 와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의 자율성이 중요하고 그 자율적인 모습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법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법에 해결해달라고 오는데 법이 아닌 다른 잣대로 판단할 수 있겠나.

믿었던 재판부도 인정 않을 정도면...

김 전 교수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전 교수는 법원 앞 1인시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형사 사건으로 게류 중이다. 그런데 그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우리에게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만약 불공정했다면 기피신청을 했을 것이다. (석공 사건 이후) “항소기각으로 인생이 끝장났다”는 말씀을 했다. 그만큼 우리 재판부를 믿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결과에 더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닌가.

달리 보면 그렇게 믿는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면... 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내가 (김 전 교수에게) 느낀 배신감은 ‘판결문이라도 보시지’ 하는 거다.

판결문을 봤다면 달리 행동했겠나.

글쎄... 사실 이번 재판에 임하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도 2월에 법관 책임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원 내부 문제를 비판해왔고,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에서는 김 전 교수와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다. ㄷ

bhkim@hani.co.kr

이정렬의 구차한 변명 2

2. 김용호의 구속취소 기각 결정문

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7초기198 구속취소
 (2007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 고 인 김병호 (570217-1066932), 무직(전 성균관대 교수) 1316 12X3
 주거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본적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5-23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2007. 2. 26.

판사 김용호

등본입니다
 2007.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 김진석



구속취소 신청 기각결정문 1

3. 최재천 의원의 200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4. 이상훈 규탄 기자회견 사진 내지 기자회견 문
5. 2005. 11. 2일, 민교협 기자회견 성명서 탄원서
<http://seokgung.org/minkyu.htm>
6. 2006년 1월 9일 민교협 탄원서 <http://seokgung.org/minkyu2.htm>
7. 2007.2.27일 연대단체 성명서, ‘검찰은 김명호 교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
기도를 중단하고, 김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http://www.professornet.org/webbs/view.php?board=professor-10&id=626&page=18>
8. 서울 동부지법 2007초기198, 대법원 2007모285 구속취소 기각 결정문
9. 2007로18 윤남근의 보석기각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문
10. 2007모363 고현철의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문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등본입니다.

2007. 6. 18.

법원사무관 박 증



사 건 2007모363 증거보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 고 인 김명호 (570217-0000000) 1316 12F3
 주 거
 본 적
 재 항 고 인 피고인
 원 심 결 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7.자 2007로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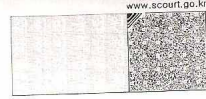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4조 소정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판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러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



1 / 2

47

대법원 2007모363 증거보전청구 기각 결정문 1



원 1997. 6. 16.자 97모1 결정, 1986. 7. 12.자 86모25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5.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전수안

11.

1316 12F3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

수신자 성동구치소장(수감자 김명호)
 (경유)
 제목 보정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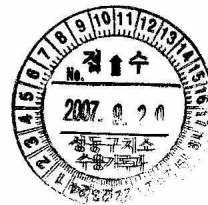
사 건	2007헌바91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명호

청구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할 사 항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붙임 : 대리인선임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대한 헌법소원 보정명령

12.

4.2일자 속기록 일부, 석궁이 수리되었다는 고영한씨의 증언

문 저도 지금 바로 증인이 한 이야기가 일명 메뚜기라고 하는 격발 장치가 마모됐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답 마모가 아니라, 메뚜기가 앞뒤로 회전하는 것을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고, 줄 거는 것을 메뚜기라고 하는 것인데 줄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핀이 빠지면)

문 어떻게 줄이 계속 뒤에 와 있나요.

답 줄이 살짝 걸렸다가 조금만 힘이 가해지면 그냥 발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 : 가끔 할 때 실제로 한번 두 번 딱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런 경우를 자주 경험을 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찰 주장은 박홍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5미터에서 쏘다고 하니 계단 위에서 쏘고, 박홍우의 상처 정도를 봐서 불완전하게 장전을 했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불완전 장전하면 화살 자체가 흘러내리는데 그런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 거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판 사

증인에게

문 잠깐 석궁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겠어요? 방아틀 뭉치에서 핀이 하나 빠져 장전되지 않았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답 요안에 감은 철사나 핀이 있어요. 이것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앞뒤로 툭툭 튀어 오른다고 해서 메뚜기라고 하는데, 이게 줄이라고 하면, 위로 갔다 확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메뚜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걸어주는데 한쪽 핀이 빠져서 이렇게 살짝은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힘이 강하게 걸리는 것이 걸리면 튕겨져 버립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힘이 별 게 아닌데 힘이 되는 게 가서 걸릴때에는 한쪽으로 빠져버립니다.

문 지금은 고쳤다는 것인가요.

답 예, 전부 다 고쳤습니다. 당시 송파경찰서에서 고장이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 가져왔을 때는 고장이 나 있었고 장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답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왜 장전이 안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나요.

13. 김용호 기피신청서, 기피기각에 대한 항고, 재항고 기각결정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1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07초기468 기피
 [2007고단203, 37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 고 인 김명호 1316 1223
 주거 서울
 본적 서울

신 청 인 피고인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법원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37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 관한 일련의 심리과정에서 담당 법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와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등 본 입 니 다

200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 김 동 락



- 1 -

33

김용호 기피 기각결정문 1

가. 조작수사 증거물에 증거능력 부여

검사가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물 중 ① 화살 9개 중에는, 증인 김덕환이 이 사건 당시 보았다고 증언한, 화살촉이 봉투하고 화살 날개깃이 부러진 것이 없고, 피가 묻은 화살도 없으며, ② 또한 석궁은 안전장치관련 석궁편이 빠져 있던 것을 증인 고영환이 수리한 것으로서 변조된 것인 바, 피고인이 2007. 4.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위·변조된 증거물에 대한 검사의 증거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위 증거물을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나. 불법강제억류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방해

①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 및 보석청구를 무논리, 무법리로 각 기각함으로써 불법으로 피고인을 강제억류하고 있고, ②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를 위반한 검사의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했다.

다. 실체적 진실 발견 의지 결여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원천봉쇄 및 재판 지연

① 피해자 박홍우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봉쇄하였고, ②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박홍우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택여부 조차도 보류하며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2. 판단

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단순히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원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담당 법원이 조작수사 증거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화살 9개와 석궁이 증거로 채택·조사되었는데,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위 각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① 증거로 채택·조사된 화살 9개 중에 증인 김덕환이 이 사건 당시 보았다고 증언한 화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증거물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되고, ② 증인 고영환이 사후에 위 석궁의 안전핀을 수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두, 경찰이 위 석궁을 증인 고영환에게 갖고 갔을 때에는 위 석궁에 안전핀이 하나 빠져있었던 상태였고, 이에 증인 고영환이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석궁 제출을 통한 검사의 입증취지가, 위와 같이 증인 고영환에 의하여 안전핀이 수리된 이후 상태의 석궁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각 증거물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는, 증거능력이 아닌 증거가치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아야 할

- 3 -

35

김용호 기피 기각결정문 3

것이어서, 이 사건 담당 법관이 위 각 증거물에 대한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지 않은데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담당 법관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강제억류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당 법관은,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형사소송법 제9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이 사건 담당 법관의 위와 같은 구속취소청구 및 보석청구의 각 기각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담당 법관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강제억류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② 또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수사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입증취지를 명백히 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증거목록을 보완하여 그 입증취지 란에 공소사실 중 어떠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각 증거별로 개별적으로 입증취지를 진술하면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담당 법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증거의견을 들은 후 증거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담당 법관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및 증거결정 절차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3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담당 법관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담당 법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1995. 4. 3.자 95모1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당 법관은 제3, 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해자 박홍우의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알 수 없는 한,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변호와 관련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였는 바, 이 사건 담당 법관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기각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담당 법관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또한, 신청에 의한 증거결정은 그 증거신청이 있는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하

판사 나 상 훈



판사 이 재 신



- 7 -

39

김용호 기피 기각결정문 6

서울고등법원

제 1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07로14 기피기각결정에대한항고
 피 고 인 김명호 (570217-1066932), 무직 1316 12F3
 주거
 본적
 항 고 인 피고인
 원 심 결 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4. 26.자 2007초기46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위 등본입니다
 2007년 6월 12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정환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항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37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담당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항고인의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가. 사건 당시 사용된 화살은 축이 몽독하고 깃 부분이 부러져 있는 것이었고, 석궁



은 안전장치에 결합이 있는 것이었음에도, 검사는 위 화살이 아닌 온전한 화살과 사후에 수리된 석궁에 대하여 증거신청을 하였는바, 담당법관은 위와 같이 조작된 증거물들을 증거로 채택·조사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의 정당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담당법관은 항고인의 구속취소청구와 보석청구를 위법하게 각 기각하였다.

다. 검사가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당법관은 검사의 위 증거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라.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라는 박홍우의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와 박홍우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담당법관은 위 통화내역에 대한 항고인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고, 박홍우에 대한 **검사의 증인신문신청**에 관하여는 채부결정을 보류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2. 판단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1. 자 2001묘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화살 및 석궁에 대한 증거조사와 관련된 항고인의 이의신청은 증거능력이 아닌 증거가치에 대한 의견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담당법관이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담당법관이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

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항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항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한 것 또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 공소사실 중 어떠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담당법관이 통화내용을 알 수 없는 한 통화내역 조회만으로는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박홍우의 통화내역에 대한 항고인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한 것도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담당법관이 박홍우에 대한 검사의 증인신문신청에 관하여 다른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무렵까지 그 채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고지한 것 역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넘어 항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의 채부 및 조사, 소송지휘, 구속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은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담당법관이 자신과 사건과의 관계상 항고인에 대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법원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결정에 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7. 6. 12.

재판장

판사

서기석



판사

윤강열



판사

오현규





1575
1573



대 법 원

제 3 부

등본입니다.

2008. 4. 23.

결 정

법원사무관 문 영



사 건 2008모213 기피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 고 인 김명호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재 항 고 인 피고인
 원 심 결 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0.자 2008초기3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2008-0005469142-58HBQ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1 / 2

대법원의 기피 기각결정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결정문



한다.

2008. 4. 22.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2008-0005469142-58HBQ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2 / 2

대법원의 기피 기각결정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결정문

14. 경찰의 석궁발사 관통 실험 결과

실험재료	거리 (사수위치)	관통력	화살장전상태
돼지고기 (15cm)	0m	관통	완전장전
	1m	"	"
	1.5m	"	"
	2m	"	"
	5m	"	"
의류 (내복, 조끼, 와이셔츠, 돼지고기)	1m	"	"
	1.5m	"	"
	2m	"	"
	5m	"	"
의류 (내복, 조끼, 와이셔츠, 돼지고기)	1.5m	의류관통 돼지고기 6.5cm	불완전장전
	1m	관통못함	시위와 화살 간격 (16, 14, 10cm)
	1m	면티 관통	시위와 화살간격 12cm
합판(5mm)	1.5m	2장 관통	완전장전
	2m	2장 관통	"
	5m	3장 관통	"
전화번호부	1.5m	"	360페이지 관통
	2m	"	616페이지 관통
	5m	"	550페이지 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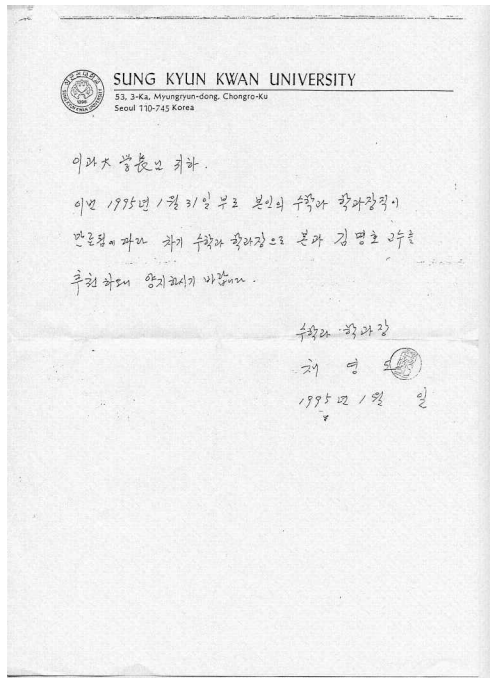
※ 사수의 위치에 따라 화살의 위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화살이 완전 장전된 상태에서는 돼지고기를 관통하였으나, 화살이 불완전하게 장전된 상태로 사수의 위치가 1m 이내였을 때는 의류를 관통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저히 위력이 감소함

라. 전문가 진술

“대한석공기술연구원” 고영환(031-923-7478, 011-350-6351)의 진술

석공 관통력에 대한 경찰의 실험결과 1

15. 채영도의 학과장 추천서



채영도의 학과장 추천서 1

16. 2007.2.5일자 조주태에 의한 박흥우 신문조서 일부

향은 화살을 뽑는 과정에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 방향만으로는 어디서 발사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저의 기억으로도 김명호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석궁을 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당시 경찰관에게도 그런 취지로 말했고, 검찰에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닙니다.

문 진술의 형식상,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되므로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과 '직접 경험한 사실이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은 양자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오랫동안 재판업무를 한 진술인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텐데, 진술인은 경찰에서는 분명히 후자의 방식에 입각하여 피의자가 진술인을 향해 석궁을 조준하여 쏘았다고 사실을 경험한 것으로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전자의 방식으로 진술한 것은 아닌데 어떤가요.

답 경찰에서도 김명호가 쏘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말한 것이지 "제가 목격했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또 그 당시에만 하여도 다른 가능성은 저로서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찰2회 진술시 조서에 "조준"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니 단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문 더욱이 경찰에서의 1회 조사시에는 당청의 백재명 검사가 직접 경찰이 조사하는 자리에 동참하여 진술인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을 듣고 직접 질문도 하였으며, 또 그 내용을 당청에 보고한 바도 있는데 어떤가요.

답 백검사도 물어 보고 한 것은 맞으나, 어떻든 진술이 약간 바뀌

1910

2007.2.5일자 조주태에 의한 박홍우 신문조서 일부 1

17. 2007.8.28일 자 박홍우 증인 신문 조서 일부

18. 신고 망설였다는 박홍우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고 해서 우리 기사도 와서 그렇게 해서 피고인이 저를 계속 잡고 놓지 않으니까 강제로 떼 냈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했는가요. 혹시 증인 사건 후 집에 올라가서 옷 갈아입지 않았나요.

답 그 후에 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켜 세울 무렵에 제가 화살을 하나를 잡았어요. 화살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러져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를 화살이라고 하면 완전히 딱 부러져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고 꺾어져 있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나무젓가락 같은 것은 부러뜨리면 딱 꺾어졌는데도 보면 한쪽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비아저씨한테 드렸을 것입니다. 드렸는데 그 때도 제가 몸에 피가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마 아파트 입구 쪽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인도가 약간 턱이 튀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 쪽에 제가 서 있었는데 처음에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 하면 저한테 재판받을 사람이 불만을 품고 집에까지 와서 이러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사 건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 선에서 무마시킬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까지 와서 흥기를 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경비아저씨한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피가 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제가 느껴서 발견했는지 아니면 관리아저씨가 저한테 '판사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해

- 7 -

신고를 망설였다는 박홍우의 증언 1

19. 박훈의 입증계획서 중 혈흔 일치 여부 검증신청(2007.12)

향이 빗겨 맞았다고 의사들이 말해 최초의 진술을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들 중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실 없어 박홍우가 진술을 바꾸고 된 동기에 대해 탄핵을 하고자 합니다.

아. 증인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명예훼손죄는 한 번도 위 피해자들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묻고 처벌 의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인 신청이 안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검증 신청.

가. 박홍우의 혈흔 검증신청.

박홍우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과 박홍우의 혈흔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검증신청하고자 합니다. 국과수 감정 보고서는 박홍우의 혈흔과 직접 대조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매우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

나. 석궁 실험 검증신청

석궁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170cm 정도의 마네킹을 세우고 박홍우가 입었던 옷가지와 동일한 옷으로 석궁실험을 하여 과연 박홍우 주장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10층
전화 : 3273-8100(대표) 팩스 : 3273-9763

박훈 변호사의 혈흔검증 신청 1

20. 혈흔검증 신청 거부하는 이회기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재판장

지난 번 신청했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팡선 증인은 출동했던 소방관인데, 그동안 피고인측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계속 원한다면 다음 기일에 소환하겠습니다.

변호인

유지하겠습니다.

재판장

고팡선 다음 기일에 소환하고, 그 다음에 혈흔검증신청을 하셨는데, 검증이라는 것이 법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피해자의 설렁 혈액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증거물하고 확인해서 그게 박홍우의 혈액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혈흔검증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감정, 감정하자는 것입니다.

재판장

감정,

변호인

그러니까,

재판장

들어보십시오. 감정도 혈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법이 적절해 보이지 않고, 따라서 감정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아니,

재판장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아니요, 제가요.

재판장

이의신청하시는 것입니까.

변호인

예.

재판장

이의신청한다면 기각합니다.

변호인

아니, 이의신청이유를 들어보고 기각하십시오. 이의신청이유를 들어보고.

재판장

어떤 이유죠.

변호인

아까 그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가 박홍우, 피해자 박홍우의 피 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

입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의 혈액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변호인

아니, 그거야 법원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가서 피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못주겠다고 하면 압수수색영장발부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장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적절한 증거방법을,

피고인

저도 한번 이에 대해 설명 해보겠습니다.

재판장

제가 기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고인

기각하시더라도,

변호인

그러면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는 박홍우의 피인지 아닌지 전혀 모른 상태
이죠.

방청객(남자)

돼지 피인지 사람 피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재판장

일어나보십시오. 누구예요.

- 100 -

결사적으로 박홍우 혈흔 검증 거부하는 이회기 3

21. 성동구치소의 보고전

관구교감	당직교감	교 감 과	장 부 소 장	소 장
[인]	[인]	[인]	[인]	[인]
의 견	보 고 문			
결 과	<p>청호번호 : 13/6 죄명 : 성 명 : 김 여 언 형기 : 계 목 : 형집시 서유육대 선침</p> <p>위 사건은 병하1발에 수동중언 자로서 11월 12일 결판시 법전1개비 노르4개를 휴대한 나가기를 천라 기에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7 . 11 . 9 보고자 [인]</p>			
614-0441일 1995. 8. 2. 승인		135mm×190mm (신문용지54g/m ²)		

관구교감	당직교감	교 감 과	장 부 소 장	소 장
[인]	[인]	[인]	[인]	[인]
의 견	보 고 문			
결 과	<p>청호번호 : 13/6 죄명 : 폭력 (공회) 성 명 : 김 영 언 형기 : 피 살 계 목 : 형집시 서유육대 선침</p> <p>위 사건은 12월 22일에 수동중언 자로 중형의 12월 22일 형기를 천라기에 보고합니다.</p> <p>서유육대 선침 ~ 법전 ~ 재판 노트 4권 ~ 중의 12월 22일 ~ 국법헌 법사 22일 (국법헌)</p> <p style="text-align: right;">200 7 . 11 . 9 보고자 [인]</p>			
614-0441일 1995. 8. 2. 승인		135mm×190mm (신문용지54g/m ²)		

성동구치소의 보고전 1

22.

2008. 6.14

수신인	1575 김명호	거실(작업장)	015동 03층 03호 0
수신기관	서울구치소	발신인	박훈
서신제목	선생님께		

어제 선고를 듣고 낫술을 먹기 시작하여 많이 취했습니다. 정용석 선배하고 먹다가 친구 놈들하고 먹다가 기자들한테 전화는 많이 오고 다 묻는 것이 순해배상 소장 언제 날냐 불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고 현장에서 KBS 기자하고 MBC 피디수첩 쪽 하고 인터뷰를 하였고 방영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요지는 사법부의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으나 허사였다. 김명호 선생이 무죄라는 것은 모든 증거가 밝히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억지 재판을 하였다. 앞으로도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폭력을 휘두르는 사법부의 향한 투쟁의 의지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옛그제 연합뉴스의 장재은 기자가 술 먹고 저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울먹이며 "못도와 드려서 죄송합니다." 등 자기는 뭐 할말이 많았던 모양이던데 팬찮다고 하였습니다. 연합뉴스 기자 중에 그래도 나온 놈이 있는 모양입니다.

↓
 그렇다면 선고 하루전, 아니면 2전에 결과를 알고 싶었다는 얘긴가?

하여간 몸 건강히 마음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십시오. 다음주에는 별일이 없으면 목요일에 접견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6.13 월

2008.6.14일자 박훈의 인터넷 서신 1

23. 2009년 8월 당시의 헌법연구관들과 연구관보 명단

2009.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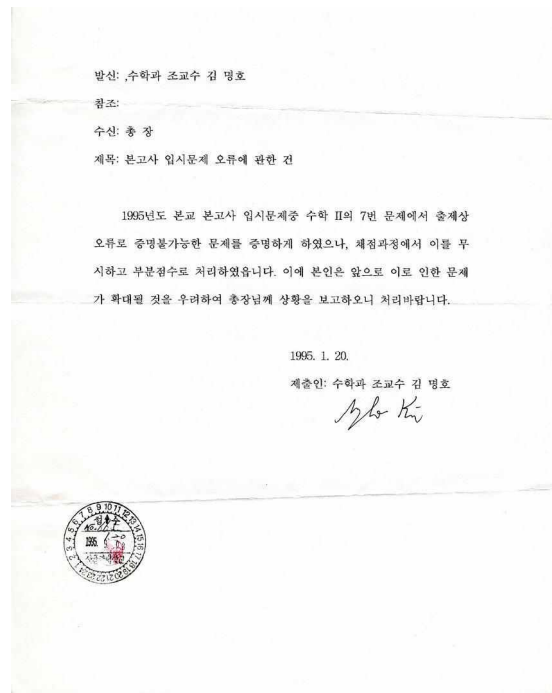
헌법연구관 현황

2009. 8. 20.

수석부장연구관 유남석				
연구위원 : 정재황, 김선택				
공 동 부			전 속 부	비 고
제1부 (재산권부) 부장 : 김상환	제2부 (자유권부) 부장 : 이명웅	제3부 (사회권부) 부장 : 배보운	수석부장 : 유남석	
김상우 김인숙 김정운 노희범 배인구 서경미 우승아 이상규 이승환 이종립 이황희 정주백 최갑선 최석문 김지현(보) 이대근(보) 조성훈 손형섭(원)	김경목 김정중 김진한 류지현 성 왕 이강섭 이홍락 최기상 최용호 황문섭 박세영(보) 천재현(보) 공진성(원)	김복기 박진영 신미용 안미영 유미라 장순옥 황치연 서세인(보) 오 췌(보) 변지영(원)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이공현 재판관 - 이승훈 ○ 조대현 재판관 - 김현영 ○ 김희욱 재판관 - 하민정 ○ 김종대 재판관 - 김성진(보) ○ 민형기 재판관 - 정 완 ○ 이동흙 재판관 - 박해빈 ○ 목영준 재판관 - 정인경 ○ 송두환 재판관 - 도진기	○ 기획조정실장 (선임부장연구관) - 신동승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 배보운 ○ 홍보관 - 노희범 ○ 행정연구관 - 손인혁 ○ 행정연구관 (국제업무) - 김경목
예승연(원), 이은선(원), 소은영(원), 조수혜(원)				

※ (보) : 헌법연구관보
(원) : 헌법연구원

2009년 8월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명단



장을병 총장에게 보낸 출제오류 보고서 1

24. 한겨레 21, 2007.1.30, 쿠키 뉴스 2007.1.17
25. 송두환 고소장(2009년 8월 24일자)
26. 2009헌마174 결정 전문

27. 44명 교수와 7명의 국회의원 혈흔검증 촉구 서명서

의견서

이러한 '석공사건'이라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의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혈혼감정신청'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5일 김명호 전 교수는 자신의 '교수지위확인' 소송사건을 담당한 박홍우 판사가 기각 판결을 내리자 담당 판사 아파트에 석공을 가지고 갔지만 실제로 석공을 발사하였는지에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판사는 사건 당시 왼쪽 복부에 화상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 제출된 옷가지에는 모두 오른쪽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사법부가 법정에 제출된 옷가지에 대한 '혈혼감정신청'을 즉각 받아들이고, '재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9. 6. 9.

국회의원 최문순 최문순

<교수들 서명>

정부와 사법부는 "석공사건" 증거조작, 진실을 밝히고 김명호 교수를 석방하라!

"석공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7년 1월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박홍우) 집을 찾아가 석공으로 위협을 가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석공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석공 사건" 재판은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졸속한 재판이었습니다. 박홍우 판사의 진술은 황실수설 그 자체였고, 법정에 제출된 박홍우 판사 와이셔츠에는 아예 피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묻은 혈흔이 박홍우 판사 것인지 확인해보자는 김교수 측 요구를 거부하고는 정역 4년이라는 여차구니없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보복성 같은 감정적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민간은 누구나 법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는 법원의 '마녀 사냥' 분위기 속에서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명호 교수는 '석공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건조작의 결정적 증거인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을 정밀 감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초적인 증거입증도 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 사법정의를 갈망하는 우리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의 정당한 '피해자 혈혼 감경'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서관표	서울 서초구 삼성동 3동 3층 301호	010-8800-6936	[서명]
강영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지구 103-111호	010-2091-6324	[서명]
김민우	서울 마포구 신촌동 4가 마포아파트 111-111	011-9968-4991	[서명]
신영진	서울 강남구 인테움 (16-14)	011-9925-4897	[서명]
김영환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167-1	010-4763-4882	[서명]
김정민	대전 유성구 신민동 양지빌딩 210-210	042-861-7216	[서명]
김민우	대전 유성구 신민동 양지빌딩 210-210	011-810-1533	[서명]
최문순	서울 서초구 수곡로 3가 49	010-8587-6948	[서명]
김영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지구 103-111호	010-2091-6324	[서명]
김영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지구 103-111호	010-3256-6282	[서명]

석공사건 진실규명과 김명호 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 위원회

<대표 : 홍성학 / 문의 - (02) 2635-9492(상황실)>

혈흔검증 촉구하는 교수 44명과 국회의원 7명의 서명서 1

28. 김홍도 판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에는 박홍우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박홍우의 혈액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원고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박홍우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박홍우의 것이임이 유전자분석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아서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여 유전자감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청원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참조), 나아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



김홍도의 위법 판결 1

29. 무덤은 파헤쳐도 박홍우의 혈액은 채취 못하겠다는 노정희(2009.6.17일자 속기록 일부)

아닙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그러면 재판기일을 왜 잡습니까.

재판장 판사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원 고

무슨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합니까. 지금 방해하시면서, 검증신청,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손해배상 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판사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러시지요.

재판장 판사

그것은 검증 대상물이 거기 있잖아요.

원 고

거기서 들춰보고 뜯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박홍우 지금 저기에서 재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바늘 하나로 콧 꺾어서 피만 뽑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 판사

무생물인 건물을 가서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것과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뽑거나 채취하는 것이 같습니까.

원 고

뭐가 같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갈 필요도 없이 누구

- 9 -

무덤은 파헤쳐도 박홍우의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노정희 1

시켜서, 의사한테 시켜서 피만 뽑아오게 하면 되는 일인데요.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파헤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장 판사

그것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자가 동의했을 경우입니다.

원 고

권한이 있는 자가 바로 판사가 아닌가요.

재판장 판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원 고 소송대리인

그러면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청 자체를 기각시킨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청구원인 중에 하나가 불법적인 재판 진행이었습니다.

재판장 판사

청구원인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검증감정 채부 여부와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원 고 소송대리인

그러니까 그것을 재판부가 권한이 있을 때는 거부해 놓고.

원 고

지금도 권한이 있어요. 신청을 했을 때 제290조에 의해서 증거신청이 유일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우가 해외 출국으로 해서 도망가지 않는 한.

재판장 판사

그래서 지금 혈액이나 모발 등에 관하여 채취하는 것에 관한 서면동의 등
절차를 더 진행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인가요.

원 고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하세요.

재판장 판사

없으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기각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왜 기각합니까.

원 고

그러면 재판부 기피신청 합니다.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서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

재판장 판사

혈액검증감정신청은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하겠습
니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 11 -

무덤은 파헤쳐도 박홍우의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노정희 3

30. 신성식의 명예훼손 공소장(pdf file)

31. 박홍래의 2010구합724 사건보고

2010구합724

2010년 8월 19일

기일	춘천지방법원					
7/8 42	행정제1심소송기록					
8/19 03:30	중요사건					
사건	2010구합724	춘천교도소의위법절 차에의한징벌취소	재판부	1		
			주심	다		
원고	김명호 ○ 정경 이신도 인정수이다.					
	중요사건 보고(중심)					
피고	춘천교도소장					
	녹음레이즈 - 1차 변론조의 녹음 (1)					
	홍 <원명> 부연 을기 발 라 단보					
관련 사건	2010아35 집행정지(2010.5.12. 각하) 2010아44 증거보존					
원결 공람	담임	과장	국장	주심판사	재판장	원장

대법원의 보고된 사건 1

32. 2010.1.17일자 이광범 고발장

그림 목차

이한주 판사의 사과문 초안 팩스 1-----	26
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 1.....	35
양승태의 원죄 1.....	46
이용훈 니가 범위에 있냐? 1.....	47
승용차 요일제가 차만 바꿨다면 되는 거냐? 1.....	47
승용차 요일제 위반 1.....	48
2007.8.28일자 박홍우 증언 1.....	49
2007.1.16일자 박홍우 2차 경찰조서 1.....	50
들것에 실려가는 박홍우의 생소 1.....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공소장 1.....	59
살인미수 혐의 공소장 2.....	60
살인미수 혐의 공소장 3.....	61
구속취소신청 1.....	67
구속취소신청 2.....	68
보석기각 결정문 1-----	72
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열간이들의 기각 결정문 1-----	73
이홍훈의 보석기각 결정문 1.....	75
이홍훈의 보석기각 결정문 2.....	76
박홍우의 검찰조사 상황 1.....	84

통화기록 사실조회 신청 1.....	86
김용호의 박홍우 통화기록 인멸 1.....	88
김용호의 박홍우 통화기록 인멸 2.....	89
똥판 트리오 조정현, 은택, 최용호의 증거보전 기각사유 1.....	91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는 김덕환의 3.21일자 증언 1.....	96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는 박홍우의 8.28일자 증언 1.....	98
증거능력 유무 의견서 1.....	99
증거능력 유무 의견서 2.....	100
증거능력 유무 의견서 3.....	101
증거능력 유무 의견서 4.....	102
증거능력 유무 의견서 5.....	103
조작된 화살 묶음에 대한 8.14일자 증거신청 기각 요청 1.....	104
조작된 화살, 석궁을 증거로 채택한 김용호의 판결문 1.....	106
조작된 화살, 석궁을 증거로 채택한 김용호의 판결문 2.....	107
의정부 교도소 영치금 및 이자 관련 정보 1.....	111
의정부 교도소 영치금 및 이자 관련 정보 2.....	112
석궁에 의한 상처일 수 없다는 김인섭의 4.16일 자 증언.....	114
박홍우의 복부 상해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사진.....	115
화살에 혈흔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보고서 1.....	121
박홍우 증인 소환을 위한 재판 거부 1.....	129
박홍우 증인 소환을 위한 재판 거부 2.....	130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는 119 구조대의 구급일지 1.....	154

국과수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161
국과수 유전자 분석 감정서 2.....	164
교도소의 DNA 채취동의서 1.....	171
2007.1.19일자 전국법원장회의록 비공개 결정문 1.....	175
신태길에게 부끄러워 할 줄 알라!는 박훈의 일갈 1.....	177
한국물리학회 회장 김정구의 답변 1.....	181
ATIYAH 교수가 명효철 교수에게 보낸 팩스 1.....	183
교도소 접견표 1.....	187
이흥훈, 이혁우 비난 구호 1.....	192
지영철의 판례위조 석명준비명령 1.....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므365 판결문 전문 1.....	205
대법원 2005므365 판결문 전문 1.....	205
대법원 2005므365 판결문 전문 2.....	205
두 번째 기피신청 각하하는 노정희 1.....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 중지절차 신청 1.....	216
소송 중지절차 신청 2.....	217
김용덕의 석명준비명령 1.....	224
석명준비명령답변 1.....	225
석명준비명령답변 2.....	226
석명준비명령답변 3.....	227

박홍우의 피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자백 증거 1-----	229
이동흡의 보정명령 1.....	233
이동흡의 7일만의 각하결정문 1-----	235
이동흡이 아닌 윤용오의 진술 1.....	237
이동흡이 아닌 윤용오의 진술 2.....	238
이용훈에 대한 항고처분 통지서 1-----	240
2009헌마300 결정문 일부 1-----	241
송두환의 2009헌마356 보정명령 1.....	243
2009헌마174에 불복한 헌법소원 2009헌마220 1.....	245
2009헌마174에 불복한 헌법소원 2009헌마220 2.....	246
2009헌마220에 불복한 헌법소원 2009헌마307 1.....	247
목영준의 위법행위 증거물 1-----	249
김희옥의 보정명령 1.....	251
김희옥의 보정명령 2.....	252
속들여다 보이는 박홍래의 지난일을 잊으라는 말 1.....	260
위법한 법원실무제요 1-----	290
징벌정지신청을 고의적으로 종료시킨 보정명령 1-----	262
전상범 판사의 CCTV 긴급 보전조치 1-----	263
장재윤의 판례위조 1-----	294
장재윤의 판례위조 2-----	295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1-----	265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2-----	265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3-----	266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4-----	266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5-----	267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6-----	267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7-----	268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8-----	268
재판테러범 박홍래에게 1-----	269
허윤의 담보제공 명령 1-----	270
조정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1-----	273
조정래의 4글자 '이유없다' 기각 결정문 1-----	274
고은설의 직무태만 증거 1.....	276
2010헌바25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1	279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결정문 1-----	280
임석필의 불기소 결정 1	298
임석필의 불기소 결정 2	299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위조한 증거 1-----	324
이정렬의 구차한 변명 1.....	340
이정렬의 구차한 변명 2.....	341
김용호 기피 기각결정문 1.....	348
김용호 기피 기각결정문 2.....	349
김용호 기피 기각결정문 3.....	350
김용호 기피 기각결정문 4.....	351

김용호 기피 기각결정문 5.....	352
김용호 기피 기각결정문 6.....	353
김용호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1.....	354
김용호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2.....	355
김용호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3.....	356
김용호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4.....	357
대법원의 기피 기각결정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결정문 1.....	358
대법원의 기피 기각결정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결정문 2.....	359
채영도의 학과장 추천서 1.....	361
석궁 관통력에 대한 경찰의 실험결과 1.....	360
신고를 망설였다는 박홍우의 증언 1.....	363
박훈 변호사의 혈흔검증 신청 1.....	364